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267-10	
통계청승인번호	117067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Contents

PART 01 서론	1
1. 발간목적	3
2. 법적근거	4
3. 자료수집과정	4
4. 자료분석	4
5. 주요내용	5
PART 02 노인학대 주요통계	7
1. 노인학대 신고접수	9
2.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	10
3. 노인학대 피해노인 현황	12
4. 노인학대 행위자 현황	13
5. 노인학대 유형	14
6. 노인학대 발생장소 및 특성	15
7. 경제적 학대 현황	17
8. 치매진단 노인학대 현황	19
9. 시설 노인학대 현황	21
10. 재학대 현황	22
PART 03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2014~2023년)	25
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27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28
3.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30
4.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31
5. 연도별 재학대 건수	32
6.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33
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34
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35
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36
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37
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38
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39



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41
14.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42

PART 04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45

1. 노인학대 신고접수	47
1) 전체 신고접수	47
2)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49
3) 시군구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53
4) 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59
5) 신고자 유형	59
6) 신고접수 및 경로 인지 유형	62

PART 05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65

1. 현장조사	67
2. 사례판정	69

PART 06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79

1.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81
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81
2) 노인학대 유형 II (학대유형 건수)	82
3)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89
4)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89
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90
6)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90
7) 학대발생장소	91
8) 학대발생빈도	98
9) 학대지속기간	99
10)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100
11) 학대발생원인(가족-환경원인)	102

PART 07 노인학대 상담 및 제공서비스 현황 103

1. 노인학대 상담	105
1) 월별 상담횟수	105

Contents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106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108
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110
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112
2.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서비스	114
1)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114
2)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115

PART 08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사례분석 결과 117

1. 학대피해노인 현황	119
1) 65세 이상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119
2)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19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120
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121
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122
6)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123
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및 동거자 유형	123
8)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24
9)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130
10)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30
11)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130
12)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130
13) 학대피해노인 건강상태	131
14)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133
2. 학대행위자 현황	135
1)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35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135
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37
4)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147
5)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47
6)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148
7)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48
8) 학대행위자 건강상태	149



PART 09 노인학대 주요 사례 분석 결과

151

1. 경제적 학대 현황	153
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153
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55
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156
4)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157
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157
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158
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159
8) 경제적 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59
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160
1)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160
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및 연령대	162
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대상 학대행위자 유형	164
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165
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166
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167
7)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168
8)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169
3. 시설학대 현황	170
1)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170
2)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173
3)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75
4) 시설학대 학대유형	176
5) 시설학대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177
6)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178
7)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179
8)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80
9)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81
10)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82
4. 재학대 현황	183
1)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현황	183
2) 재학대 신고자 유형	185

Contents

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87
4) 재학대 사례판정	188
5) 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189
6)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190
7) 재학대 학대발생장소	191
8) 재학대 학대발생빈도	192
9) 재학대 학대지속기간	193
10)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94
1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94
12)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96
1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196
14)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97
15) 재학대 학대행위자 중독 유형	198

PART 1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199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실적	201
1) 보호노인 현황	201
2) 보호노인 결혼 유형	202
3)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202
4) 보호노인 가구형태	203
5) 보호노인 주거형태	203
6) 보호노인 학대 유형	204
7) 보호노인 치매여부	205
8) 보호노인의 우울증 검사	205
9) 퇴소 후 거주 현황	205
10)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206
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207

PART 11 부 록 209

1.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211
2.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12

Contents(Table)

[표 3-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27
[표 3-2]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28
[표 3-3]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30
[표 3-4]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31
[표 3-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32
[표 3-6]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33
[표 3-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34
[표 3-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및 비율	35
[표 3-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36
[표 3-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37
[표 3-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38
[표 3-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39
[표 3-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41
[표 3-14]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42
[표 3-15]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43
[표 4-1]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47
[표 4-2] 월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48
[표 4-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49
[표 4-4]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율	51
[표 4-5] 시군구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53
[표 4-6] 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59
[표 4-7] 신고자 유형 I	59
[표 4-8] 신고자 유형 II (신고의무자)	61
[표 4-9] 신고자 유형 III (비신고의무자)	61
[표 4-10] 신고접수 경로	62
[표 4-11] 신고접수 유형	62
[표 4-12] 신고 경로 인지 유형별 신고자 구분	63
[표 5-1] 현장조사	67
[표 5-2] 지역 및 기관별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67
[표 5-3]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69
[표 5-4] 시군구별 사례판정 결과	71

Contents(Table)

[표 5-5]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77
[표 5-6] 사례판정 결과별 신고자 유형	78
[표 6-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81
[표 6-2] 노인학대 유형 II (학대유형 건수)	82
[표 6-3] 시군구별 노인학대 유형 II (학대유형 건수)	82
[표 6-4] 노인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88
[표 6-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89
[표 6-6]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89
[표 6-7]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90
[표 6-8]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90
[표 6-9] 학대발생장소	91
[표 6-10] 시군구별 학대발생장소	91
[표 6-11] 학대발생장소별 학대유형	98
[표 6-12] 학대발생빈도	98
[표 6-13] 학대발생빈도별 노인학대 유형	99
[표 6-14] 학대지속기간	99
[표 6-15] 학대행위자 원인	100
[표 6-16]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101
[표 6-17] 가족-환경 원인	102
[표 7-1] 월별 상담횟수	105
[표 7-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106
[표 7-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108
[표 7-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110
[표 7-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평균 상담 횟수	112
[표 7-6]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114
[표 7-7]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115
[표 8-1] 65세 이상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분포	119
[표 8-2]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 분포	119
[표 8-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120
[표 8-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121
[표 8-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122



[표 8-6]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123
[표 8-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123
[표 8-8] 학대피해노인 동거자 유형	123
[표 8-9]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24
[표 8-10] 시군구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24
[표 8-11]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130
[표 8-12]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30
[표 8-13]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130
[표 8-14]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130
[표 8-15] 학대피해노인 질병유형	131
[표 8-16] 학대피해노인 장애 수	132
[표 8-17]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132
[표 8-18]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33
[표 8-19] 학대피해노인 중독 유형	133
[표 8-20]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133
[표 8-21] 학대행위자 성별 연령분포	135
[표 8-2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135
[표 8-2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37
[표 8-24] 시군구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37
[표 8-25] 학대행위자 연령별 학대행위자 유형 분포	144
[표 8-26] 학대행위자 중 배우자 성별	144
[표 8-27]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행위자 유형	145
[표 8-28]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145
[표 8-29]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146
[표 8-30]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147
[표 8-31]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47
[표 8-32] 학대행위자 연령대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47
[표 8-33]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148
[표 8-34]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48
[표 8-35] 학대행위자 장애유형**	149
[표 8-36]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149

Contents(Table)

[표 9-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153
[표 9-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55
[표 9-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156
[표 9-4]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157
[표 9-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157
[표 9-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158
[표 9-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159
[표 9-8] 경제적 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59
[표 9-9]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160
[표 9-10]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162
[표 9-11]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연령대	163
[표 9-1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164
[표 9-1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165
[표 9-1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166
[표 9-1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167
[표 9-1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168
[표 9-17]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169
[표 9-18]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170
[표 9-19]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173
[표 9-20]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75
[표 9-21] 시설학대 학대유형	176
[표 9-22] 시설학대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177
[표 9-23]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178
[표 9-24]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179
[표 9-25]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180
[표 9-26]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80
[표 9-2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81
[표 9-28]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82
[표 9-29]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현황	183
[표 9-30] 신규-재학대 신고자 유형	186
[표 9-3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87



[표 9-32] 신규-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사례판정	188
[표 9-33] 신규-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189
[표 9-34]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190
[표 9-35] 신규-재학대 학대발생장소	191
[표 9-37] 신규-재학대 학대발생빈도	192
[표 9-38] 신규-재학대 학대지속기간	193
[표 9-39]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94
[표 9-40] 신규-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94
[표 9-4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건수	195
[표 9-42]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196
[표 9-4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197
[표 9-44]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97
[표 9-45] 재학대 학대행위자 중독 유형	198
[표 10-1] 보호노인 현황	201
[표 10-2]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201
[표 10-3] 보호노인 결혼 유형	202
[표 10-4]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202
[표 10-5] 보호노인 가구형태	203
[표 10-6] 보호노인 주거형태	203
[표 10-7] 보호노인 학대 유형	204
[표 10-8] 보호노인 치매여부	205
[표 10-9] 보호노인 우울증 검사결과*	205
[표 10-10] 퇴소 후 거주 현황	205
[표 10-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206
[표 10-12]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207

Contents(Picture)

[그림 2-1] 노인학대 신고접수	9
[그림 2-2]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신고의무자)	10
[그림 2-3]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비신고의무자)	11
[그림 2-4] 학대피해노인 현황	12
[그림 2-5]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2
[그림 2-6] 학대행위자 현황	13
[그림 2-7] 학대행위자 유형	13
[그림 2-8] 노인학대유형	14
[그림 2-9] 장소별 노인학대유형	14
[그림 2-10] 학대발생장소	15
[그림 2-11] 학대발생빈도 및 지속기간	16
[그림 2-12] 경제적 학대 현황	17
[그림 2-13] 경제적 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18
[그림 2-14] 치매진단 노인학대 현황	19
[그림 2-15] 치매진단 노인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20
[그림 2-16] 시설 노인학대 현황	21
[그림 2-17] 시설 노인학대 신고자유형	21
[그림 2-18] 재학대 현황	22
[그림 2-19] 재학대 신고자유형	23
[그림 2-20] 재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24
[그림 3-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비율 추이	27
[그림 3-2]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비율 추이	29
[그림 3-3] 연도별 현장조사 건수 및 비율 추이	30
[그림 3-4] 연도별 사례판정 비율 추이	31
[그림 3-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추이	32
[그림 3-6] 연도별 학대유형 비율 추이	33
[그림 3-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34
[그림 3-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비율 추이	35
[그림 3-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비율 추이	36
[그림 3-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비율 추이	37
[그림 3-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비율 추이	38



[그림 3-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40
[그림 3-13] 연도별 학대행위자 본인 추이	40
[그림 3-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41
[그림 3-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42
[그림 3-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추이	43
[그림 4-1] 전체 신고건수 비율	47
[그림 4-2] 학대사례 건수 대비 재학대 건수 비율	47
[그림 4-3] 월별 신고접수 건수 추이	48
[그림 4-4] 지역 기관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50
[그림 4-5] 기관별 노인학대 신고접수율(노인인구 천명당)	52
[그림 4-6] 신고자 유형 I	59
[그림 4-7] 신고자 유형 II	61
[그림 4-8] 신고접수 유형	62
[그림 4-9] 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	63
[그림 4-10]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	63
[그림 5-1] 사례판정 결과	70
[그림 5-2]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77
[그림 5-3] 사례판정 결과별 신고자 유형	78
[그림 6-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81
[그림 6-2] 노인학대 유형 II (학대유형 건수)	82
[그림 6-3] 학대발생장소	91
[그림 6-4] 학대발생빈도	98
[그림 6-5] 학대지속기간	99
[그림 6-6] 학대행위자 원인	100
[그림 6-7]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101
[그림 6-8] 가족-환경 원인	102
[그림 7-1] 월별 상담횟수	105
[그림 7-2]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107
[그림 7-3]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109
[그림 7-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111
[그림 7-5]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113

Contents(Picture)

[그림 8-1]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분포	119
[그림 8-2]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121
[그림 8-3]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122
[그림 8-4] 학대행위자 연령분포	135
[그림 8-5]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137
[그림 9-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154
[그림 9-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55
[그림 9-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156
[그림 9-4] 경제적 학대 행위자 연령대	157
[그림 9-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157
[그림 9-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158
[그림 9-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159
[그림 9-8]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162
[그림 9-9]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162
[그림 9-10]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연령대	163
[그림 9-11]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164
[그림 9-1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165
[그림 9-1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166
[그림 9-1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167
[그림 9-1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168
[그림 9-1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169
[그림 9-1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75
[그림 9-18] 시설학대 학대유형	176
[그림 9-19]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178
[그림 9-20]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179
[그림 9-21]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82
[그림 9-22] 기관별 재학대 접수 건수 및 비율	184
[그림 9-2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187
[그림 9-24]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사례판정 비율	188
[그림 9-25] 신규-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189
[그림 9-26]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190



[그림 9-27] 신규-재학대 학대발생장소	191
[그림 9-28] 재학대 학대발생빈도	193
[그림 9-29] 신규-재학대 학대지속기간	193
[그림 9-30]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195
[그림 9-3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196
[그림 9-32]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97
[그림 10-1]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202
[그림 10-2] 보호노인 가구형태	203
[그림 10-3] 보호노인 주거형태	204
[그림 10-4] 보호노인 학대 유형	204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노인학대 관련 용어 해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언,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전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 보호노인

보호노인이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입소자와 이용자의 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입소자는 쉼터에서 숙식과 함께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용자는 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대상을 의미

■ 노인학대 신고 접수

🔍 신고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신고 및 상담 목적의 모든 사례

● 재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

🔍 신고자 유형

●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 등의 직군이 포함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경찰,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됨

■ 학대발생장소

🔍 가정내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 생활시설 학대

노인복지법 제31조의제1호, 제2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이용시설 학대

노인복지법 제31조의제3호,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과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 같은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병원 학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일반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공공장소 학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여럿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현장조사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 행위자로 신고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방문을 의미함

🔍 응급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노인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며,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실시

■ 사례판정

현장조사 및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응급 사례, 비응급 사례, 잠재적 사례, 일반사례로 분류하는 과정

🔍 학대사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 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또한 학대 행위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요구되며, 노인의 생명 혹은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말함

● 비응급 사례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됨

● 잠재적 사례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됨

* 2023년 7월 1일부터 접수된 사례 중 시설학대(생활시설, 이용시설)이면서 사례판정이 '잠재적'인 사례는 학대사례에서 제외됨(잠재적 사례로 분류). 즉, 시설학대는 사례판정이 '응급'이거나 '비응급'인 경우에만 학대사례로 분류됨

🔍 일반사례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 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함

📊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Q 중복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중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Q 상담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 학대상담

학대상담이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단한 사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을 의미함

* 2023년 7월 1일부터 접수된 시설사례(생활시설, 이용시설) 중 학대사례는 사례판정이 '응급'이거나 '비응급'으로 판정된 사례임

● 일반상담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로 유관기관 안내 및 복지서비스 등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을 의미함

● 접수상담

신고접수 시의 초기 상담을 의미함

● 진행상담

사례개입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상담을 의미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상담, 학대행위자 상담, 관련자 및 주변인 상담, 현장조사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 종결상담

학대피해노인의 위험요인 제거 및 학대행위자 분리 등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종결을 앞두고 실시한 상담을 말함. 사례 종결여부는 종결지표를 통해 결정되며, 이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종결 이전에 확인하는 점검리스트의 기능을 함

Q 사후관리

종결된 사례에 대해 학대피해노인이 안전한지 학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말함

🔍 복지서비스연계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게 각종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필요자원을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 법률서비스연계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법적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에 대한 정보나 법률지원을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 의료서비스연계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증진 및 학대행위자의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적 치료를 연계·제공하는 서비스

🔍 보호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킴이 연결 및 거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가구형태

🔍 노인독거가구

다른 가구원 없이 노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형태

🔍 노인부부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배우자만으로 이루어진 가구형태

🔍 자녀동거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 손자녀동거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손자녀만 동거하는 가구형태

🔍 자녀·손자녀 동거 가구

학대피해노인과 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구형태

■ 건강상태

🔍 치매

- 치매진단
의학적 검사를 통해 의사가 치매로 진단한 상태
- 치매의심
간이정신상태검사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로 의심되는 상태

🔍 ADL/IADL

- 일상생활수행능력: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몸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등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 기타 용어정리

🔍 학대행위자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행하는 자

🔍 부양의무자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할 의무가 있는 자로 노인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노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해당됨

🔍 보호자

노인을 보호하는 자로 부양의무자 및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를 받는 사람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요약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요약

- 본 보고서는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상담사업 사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본 보고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및 상담이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추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방향과 노인보호 정책마련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보고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21,936건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 신고접수 건수 21,936건에 대해 현장조사와 상담진행을 통하여 확인된 학대사례는 7,025건임
- 본 보고서 자료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상담, 학대 유형,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학대발생원인, 서비스제공에 대한 각각의 현황을 정리하였음
-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2017. 6. 3.)에 따라 2018년 1월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노인학대로 규정하였음. 단, 기존 개입한 노인학대 사례(만 65세 미만)를 중심으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 일부 항목의 경우 기존 사례를 포함한 수치임
-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내 학대의 경우,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시설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만큼, 명확한 증거에 기반한 학대판정이 요구되어 증거 충분 여부에 따라 학대판정기준이 변경됨(2023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 * 2023년 7월 1일부터 접수된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내 사례 중 사례판정이 ‘응급’이거나 ‘비응급’이면 “학대사례”로, ‘잠재적’이면 “잠재사례”로 분류됨
 - ** 그 외 학대사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됨
- 지역별 현황의 경우, 각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처리현황을 단순 집계한 것으로서 각 유형별 현황의 숫자가 많지 않아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지 못하므로 단순비교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Q 노인학대 신고접수

노인학대 신고접수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상담 및 신고목적의 모든 사례를 의미하며, 신고 당시 수집한 기초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각 기관은 자체사례회의 및 사례판정 위원회 등을 거쳐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로 분류함

-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전체신고 건수는 21,936건**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19,552건 → 21,936건) 하였음
 - 일반사례¹⁾는 14,911건(68.0%)으로 전년 대비 17.0% 증가(12,745건 → 14,911건)
 - 학대사례²⁾는 7,025건(32.0%)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6,807건 → 7,025건)
- 학대사례 7,025건 중 신고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1,630건(23.2%)**, **서울특별시 719건(10.2%)**, **부산광역시 574건(8.2%)**의 순으로 나타남

Q 신고자 유형

노인학대 신고자의 유형은 크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되며,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의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 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 등으로 분류함. 비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경찰 등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함

- 노인학대 사례 7,025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1,044건(14.9%)**이며 **비신고의무자는 5,981건(85.1%)**으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7.2% 감소(1,125건 → 1,044건)
 -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5.3% 증가(5,682건 → 5,981건)
- ※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의무자 직군으로 변경되어 시행일 기준으로 구분함 (시행일: '22.3.22.)

1) 일반사례란,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함.

2) 학대사례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 단, '23.7.1.부터 접수된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사례의 경우는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로 판정된 사례만 해당함.

Q 신고접수 경로 및 접수유형, 경로 인지 유형

신고접수 경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의 응급성 정도, 현재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학대 지속성 여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대처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또는 112 신고 등으로 분류함

- 신고접수 경로 유형을 살펴보면, 112이관을 통한 접수가 4,197건(59.7%)으로 과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세부 유형으로 자체접수 2,381건(33.9%), 행정복지센터 116건(1.7%), 시청 95건(1.4%) 등이 있음

신고접수 유형은 신고접수 경로의 세부적인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를 통한 전화 신고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고, 신고앱을 통한 신고, 신고자의 기관 내방 또는 상담원 방문 등의 대면신고 및 서신에 의한 신고로 분류함

- 신고접수 유형을 살펴보면, 서신³⁾을 통한 접수가 4,605건(65.6%)으로 과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세부 유형으로 전화 2,068건(29.4%), 대면 279건(4.0%), 온라인 73건(1.0%)이 있음

신고 경로 인지 유형은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알게 된 경로를 의미함

- 신고 경로 인지 유형을 살펴보면,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이 6,162건(87.7%)으로 과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세부 유형으로는 “타 기관 안내”가 247건(3.5%),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 홍보의 경우”가 178건(2.5%)으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 : 전년 대비 8.9% 감소(1,047건 → 954건)
 -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 : 전년 대비 6.4% 증가(4,897건 → 5,208건)

I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Q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현장조사란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를 조사하기 위한 방문을 의미하며, 학대사례의 경우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완강한 거부,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악화로 인한 병원 및 시설입소, 학대피해노인의 이사 및 이주 또는 학대피해노인이 현장조사를 원하지 않고, 제3의 장소나 기관 내방 등을 원하여 불가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3) 112 이관 시 이메일 및 팩스 등으로 접수된 경우 신고접수 유형 구분 시 서신으로 분류.

- 2023년 전체 학대사례 7,025건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6,898건(98.2%)**임

※ 현장조사 건수 : '19년(5,084건) - '20년(6,152건) - '21년(6,696건) - '22년(6,703건) - '23년(6,898건)

현장조사와 방문상담은 학대피해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는 상담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주거환경 및 생활수준, 심리상태, 주변 자원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여부 및 생활상태 등을 확인하는데 용이함

- 전체 학대사례 7,025건에 대한 **방문상담 횟수는 40,678회**로 한 사례 당 방문상담 횟수는 5.8회로 나타남

🔍 사례판정

사례판정은 현장조사 실시 후 신고접수 당시 파악된 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학대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의미함.

- 2023년 전체 학대사례 7,025건 중 사례판정 비율은 응급 사례가 167건(2.4%), 비응급 사례가 4,561건(64.9%), 잠재적 사례가 2,297건(32.7%)으로 나타남
 - 응급 사례⁴⁾의 경우 전년 대비 1.8% 감소(170건 → 167건)
 - 비응급 사례⁵⁾의 경우 전년 대비 9.7% 증가(4,157건 → 4,561건)
 - 잠재적 사례⁶⁾의 경우 전년 대비 7.4% 감소(2,480건 → 2,297건)
- 응급 사례의 경우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비응급 사례는 “신체적 - 정서적 - 방임”, “잠재적 사례의 학대 유형은 “정서적 - 신체적 - 방임”의 순으로 나타남

🔍 재학대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를 의미하며, 2023년 학대사례 7,025건 중 **재학대 건수는 759건(10.8%)**으로 여성피해노인이 623명(82.1%), 남성피해노인이 136명(17.9%)으로 나타남

※ 재학대 건수 : '19년(500건) - '20년(614건) - '21년(739건) - '22년(817건) - '23년(759건)

4) 응급사례는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학대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5) 비응급사례는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되어 응급이 아닌 경우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을 의미함.

6) 잠재적 사례는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간의 의사소통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함.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근거하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등으로 분류하며, 2023년 학대 유형 건수는 10,638⁷⁾임

- **신체적 학대 4,541건(42.7%), 정서적 학대 4,531건(42.6%),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학대 265건(2.5%), 자기방임 165건(1.6%), 유기 26건(0.2%)** 순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유형 10,638건 중 성별에 따른 학대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신체적 학대 : 여성 3,573건(78.7%), 남성 968건(21.3%)
 - 정서적 학대 : 여성 3,596건(79.4%), 남성 935건(20.6%)
 - 방임 : 여성 486건(64.1%), 남성 272건(35.9%)
 - 경제적 학대 : 여성 242건(68.8%), 남성 110건(31.3%)
 - 성적 학대 : 여성 217건(81.9%), 남성 48건(18.1%)
 - 자기방임 : 남성 93건(56.4%), 여성 72건(43.6%)
 - 유기 : 남성 16건(61.5%), 여성 10건(38.5%)
- 학대 유형별로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신체적, 정서적, 자기방임, 유기 학대 유형의 경우 70대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성적, 방임 유형은 80대에서 높게 나타남
-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의 학대행위자 유형은 “배우자 - 아들 - 딸”**이며, **방임의 경우는 “기관⁸⁾ - 아들 - 딸”** 순으로 나타남. 또한 방임의 경우, 자녀에 의한 방임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을 방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함
 - 기타 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 유형 순위
 - 경제적 학대(아들 - 기관 - 딸)
 - 성적 학대(기관 - 배우자 - 타인)
 - 유기(아들 - 딸 - 손자녀)

7)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수치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수치는 차이가 있음. 즉, 학대피해노인 1명이 학대행위자로부터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 학대사례는 1건이나 학대유형 건수는 2건으로 집계됨.

8) 노인복지시설 등의 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을 방임하는 경우를 의미함.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장소

노인학대의 유형을 학대발생 공간에 따라 분류하면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등으로 분류함

- 전체 학대사례 7,025건 중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그 외 세부 유형으로는 생활시설 571건⁹⁾(8.1%), 병원 115건(1.6%), 이용시설 108건(1.5%), 기타 88건(1.3%), 공공장소 64건(0.9%) 순으로 나타남
 -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전년 대비 3.6% 증가(5,867건 → 6,079건)
 - 생활시설의 경우 전년 대비 13.7% 감소(662건 → 571건)
 - 병원의 경우 전년 대비 33.7% 증가(86건 → 115건)

노인학대 상담

노인학대 상담

노인학대 상담은 일반상담과 학대상담으로 구분되며, 일반상담은 단순 정보제공 등의 일반사례에 대한 상담으로 보통 정보제공과 함께 상담이 종료되며, 학대상담의 경우 학대상담방법과 학대상담과정에 따라 분류함

- 전체 신고접수 건수 21,936에 대한 **전체 상담횟수는 225,589회**임
 - 학대상담 횟수 169,423회, 한 사례당 평균 상담 횟수 24.1회
- 일반상담 횟수* 56,166회, 한 사례당 평균 상담 횟수 3.8회
 - * 일반상담 횟수는 시설사례이면서 사례판정이 '잠재적'인 사례의 상담건수를 포함한 수치임
- 전년 대비 상담 횟수는 **10.6% 증가**(203,884회 → 225,589회)
 - 학대상담 횟수 경우 전년 대비 6.3% 증가(159,402회 → 169,423회)
 - 일반상담 횟수 경우 전년 대비 26.3% 증가(44,482회 → 56,166회)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구분

학대상담방법은 전체 학대상담 횟수 169,423회에 대한 구체적 상담방법에 따른 분류로 전화상담, 방문상담, 내방상담, 서신을 통한 상담, 온라인 상담, 기타 등이 있음

- 전화상담의 경우 113,092회(66.8%)로 전년 대비 4.3% 증가(108,425회 → 113,092회)
- 방문상담의 경우 40,678회(24.0%)로 전년 대비 12.8% 증가(36,067회 → 40,678회)

9) 2015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에 한하여 생활시설 학대로 집계함.

Q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구분

학대상담과정은 전체 학대상담 횟수 169,423회에 대한 상담과정에 따른 분류로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로 분류함

- 상담과정에 따라 살펴보면 **진행상담 122,302회(72.2%)**, 사후관리 33,207회(19.6%), 접수상담 7,058회(4.2%), 종결상담 6,856회(4.0%) 순으로 나타남

I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서비스

Q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서비스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공 서비스는 크게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연계, 법률서비스연계, 의료서비스연계,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으로 분류함

Q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학대피해노인 7,025명에 대해 **총 243,245회로 한 사례당 평균 34.6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 세부 유형으로 살펴보면, **상담서비스 135,078회(55.5%)**, **정보제공서비스 85,063회 (35.0%)**, **복지서비스연계 19,234(7.9%)**, **보호서비스 1,857회(0.8%)**, **의료서비스연계 1,456회(0.6%)**, **법률서비스연계 557회(0.2%)**의 순으로 나타남

Q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학대행위자 7,900명에 대해 **총 48,931회로 한 사례당 평균 6.2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 세부 유형으로 살펴보면, **상담서비스 28,392회(58.0%)**, **정보제공서비스 18,468회(37.7%)**, **복지서비스연계 1,738회(3.6%)**의 순으로 나타남

학대피해노인 현황

Q 성별 및 연령

- 전체 학대피해노인은 7,025명으로 **여성이 5,333명(75.9%)**, **남성이 1,692명(24.1%)**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약 3.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학대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노인은 신체적 - 정서적 - 방임, 여성노인은 정서적 - 신체적 - 방임의 순으로 학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남성 노인의 학대 피해 유형 : 신체적 968건(39.6%) - 정서적 935건(38.3%) - 방임 272건(11.1%)
 - 여성 노인의 학대 피해 유형 : 정서적 3,596건(43.9%) - 신체적 3,573건(43.6%) - 방임 486건(5.9%)

- 연령대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70대 2,930명(41.7%), 80대 2,030명(28.9%), 60대 1,655명(2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Q 결혼 및 동거가족

학대피해노인의 결혼 및 동거가족 형태는 노인 혼자 거주하는 노인독거가구, 노부부만 거주하는 노인 부부가구와 노인과 손자녀만 거주하는 손자녀동거가구, 자녀와 손자녀까지 함께 거주하는 자녀·손자녀동거가구, 노인과 자녀만 동거하는 자녀동거 가구로 분류되며, 기타 가구형태로는 시설에 거주하거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형태 등을 의미함. 다만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가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실행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거, 비동거 어느 한쪽의 위험요인이 더 높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학대피해노인의 **결혼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 있음이 4,471건(63.6%), 배우자 없음이 2,554건(36.4%)**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동거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학대피해노인 7,025명 중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는 5,032명(71.6%)**이며, 비동거는 1,993명(28.4%)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5,032명에 대한 **동거 가족유형(중복)**은 총 7,169명이며,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3,473명(48.4%)으로 가장 높고, 아들이 1,782명(24.9%), 딸 622명(8.7%), 손자녀 428명(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가 2,741명(39.0%), 자녀동거가가 1,982명(28.2%), 노인독거가가 1,118명(15.9%)등의 순으로 나타남

Q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및 교육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급여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함

- 학대피해노인의 7,025명 중 **수급자는 1,067명(15.2%)**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의 교육정도는 초졸이 2,612명(37.2%)으로 가장 높았고, 고졸이 1,485명(21.1%), 무학이 1,407명(20.0%)순으로 나타나 초졸 이하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Q 건강상태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항목은 질병 유형, 장애 수, 장애유형, 치매정도, 중독 유형 등이 해당되며, 학대피해노인의 건강상태는 사례개입 시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상담 시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항목임

- **질병유형**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디스크, 골다공증 등이 있으며,
 - 전체 학대피해노인 7,025명 중 하나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는 5,610명(79.9%)으로, 고혈압 1,418명(25.3%), 당뇨병 784명(14.0%), 관절염 771명(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되며, 신체장애는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등으로, 정신장애는

지적, 우울, 정신분열 등으로 분류함

- 전체 학대피해노인 7,025명 중에서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은 622명(8.9%)으로 **신체장애 383명(61.6%), 정신장애 239명(38.4%)**으로 나타남
- 세부 유형으로는 **우울장애 166명(26.7%), 지체장애 164명(26.4%), 청각장애 95명(1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치매정도**는 크게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와 치매로 의심하는 치매의심으로 분류함

-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는 1,822명(25.9%)**으로 **치매의심**이 608명(8.7%), **치매로 병원진단을 받은 치매진단**은 1,214명(17.3%)으로 나타남

● **중독유형**은 중독성을 지닌 항목의 중독여부와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약물 사용 장애, 도박중독 등이 해당됨

- 학대피해노인 7,025명 중 **95명(1.4%)**이 하나 이상의 중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91명(95.8%)**으로 나타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일상생활정도**는 학대피해노인의 기능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으로 구분됨

-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타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등을 통해 파악함
-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몸단장하기, 집안일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 사러가기, 금전 관리하기, 전화 사용하기, 약 챙겨먹기 등을 통해 파악함

●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일상생활정도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경우 각각의 항목은 71.7~73.7% 수준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경우 69.1~72.4% 수준으로 “완전자립”이 가능한 상태로 나타남

Q 직업유형

학대피해노인의 직업유형은 학대피해노인의 주 수입원인 직업의 유무와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업유형은 학대피해노인의 생활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학대피해노인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무직이 5,951명(84.7%)**으로 과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며, 단순 노무 종사자가 378명(5.4%), 자영업자가 201명(2.9%),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178명(2.5%)등의 순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 현황

성별 및 연령

- 전체 학대행위자는 7,900명¹⁰⁾으로 남성이 5,445명(68.9%), 여성이 2,455명(31.0%)이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수가 약 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학대행위자 7,900명 중 배우자가 2,830명으로 35.8%에 해당하였으며, 이는 남성 학대 행위자 5,445명 중 약 52.0%에 해당하는 수치임
- 연령대를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전체 학대행위자의 2,565명(32.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남성 학대행위자 연령대 : 70세 이상 2,245명(41.2%) - 50대 1,017명(18.7%) - 60대 934명(17.2%)
 - 여성 학대행위자 연령대 : 50대 1,017명(41.4%) - 60대 589명(24.0%) - 40대 381명(15.5%)
- 한편 65세 이상 학대행위자가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노(老)학대는 총 3,335건으로 전체 학대행위자 수의 42.2%에 해당됨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는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으로 분류하며, 친족은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등의 세부 항목으로, 타인은 동거인, 이웃 등으로, 기관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됨

- 전체 학대행위자 7,900명에 대한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 2,830명(35.8%), 아들 2,080명(26.3%), 기관 1,564명(19.8%)의 순으로 나타남. 2021년 처음으로 배우자-아들 순으로 바뀐 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그 비율이 높아짐
 - 아들, 배우자,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 친족의 경우가 5,894명(74.6%)으로 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학대행위자가 본인인 경우는 165명(2.1%)이며 전년 대비 2.4% 감소(169건 → 165건)

결혼유형

- 학대행위자 결혼유형은 크게 배우자 있음과 배우자 없음으로 구분되며 배우자 있음은 5,072명(64.2%), 배우자 없음은 2,828명(35.8%)으로 나타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초혼이 4,567명(57.8%)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이 1,867명(23.6%)으로 가장 많았음

10)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의 수와 학대행위자의 수는 차이가 있음.

❓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및 교육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급여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함

- 학대행위자의 7,900명 중 **수급자는 747명(9.5%)**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3,458명(4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졸 이상이 1,819명(23.0%)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

학대행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항목은 장애유형, 중독 유형 등이 있으며,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분류하고, 신체장애는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등으로 정신장애는 지적, 우울, 정신분열 등으로 분류함

- 학대행위자 7,900명 중에서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대행위자는 **총 1,066명(13.5%)**으로 **정신장애 792명(74.3%), 신체장애가 274명(25.7%)**으로 나타남
 - 세부 유형별로 보면 **우울장애 293명(27.5%), 정신분열 270명(2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중독 유형은 중독성을 지닌 항목의 중독여부와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약물 사용 장애, 도박중독 등이 해당됨
 - 학대행위자 중 **1,017명(12.9%)이 하나 이상의 중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중 **알코올 사용장애가 967명(95.1%), 도박중독이 31명(3.0%), 약물 사용장애가 19명(1.9%)**으로 나타남

❓ 직업유형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은 학대행위자의 주 수입원인 직업의 유무와 종류를 의미하며, 학대행위자의 생활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경제적 부양부담과도 연결됨

-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무직이 4,596명(58.2%)**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전문직 982명(12.4%), 단순 노무 종사자 693명(8.8%), 서비스·판매종사자 627명(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01

서론



서론

01 | 발간목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질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1개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0개¹¹⁾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국의 노인학대 현황 추이를 분석하고 노인학대와 관련한 인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한국사회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11) 이 중 경기남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으로 설치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음.

02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통계청 승인번호 117067)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4호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근거에 따라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기록된 노인학대 사례 자료를 분석하였음

03 | 자료수집과정

본 자료는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노인학대 예방 사업실적을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집계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며, 해당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04 | 자료분석

모든 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의미 있는 몇 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인학대 현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학대사례에 대한 연도별 변화(14년~23년)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100%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2017. 6. 3.)에 따라 2018년 1월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노인학대로 규정하였다. 단, 기존 개입한 노인학대사례(만 65세 미만)를 중심으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 일부 항목의 경우 기존 사례를 포함한 수치이다.

기존에는 사례판정 값이 ‘응급’, ‘비응급’, ‘잠재적’으로 판정되면 학대사례로 분류되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접수된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사례에 국한하여 사례판정 값이 ‘응급’, ‘비응급’인 경우에만 학대사례로 분류된다.

05 | 주요내용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집계된 노인학대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다음 항목에 대한 실적을 담고 있다.

분 류	내 용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 연도별 재학대 건수 •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 신고접수 건수 • 신고자 유형 • 신고접수 경로 및 경로 인지 유형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 현장조사 • 사례판정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 노인학대 유형Ⅰ(학대피해노인 수) • 노인학대 유형Ⅱ(학대 유형 건수) •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빈도, 학대지속기간, 학대발생원인
노인학대 상담 및 제공서비스 현황	• 노인학대 상담 횟수 •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서비스 현황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사례분석 결과	• 학대피해노인 현황 - 성별, 연령대, 학대유형, 결혼유형, 동거여부 및 동거자 유형 - 가구형태, 주거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교육정도, 직업유형 - 건강상태, 일상생활 정도 • 학대행위자 현황 - 성별, 연령대, 결혼유형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학대행위자 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교육정도, 직업유형 - 건강상태
노인학대 주요 사례분석 결과	• 경제적 학대 현황 •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현황 • 시설학대 현황 • 재학대 현황
기타실적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02

노인학대 주요통계



노인학대 주요통계

01 | 노인학대 신고접수

- 🔍 (학대사례) 7,025건, 전년 대비 3.2% 증가('22년 6,807건 → '23년 7,025건)
- 🔍 (일반사례) 14,911건, 전년 대비 17.0% 증가('22년 12,745건 → '23년 14,911건)
- 🔍 (전체사례) 21,936건, 전년 대비 12.2% 증가('22년 19,552건 → '23년 21,93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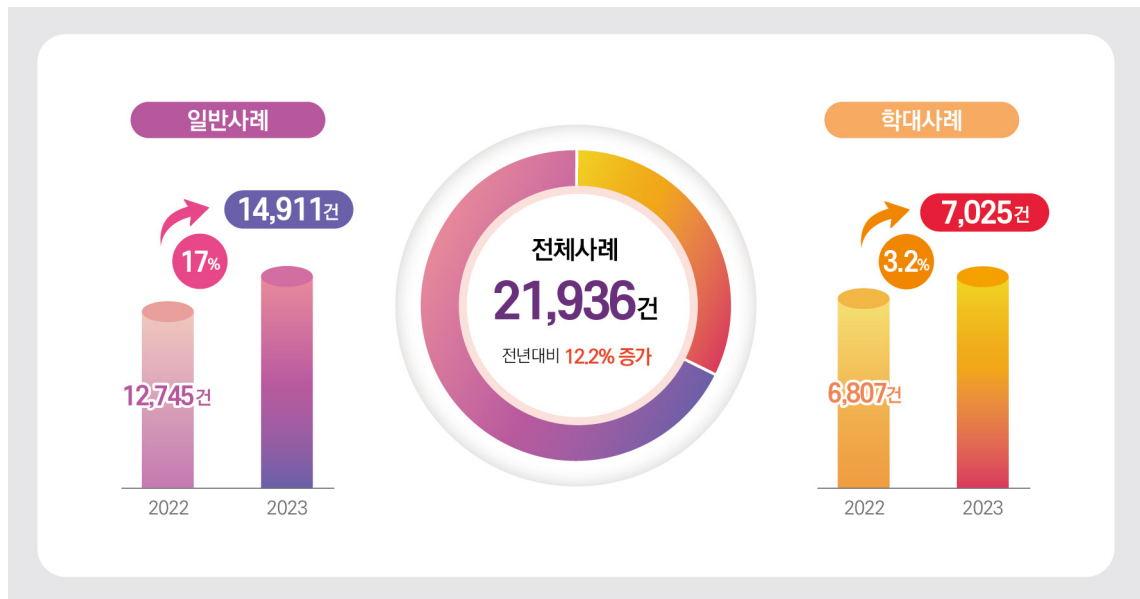


그림 2-1 노인학대 신고접수

02 |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

🔍 (신고의무자) 1,044명, 전년 대비 7.2% 감소('22년 1,125명 → '23년 1,044명)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년 대비 20.9% 감소('22년 211명 → '23년 167명)
- 노인복지시설 설치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전년 대비 58.7% 감소('22년 155명 → '23년 64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및 요양직 직원 전년 대비 52.2% 감소('22년 29명 → '23년 13명)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전년 대비 14.3% 증가('22년 42명 → '23년 48명)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전년 대비 10.0% 감소('22년 20명 → '23년 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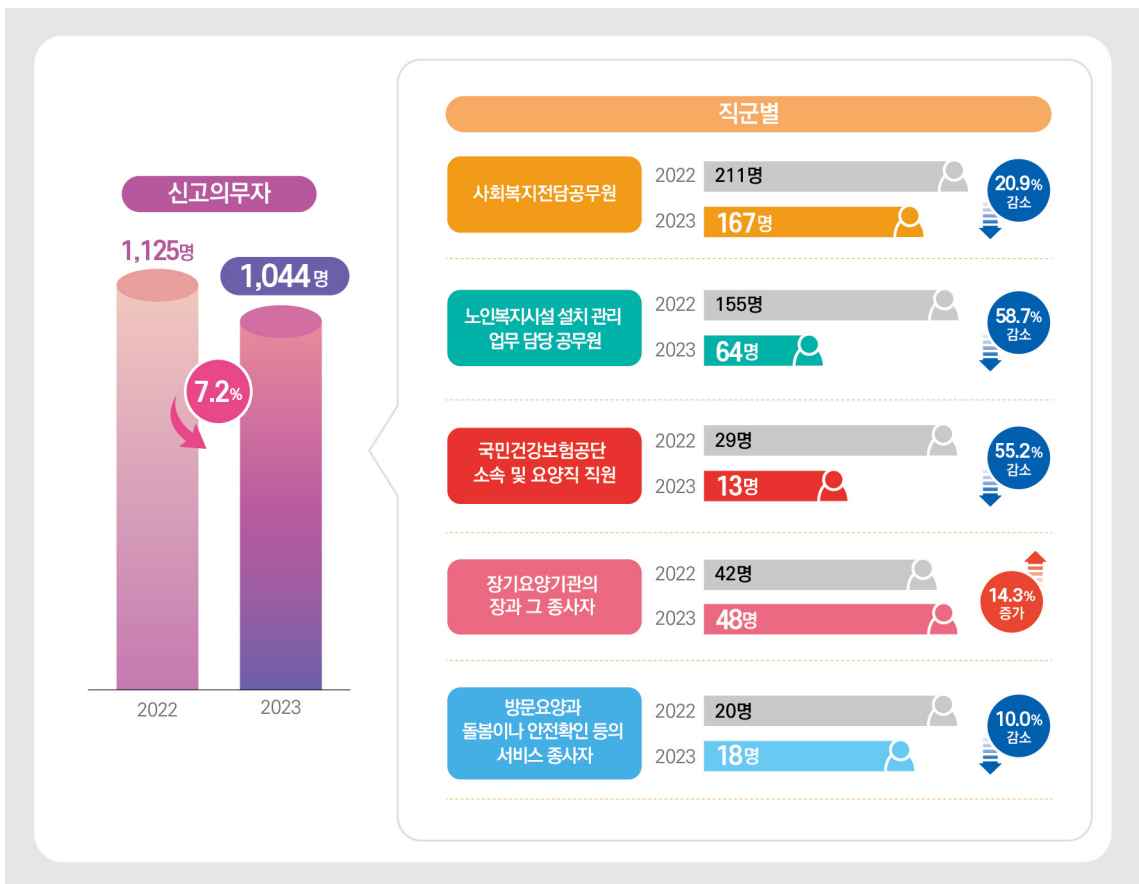


그림 2-2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신고의무자)

🔍 (비신고의무자) 5,981명, 전년 대비 **5.3% 증가**(’22년 5,682명 → ’23년 5,981명)

- 경찰 전년 대비 6.6% 증가(’22년 4,302명 → ’23년 4,586명)
-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전년 대비 6.3% 감소(’22년 366명 → ’23년 343명)
- 학대피해노인 본인 전년 대비 3.0% 증가(’22년 334명 → ’23년 34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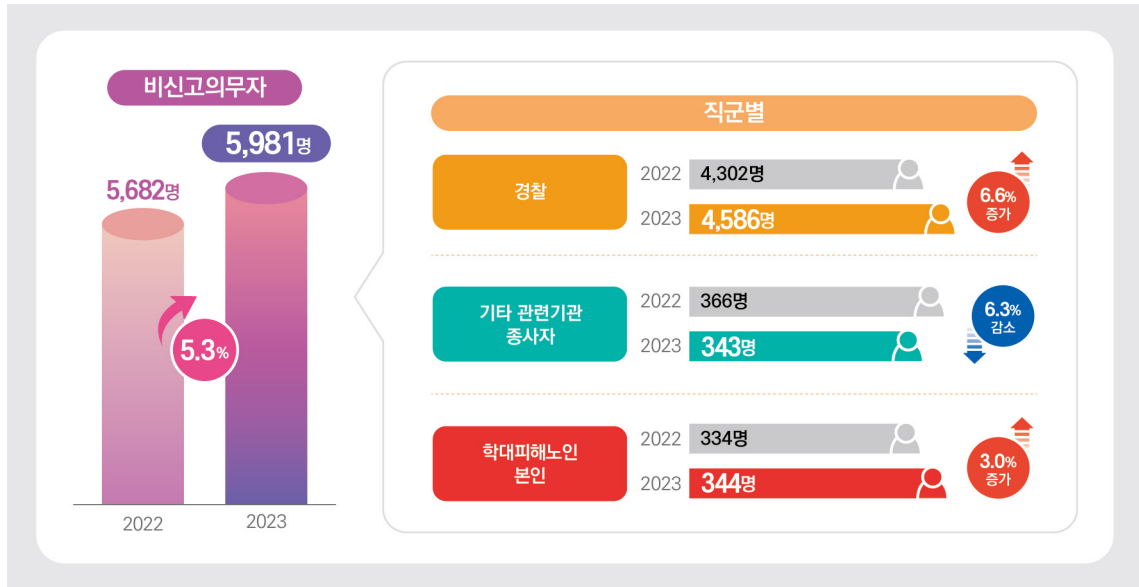


그림 2-3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비신고의무자)

03 | 노인학대 피해노인 현황

- 🔍 (학대피해노인) 7,025명, 전년 대비 **3.2% 증가**(’22년 6,807명 → ’23년 7,025명)
- 남성: 1,692명(24.1%) / 여성: 5,333명(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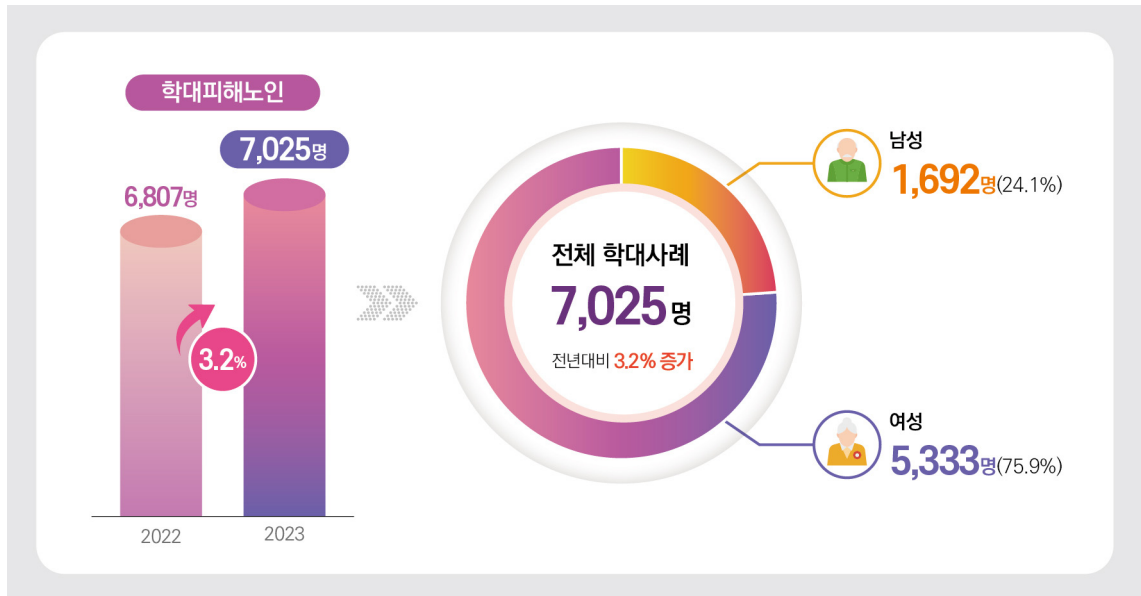


그림 2-4 학대피해노인 현황

- 🔍 (가구형태) “노인부부 - 자녀동거” 순으로 유지되었으나 노인부부 비율 증가
- 노인부부(’22년 36.2% → ’23년 39.0%)
- 자녀동거(’22년 29.9% → ’23년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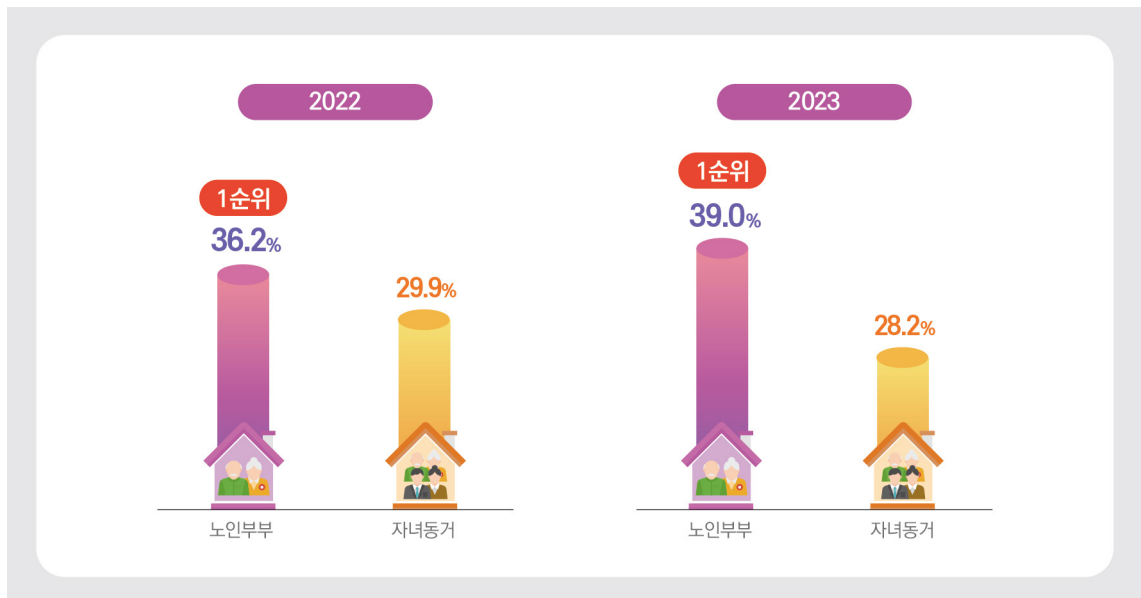


그림 2-5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04 | 노인학대 행위자 현황

🔍 (학대행위자) 7,900명, 전년 대비 5.4% 증가('22년 7,494명 → '23년 7,900명)

- 남성: 5,445명(68.9%) / 여성: 2,455명(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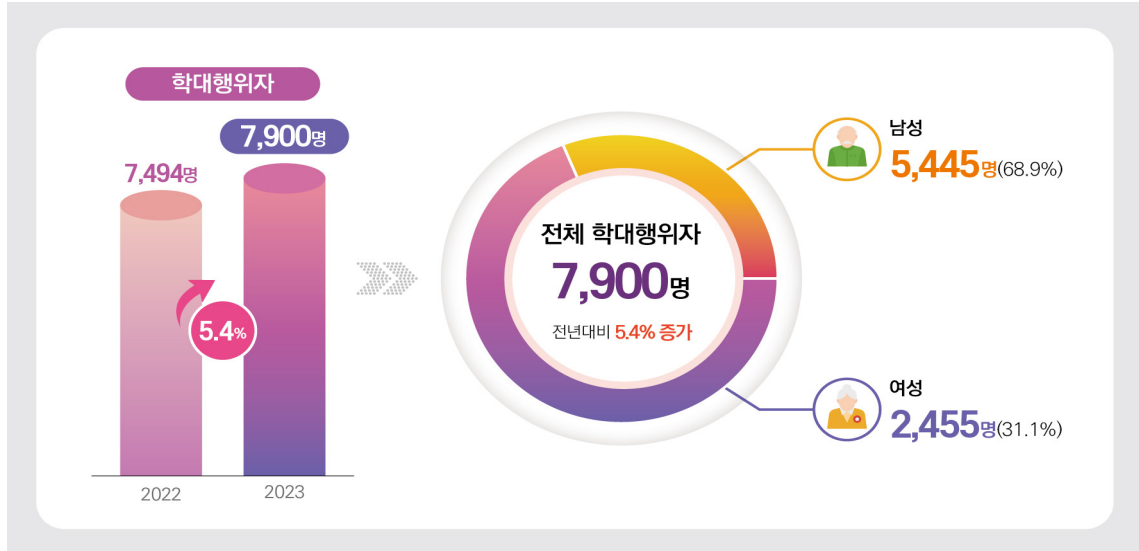


그림 2-6 학대행위자 현황

🔍 (행위자 유형) “배우자 - 아들” 순이면서 전년 대비 비율 증가

- 배우자('22년 34.9% → '23년 35.8%)

- 아들('22년 27.9% → '23년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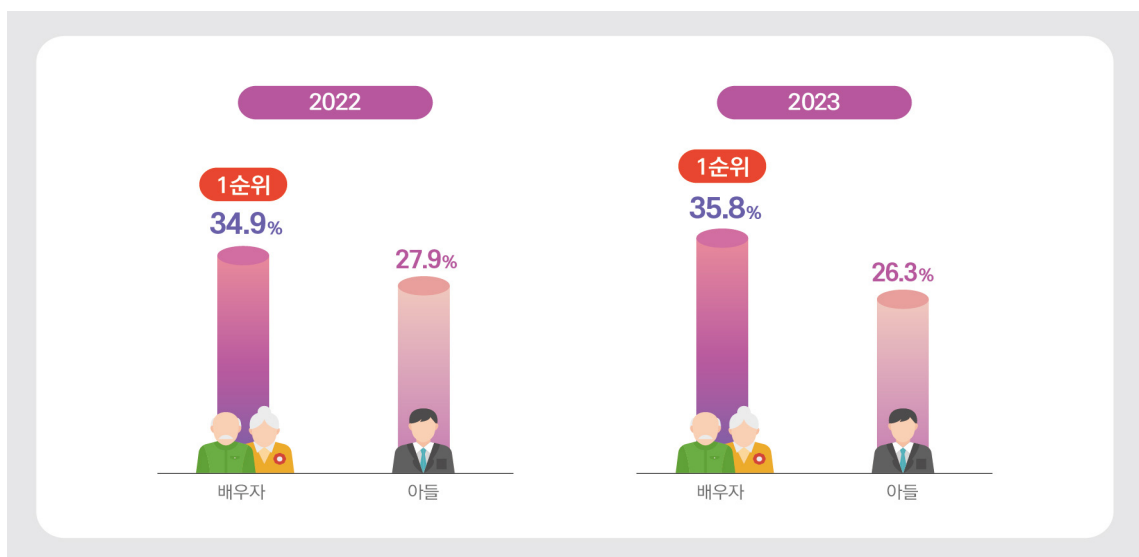


그림 2-7 학대행위자 유형

05 | 노인학대 유형

🔍 (노인학대유형) 10,638건, 전년 대비 **0.9% 증가**(’22년 10,545건 → ’23년 10,638건)

- 신체적 학대(42.7%), 정서적 학대(42.6%), 방임(7.1%), 경제적 학대(3.3%), 성적 학대(2.5%), 자기방임(1.6%), 유기(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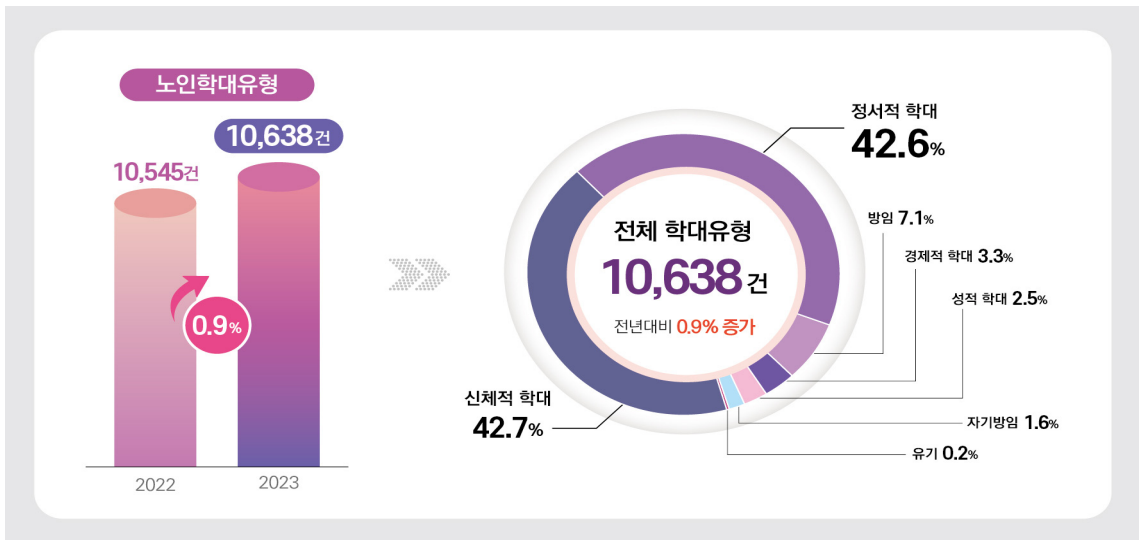


그림 2-8 노인학대유형

🔍 (장소별 노인학대유형)

- (가정) 정서적 학대(46.3%), 신체적 학대(44.7%), 경제적 학대(3.2%), 방임(3.2%) 등
- (생활시설) 방임(39.8%), 신체적 학대(26.7%), 성적 학대(22.5%), 정서적 학대(5.8%)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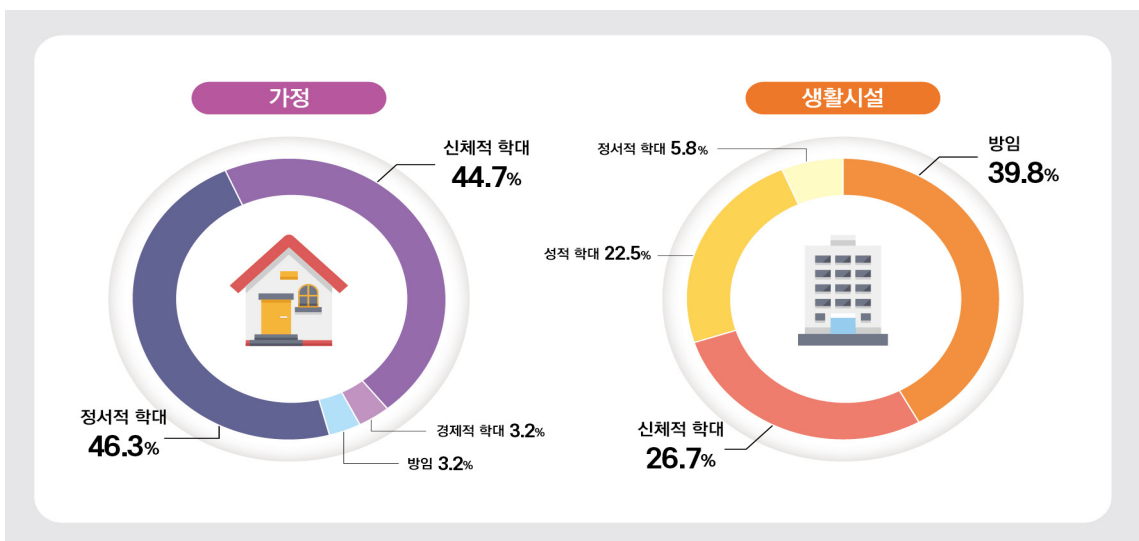


그림 2-9 장소별 노인학대유형

06 | 노인학대 발생장소 및 특성

🔍 (학대발생장소) 가정 6,079건(86.5%), 생활시설 571건(8.1%), 병원 115건(1.6%) 등

- 생활시설 전년 대비 13.7% 감소('22년 662건 → '23년 571건)
- 이용시설 전년 대비 107.7% 증가('22년 52건 → '23년 10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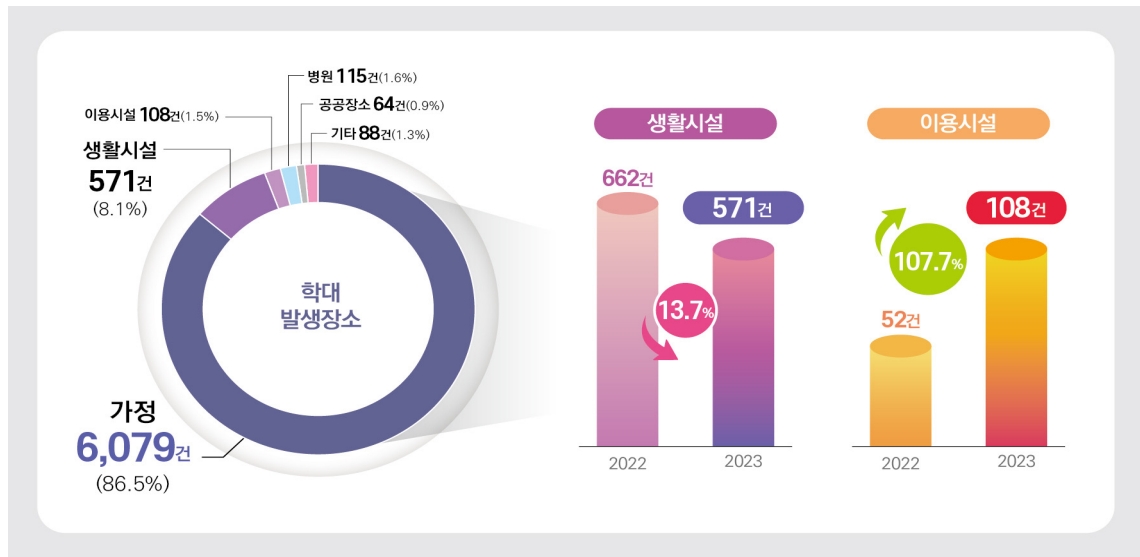


그림 2-10 학대발생장소

🔍 (학대발생빈도)

- 6개월에 한 번 이상 전년 대비 8.9% 증가('22년 776건 → '23년 845건)
- 일회성 전년 대비 15.6% 증가('22년 1,326건 → '23년 1,533건)

🔍 (학대지속기간)

- 일회성 전년 대비 14.7% 증가('22년 1,242건 → '23년 1,425건)
- 1개월 미만 전년 대비 23.3% 증가('22년 245건 → '23년 30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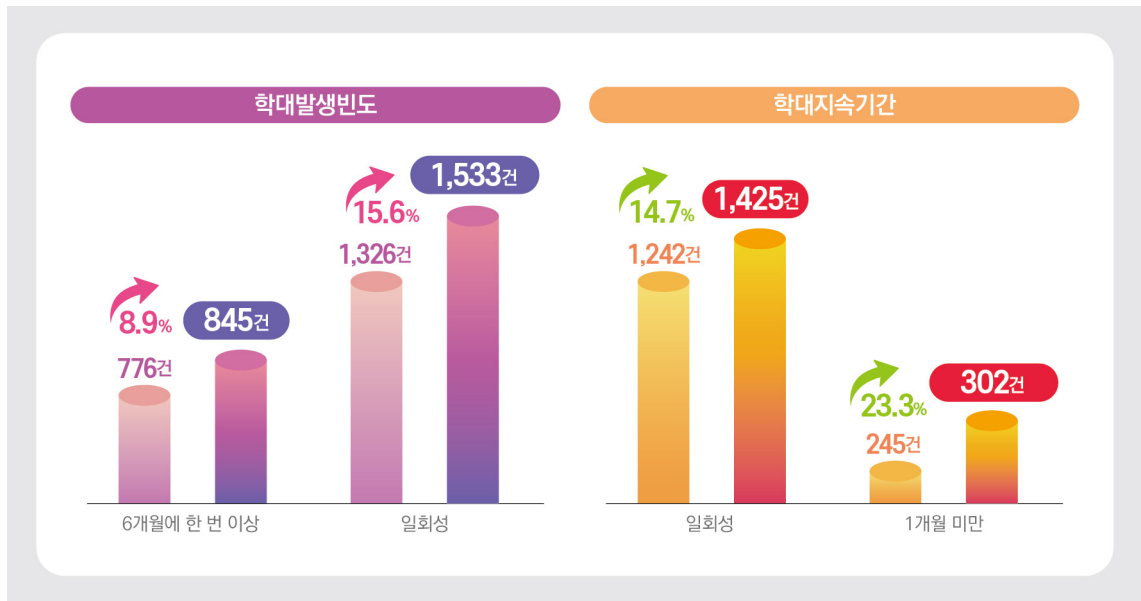


그림 2-11 학대발생빈도 및 지속기간

07 | 경제적 학대 현황

🔍 (경제적 학대) 352명, 전년 대비 11.3% 감소('22년 397명 → '23년 352명)

- 남성: 110명(31.3%) / 여성: 242명(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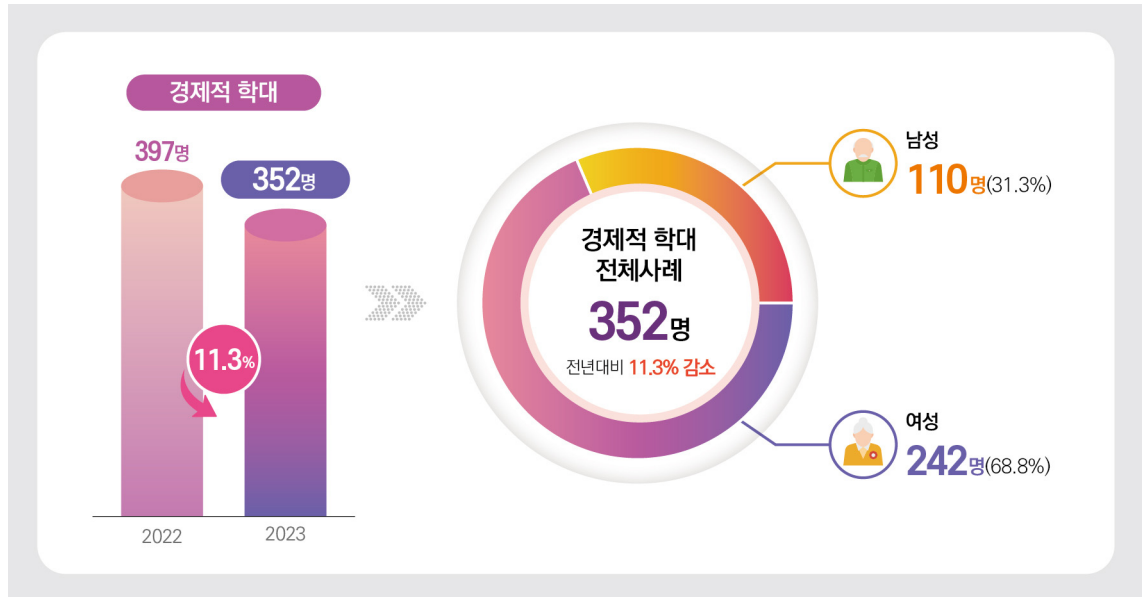


그림 2-12 경제적 학대 현황

🔍 (학대발생장소)

- (가정) 전년 대비 **2.2% 감소**(’22년 312건(78.6%) → ’23년 305건(86.6%))
- (시설) 전년 대비 **44.6% 감소**(’22년 74건(18.6%) → ’23년 41건(11.6%))

🔍 (장소별 학대행위자)

- (가정) 아들(51.4%), 배우자(14.5%), 딸(12.8%) 등
- (시설) 노인복지시설종사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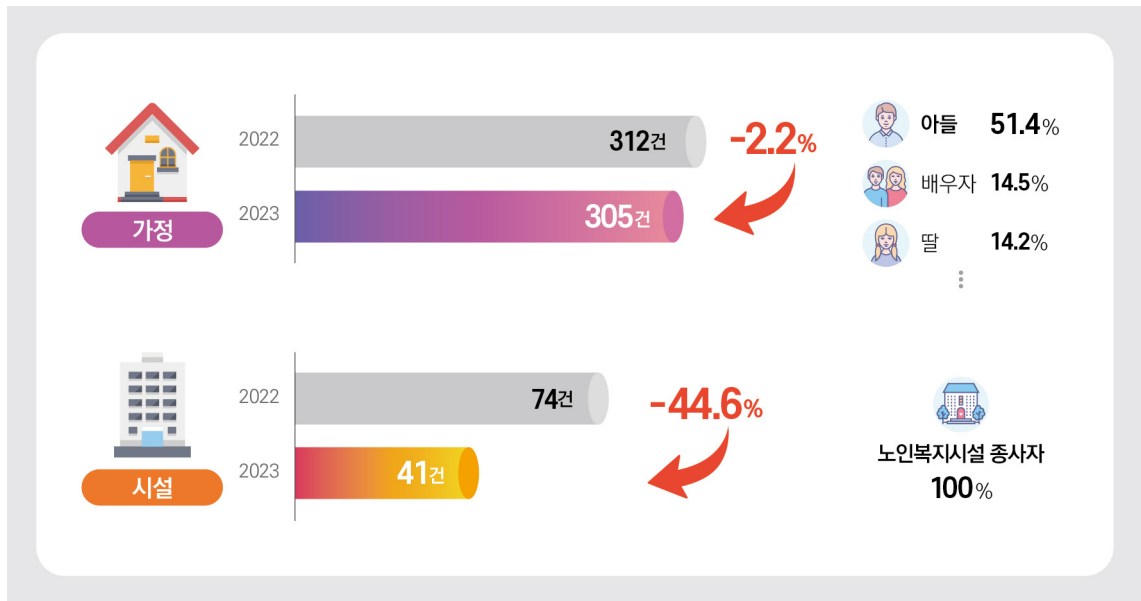


그림 2-13 경제적 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08 | 치매진단 노인학대 현황

- 🔍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진단) 1,214명, 전년 대비 **3.8% 증가**(’22년 1,170명 → ’23년 1,214명)
 - 남성: 312명(25.7%) / 여성: 902명(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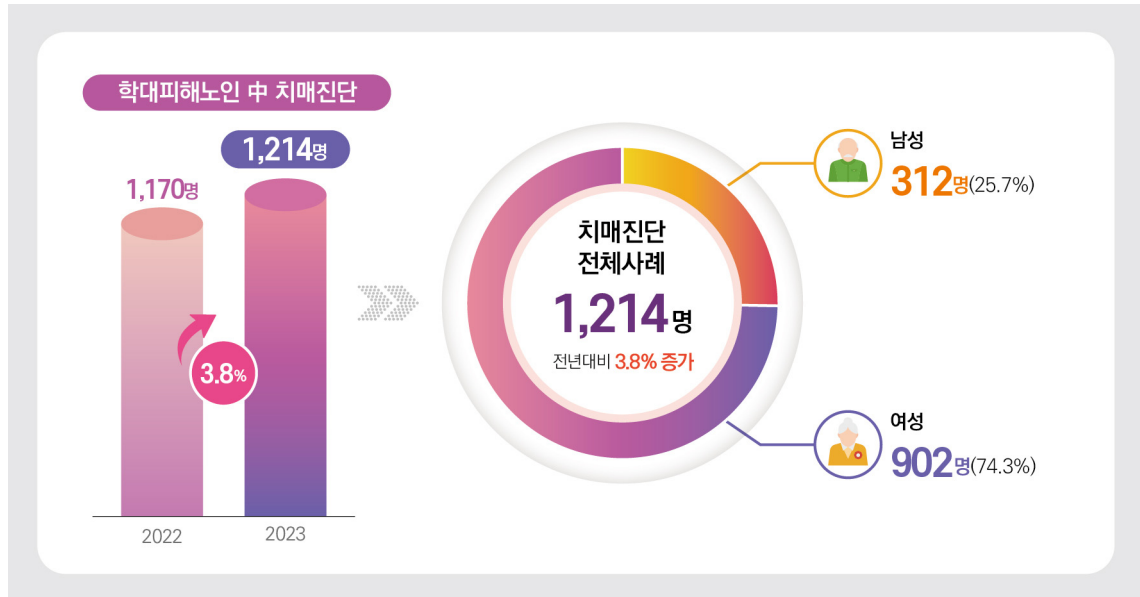


그림 2-14 치매진단 노인학대 현황

🔍 (학대발생장소)

- (가정) 전년 대비 **2.3% 증가**(’22년 560건(47.9%) → ’23년 573건(42.4%))
- (시설) 전년 대비 **1.7% 증가**(’22년 538건(50.6%) → ’23년 547건(45.1%))

🔍 (장소별 학대행위자)

- (가정) 아들(41.9%), 배우자(26.0%), 딸(13.8%) 등
- (시설) 노인복지시설종사자(98.3%)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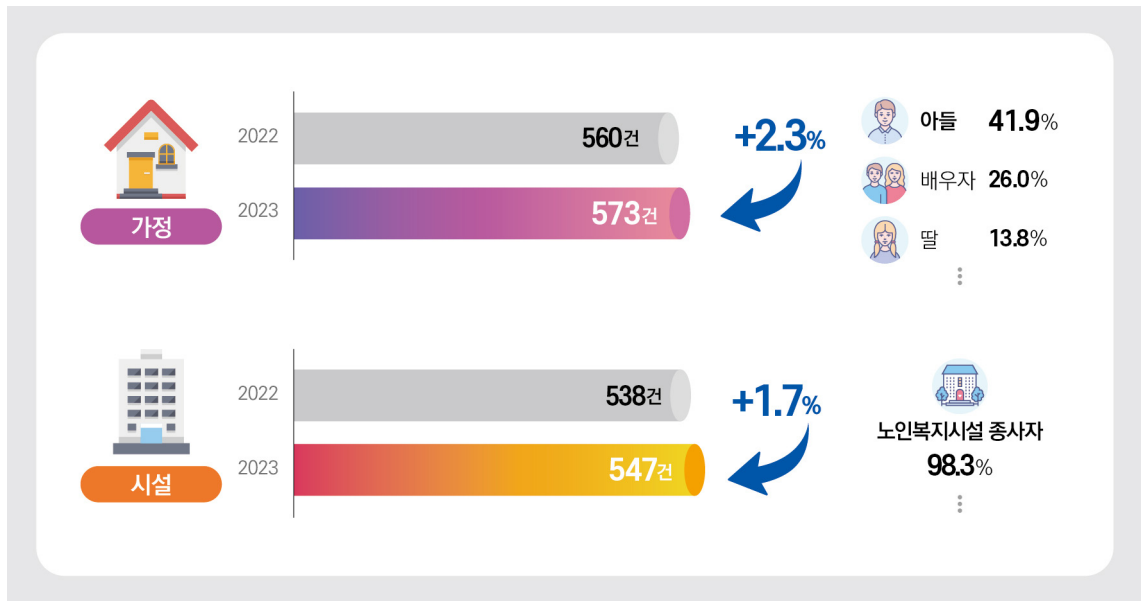


그림 2-15 치매진단 노인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09 | 시설 노인학대 현황

🔍 (시설학대) 679명, 전년 대비 4.9% 감소('22년 714명 → '23년 679명)

- 남성: 199명(29.3%) / 여성: 480명(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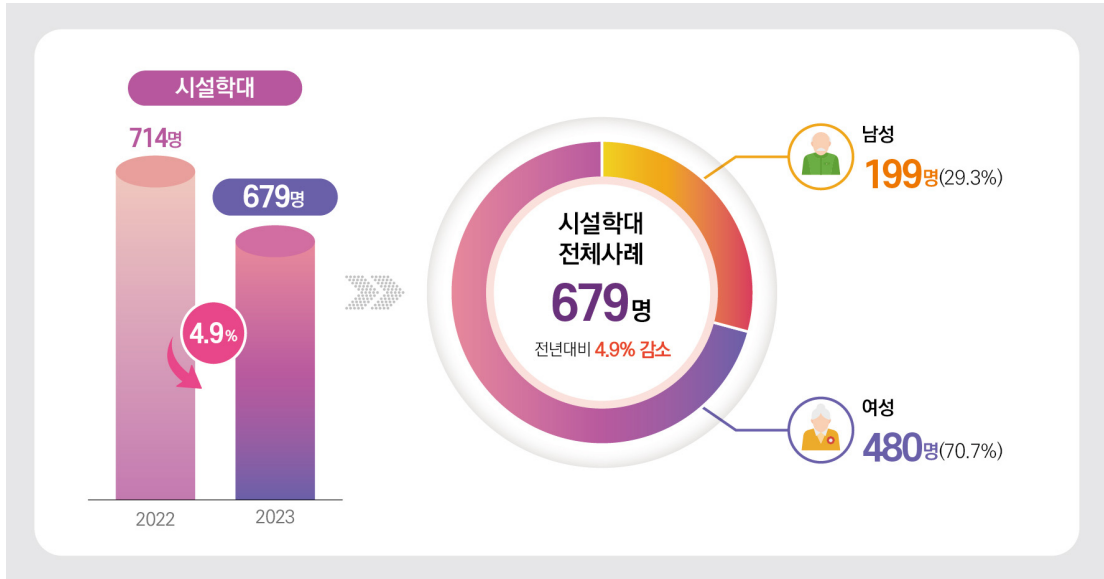


그림 2-16 시설 노인학대 현황

🔍 (신고자유형) 신고의무자 361명(53.2%), 비신고의무자 318명(46.8%)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25.2%),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14.3%) 등

- (비신고의무자) 친족(23.9%), 타인(12.1%)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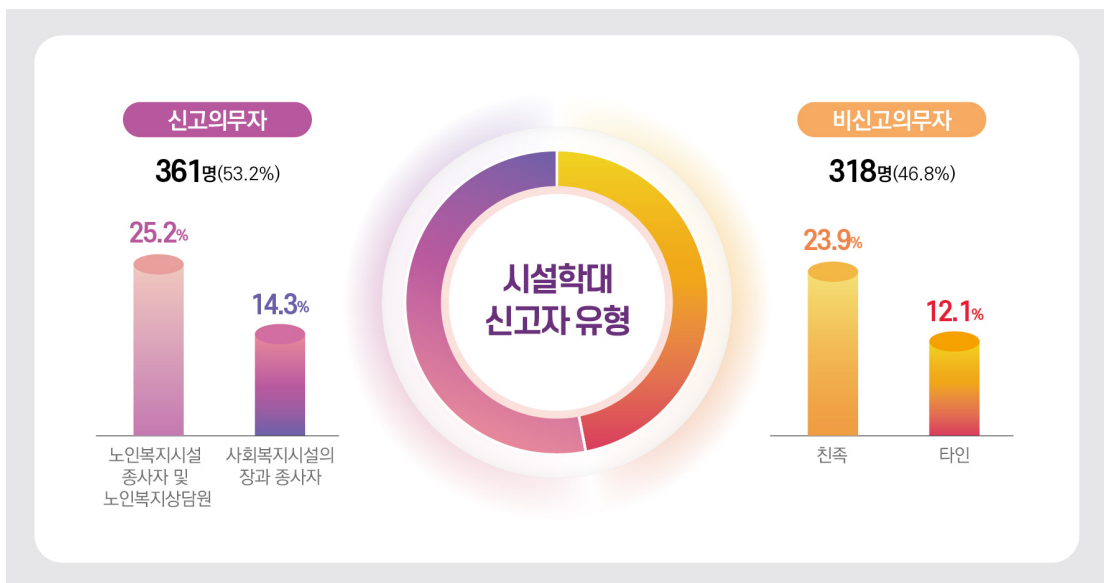


그림 2-17 시설 노인학대 신고자유형

10 재학대 현황

🔍 (재학대) 759건, 전년 대비 7.1% 감소('22년 817건 → '23년 759건)

- 남성: 136명(17.9%) / 여성: 623명(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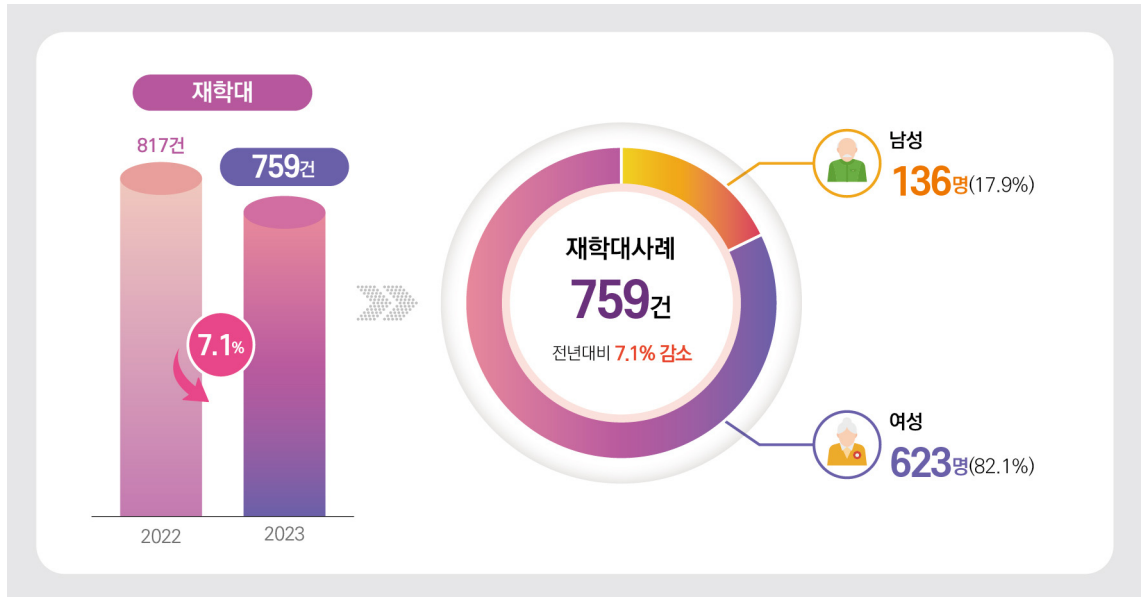


그림 2-18 재학대 현황

🔍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 79명(10.4%), 비신고의무자 680명(89.6%)

- (비신고의무자) 경찰(70.4%), 피해자 본인(8.7%) 등
- (신고의무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3.3%),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2.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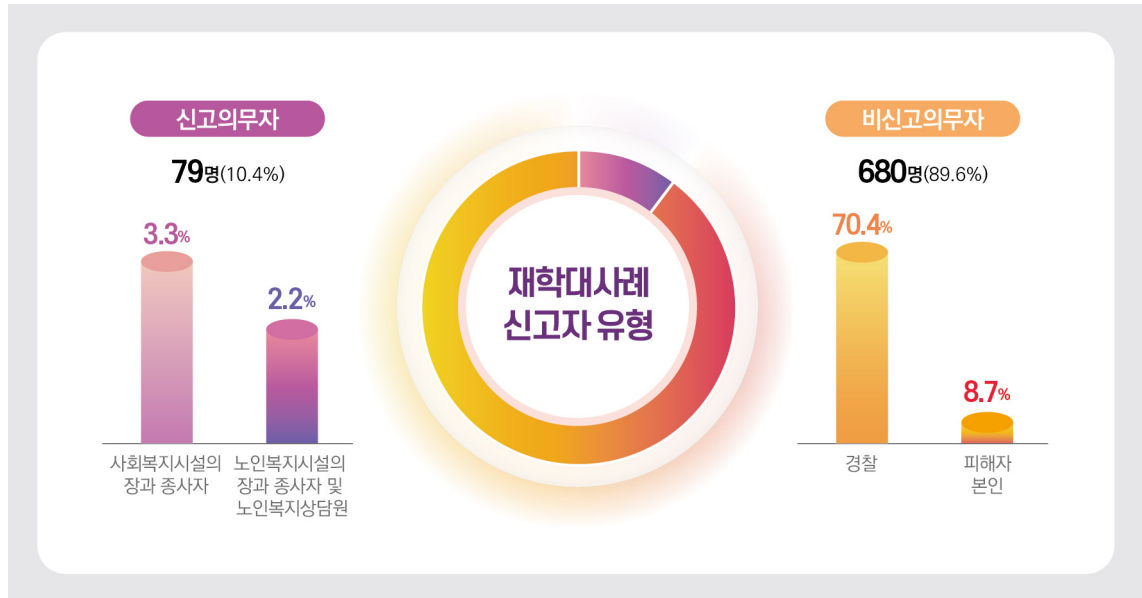


그림 2-19 재학대 신고자유형

🔍 (학대발생장소)

- (가정) 전년 대비 **7.2% 감소**(’22년 803건(98.3%) → ’23년 745건(98.2%))
- (시설) 전년 대비 **50% 증가**(’22년 4건(0.5%) → ’23년 6건(0.8%))

🔍 (학대행위자)

- (가정) 배우자(43.3%), 아들(40.3%), 딸(9.0%) 등
- (시설) 노인복지시설종사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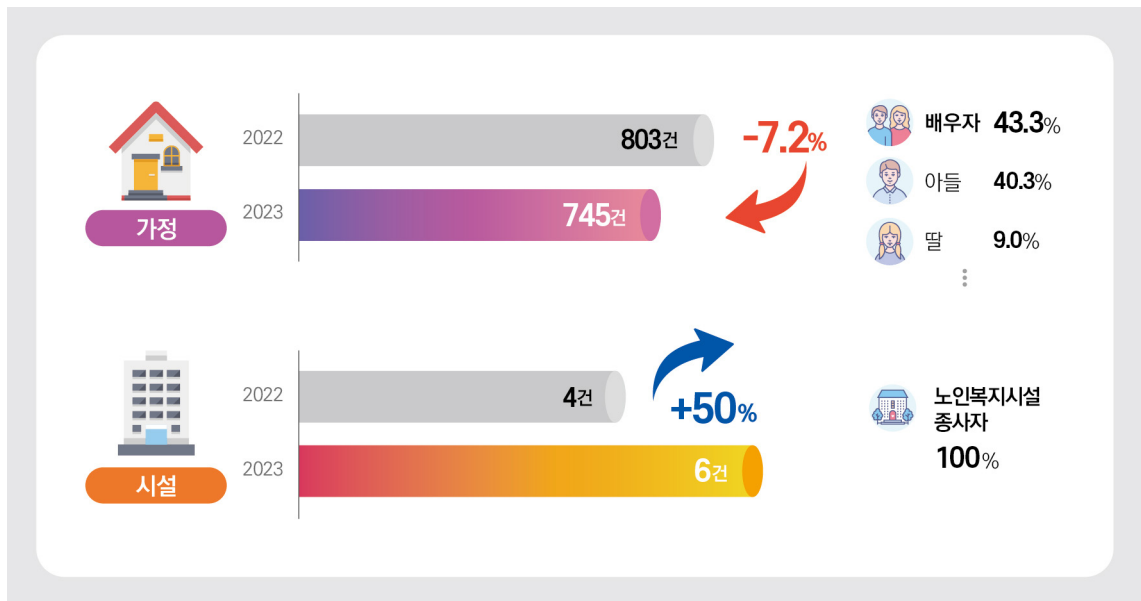


그림 2-20 재학대 발생장소 및 행위자 유형



PART 03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14~2023년)



PART 3



연도별 노인학대 예방 사업 (2014~2023년)

01 |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표 3-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반 사례	7,037	8,087	7,729	8,687	10,294	10,828	10,714	12,617	12,745	14,911
증감률	66.6	67.9	64.4	65.3	66.5	67.4	63.1	65.1	65.2	68.0
학대 사례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7,025
증감률	33.4	32.1	35.6	34.7	33.5	32.6	36.9	34.9	34.8	32.0
전체 사례	10,569	11,905	12,009	13,309	15,482	16,071	16,973	19,391	19,552	21,936
증감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체 증감률	4.0	12.6	0.9	10.8	16.3	3.8	5.6	14.2	0.8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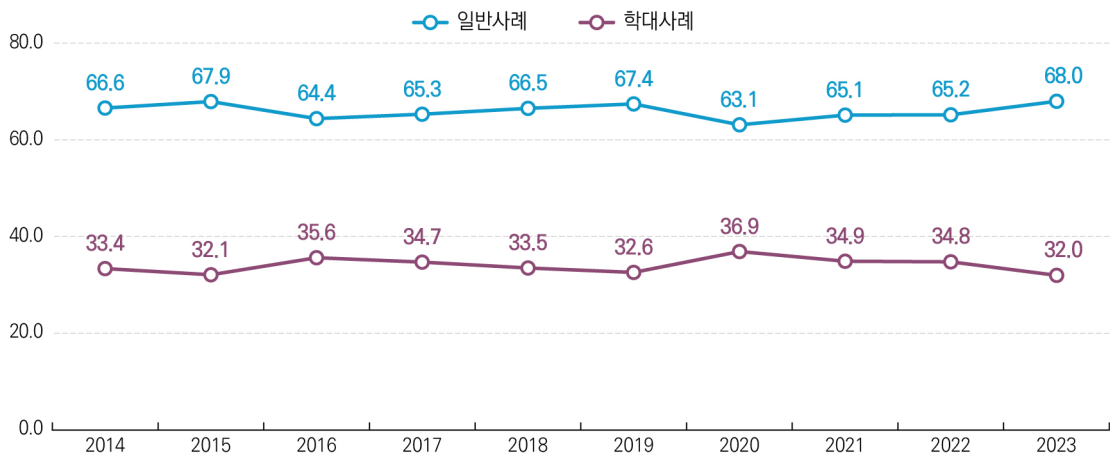


그림 3-1 연도별 전체 신고접수 비율 추이

02 연도별 신고자 유형

표 3-2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 고 의 무 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42	44	27	20	26	24	35	23	18	48
		1.2	1.2	0.6	0.4	0.5	0.5	0.6	0.3	0.3	0.7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	-	9	12	21	20	11	20	18
		-	-	-	0.2	0.2	0.4	0.3	0.2	0.3	0.3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182	178	168	153	194	225	267	246	298	282
		5.2	4.7	3.9	3.3	3.7	4.3	4.3	3.6	4.4	4.0
	장애 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16	2	2	1	3	4	4	6	9
		0.1	0.4	0.0	0.0	0.0	0.1	0.1	0.1	0.1	0.1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85	101	79	105	72	83	92	70	59	58
		2.4	2.6	1.8	2.3	1.4	1.6	1.5	1.0	0.9	0.8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322	290	382	283	398	375	246	326	211	167
		9.1	7.6	8.9	6.1	7.7	7.2	3.9	4.8	3.1	2.4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17	31	44	18	12	17	25	10	9	7
		0.5	0.8	1.0	0.4	0.2	0.3	0.4	0.1	0.1	0.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46	38	45	34	29	24	116	45	42	48
		1.3	1.0	1.1	0.7	0.6	0.5	1.9	0.7	0.6	0.7
	119 구급대의 대원	8	9	3	5	2	2	5	1	1	2
		0.2	0.2	0.1	0.1	0.0	0.0	0.1	0.0	0.0	0.0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2	-	1	2	-	-	-	1	1	-
		0.1	-	0.0	0.0	-	-	-	0.0	0.0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	-	1	1	-	-	-	-
		-	-	-	-	0.0	0.0	-	-	-	-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	-	4	5	9	5	7	6	4
		-	-	-	0.1	0.1	0.2	0.1	0.1	0.1	0.1
	응급구조사	-	-	-	-	-	-	1	-	-	-
		-	-	-	-	-	-	0.0	-	-	-
	의료기사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및 요양직 직원	-	-	-	-	5	66	89	25	29	13
		-	-	-	-	0.1	1.3	1.4	0.4	0.4	0.2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장과 종사자	-	-	-	-	5	9	8	8	9	5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	-	-	5	18	26	83	155	64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	-	-	-	-	-	-	261	313
		-	-	-	-	-	-	-	-	3.8	4.5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원	-	-	-	-	-	-	-	-	-	6
		-	-	-	-	-	-	-	-	-	0.1
	소계	709	707	751	635	767	877	939	860	1,125	1,044
		20.1	18.5	17.5	13.7	14.8	16.7	15.0	12.7	16.5	14.9
비 신 고 의 무 자	학대피해노인 본인	777	722	582	431	387	358	450	361	334	344
		22.0	18.9	13.6	9.3	7.5	6.8	7.2	5.3	4.9	4.9
	학대행위자 본인	10	8	4	6	4	5	6	8	4	7
		0.3	0.2	0.1	0.1	0.1	0.1	0.1	0.1	0.1	0.1
	친족	519	567	500	407	472	386	531	549	507	505
		14.7	14.9	11.7	8.8	9.1	7.4	8.5	8.1	7.4	7.2
	타인	300	320	236	755	156	259	216	197	118	190
		8.5	8.4	5.5	16.3	3.0	4.9	3.5	2.9	1.7	2.7
	관련기관 ¹²⁾	1,217	1,494	2,207	2,388	3,402	3,358	4,117	4,799	4,719	4,935
		34.5	39.1	51.6	51.7	65.6	64.0	65.8	70.8	69.3	70.2
계	소계	2,823	3,111	3,529	3,987	4,421	4,366	5,320	5,914	5,682	5,981
		79.9	81.5	82.5	86.3	85.2	83.3	85.0	87.3	83.5	85.1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7,02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경우, 「노인복지법」개정(‘21.12.21.)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분류되어 시행일 기준으로 노인학대 현황을 적용함(시행: ’22.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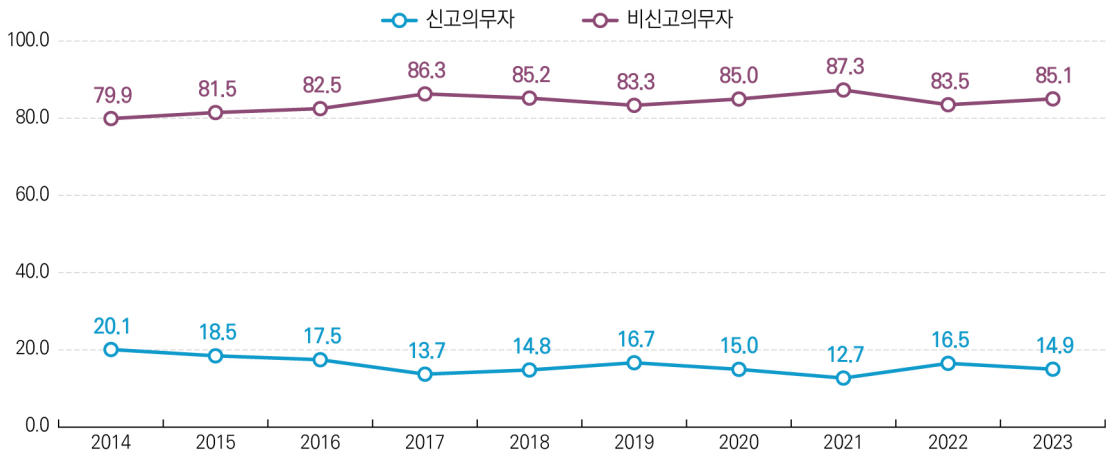


그림 3-2 연도별 신고자 유형별 신고 비율 추이

12)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22.3.22. 이전 기준),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됨.

03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표 3-3 연도별 현장조사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현장조사 실시	3,302	3,659	3,971	4,443	4,965	5,084	6,152	6,696	6,703	6,898
	93.5	95.8	92.8	96.1	95.7	97.0	98.3	98.8	98.5	98.2
현장조사 미실시	230	159	309	179	223	159	107	78	104	127
	6.5	4.2	7.2	3.9	4.3	3.0	1.7	1.2	1.5	1.8
계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7,02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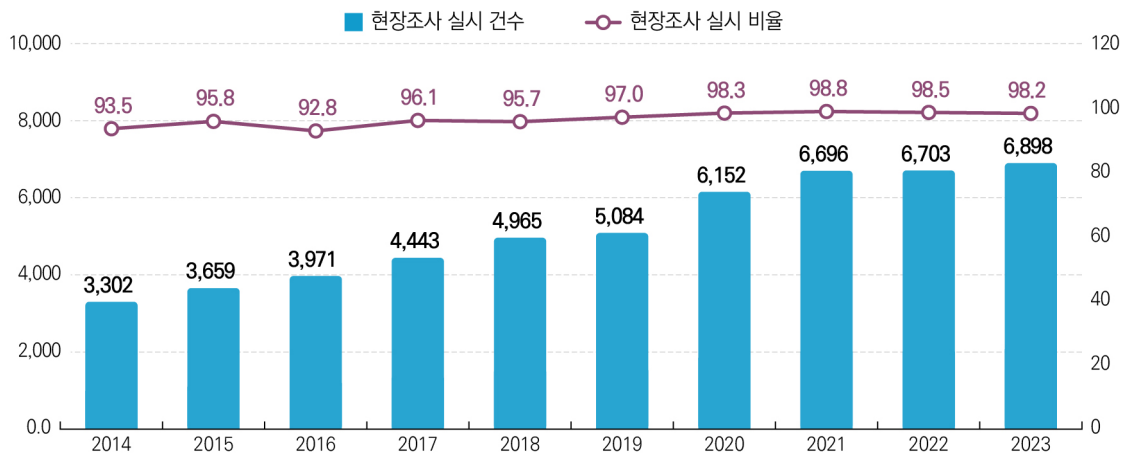


그림 3-3 연도별 현장조사 건수 및 비율 추이

04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표 3-4 연도별 사례판정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응급	184	251	159	165	105	104	165	142	170	167
	5.2	6.6	3.7	3.6	2.0	2.0	2.6	2.1	2.5	2.4
비응급	2,211	2,271	2,472	2,803	3,221	3,322	3,923	4,445	4,157	4,561
	62.6	59.5	57.8	60.6	62.1	63.4	62.7	65.6	61.1	64.9
잠재	1,137	1,296	1,649	1,654	1,862	1,817	2,171	2,187	2,480	2,297*
	32.2	33.9	38.5	35.8	35.9	34.7	34.7	32.3	36.4	32.7
계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7,02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본 현황은 학대사례 기준으로 '23.7.1.부터 접수된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사례의 사례판정 결과 '잠재적' 수치는 미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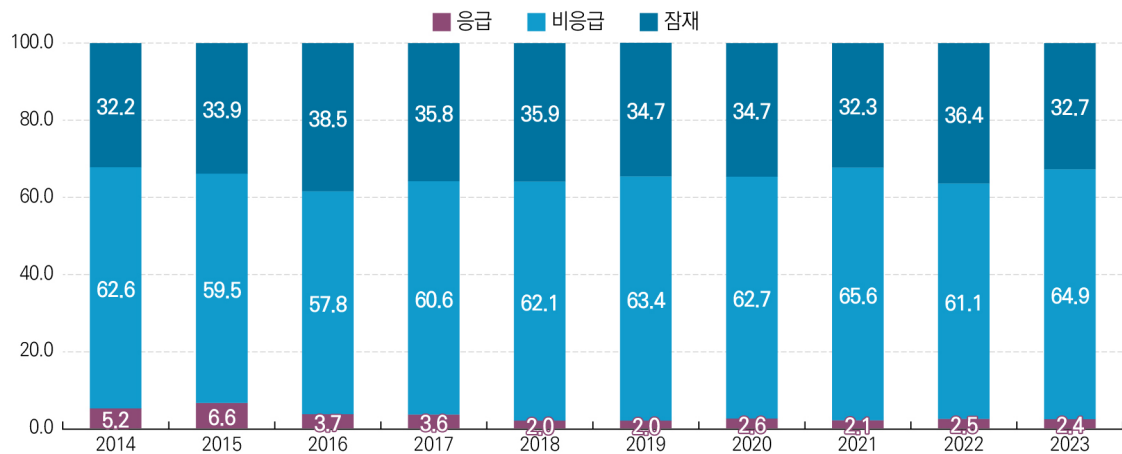


그림 3-4 연도별 사례판정 비율 추이

05 연도별 재학대 건수

표 3-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학대사례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7,025
재학대	건수	208	229	249	359	488	500	614	739	817	759
	비율	5.9	6.0	5.8	7.8	9.4	9.5	9.8	10.9	12.0	10.8
증감률		-1.9	10.1	8.7	44.2	35.9	2.5	22.8	20.4	10.6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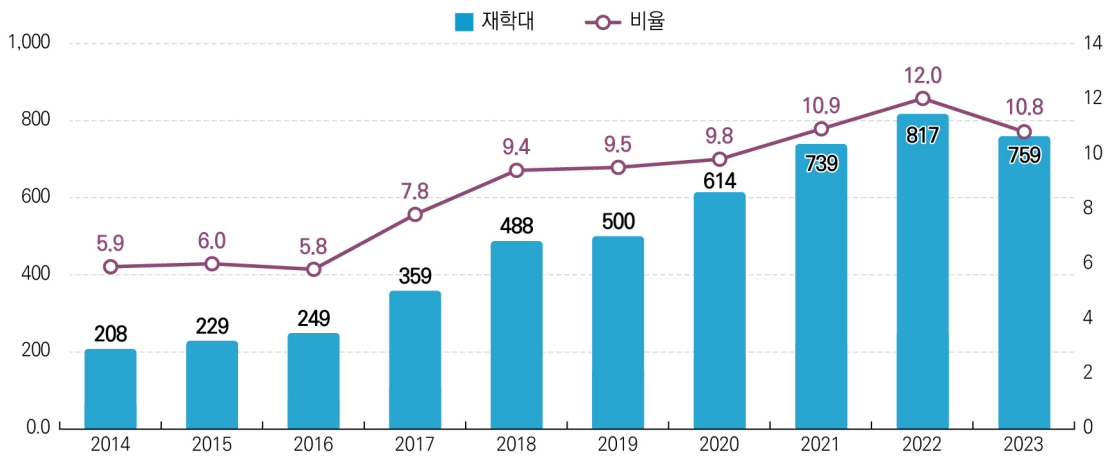


그림 3-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추이

06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표 3-6 연도별 학대유형 건수

(단위: 건,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체적 학대	1,426 24.7	1,591 25.9	2,132 31.3	2,651 36.4	3,046 37.3	3,138 38.1	3,917 40.0	4,390 41.3	4,431 42.0	4,541 42.7
정서적 학대	2,169 37.6	2,330 37.9	2,730 40.1	3,064 42.0	3,508 42.9	3,465 42.1	4,188 42.7	4,627 43.6	4,561 43.3	4,531 42.6
성적 학대	131 2.3	102 1.7	91 1.3	150 2.1	228 2.8	218 2.6	231 2.4	260 2.4	259 2.5	265 2.5
경제적 학대	521 9.0	542 8.8	491 7.2	411 5.6	381 4.7	426 5.2	431 4.4	406 3.8	397 3.8	352 3.3
방임	984 17.0	919 14.9	778 11.4	649 8.9	718 8.8	741 9.0	760 7.8	691 6.5	689 6.5	758 7.1
자기 방임	463 8.0	622 10.1	523 7.7	291 4.0	240 2.9	200 2.4	223 2.3	204 1.9	169 1.6	165 1.6
유기	78 1.4	48 0.8	66 1.0	71 1.0	55 0.7	41 0.5	53 0.5	46 0.4	36 0.3	26 0.2
계	5,772 100	6,154 100	6,811 100	7,287 100	8,176 100	8,229 100	9,803 100	10,624 100	10,542 100	10,63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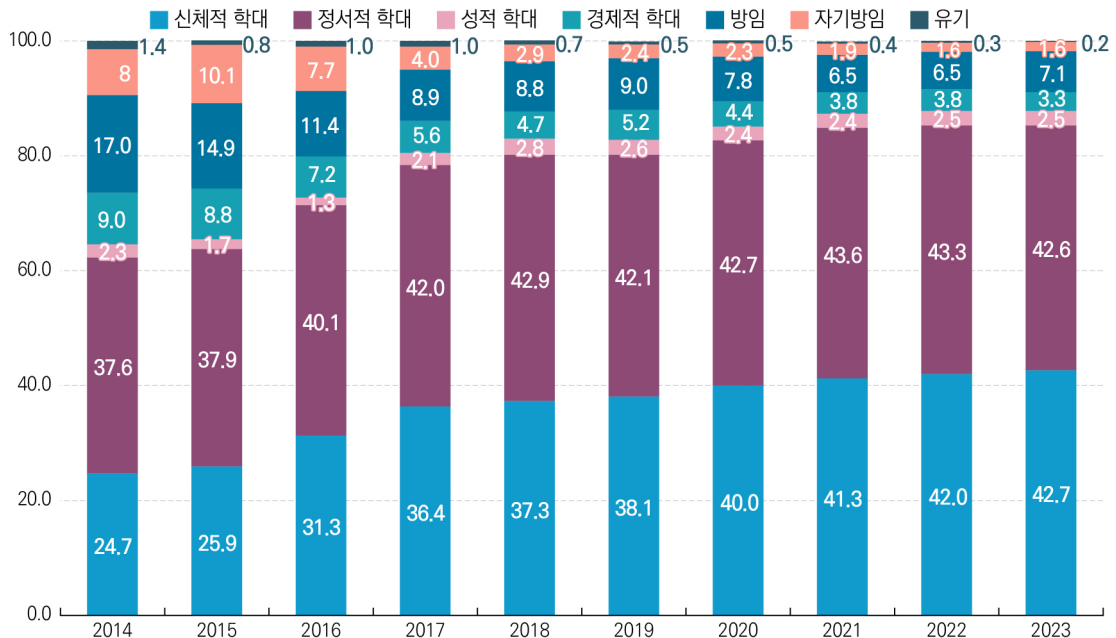


그림 3-6 연도별 학대유형 비율 추이

0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표 3-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가정 내	2,983	3,276	3,799	4,129	4,616	4,450	5,505	5,962	5,867	6,079
	84.5	85.8	88.8	89.3	89.0	84.9	88.0	88.0	86.2	86.5
생활 시설	246	206	238	327	380	486	521	536	662	571
	7.0	5.4	5.6	7.1	7.3	9.3	8.3	7.9	9.7	8.1
이용 시설	44	57	16	16	41	131	92	87	52	108
	1.2	1.5	0.4	0.3	0.8	2.5	1.5	1.3	0.8	1.5
병원	100	88	24	27	65	45	37	62	86	115
	2.8	2.3	0.6	0.6	1.3	0.9	0.6	0.9	1.3	1.6
공공 장소	74	80	94	58	42	60	39	54	51	64
	2.1	2.1	2.2	1.3	0.8	1.1	0.6	0.8	0.7	0.9
기타	85	111	109	65	44	71	65	73	89	88
	2.4	2.9	2.5	1.4	0.8	1.4	1.0	1.1	1.3	1.3
계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7,02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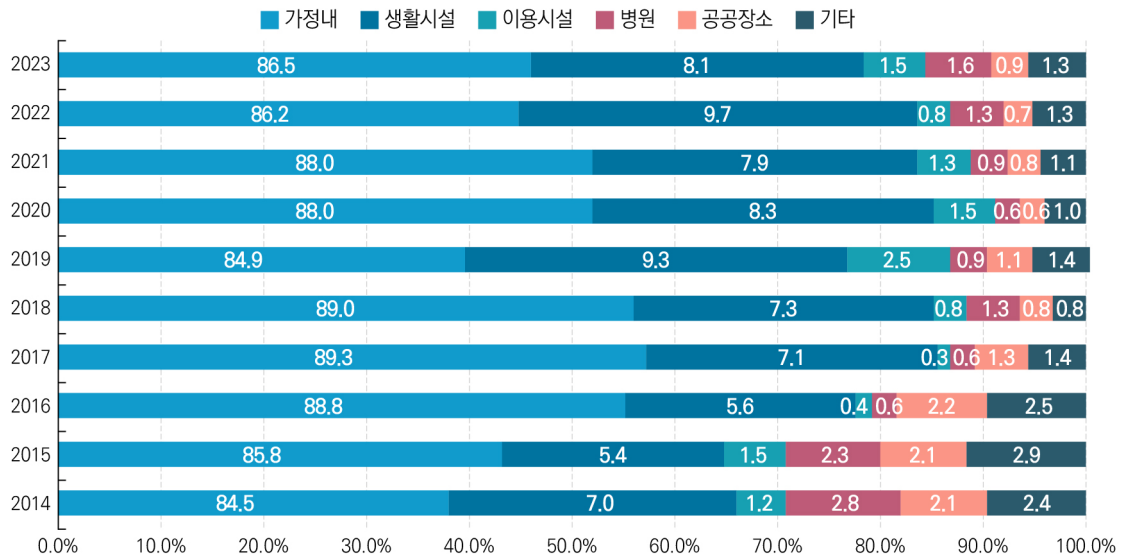


그림 3-7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08 |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표 3-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및 비율

(단위: 회,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반 상담	10,860	13,462	16,464	22,326	25,793	30,128	32,003	41,067	44,482	56,166
	13.1	14.7	16.6	20.1	20.2	21.5	17.5	20.5	21.8	24.9
증감률	-2.8	24.0	22.3	35.6	15.5	16.8	6.2	28.3	8.3	26.3
학대 상담	71,889	78,368	82,468	88,919	102,172	110,226	150,846	159,446	159,402	169,423
	86.9	85.3	83.4	79.9	79.8	78.5	82.5	79.5	78.2	75.1
증감률	5.3	9.0	5.2	7.8	14.9	7.9	36.9	5.7	-0.03	6.3
계	82,749	91,830	98,932	111,245	127,965	140,354	182,849	200,513	203,884	225,58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증감률	4.1	11.0	7.7	12.4	15.0	9.7	30.3	9.7	1.7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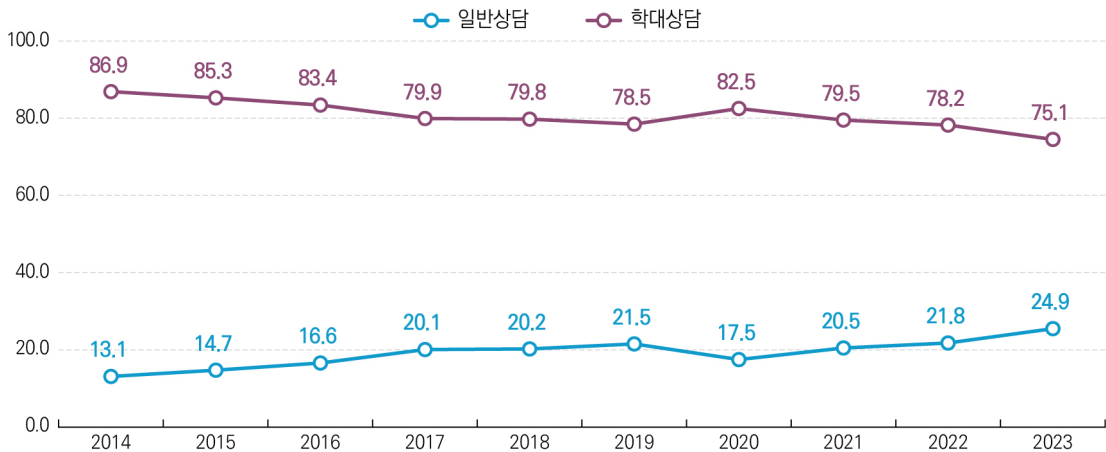


그림 3-8 연도별 전체상담 횟수 비율 추이

0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표 3-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9세 이하	9	3	5	4	-	-	-	-	-	-
60~64세	191	204	213	141	-	-	-	-	-	-
65~69세	452	524	589	740	819	919	1,240	1,428	1,467	1,655
70~74세	12.8	13.7	13.8	16.0	15.8	17.5	19.8	21.1	21.6	23.6
75~79세	654	771	852	969	1,193	1,189	1,385	1,505	1,439	1,576
80~84세	18.5	20.2	19.9	21.0	23.0	22.7	22.1	22.2	21.1	22.4
85~89세	846	865	978	1,071	1,250	1,157	1,339	1,394	1,371	1,354
90~94세	24.0	22.7	22.9	23.2	24.1	22.1	21.4	20.6	20.1	19.3
95~99세	716	770	881	900	1,020	1,031	1,218	1,269	1,272	1,244
100세 이상	20.3	20.2	20.6	19.5	19.7	19.7	19.5	18.7	18.7	17.7
계	421	456	499	525	588	586	690	769	804	786
	11.9	11.9	11.7	11.4	11.3	11.2	11.0	11.4	11.8	11.2
	191	163	206	204	245	289	283	308	337	327
	5.4	4.3	4.8	4.4	4.7	5.5	4.5	4.5	5.0	4.7
	46	56	53	58	61	63	92	92	103	76
	1.3	1.5	1.2	1.3	1.2	1.2	1.5	1.4	1.5	1.1
	6	6	4	10	12	9	12	9	14	7
	0.2	0.2	0.1	0.2	0.2	0.2	0.2	0.1	0.2	0.1
계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7,02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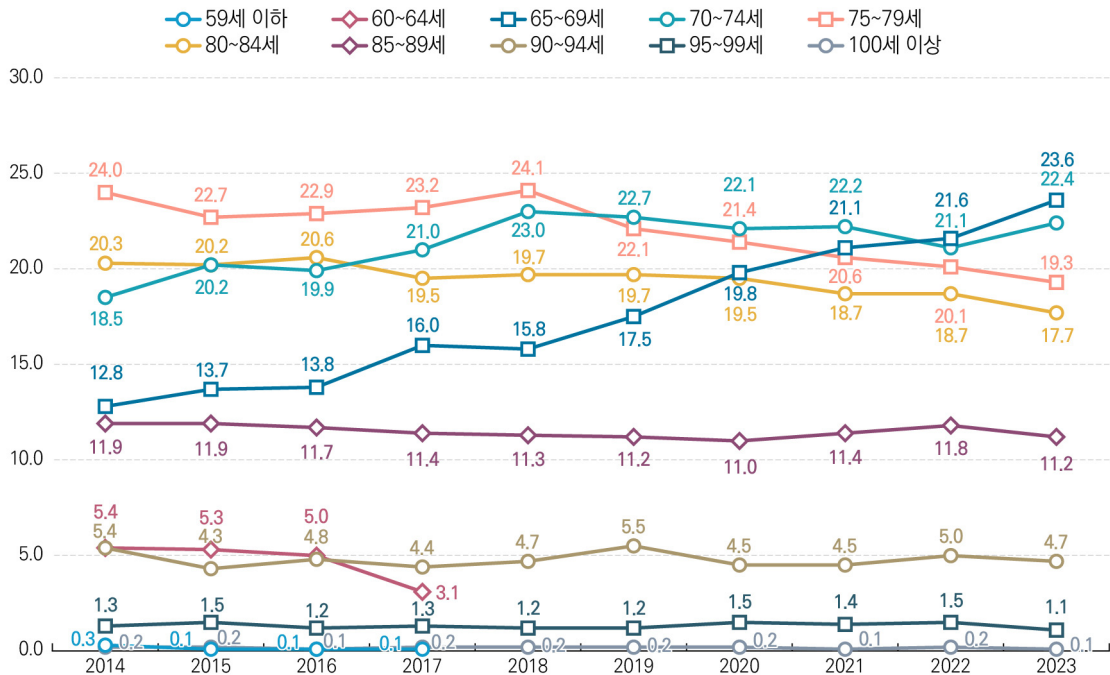


그림 3-9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 비율 추이

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표 3-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세 미만	-	-	-	-	-	-	-	-	-	3
	-	-	-	-	-	-	-	-	-	0.0
10~19세	12	18	33	46	50	42	62	67	65	87
	0.3	0.4	0.7	0.9	0.9	0.7	0.9	0.8	0.9	1.1
20~29세	63	46	76	115	105	81	117	138	138	93
	1.6	1.1	1.6	2.3	1.9	1.4	1.7	1.6	1.8	1.2
30~39세	347	372	296	325	318	306	389	405	394	386
	9.0	8.8	6.4	6.4	5.6	5.3	5.8	4.8	5.3	4.9
40~49세	911	870	1,040	1,150	1,253	1,184	1,352	1,393	1,269	1,209
	23.5	20.6	22.4	22.5	22.1	20.5	20.2	16.5	16.9	15.3
50~59세	981	1,156	1,166	1,275	1,414	1,465	1,634	2,486	1,763	2,034
	25.3	27.4	25.1	25.0	25.0	25.4	24.4	29.5	23.5	25.7
60~69세	602	622	687	827	824	940	1,110	1,557	1,407	1,523
	15.5	14.7	14.8	16.2	14.5	16.3	16.6	18.5	18.8	19.3
70세 이상	960	1,140	1,339	1,363	1,701	1,759	2,034	2,377	2,458	2,565
	24.8	27.0	28.9	26.7	30.0	30.4	30.4	28.2	32.8	32.5
계	3,876	4,224	4,637	5,101	5,665	5,777	6,698	8,423	7,494	7,9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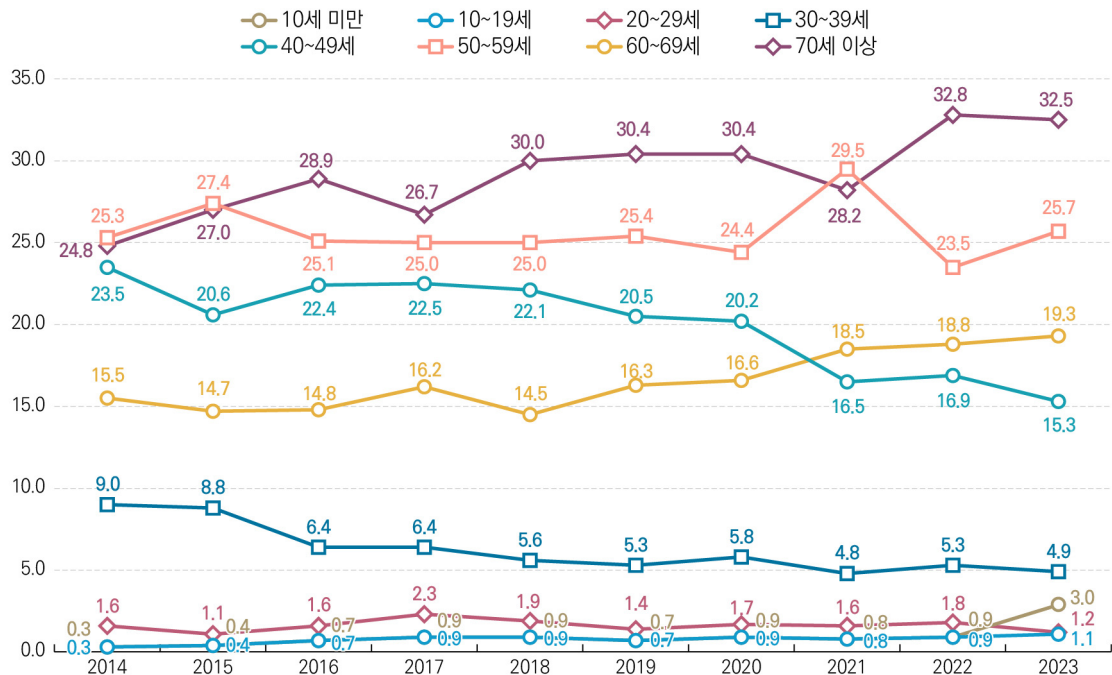


그림 3-10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비율 추이

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표 3-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노인 독거	1,172	1,318	1,140	1,007	999	1,039	1,073	1,195	1,127	1,118
	33.2	34.5	26.6	21.8	19.3	19.8	17.1	17.6	16.6	15.9
노인 부부	701	808	1,023	1,216	1,512	1,669	2,046	2,332	2,467	2,741
	19.8	21.2	23.9	26.3	29.1	31.8	32.7	34.4	36.2	39.0
자녀 동거	932	1,021	1,328	1,536	1,738	1,588	2,060	2,111	2,034	1,982
	26.4	26.7	31.0	33.2	33.5	30.3	32.9	31.2	29.9	28.2
손자녀 동거	123	139	154	178	187	182	199	217	205	203
	3.5	3.6	3.6	3.9	3.6	3.5	3.2	3.2	3.0	2.9
자녀· 손자녀 동거	244	185	234	245	252	195	253	235	228	191
	6.9	4.8	5.5	5.3	4.9	3.7	4.0	3.5	3.3	2.7
기타	360	347	401	440	500	570	628	684	746	790
	10.2	9.1	9.4	9.5	9.6	10.9	10.0	10.1	11.0	11.2
계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7,02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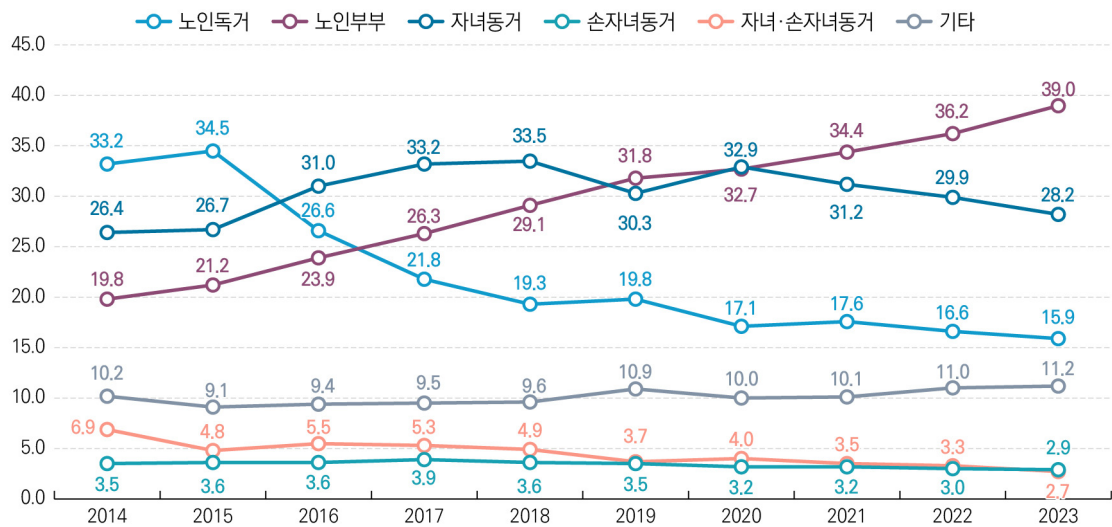


그림 3-11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비율 추이

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표 3-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명,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본인	463	622	522	290	240	200	221	204	169	165
	11.9	14.7	11.3	5.7	4.2	3.5	3.3	2.4	2.3	2.1
배우자	588	652	952	1,263	1,557	1,749	2,120	2,455	2,615	2,830
	15.2	15.4	20.5	24.8	27.5	30.3	31.7	29.1	34.9	35.8
아들	1,504	1,523	1,729	1,913	2,106	1,803	2,288	2,287	2,092	2,080
	38.8	36.1	37.3	37.5	37.2	31.2	34.2	27.2	27.9	26.3
며느리	184	183	157	131	143	109	123	119	106	88
	4.7	4.3	3.4	2.6	2.5	1.9	1.8	1.4	1.4	1.1
딸	476	451	475	424	436	438	589	627	620	607
	12.3	10.7	10.2	8.3	7.7	7.6	8.8	7.4	8.3	7.7
사위	18	21	23	27	34	27	28	42	38	45
	0.5	0.5	0.5	0.5	0.6	0.5	0.4	0.5	0.5	0.6
손자녀	56	64	103	124	134	112	168	172	179	168
	1.4	1.5	2.2	2.4	2.4	1.9	2.5	2.0	2.4	2.1
친척	56	46	63	49	59	50	64	90	49	76
	1.4	1.1	1.4	1.0	1.0	0.9	1.0	1.1	0.7	1.0
타인	246	283	221	176	168	222	223	257	264	277
	6.3	6.7	4.8	3.5	3.0	3.8	3.3	3.1	3.5	3.5
기관	285	379	392	704	788	1,067	874	2,170	1,362	1,564
	7.4	9.0	8.5	13.8	13.9	18.5	13.0	25.8	18.2	19.8
계	3,876	4,224	4,637	5,101	5,665	5,777	6,698	8,423	7,494	7,9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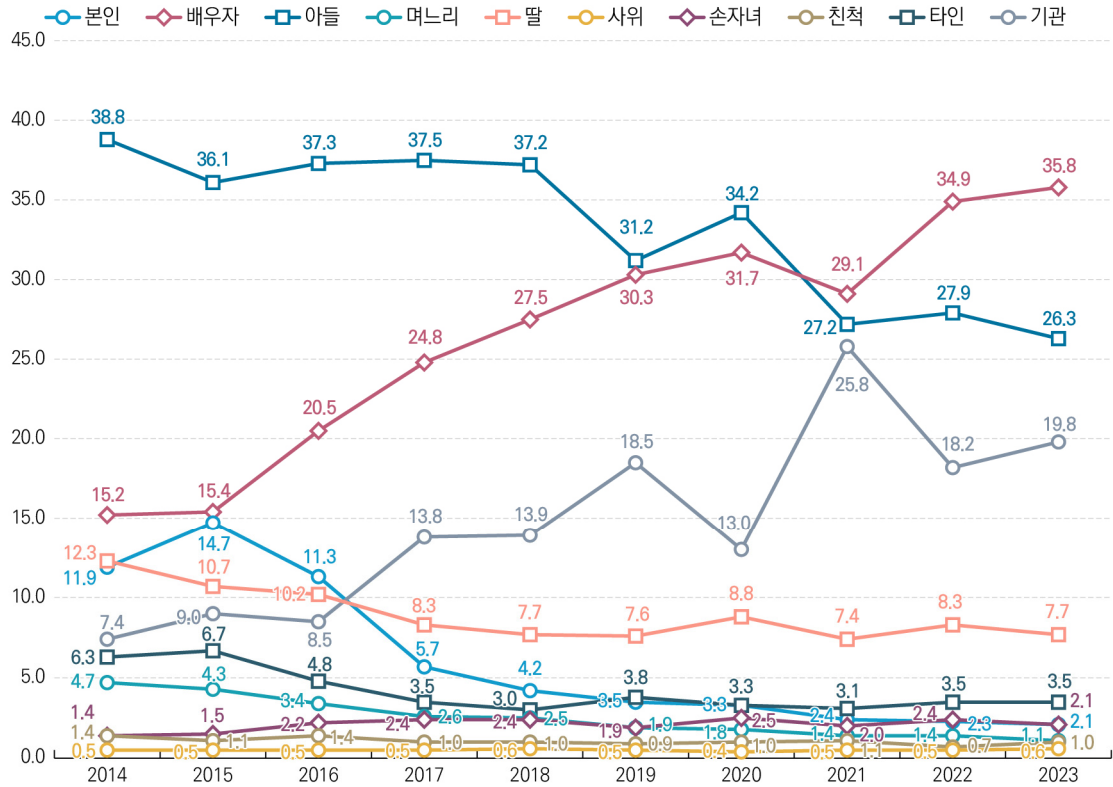


그림 3-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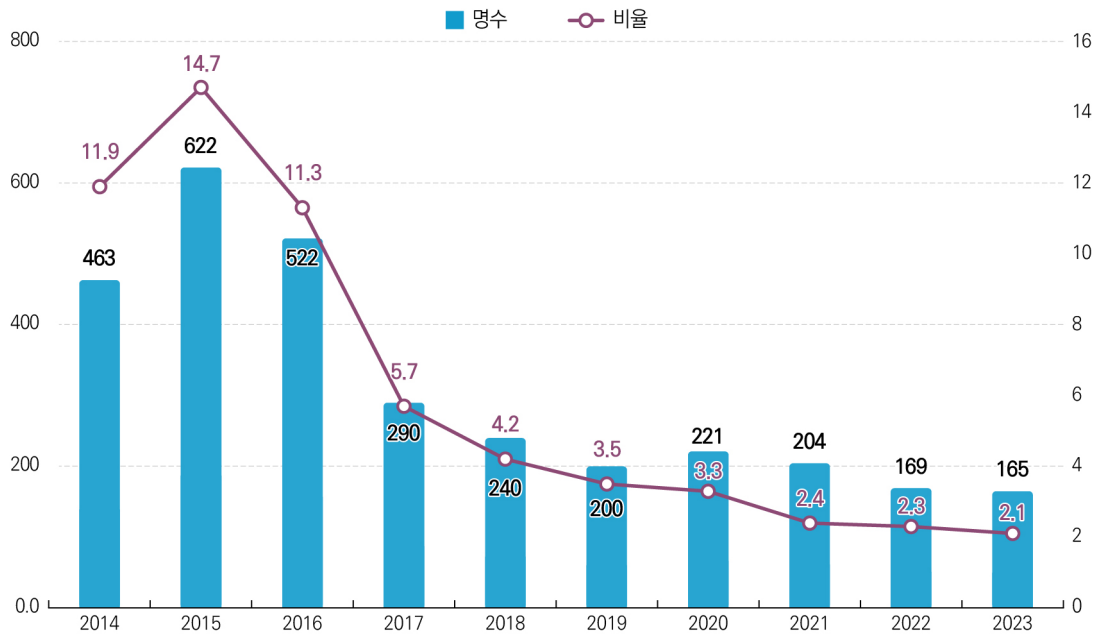


그림 3-13 연도별 학대행위자 본인 추이

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표 3-13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758	870	871	785	851	810	992	1,165	1,157	1,067
	21.5	22.8	20.4	17.0	16.4	15.4	15.8	17.2	17.0	15.2
전체 학대피해 노인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7,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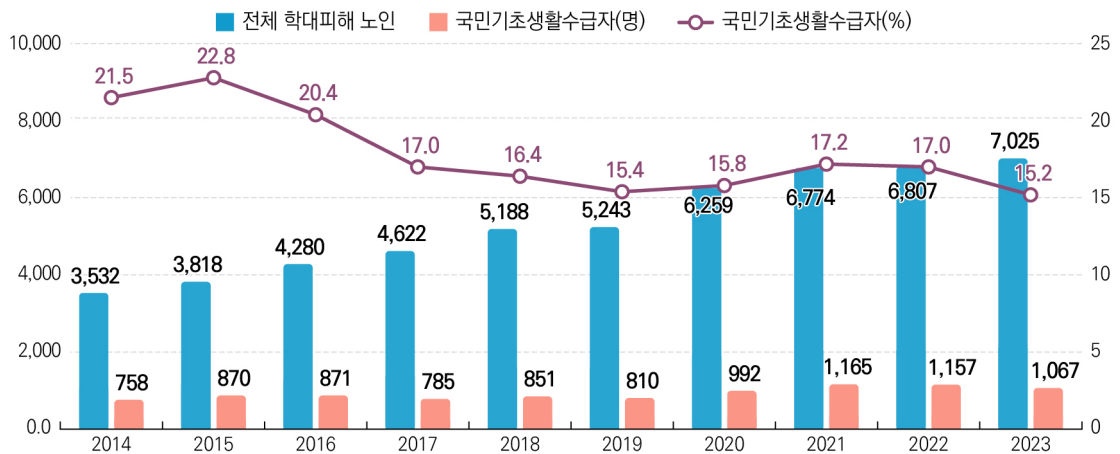


그림 3-14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14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표 3-14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445	546	947	575	591	544	719	799	786	747
	11.5	12.9	20.4	11.3	10.4	9.4	10.7	9.5	10.5	9.5
전체 학대 행위자	3,876	4,224	4,637	5,101	5,665	5,777	6,698	8,423	7,494	7,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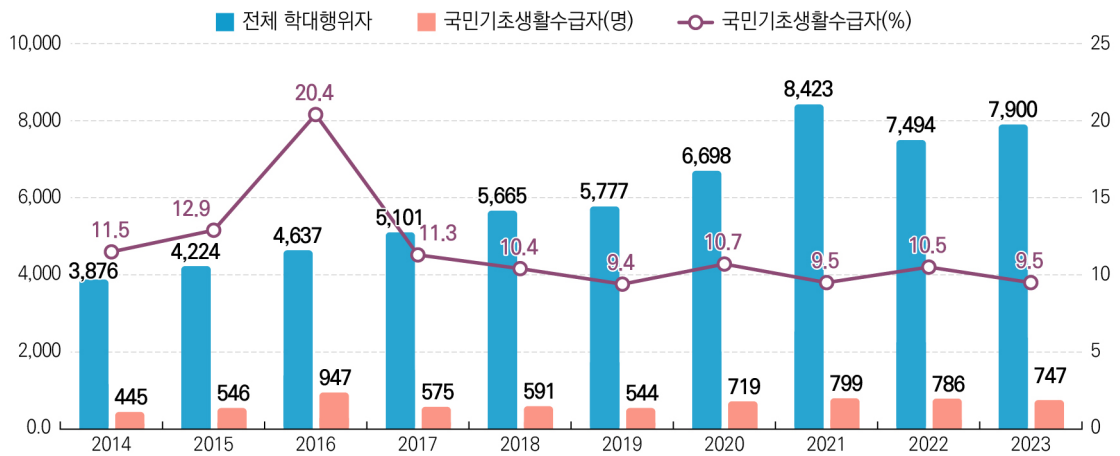


그림 3-15 연도별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표 3-15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명,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학대사례	3,532	3,818	4,280	4,622	5,188	5,243	6,259	6,774	6,807	7,025
치매 정도	치매 의심	488	561	593	488	507	550	608	607	597
	치매 진단	461	469	521	634	700	831	927	1,092	1,214
	계	949	1,030	1,114	1,122	1,207	1,381	1,535	1,699	1,822
학대사례 대비 치매의심 및 진단사례 비율	26.9	27.0	26.0	24.3	23.3	26.3	24.5	25.1	26.0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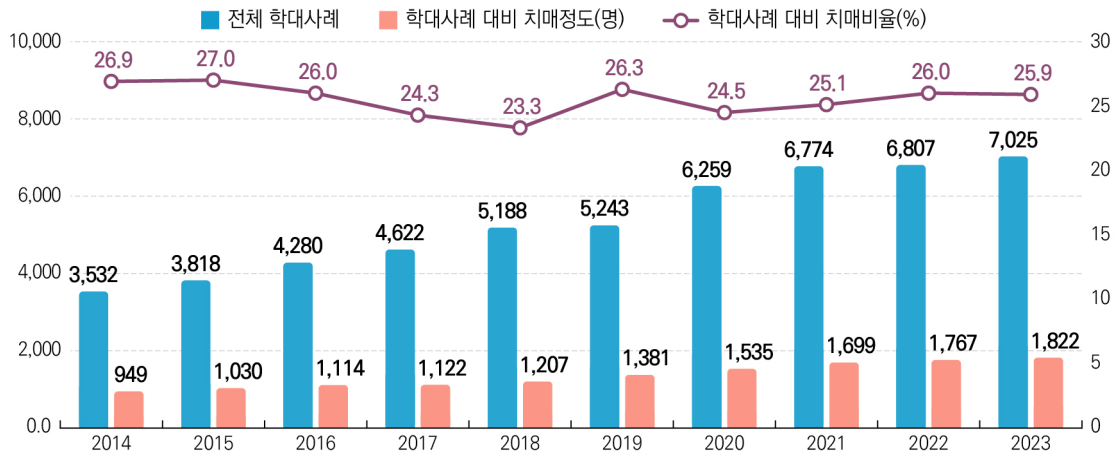


그림 3-16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치매 추이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04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01 | 노인학대 신고접수

1) 전체 신고접수

표 4-1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전체 신고접수			학대사례 대비 재학대 사례
	학대사례	일반사례	전 체	
건 수	7,025	14,911	21,936	759
비 율	32.0	68.0	100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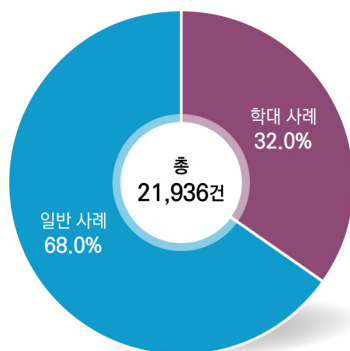


그림 4-1 전체 신고건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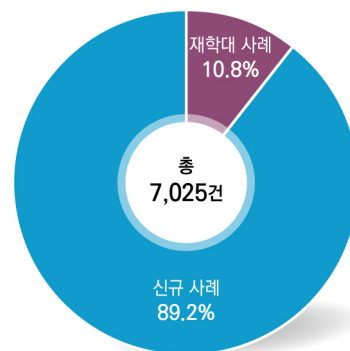


그림 4-2 학대사례 건수 대비 재학대 건수 비율

표 4-2 월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학대사례		일반사례		전체사례	
1월	514	7.3	845	5.7	1,359	6.2
2월	543	7.7	908	6.1	1,451	6.6
3월	594	8.5	1,297	8.7	1,891	8.6
4월	582	8.3	1,335	9.0	1,917	8.7
5월	631	9.0	1,435	9.6	2,066	9.4
6월	684	9.7	1,343	9.0	2,027	9.2
7월	682	9.7	1,517	10.2	2,199	10.0
8월	591	8.4	1,245	8.3	1,836	8.4
9월	570	8.1	1,212	8.1	1,782	8.1
10월	570	8.1	1,540	10.3	2,110	9.6
11월	562	8.0	1,291	8.7	1,853	8.4
12월	502	7.1	943	6.3	1,445	6.6
계	7,025	100	14,911	100	21,93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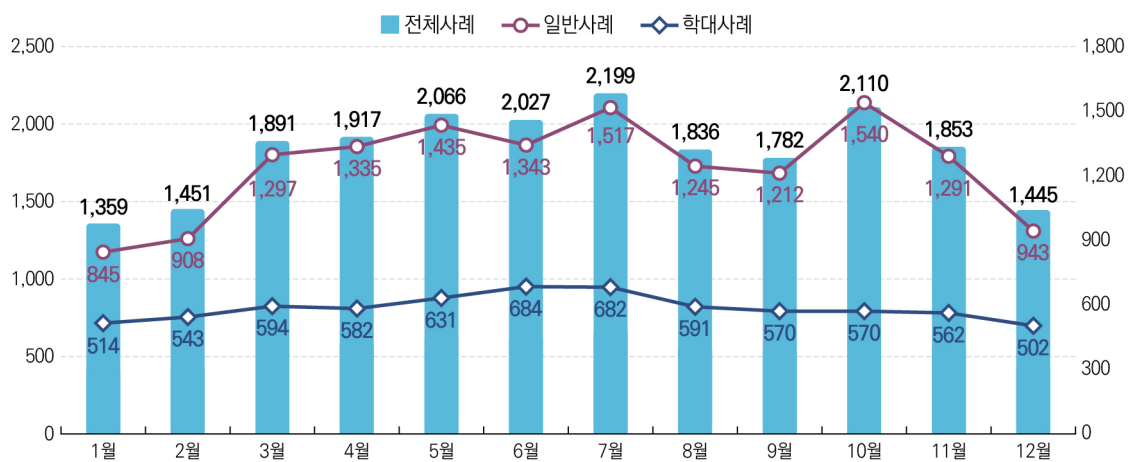


그림 4-3 월별 신고접수 건수 추이

2)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표 4-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일반사례		계	
서울	서울남부	206	21.0	774	79.0	980	100
	서울북부	135	17.2	651	82.8	786	100
	서울서부	208	22.2	730	77.8	938	100
	서울동부	170	25.0	511	75.0	681	100
	소계	719	21.2	2,666	78.8	3,385	100
부산	부산동부	322	44.3	405	55.7	727	100
	부산서부	252	38.1	409	61.9	661	100
	소계	574	41.4	814	58.6	1,388	100
대구	대구남부	166	32.1	351	67.9	517	100
	대구북부	167	34.1	323	65.9	490	100
	소계	333	33.1	674	66.9	1,007	100
인천	인천	195	42.7	262	57.3	457	100
	인천서부	266	56.0	209	44.0	475	100
	소계	461	49.5	471	50.5	932	100
광주		228	48.6	241	51.4	469	100
대전		126	17.0	615	83.0	741	100
울산		174	33.1	352	66.9	526	100
경기	경기동부	325	52.4	295	47.6	620	100
	경기북부	558	59.2	385	40.8	943	100
	경기서부	219	37.2	370	62.8	589	100
	경기남부	207	29.2	501	70.8	708	100
	경기북서부	321	50.0	321	50.0	642	100
	소계	1,630	46.5	1,872	53.5	3,502	100
강원	강원	168	32.5	349	67.5	517	100
	강원동부	74	18.8	320	81.2	394	100
	강원남부	114	30.3	262	69.7	376	100
	소계	356	27.7	931	72.3	1,287	100
충북	충북	130	10.6	1,098	89.4	1,228	100
	충북북부	92	25.3	271	74.7	363	100
	소계	222	14.0	1,369	86.0	1,591	100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일반사례		계	
충남	충남	178	43.3	233	56.7	411	100
	충남남부	111	38.8	175	61.2	286	100
	소계	289	41.5	408	58.5	697	100
전북	전북	152	47.4	169	52.6	321	100
	전북서부	146	30.4	335	69.6	481	100
	소계	298	37.2	504	62.8	802	100
전남	전남동부	150	42.7	201	57.3	351	100
	전남서부	267	45.5	320	54.5	587	100
	소계	417	44.5	521	55.5	938	100
경북	경북동부	169	29.3	407	70.7	576	100
	경북북부	113	15.8	600	84.2	713	100
	경북서부	170	38.4	273	61.6	443	100
	경북남부	117	27.2	313	72.8	430	100
	소계	569	26.3	1,593	73.7	2,162	100
경남	경남	341	37.8	562	62.2	903	100
	경남서부	160	21.7	576	78.3	736	100
	소계	501	30.6	1,138	69.4	1,639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77	14.9	440	85.1	517	100
	제주도서귀포시	51	14.4	302	85.6	353	100
	소계	128	14.7	742	85.3	870	100
계		7,025	32.0	14,911	68.0	21,93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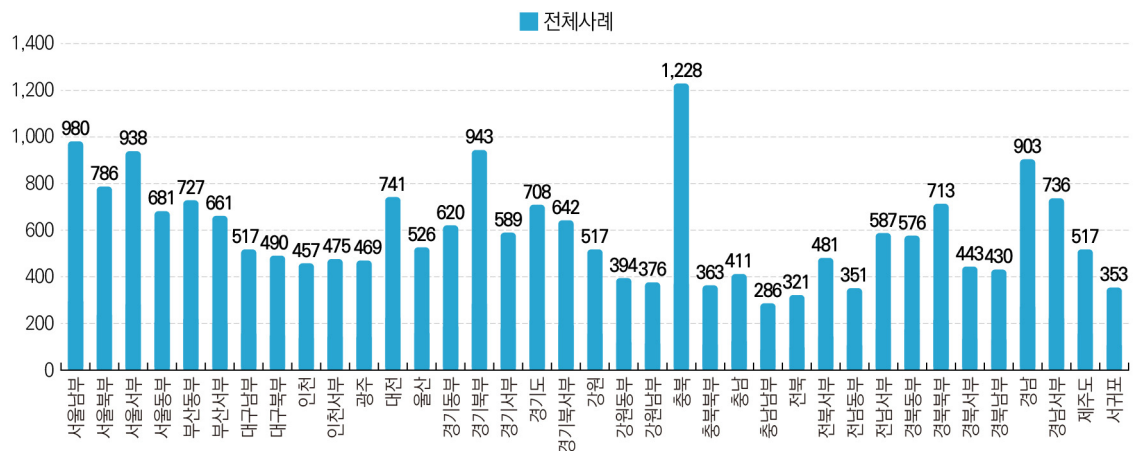


그림 4-4 지역 기관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표 4-4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율

(단위: 명, 건, %)

지역 및 기관명		총인구수 (A)	65세 이상 인구수 (B)	총인구수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C=B/A×100)	신고접수 건수 (D)	지역별신고 접수율 (노인인구 천명당) (E=D/B×1000)
서울	서울남부	2,807,942	495,577	17.6	980	2.0
	서울북부	1,860,025	382,178	20.5	786	2.1
	서울서부	2,396,513	440,616	18.4	938	2.1
	서울동부	2,321,554	415,209	17.9	681	1.6
	소계	9,386,034	1,733,580	18.5	3,385	2.0
부산	부산동부	1,507,988	352,944	23.4	727	2.1
	부산서부	1,785,374	392,255	22.0	661	1.7
	소계	3,293,362	745,199	22.6	1,388	1.9
대구	대구남부	1,336,383	245,547	18.4	517	2.1
	대구북부	1,038,577	220,791	21.3	490	2.2
	소계	2,374,960	466,338	19.6	1,007	2.2
인천	인천	1,529,643	259,680	17.0	457	1.8
	인천서부	1,467,767	237,377	16.2	475	2.0
	소계	2,997,410	497,057	16.6	932	1.9
광주		1,419,237	233,878	16.5	469	2.0
대전		1,442,216	244,756	17.0	741	3.0
울산		1,103,661	175,709	15.9	526	3.0
경기	경기동부	2,848,438	485,278	17.0	620	1.3
	경기북부	2,187,083	382,373	17.5	943	2.5
	경기서부	2,625,639	412,789	15.7	589	1.4
	경기남부	3,780,619	485,008	12.8	708	1.5
	경기북서부	2,189,042	357,270	16.3	642	1.8
	소계	13,630,821	2,122,718	15.6	3,502	1.6
강원	강원	471,266	110,032	23.3	517	4.7
	강원동부	497,784	127,242	25.6	394	3.1
	강원남부	558,757	129,281	23.1	376	2.9
	소계	1,527,807	366,555	24.0	1,287	3.5
충북	충북	1,100,023	203,131	18.5	1228	6.0
	충북북부	493,446	129,106	26.2	363	2.8
	소계	1,593,469	332,237	20.8	1,591	4.8
충남	충남	1,971,255	324,711	16.5	411	1.3
	충남남부	545,389	172,383	31.6	286	1.7
	소계	2,516,644	497,094	19.8	697	1.4

지역 및 기관명		총인구수 (A)	65세 이상 인구수 (B)	총인구수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C=B/A×100)	신고접수 건수 (D)	지역별신고 접수율 (노인인구 천명당) (E=D/B×1000)
전북	전북	938,754	206,088	22.0	321	1.6
	전북서부	816,003	217,040	26.6	481	2.2
	소계	1,754,757	423,128	24.1	802	1.9
전남	전남동부	1,036,733	259,102	25.0	351	1.4
	전남서부	767,484	211,772	27.6	587	2.8
	소계	1,804,217	470,874	26.1	938	2.0
경북	경북동부	854,342	209,814	24.6	576	2.7
	경북북부	403,809	132,201	32.7	713	5.4
	경북서부	747,720	155,668	20.8	443	2.8
	경북남부	548,453	132,803	24.2	430	3.2
	소계	2,554,324	630,486	24.7	2,162	3.4
경남	경남	2,521,246	467,028	18.5	903	1.9
	경남서부	729,912	202,618	27.8	736	3.6
	소계	3,251,158	669,646	20.6	1,639	2.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491,654	81,115	16.5	517	6.4
	제주도서귀포시	183,598	40,041	21.8	353	8.8
	소계	675,252	121,156	17.9	870	7.2
계		51,325,329	9,730,411	19.0	21,936	2.3

주. 65세 이상 인구수 :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2023.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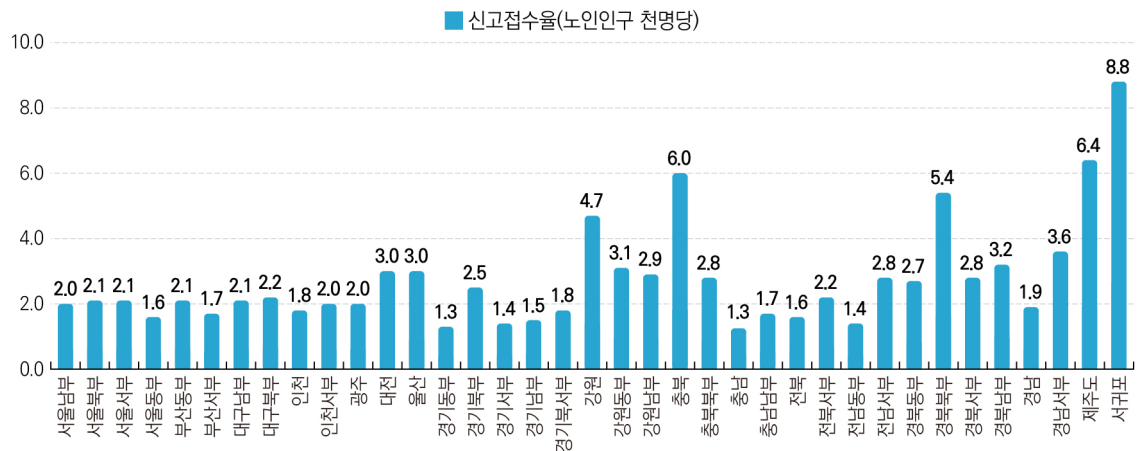


그림 4-5 기관별 노인학대 신고접수율(노인인구 천명당)

3) 시군구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표 4-5 시군구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건수	비율
서울	종로구	7	0.1
	중구	16	0.2
	용산구	20	0.3
	성동구	11	0.2
	광진구	23	0.3
	동대문구	25	0.4
	종랑구	41	0.6
	성북구	27	0.4
	강북구	23	0.3
	도봉구	20	0.3
	노원구	40	0.6
	은평구	35	0.5
	서대문구	26	0.4
	마포구	39	0.6
	양천구	33	0.5
	강서구	50	0.7
	구로구	24	0.3
	금천구	29	0.4
	영등포구	29	0.4
	동작구	33	0.5
	관악구	63	0.9
	서초구	8	0.1
	강남구	20	0.3
	송파구	40	0.6
	강동구	35	0.5
	기타*	2	0.0
	소계	719	10.2
부산	중구	16	0.2
	서구	14	0.2
	동구	30	0.4
	영도구	33	0.5
	부산진구	70	1.0
	동래구	34	0.5
	남구	55	0.8
	북구	46	0.7
	해운대구	53	0.8
	사하구	77	1.1
	금정구	27	0.4
	강서구	9	0.1

구 분		건수	비율
	연제구	30	0.4
	수영구	20	0.3
	사상구	42	0.6
	기장군	18	0.3
	소계	574	8.2
대구	중구	13	0.2
	동구	62	0.9
	서구	44	0.6
	남구	37	0.5
	북구	48	0.7
	수성구	32	0.5
	달서구	76	1.1
	달성군	20	0.3
	군위군	1	0.0
	소계	333	4.7
인천	중구	21	0.3
	동구	7	0.1
	미추홀구	35	0.5
	연수구	23	0.3
	남동구	107	1.5
	부평구	107	1.5
	계양구	40	0.6
	서구	95	1.4
	강화군	24	0.3
	옹진군	2	0.0
	소계	461	6.6
광주	동구	36	0.5
	서구	53	0.8
	남구	44	0.6
	북구	61	0.9
	광산구	34	0.5
	소계	228	3.2
대전	동구	29	0.4
	중구	24	0.3
	서구	51	0.7
	유성구	10	0.1
	대덕구	11	0.2
	기타*	1	0.0
	소계	126	1.8
울산	중구	42	0.6
	남구	42	0.6
	동구	30	0.4
	북구	24	0.3

구 분		건수	비율
	울주군	36	0.5
	소계	174	2.5
경기	수원시	81	1.2
	성남시	140	2.0
	의정부시	115	1.6
	안양시	22	0.3
	부천시	84	1.2
	광명시	30	0.4
	평택시	26	0.4
	동두천시	11	0.2
	안산시	42	0.6
	고양시	173	2.5
	과천시	8	0.1
	구리시	57	0.8
	남양주시	225	3.2
	오산시	15	0.2
	시흥시	39	0.6
	군포시	25	0.4
	의왕시	11	0.2
	하남시	25	0.4
	용인시	112	1.6
	파주시	87	1.2
	이천시	8	0.1
	안성시	15	0.2
	김포시	43	0.6
	화성시	28	0.4
	광주시	35	0.5
	양주시	82	1.2
	포천시	41	0.6
	여주시	12	0.2
	연천군	7	0.1
	가평군	13	0.2
	양평군	18	0.3
	소계	1,630	23.2
강원	춘천시	124	1.8
	원주시	95	1.4
	강릉시	40	0.6
	동해시	12	0.2
	태백시	5	0.1
	속초시	11	0.2
	삼척시	6	0.1
	홍천군	33	0.5
	횡성군	2	0.0

구 분		건수	비율
	영월군	1	0.0
	평창군	4	0.1
	정선군	7	0.1
	철원군	3	0.0
	화천군	1	0.0
	양구군	-	-
	인제군	6	0.1
	고성군	2	0.0
	양양군	4	0.1
	소계	356	5.1
충북	청주시	97	1.4
	충주시	46	0.7
	제천시	15	0.2
	보은군	6	0.1
	옥천군	7	0.1
	영동군	1	0.0
	진천군	14	0.2
	괴산군	11	0.2
	음성군	20	0.3
	단양군	-	-
	증평군	5	0.1
	소계	222	3.2
충남	천안시	36	0.5
	공주시	26	0.4
	보령시	23	0.3
	아산시	23	0.3
	서산시	41	0.6
	논산시	24	0.3
	계룡시	2	0.0
	당진시	18	0.3
	금산군	10	0.1
	부여군	9	0.1
	서천군	14	0.2
	청양군	3	0.0
	홍성군	11	0.2
	예산군	16	0.2
	태안군	3	0.0
	소계	259	3.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30	0.4
	소계	30	0.4
전북	전주시	107	1.5
	군산시	40	0.6
	익산시	32	0.5

구 분		건수	비율
	정읍시	21	0.3
	남원시	7	0.1
	김제시	24	0.3
	완주군	13	0.2
	진안군	5	0.1
	무주군	3	0.0
	장수군	7	0.1
	임실군	7	0.1
	순창군	3	0.0
	고창군	23	0.3
	부안군	6	0.1
	소계	298	4.2
전남	목포시	77	1.1
	여수시	30	0.4
	순천시	44	0.6
	나주시	72	1.0
	광양시	14	0.2
	담양군	15	0.2
	곡성군	2	0.0
	구례군	5	0.1
	고흥군	21	0.3
	보성군	9	0.1
	화순군	-	-
	장흥군	6	0.1
	강진군	14	0.2
	해남군	35	0.5
	영암군	6	0.1
	무안군	18	0.3
	함평군	6	0.1
	영광군	16	0.2
	장성군	4	0.1
	완도군	4	0.1
	진도군	10	0.1
	신안군	9	0.1
	소계	417	5.9
경북	포항시	103	1.5
	경주시	48	0.7
	김천시	28	0.4
	안동시	65	0.9
	구미시	66	0.9
	영주시	16	0.2
	영천시	22	0.3
	상주시	35	0.5

구 분		건수	비율
	문경시	26	0.4
	경산시	62	0.9
	군위군	1	0.0
	의성군	8	0.1
	청송군	4	0.1
	영양군	-	-
	영덕군	4	0.1
	청도군	5	0.1
	고령군	1	0.0
	성주군	15	0.2
	칠곡군	26	0.4
	예천군	18	0.3
	봉화군	6	0.1
	울진군	5	0.1
	울릉군	5	0.1
	소계	569	8.1
경남	창원시	149	2.1
	진주시	61	0.9
	통영시	16	0.2
	사천시	18	0.3
	김해시	81	1.2
	밀양시	4	0.1
	거제시	19	0.3
	양산시	63	0.9
	의령군	2	0.0
	함안군	4	0.1
	창녕군	3	0.0
	고성군	2	0.0
	남해군	5	0.1
	하동군	8	0.1
	산청군	32	0.5
	함양군	5	0.1
	거창군	16	0.2
	합천군	13	0.2
	소계	501	7.1
제주	제주시	77	1.1
	서귀포시	51	0.7
	소계	128	1.8
합계		7,025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4) 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표 4-6 발생장소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 장소	기타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일반병원			
응급	130	8	24	-	-	-	-	3	2	167
	77.8	4.8	14.4	-	-	-	-	1.8	1.2	100
비응급	3,850	25	430	-	97	78	4	36	41	4,561
	84.4	0.5	9.4	-	2.1	1.7	0.1	0.8	0.9	100
잠재적	2,099	1	83	-	11	29	4	25	45	2,297
	91.4	0.0	3.6	-	0.5	1.3	0.2	1.1	2.0	100
계	6,079	34	537	-	108	107	8	64	88	7,025
	86.5	0.5	7.6	-	1.5	1.5	0.1	0.9	1.3	100

5) 신고자 유형

표 4-7 신고자 유형 I

(단위: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계
1,044	5,981	7,025
14.9	85.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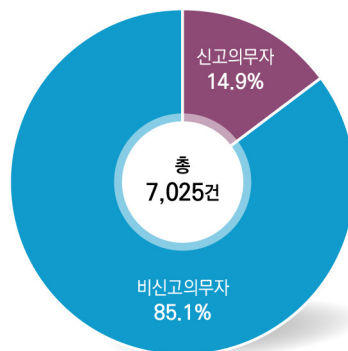


그림 4-6 신고자 유형 I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표 4-8 신고자 유형Ⅱ(신고의무자)

(단위: 건, %)

신고의무자																			계
의료인 및 의료 기관의 장	방문 요양과 돌봄 이나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 복지 상담원	장애 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 복지관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 요양 기관의 장과 종사자	119 구급대 의 구급 대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 보건 의료 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 복지 시설의 장과 종사자 *	사회 복지 시설 에서 근무 하는 사회 복무 요원	
48	18	282	9	58	167	7	48	2	-	-	4	-	-	13	5	64	313	6	1,044
4.6	1.7	27.0	0.9	5.6	16.0	0.7	4.6	0.2	-	-	0.4	-	-	1.2	0.5	6.1	30.0	0.6	100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경우, 「노인복지법」개정(‘21.12.21.)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분류되어 시행일 이후 수치입(시행: ’22.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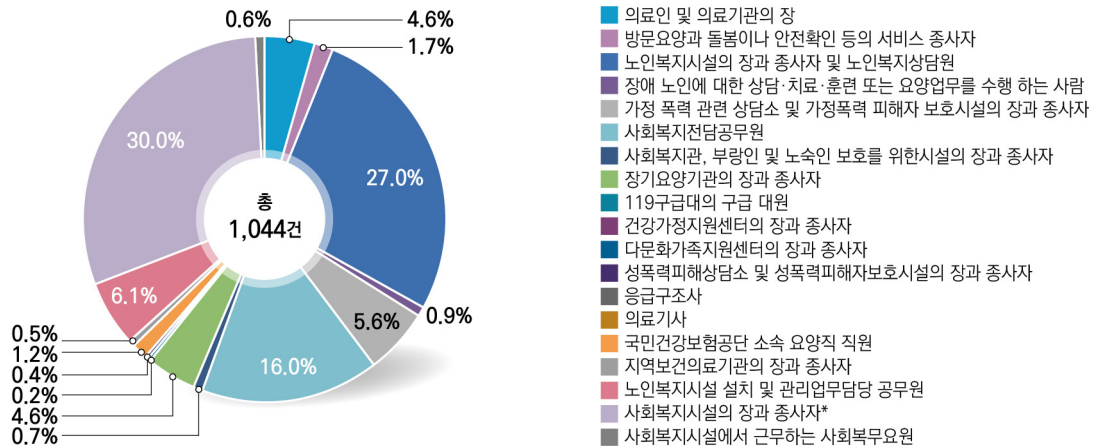


그림 4-7 신고자 유형Ⅱ

표 4-9 신고자 유형Ⅲ(비신고의무자)

(단위: 건, %)

비신고의무자					계
학대피해노인 본인	학대행위자 본인	친족 ¹³⁾	타인 ¹⁴⁾	관련기관 ¹⁵⁾	
344	7	505	190	4,935	5,981
5.8	0.1	8.4	3.2	82.5	100

13) 친족에는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이 해당됨.

14)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익명, 친구 등이 해당됨.

15)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기타 관련시설 종사자 등이 해당됨.

6) 신고접수 및 경로 인지 유형

가. 신고접수 경로

표 4-10 신고접수 경로

(단위: 건,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이관	보건 복지 콜센터 129 이관	여성 긴급 전화 1366	112 이관	건강 보험 공단	경로당	노인 돌봄 서비스 생활 관리사	노인 일자리 사업	시청	의료 기관	자체 접수	정신 건강 복지 센터	타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이관	행정 복지 센터	희망 복지 지원단	계
5	57	60	4,197	24	-	14	1	95	17	2,381	13	20	116	25	7,025
0.1	0.8	0.9	59.7	0.3	-	0.2	0.0	1.4	0.2	33.9	0.2	0.3	1.7	0.4	100

나. 신고접수 유형

표 4-11 신고접수 유형

(단위: 건, %)

대 면	서 신 ¹⁶⁾	온라인	전 화	계
279	4,605	73	2,068	7,025
4.0	65.6	1.0	29.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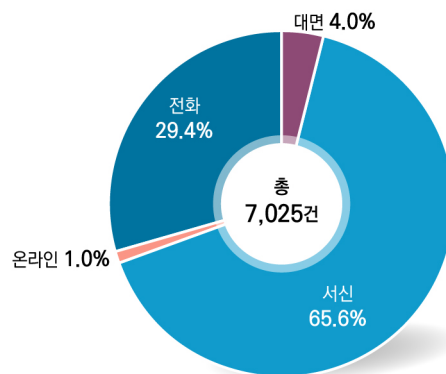


그림 4-8 신고접수 유형

16) 112 등 연계기관에서 의뢰한 '노인학대 의심 사례통보서' 등 문서로 신고된 유형이 서신 신고에 해당됨.

다. 신고 경로 인지 유형

표 4-12 신고 경로 인지 유형별 신고자 구분

(단위: 건, %)

구 분	대중매체	이미 개입 경험이 있으며 직접 홍보의 경우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	인터넷	주변인	직접홍보	타기관 안내	계
신고 의무자	4	17	954	2	26	10	31	1,044
	0.4	1.6	91.4	0.2	2.5	1.0	3.0	100
비신고 의무자	71	161	5,208	142	102	81	216	5,981
	1.2	2.7	87.1	2.4	1.7	1.4	3.6	100
계	75	178	6,162	144	128	91	247	7,025
	1.1	2.5	87.7	2.0	1.8	1.3	3.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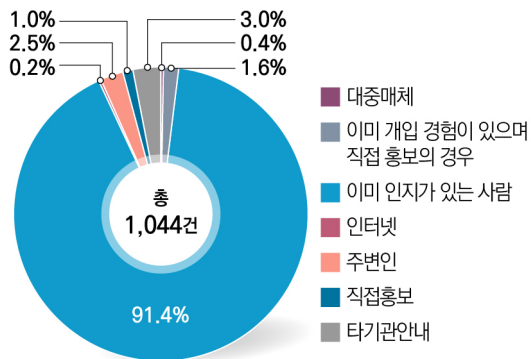


그림 4-9 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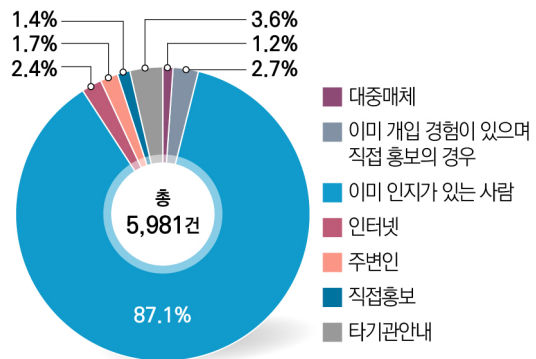


그림 4-10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경로 인지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05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01 | 현장조사

표 5-1 현장조사

(단위: 건, %)

학대사례	현장조사	실시비율
7,025	6,898	98.2

표 5-2 지역 및 기관별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

(단위: 건, 회, %)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A)	현장조사 (B)	실시비율 (C)=B/A×100	방문상담 (D)	방문상담횟수 (E)=D/A
서울	서울남부	206	206	100	779	3.8
	서울북부	135	135	100	830	6.1
	서울서부	208	208	100	1,141	5.5
	서울동부	170	168	98.8	713	4.2
	소계	719	717	99.7	3,463	4.8
부산	부산동부	322	321	99.7	1581	4.9
	부산서부	252	252	100	677	2.7
	소계	574	573	99.8	2,258	3.9
대구	대구남부	166	166	100	963	5.8
	대구북부	167	167	100	891	5.3
	소계	333	333	100	1,854	5.6
인천	인천	195	194	99.5	1,247	6.4
	인천서부	266	229	86.1	638	2.4
	소계	461	423	91.8	1,885	4.1
광주		228	227	99.6	823	3.6
대전		126	122	96.8	1,017	8.1
울산		174	170	97.7	1,317	7.6

지역	기관명	학대사례 (A)	현장조사 (B)	실시비율 (C)=B/A×100	방문상담 (D)	방문상담횟수 (E)=D/A
경기	경기동부	325	306	94.2	844	2.6
	경기북부	558	557	99.8	1,158	2.1
	경기서부	219	219	100	766	3.5
	경기남부	207	198	95.7	400	1.9
	경기북서부	321	320	99.7	752	2.3
	소계	1,630	1,600	98.2	3,920	2.4
강원	강원	168	166	98.8	2,806	16.7
	강원동부	74	69	93.2	460	6.2
	강원남부	114	114	10	2,138	18.8
	소계	356	349	98.0	5,404	15.2
충북	충북	130	124	95.4	879	6.8
	충북북부	92	88	95.7	732	8.0
	소계	222	212	95.5	1,611	7.3
충남	충남	178	177	99.4	1,533	8.6
	충남남부	111	111	100	449	4.0
	소계	289	288	99.7	1,982	6.9
전북	전북	152	152	100	826	5.4
	전북서부	146	128	87.7	924	6.3
	소계	298	280	94.0	1,750	5.9
전남	전남동부	150	150	100	510	3.4
	전남서부	267	260	97.4	3,165	11.9
	소계	417	410	98.3	3,675	8.8
경북	경북동부	169	168	99.4	1,285	7.6
	경북북부	113	113	100	1,300	11.5
	경북서부	170	170	100	1,449	8.5
	경북남부	117	117	100	1,277	10.9
	소계	569	568	99.8	5,311	9.3
경남	경남	341	339	99.4	786	2.3
	경남서부	160	160	100	1,886	11.8
	소계	501	499	99.6	2,672	5.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77	76	98.7	758	9.8
	제주도서귀포시	51	51	100	978	19.2
	소계	128	127	99.2	1,736	13.6
계		7,025	6,898	98.2	40,678	5.8

02 | 사례판정

표 5-3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지역	기관명	응 급		비용급		잠재적		계	
서울	서울남부	6	2.9	159	77.2	41	19.9	206	100
	서울북부	2	1.5	76	56.3	57	42.2	135	100
	서울서부	3	1.4	121	58.2	84	40.4	208	100
	서울동부	-	-	16	9.4	154	90.6	170	100
	소계	11	1.5	372	51.7	336	46.7	719	100
부산	부산동부	4	1.2	251	78.0	67	20.8	322	100
	부산서부	26	10.3	174	69.0	52	20.6	252	100
	소계	30	5.2	425	74.0	119	20.7	574	100
대구	대구남부	-	-	127	76.5	39	23.5	166	100
	대구북부	1	0.6	81	48.5	85	50.9	167	100
	소계	1	0.3	208	62.5	124	37.2	333	100
인천	인천	5	2.6	35	17.9	155	79.5	195	100
	인천서부	11	4.1	167	62.8	88	33.1	266	100
	소계	16	3.5	202	43.8	243	52.7	461	100
광주		12	5.3	204	89.5	12	5.3	228	100
대전		-	-	90	71.4	36	28.6	126	100
울산		1	0.6	157	90.2	16	9.2	174	100
경기	경기동부	-	-	293	90.2	32	9.8	325	100
	경기북부	18	3.2	350	62.7	190	34.1	558	100
	경기서부	5	2.3	23	10.5	191	87.2	219	100
	경기남부	2	1.0	73	35.3	132	63.8	207	100
	경기북서부	6	1.9	275	85.7	40	12.5	321	100
	소계	31	1.9	1,014	62.2	585	35.9	1,630	100
강원	강원	2	1.2	152	90.5	14	8.3	168	100
	강원동부	-	-	9	12.2	65	87.8	74	100
	강원남부	-	-	107	93.9	7	6.1	114	100
	소계	2	0.6	268	75.3	86	24.2	356	100
충북	충북	13	10.0	106	81.5	11	8.5	130	100
	충북북부	4	4.3	63	68.5	25	27.2	92	100
	소계	17	7.7	169	76.1	36	16.2	222	100

지역	기관명	응 급		비용급		잠재적		계	
충남	충남	7	3.9	151	84.8	20	11.2	178	100
	충남남부	18	16.2	63	56.8	30	27.0	111	100
	소계	25	8.7	214	74.0	50	17.3	289	100
전북	전북	-	-	116	76.3	36	23.7	152	100
	전북서부	-	-	50	34.2	96	65.8	146	100
	소계	-	-	166	55.7	132	44.3	298	100
전남	전남동부	5	3.3	145	96.7	-	-	150	100
	전남서부	2	0.7	226	84.6	39	14.6	267	100
	소계	7	1.7	371	89.0	39	9.4	417	100
경북	경북동부	3	1.8	16	9.5	150	88.8	169	100
	경북북부	1	0.9	78	69.0	34	30.1	113	100
	경북서부	-	-	133	78.2	37	21.8	170	100
	경북남부	9	7.7	35	29.9	73	62.4	117	100
	소계	13	2.3	262	46.0	294	51.7	569	100
경남	경남	1	0.3	250	73.3	90	26.4	341	100
	경남서부	-	-	105	65.6	55	34.4	160	100
	소계	1	0.2	355	70.9	145	28.9	501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	-	34	44.2	43	55.8	77	100
	제주도서귀포시	-	-	50	98.0	1	2.0	51	100
	소계	-	-	84	65.6	44	34.4	128	100
계		167	2.4	4,561	64.9	2,297	32.7	7,02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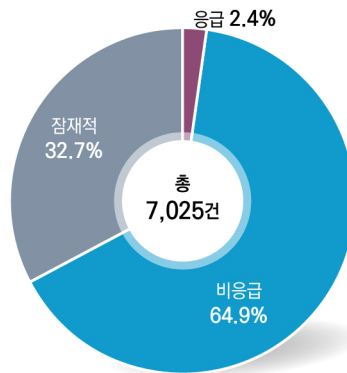


그림 5-1 사례판정 결과

표 5-4 시군구별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서울	종로구	-	-	3	42.9	4	57.1	7	100
	중구	-	-	9	56.3	7	43.8	16	100
	용산구	-	-	1	5.0	19	95.0	20	100
	성동구	-	-	-	-	11	100	11	100
	광진구	-	-	5	21.7	18	78.3	23	100
	동대문구	-	-	15	60.0	10	40.0	25	100
	종량구	-	-	2	4.9	39	95.1	41	100
	성북구	1	3.7	11	40.7	15	55.6	27	100
	강북구	-	-	17	73.9	6	26.1	23	100
	도봉구	1	5.0	12	60.0	7	35.0	20	100
	노원구	-	-	21	52.5	19	47.5	40	100
	은평구	-	-	22	62.9	13	37.1	35	100
	서대문구	-	-	13	50.0	13	50.0	26	100
	마포구	-	-	28	71.8	11	28.2	39	100
	양천구	-	-	15	45.5	18	54.5	33	100
	강서구	1	2.0	31	62.0	18	36.0	50	100
	구로구	-	-	22	91.7	2	8.3	24	100
	금천구	3	10.3	21	72.4	5	17.2	29	100
	영등포구	1	3.4	22	75.9	6	20.7	29	100
	동작구	-	-	25	75.8	8	24.2	33	100
	관악구	2	3.2	48	76.2	13	20.6	63	100
	서초구	-	-	6	75.0	2	25.0	8	100
	강남구	-	-	15	75.0	5	25.0	20	100
	송파구	-	-	5	12.5	35	87.5	40	100
	강동구	-	-	3	8.6	32	91.4	35	100
	기타*	2	100	-	-	-	-	2	100
	소계	11	1.5	372	51.7	336	46.7	719	100
부산	중구	-	-	13	81.3	3	18.8	16	100
	서구	-	-	9	64.3	5	35.7	14	100
	동구	-	-	23	76.7	7	23.3	30	100
	영도구	-	-	29	87.9	4	12.1	33	100
	부산진구	9	12.9	49	70.0	12	17.1	70	100
	동래구	2	5.9	23	67.6	9	26.5	34	100
	남구	-	-	42	76.4	13	23.6	55	100
	북구	1	2.2	29	63.0	16	34.8	46	100
	해운대구	5	9.4	39	73.6	9	17.0	53	100
	사하구	3	3.9	63	81.8	11	14.3	77	100
	금정구	4	14.8	17	63.0	6	22.2	27	100
	강서구	-	-	8	88.9	1	11.1	9	100
	연제구	3	10.0	18	60.0	9	30.0	30	100
	수영구	2	10.0	14	70.0	4	20.0	20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사상구	-	-	34	81.0	8	19.0	42	100
	기장군	1	5.6	15	83.3	2	11.1	18	100
	소계	30	5.2	425	74.0	119	20.7	574	100
대구	중구	-	-	6	46.2	7	53.8	13	100
	동구	1	1.6	25	40.3	36	58.1	62	100
	서구	-	-	26	59.1	18	40.9	44	100
	남구	-	-	30	81.1	7	18.9	37	100
	북구	-	-	24	50.0	24	50.0	48	100
	수성구	-	-	25	78.1	7	21.9	32	100
	달서구	-	-	60	78.9	16	21.1	76	100
	달성군	-	-	11	55.0	9	45.0	20	100
	군위군	-	-	1	100	-	-	1	100
	소계	1	0.3	208	62.5	124	37.2	333	100
인천	중구	1	4.8	3	14.3	17	81.0	21	100
	동구	-	-	1	14.3	6	85.7	7	100
	미추홀구	-	-	10	28.6	25	71.4	35	100
	연수구	2	8.7	4	17.4	17	73.9	23	100
	남동구	2	1.9	15	14.0	90	84.1	107	100
	부평구	4	3.7	66	61.7	37	34.6	107	100
	계양구	3	7.5	28	70.0	9	22.5	40	100
	서구	3	3.2	60	63.2	32	33.7	95	100
	강화군	1	4.2	13	54.2	10	41.7	24	100
	옹진군	-	-	2	100	-	-	2	100
	소계	16	3.5	202	43.8	243	52.7	461	100
광주	동구	1	2.8	34	94.4	1	2.8	36	100
	서구	2	3.8	51	96.2	-	-	53	100
	남구	1	2.3	40	90.9	3	6.8	44	100
	북구	5	8.2	52	85.2	4	6.6	61	100
	광산구	3	8.8	27	79.4	4	11.8	34	100
	소계	12	5.3	204	89.5	12	5.3	228	100
대전	동구	-	-	18	62.1	11	37.9	29	100
	중구	-	-	13	54.2	11	45.8	24	100
	서구	-	-	44	86.3	7	13.7	51	100
	유성구	-	-	8	80.0	2	20.0	10	100
	대덕구	-	-	6	54.5	5	45.5	11	100
	기타*	-	-	1	100	-	-	1	100
	소계	-	-	90	71.4	36	28.6	126	100
울산	중구	1	2.4	36	85.7	5	11.9	42	100
	남구	-	-	40	95.2	2	4.8	42	100
	동구	-	-	28	93.3	2	6.7	30	100
	북구	-	-	21	87.5	3	12.5	24	100
	울주군	-	-	32	88.9	4	11.1	36	100
	소계	1	0.6	157	90.2	16	9.2	174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용급		잠재적		계	
경기	수원시	1	1.2	30	37.0	50	61.7	81	100
	성남시	-	-	123	87.9	17	12.1	140	100
	의정부시	7	6.1	70	60.9	38	33.0	115	100
	안양시	1	6.7	1	14.3	20	179.0	22	100
	부천시	1	1.2	10	11.9	73	86.9	84	100
	광명시	-	-	3	10.0	27	90.0	30	100
	평택시	-	-	6	23.1	20	76.9	26	100
	동두천시	1	9.1	8	72.7	2	18.2	11	100
	안산시	-	-	13	31.0	29	69.0	42	100
	고양시	2	5.0	153	88.4	18	10.4	173	100
	과천시	-	-	1	12.5	7	87.5	8	100
	구리시	2	3.5	37	64.9	18	31.6	57	100
	남양주시	4	1.8	142	63.1	79	35.1	225	100
	오산시	1	6.7	4	26.7	10	66.7	15	100
	시흥시	2	5.1	5	12.8	32	82.1	39	100
	군포시	1	4.0	3	12.0	21	84.0	25	100
	의왕시	-	-	-	-	11	100	11	100
	하남시	1	4.0	15	60.0	9	36.0	25	100
	용인시	-	-	104	92.9	8	7.1	112	100
	파주시	2	2.3	73	83.9	12	13.8	87	100
	이천시	-	-	6	75.0	2	25.0	8	100
	안성시	-	-	9	60.0	6	40.0	15	100
	김포시	1	2.3	35	81.4	7	16.3	43	100
	화성시	-	-	11	39.3	17	60.7	28	100
	광주시	-	-	32	91.4	3	8.6	35	100
	양주시	3	3.7	52	63.4	27	32.9	82	100
	포천시	-	-	24	58.5	17	41.5	41	100
	여주시	-	-	11	91.7	1	8.3	12	100
	연천군	-	-	6	85.7	1	14.3	7	100
	가평군	1	7.7	10	76.9	2	15.4	13	100
	양평군	-	-	17	94.4	1	5.6	18	100
	소계	31	1.9	1,014	62.2	585	35.9	1,630	100
강원	춘천시	2	1.6	111	89.5	11	8.9	124	100
	원주시	-	-	90	94.7	5	5.3	95	100
	강릉시	-	-	7	17.5	33	82.5	40	100
	동해시	-	-	2	16.7	10	83.3	12	100
	태백시	-	-	5	100	-	-	5	100
	속초시	-	-	1	9.1	10	90.9	11	100
	삼척시	-	-	-	-	6	100	6	100
	홍천군	-	-	31	93.9	2	6.1	33	100
	횡성군	-	-	2	100	-	-	2	100
	영월군	-	-	1	100	-	-	1	100
	평창군	-	-	4	100	-	-	4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정선군	-	-	5	71.4	2	28.6	7	100
	철원군	-	-	3	100	-	-	3	100
	화천군	-	-	1	100	-	-	1	100
	양구군	-	-	-	-	-	-	-	-
	인제군	-	-	5	83.3	1	16.7	6	100
	고성군	-	-	-	-	2	100	2	100
	양양군	-	-	-	-	4	100	4	100
	소계	2	0.6	268	75.3	86	24.2	356	100
충북	청주시	12	12.4	78	80.4	7	7.2	97	100
	충주시	2	4.3	31	67.4	13	28.3	46	100
	제천시	1	6.7	9	60.0	5	33.3	15	100
	보은군	-	-	6	100	-	-	6	100
	옥천군	-	-	6	85.7	1	14.3	7	100
	영동군	-	-	-	-	1	100	1	100
	진천군	1	7.1	13	92.9	-	-	14	100
	괴산군	-	-	9	81.8	2	18.2	11	100
	음성군	1	5.0	14	70.0	5	25.0	20	100
	단양군	-	-	-	-	-	-	-	-
	증평군	-	-	3	60.0	2	40.0	5	100
	소계	17	7.7	169	76.1	36	16.2	222	100
충남	천안시	2	5.6	31	86.1	3	8.3	36	100
	공주시	1	3.8	17	65.4	8	30.8	26	100
	보령시	15	65.2	5	21.7	3	13.0	23	100
	아산시	3	13.0	18	78.3	2	8.7	23	100
	서산시	-	-	36	87.8	5	12.2	41	100
	논산시	1	4.2	15	62.5	8	33.3	24	100
	계룡시	-	-	2	100	-	-	2	100
	당진시	-	-	14	77.8	4	22.2	18	100
	금산군	1	10.0	5	50.0	4	40.0	10	100
	부여군	-	-	9	100	-	-	9	100
	서천군	-	-	8	57.1	6	42.9	14	100
	청양군	-	-	2	66.7	1	33.3	3	100
	홍성군	-	-	10	90.9	1	9.1	11	100
	예산군	-	-	14	87.5	2	12.5	16	100
	태안군	1	33.3	2	66.7	-	-	3	100
	소계	24	9.3	188	72.6	47	18.1	259	10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1	3.3	26	86.7	3	10.0	30	100
	소계	1	3.3	26	86.7	3	10.0	30	100
전북	전주시	-	-	82	76.6	25	23.4	107	100
	군산시	-	-	14	35.0	26	65.0	40	100
	익산시	-	-	13	40.6	19	59.4	32	100
	정읍시	-	-	4	19.0	17	81.0	21	100
	남원시	-	-	7	100	-	-	7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김제시	-	-	11	45.8	13	54.2	24	100
	완주군	-	-	6	46.2	7	53.8	13	100
	진안군	-	-	5	100	-	-	5	100
	무주군	-	-	2	66.7	1	33.3	3	100
	장수군	-	-	7	100	-	-	7	100
	임실군	-	-	5	71.4	2	28.6	7	100
	순창군	-	-	2	66.7	1	33.3	3	100
	고창군	-	-	6	26.1	17	73.9	23	100
	부안군	-	-	2	33.3	4	66.7	6	100
	소계	-	-	166	55.7	132	44.3	298	100
전남	목포시	1	1.3	66	85.7	10	13.0	77	100
	여수시	2	6.7	28	93.3	-	-	30	100
	순천시	1	2.3	43	97.7	-	-	44	100
	나주시	-	-	67	93.1	5	6.9	72	100
	광양시	-	-	14	100	-	-	14	100
	담양군	-	-	15	100	-	-	15	100
	곡성군	-	-	2	100	-	-	2	100
	구례군	-	-	5	100	-	-	5	100
	고흥군	2	9.5	19	90.5	-	-	21	100
	보성군	-	-	9	100	-	-	9	100
	화순군	-	-	-	-	-	-	-	-
	장흥군	-	-	6	100	-	-	6	100
	강진군	-	-	14	100	-	-	14	100
	해남군	-	-	26	74.3	9	25.7	35	100
	영암군	-	-	6	100	-	-	6	100
	무안군	1	5.6	13	72.2	4	22.2	18	100
	함평군	-	-	5	83.3	1	16.7	6	100
	영광군	-	-	11	68.8	5	31.3	16	100
	장성군	-	-	4	100	-	-	4	100
	완도군	-	-	3	75.0	1	25.0	4	100
	진도군	-	-	6	60.0	4	40.0	10	100
	신안군	-	-	9	100	-	-	9	100
	소계	7	1.7	371	89.0	39	9.4	417	100
경북	포항시	3	2.9	9	8.7	91	88.3	103	100
	경주시	-	-	6	12.5	42	87.5	48	100
	김천시	-	-	21	75.0	7	25.0	28	100
	안동시	1	1.5	46	70.8	18	27.7	65	100
	구미시	-	-	52	78.8	14	21.2	66	100
	영주시	-	-	15	93.8	1	6.3	16	100
	영천시	-	-	2	9.1	20	90.9	22	100
	상주시	-	-	29	82.9	6	17.1	35	100
	문경시	-	-	21	80.8	5	19.2	26	100
	경산시	1	1.6	28	45.2	33	53.2	62	100

지역	시군구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군위군	-	-	-	-	1	100	1	100
	의성군	-	-	5	62.5	3	37.5	8	100
	청송군	-	-	-	-	4	100	4	100
	영양군	-	-	-	-	-	-	-	-
	영덕군	-	-	1	25.0	3	75.0	4	100
	청도군	-	-	-	-	5	100	5	100
	고령군	-	-	-	-	1	100	1	100
	성주군	-	-	10	66.7	5	33.3	15	100
	칠곡군	8	30.8	5	19.2	13	50.0	26	100
	예천군	-	-	8	44.4	10	55.6	18	100
	봉화군	-	-	4	66.7	2	33.3	6	100
	울진군	-	-	-	-	5	100	5	100
	울릉군	-	-	-	-	5	100	5	100
	소계	13	2.3	262	46.0	294	51.7	569	100
경남	창원시	-	-	117	78.5	32	21.5	149	100
	진주시	-	-	34	55.7	27	44.3	61	100
	통영시	-	-	11	68.8	5	31.3	16	100
	사천시	-	-	9	50.0	9	50.0	18	100
	김해시	-	-	56	69.1	25	30.9	81	100
	밀양시	-	-	-	-	4	100	4	100
	거제시	-	-	14	73.7	5	26.3	19	100
	양산시	1	1.6	48	76.2	14	22.2	63	100
	의령군	-	-	1	50.0	1	50.0	2	100
	함안군	-	-	3	75.0	1	25.0	4	100
	창녕군	-	-	1	33.3	2	66.7	3	100
	고성군	-	-	-	-	2	100	2	100
	남해군	-	-	-	-	5	100	5	100
	하동군	-	-	4	50.0	4	50.0	8	100
	산청군	-	-	30	93.8	2	6.3	32	100
	함양군	-	-	3	60.0	2	40.0	5	100
	거창군	-	-	12	75.0	4	25.0	16	100
	합천군	-	-	12	92.3	1	7.7	13	100
	소계	1	0.2	355	70.9	145	28.9	501	100
제주	제주시	-	-	34	44.2	43	55.8	77	100
	서귀포시	-	-	50	98.0	1	2.0	51	100
	소계	-	-	84	65.6	44	34.4	128	100
합계		167	2.4	4,561	64.9	2,297	32.7	7,025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표 5-5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 분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신체적 학대	128	44.8	3,221	44.9	1,192	37.5	4,541	42.7
정서적 학대	100	35.0	2,924	40.8	1,507	47.4	4,531	42.6
성적 학대	21	7.3	214	3.0	30	0.9	265	2.5
경제적 학대	7	2.4	222	3.1	123	3.9	352	3.3
방임	18	6.3	504	7.0	236	7.4	758	7.1
자기방임	10	3.5	77	1.1	78	2.5	165	1.6
유기	2	0.7	10	0.1	14	0.4	26	0.2
계	286	100	7,172	100	3,180	100	10,638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025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38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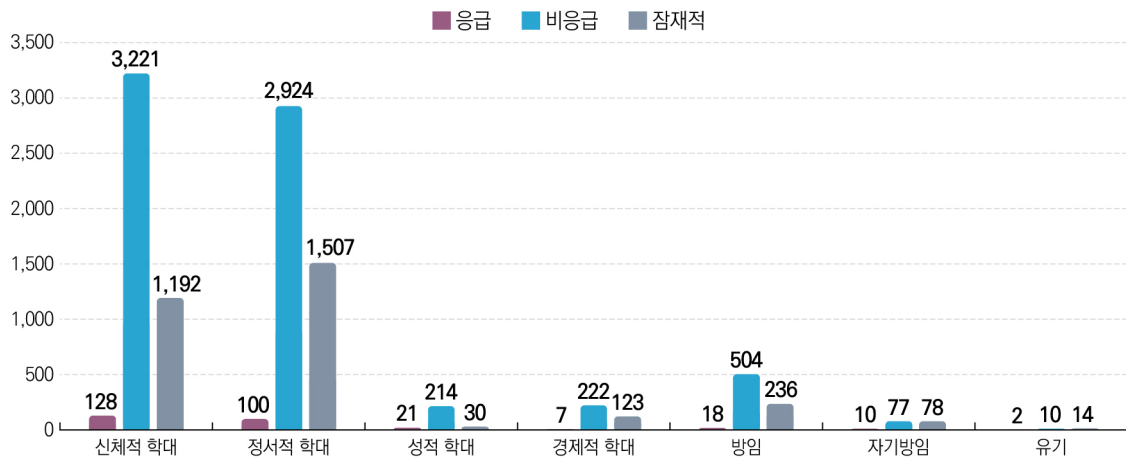


그림 5-2 사례판정 결과별 노인학대 유형

표 5-6 사례판정 결과별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신고자 유형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피해자 본인	13	7.8	187	4.1	144	6.3	344	4.9
학대행위자	-	-	5	0.1	2	0.1	7	0.1
친족 ¹⁷⁾	11	6.6	301	6.6	193	8.4	505	7.2
타인 ¹⁸⁾	16	9.6	110	2.4	64	2.8	190	2.7
관련기관 ¹⁹⁾	91	54.5	3,264	71.6	1,580	68.8	4,935	70.2
신고의무자*	36	21.6	694	15.2	314	13.7	1,044	14.9
계	167	100	4,561	100	2,297	100	7,025	100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경우, 「노인복지법」개정(21.12.21.)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분류되어 시행일 기준으로 분류·집계함 (시행: '22.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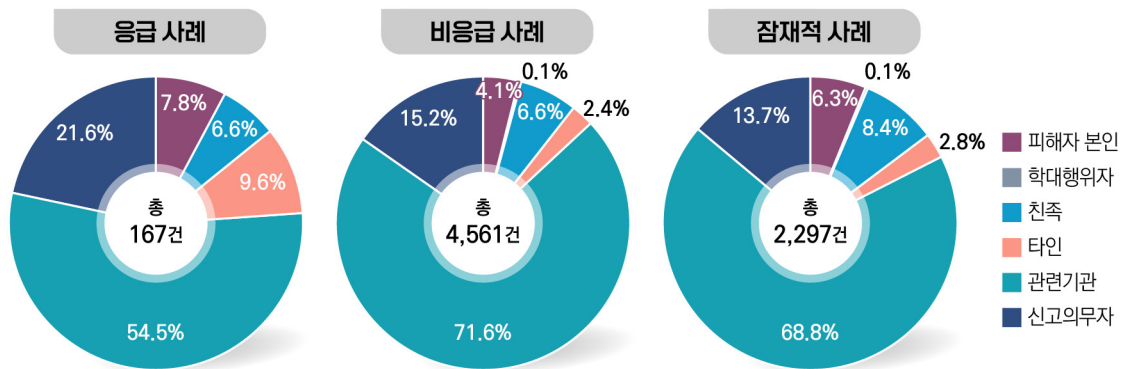


그림 5-3 사례판정 결과별 신고자 유형

17) 친족에는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이 해당됨.

18)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익명, 친구 등이 해당됨.

19)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됨.



PART 06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01 | 노인학대 유형 및 특성

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표 6-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중복학대	계
909	751	125	51	279	81	13	4,816	7,025
12.9	10.7	1.8	0.7	4.0	1.2	0.2	68.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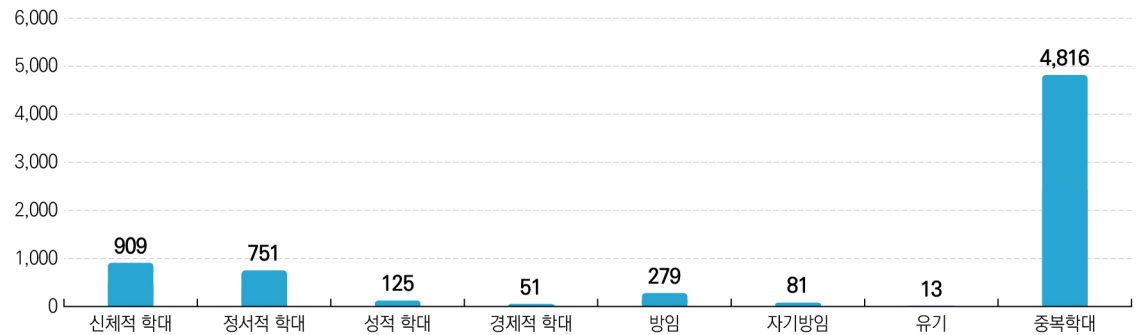


그림 6-1 노인학대 유형 I (학대피해노인 수)

2) 노인학대 유형II(학대유형 건수)

표 6-2 노인학대 유형II(학대유형 건수)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4,541	4,531	265	352	758	165	26	10,638
42.7	42.6	2.5	3.3	7.1	1.6	0.2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025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38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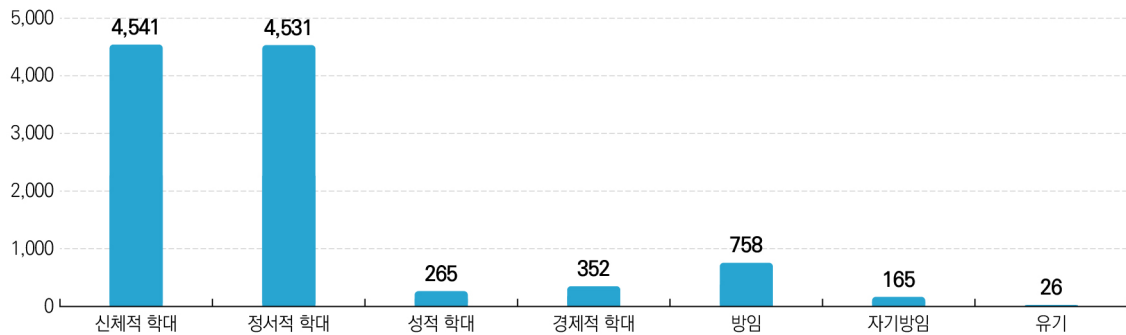


그림 6-2 노인학대 유형II(학대유형 건수)

표 6-3 시군구별 노인학대 유형II(학대유형 건수)

(단위: 건, %)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서울	종로구	5	41.7	6	50.0	-	-	-	-	1	8.3	-	-	-	12	100
	중구	12	40.0	15	50.0	1	3.3	1	3.3	1	3.3	-	-	-	30	100
	용산구	13	40.6	18	56.3	-	-	1	3.1	-	-	-	-	-	32	100
	성동구	6	46.2	7	53.8	-	-	-	-	-	-	-	-	-	13	100
	광진구	20	58.8	14	41.2	-	-	-	-	-	-	-	-	-	34	100
	동대문구	18	39.1	22	47.8	-	-	3	6.5	2	4.3	1	2.2	-	46	100
	종량구	28	43.8	34	53.1	-	-	1	1.6	-	-	1	1.6	-	64	100
	성북구	19	41.3	18	39.1	-	-	3	6.5	6	13.0	-	-	-	46	100
	강북구	13	31.7	18	43.9	-	-	6	14.6	3	7.3	1	2.4	-	41	100
	도봉구	11	35.5	13	41.9	-	-	-	-	7	22.6	-	-	-	31	100
	노원구	26	40.0	29	44.6	4	6.2	2	3.1	4	6.2	-	-	-	65	100
	은평구	22	35.5	30	48.4	1	1.6	2	3.2	7	11.3	-	-	-	62	100
	서대문구	21	41.2	24	47.1	1	2.0	3	5.9	2	3.9	-	-	-	51	100
	마포구	27	39.1	36	52.2	1	1.4	3	4.3	2	2.9	-	-	-	69	100
	양천구	23	41.1	31	55.4	-	-	1	1.8	1	1.8	-	-	-	56	100
	강서구	33	36.3	45	49.5	1	1.1	3	3.3	5	5.5	4	4.4	-	91	100
	구로구	22	47.8	19	41.3	2	4.3	2	4.3	1	2.2	-	-	-	46	100
	금천구	24	43.6	27	49.1	2	3.6	1	1.8	1	1.8	-	-	-	55	100
	영등포구	23	41.8	26	47.3	-	-	2	3.6	4	7.3	-	-	-	55	100
	동작구	22	41.5	30	56.6	-	-	-	-	1	1.9	-	-	-	53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관악구	42	39.3	56	52.3	-	-	5	4.7	3	2.8	1	0.9	-	-	107	100
	서초구	6	42.9	5	35.7	1	7.1	1	7.1	1	7.1	-	-	-	-	14	100
	강남구	14	41.2	17	50.0	1	2.9	2	5.9	-	-	-	-	-	-	34	100
	송파구	28	46.7	30	50.0	-	-	-	-	2	3.3	-	-	-	-	60	100
	강동구	22	43.1	26	51.0	1	2.0	1	2.0	1	2.0	-	-	-	-	51	100
	기타*	1	25.0	1	25.0	-	-	-	-	1	25.0	-	-	1	25.0	4	100
	총합계	501	41.0	597	48.9	16	1.3	43	3.5	56	4.6	8	0.7	1	0.1	1,222	100
부산	중구	16	53.3	14	46.7	-	-	-	-	2	3.3	-	-	-	-	30	100
	서구	9	39.1	12	52.2	-	-	1	4.3	1	4.3	-	-	-	-	23	100
	동구	24	46.2	22	42.3	2	3.8	4	7.7	-	-	-	-	-	-	52	100
	영도구	24	42.9	26	46.4	-	-	3	5.4	2	3.6	1	1.8	-	-	56	100
	부산진구	44	39.3	55	49.1	1	0.9	5	4.5	4	3.6	2	1.8	1	0.9	112	100
	동래구	15	28.3	27	50.9	-	-	3	5.7	7	13.2	1	1.9	-	-	53	100
	남구	46	46.0	46	46.0	1	1.0	1	1.0	3	3.0	3	3.0	-	-	100	100
	북구	30	39.0	35	45.5	-	-	5	6.5	5	6.5	1	1.3	1	1.3	77	100
	해운대구	40	42.1	48	50.5	-	-	5	5.3	2	2.1	-	-	-	-	95	100
	사하구	59	44.7	66	50.0	-	-	3	2.3	4	3.0	-	-	-	-	132	100
	금정구	19	43.2	21	47.7	-	-	1	2.3	-	-	2	4.5	1	2.3	44	100
	강서구	7	36.8	7	36.8	-	-	2	10.5	2	10.5	-	-	-	-	19	100
	연제구	22	43.1	24	47.1	-	-	2	3.9	2	3.9	-	-	1	2.0	51	100
	수영구	10	33.3	14	46.7	1	3.3	-	-	4	13.3	1	3.3	-	-	30	100
	사상구	28	40.6	32	46.4	2	2.9	1	1.4	5	7.2	1	1.4	-	-	69	100
	기장군	8	32.0	13	52.0	1	4.0	1	4.0	1	4.0	-	-	1	4.0	25	100
	총합계	401	41.4	462	47.7	9	0.9	37	3.8	42	4.3	12	1.2	5	0.5	968	100
대구	중구	8	44.4	8	44.4	-	-	-	-	-	-	2	11.1	-	-	18	100
	동구	42	42.4	46	46.5	1	1.0	2	2.0	2	2.0	6	6.1	-	-	99	100
	서구	27	37.5	33	45.8	1	1.4	2	2.8	6	8.3	3	4.2	-	-	72	100
	남구	27	47.4	24	42.1	-	-	3	5.3	2	3.5	1	1.8	-	-	57	100
	북구	35	44.3	35	44.3	1	1.3	1	1.3	2	2.5	5	6.3	-	-	79	100
	수성구	22	44.9	22	44.9	3	6.1	1	2.0	1	2.0	-	-	-	-	49	100
	달서구	57	47.9	56	47.1	1	0.8	-	-	5	4.2	-	-	-	-	119	100
	달성군	12	38.7	18	58.1	-	-	-	-	1	3.2	-	-	-	-	31	100
	군위군	1	50.0	1	50.0	-	-	-	-	-	-	-	-	-	-	2	100
	총합계	231	43.9	243	46.2	7	1.3	9	1.7	19	3.6	17	3.2	-	-	526	100
인천	중구	12	38.7	14	45.2	-	-	1	3.2	4	12.9	-	-	-	-	31	100
	동구	5	41.7	7	58.3	-	-	-	-	-	-	-	-	-	-	12	100
	미추홀구	18	36.7	21	42.9	2	4.1	1	2.0	4	8.2	3	6.1	-	-	49	100
	연수구	9	30.0	15	50.0	-	-	1	3.3	4	13.3	1	3.3	-	-	30	100
	남동구	55	34.6	74	46.5	-	-	10	6.3	17	10.7	2	1.3	1	0.6	159	100
	부평구	83	49.7	74	44.3	3	1.8	-	-	6	3.6	1	0.6	-	-	167	100
	계양구	32	50.0	29	45.3	-	-	-	-	2	3.1	1	1.6	-	-	64	100
	서구	72	49.0	64	43.5	2	1.4	3	2.0	5	3.4	-	-	1	0.7	147	100
	강화군	18	47.4	17	44.7	1	2.6	-	-	2	5.3	-	-	-	-	38	100
	옹진군	2	50.0	-	-	-	-	1	25.0	1	25.0	-	-	-	-	4	100
	총합계	306	43.7	315	44.9	8	1.1	17	2.4	45	6.4	8	1.1	2	0.3	701	100
광주	동구	27	64.3	14	33.3	-	-	1	2.4	-	-	-	-	-	-	42	100
	서구	40	60.6	23	34.8	-	-	2	3.0	1	1.5	-	-	-	-	66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남구	29	51.8	21	37.5	1	1.8	1	1.8	3	5.4	-	-	1	1.8	56	100
	북구	43	53.1	35	43.2	1	1.2	-	-	1	1.2	1	1.2	-	-	81	100
	광산구	19	42.2	22	48.9	-	-	-	-	3	6.7	1	2.2	-	-	45	100
	총합계	158	54.5	115	39.7	2	0.7	4	1.4	8	2.8	2	0.7	1	0.3	290	100
대전	동구	12	27.9	11	25.6	-	-	3	7.0	16	37.2	1	2.3	-	-	43	100
	중구	18	40.0	19	42.2	3	6.7	2	4.4	-	-	3	6.7	-	-	45	100
	서구	14	20.3	15	21.7	1	1.4	1	1.4	36	52.2	1	1.4	1	1.4	69	100
	유성구	7	38.9	8	44.4	-	-	2	11.1	1	5.6	-	-	-	-	18	100
	대덕구	7	35.0	10	50.0	2	10.0	-	-	1	5.0	-	-	-	-	20	100
	기타*	-	-	1	100	-	-	-	-	-	-	-	-	-	-	1	100
	총합계	58	29.6	64	32.7	6	3.1	8	4.1	54	27.6	5	2.6	1	0.5	196	100
울산	중구	24	35.8	34	50.7	1	1.5	2	3.0	6	9.0	-	-	-	-	67	100
	남구	26	40.0	34	52.3	-	-	3	4.6	1	1.5	1	1.5	-	-	65	100
	동구	26	51.0	23	45.1	-	-	-	-	2	3.9	-	-	-	-	51	100
	북구	17	44.7	20	52.6	-	-	-	-	1	2.6	-	-	-	-	38	100
	울주군	23	44.2	24	46.2	1	1.9	1	1.9	2	3.8	-	-	1	1.9	52	100
	총합계	116	42.5	135	49.5	2	0.7	6	2.2	12	4.4	1	0.4	1	0.4	273	100
경기	수원시	51	45.1	52	46.0	-	-	2	1.8	4	3.5	4	3.5	-	-	113	100
	성남시	109	51.7	86	40.8	2	0.9	1	0.5	12	5.7	-	-	1	0.5	211	100
	의정부시	69	49.6	48	34.5	2	1.4	4	2.9	15	10.8	-	-	1	0.7	139	100
	안양시	14	45.2	15	48.4	-	-	-	-	1	3.2	1	3.2	-	-	31	100
	부천시	44	37.6	68	58.1	1	0.9	-	-	2	1.7	2	1.7	-	-	117	100
	광명시	18	47.4	18	47.4	-	-	-	-	1	2.6	1	2.6	-	-	38	100
	평택시	17	47.2	17	47.2	1	2.8	1	2.8	-	-	-	-	-	-	36	100
	동두천시	8	47.1	9	52.9	-	-	-	-	-	-	-	-	-	-	17	100
	안산시	28	48.3	28	48.3	-	-	-	-	1	1.7	1	1.7	-	-	58	100
	고양시	137	52.3	105	40.1	1	0.4	6	2.3	12	4.6	1	0.4	-	-	262	100
	과천시	6	46.2	7	53.8	-	-	-	-	-	-	-	-	-	-	13	100
	구리시	37	57.8	21	32.8	2	3.1	1	1.6	3	4.7	-	-	-	-	64	100
	남양주시	135	50.8	103	38.7	2	0.8	8	3.0	16	6.0	-	-	2	0.8	266	100
	오산시	11	47.8	11	47.8	-	-	-	-	1	4.3	-	-	-	-	23	100
	시흥시	23	44.2	21	40.4	1	1.9	-	-	7	13.5	-	-	-	-	52	100
	군포시	14	37.8	22	59.5	-	-	-	-	1	2.7	-	-	-	-	37	100
	의왕시	2	16.7	4	33.3	-	-	-	-	6	50.0	-	-	-	-	12	100
	하남시	18	60.0	4	13.3	3	10.0	-	-	5	16.7	-	-	-	-	30	100
	용인시	75	49.0	59	38.6	-	-	-	-	16	10.5	2	1.3	1	0.7	153	100
	파주시	67	48.6	63	45.7	-	-	-	-	8	5.8	-	-	-	-	138	100
	이천시	7	46.7	7	46.7	-	-	1	6.7	-	-	-	-	-	-	15	100
	안성시	9	42.9	10	47.6	1	4.8	-	-	1	4.8	-	-	-	-	21	100
	김포시	32	47.8	29	43.3	-	-	-	-	5	7.5	-	-	1	1.5	67	100
	화성시	23	56.1	16	39.0	-	-	-	-	2	4.9	-	-	-	-	41	100
	광주시	22	50.0	20	45.5	-	-	1	2.3	-	-	-	-	1	2.3	44	100
	양주시	49	49.5	34	34.3	-	-	4	4.0	12	12.1	-	-	-	-	99	100
	포천시	32	61.5	13	25.0	1	1.9	1	1.9	5	9.6	-	-	-	-	52	100
	여주시	6	33.3	9	50.0	-	-	1	5.6	1	5.6	1	5.6	-	-	18	100
	연천군	4	44.4	2	22.2	-	-	-	-	3	33.3	-	-	-	-	9	100
	가평군	8	53.3	6	40.0	-	-	-	-	1	6.7	-	-	-	-	15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양평군	13	44.8	16	55.2	-	-	-	-	-	-	-	-	-	-	29	100
	총합계	1,088	49.0	923	41.6	17	0.8	31	1.4	141	6.4	13	0.6	7	0.3	2,220	100
강원	춘천시	59	26.0	65	28.6	14	6.2	28	12.3	56	24.7	5	2.2	-	-	227	100
	원주시	64	41.0	38	24.4	17	10.9	5	3.2	32	20.5	-	-	-	-	156	100
	강릉시	23	37.7	27	44.3	1	1.6	4	6.6	4	6.6	2	3.3	-	-	61	100
	동해시	7	38.9	8	44.4	-	-	2	11.1	1	5.6	-	-	-	-	18	100
	태백시	5	50.0	3	30.0	-	-	2	20.0	-	-	-	-	-	-	10	100
	속초시	7	38.9	8	44.4	-	-	2	11.1	1	5.6	-	-	-	-	18	100
	삼척시	3	50.0	1	16.7	1	16.7	-	-	1	16.7	-	-	-	-	6	100
	홍천군	17	34.0	9	18.0	11	22.0	5	10.0	7	14.0	1	2.0	-	-	50	100
	횡성군	2	50.0	2	50.0	-	-	-	-	-	-	-	-	-	-	4	100
	영월군	-	-	1	100	-	-	-	-	-	-	-	-	-	-	1	100
	평창군	4	50.0	3	37.5	-	-	1	12.5	-	-	-	-	-	-	8	100
	정선군	5	45.5	5	45.5	-	-	-	-	-	-	1	9.1	-	-	11	100
	철원군	2	40.0	3	60.0	-	-	-	-	-	-	-	-	-	-	5	100
	화천군	1	100	-	-	-	-	-	-	-	-	-	-	-	-	1	100
	양구군	-	-	-	-	-	-	-	-	-	-	-	-	-	-	-	-
	인제군	5	41.7	6	50.0	-	-	1	8.3	-	-	-	-	-	-	12	100
	고성군	1	50.0	1	50.0	-	-	-	-	-	-	-	-	-	-	2	100
	양양군	3	42.9	3	42.9	-	-	-	-	1	14.3	-	-	-	-	7	100
	총합계	208	34.8	183	30.7	44	7.4	50	8.4	103	17.3	9	1.5	-	-	597	100
충북	청주시	72	41.1	72	41.1	7	4.0	14	8.0	5	2.9	5	2.9	-	-	175	100
	충주시	29	37.7	30	39.0	2	2.6	2	2.6	8	10.4	6	7.8	-	-	77	100
	제천시	6	26.1	6	26.1	3	13.0	-	-	3	13.0	5	21.7	-	-	23	100
	보은군	6	50.0	5	41.7	-	-	1	8.3	-	-	-	-	-	-	12	100
	옥천군	6	46.2	4	30.8	1	7.7	-	-	1	7.7	1	7.7	-	-	13	100
	영동군	-	-	-	-	-	-	1	100	-	-	-	-	-	-	1	100
	진천군	10	32.3	8	25.8	3	9.7	4	12.9	5	16.1	-	-	1	3.2	31	100
	괴산군	7	35.0	7	35.0	1	5.0	1	5.0	3	15.0	1	5.0	-	-	20	100
	음성군	14	42.4	13	39.4	1	3.0	1	3.0	1	3.0	3	9.1	-	-	33	100
	단양군	-	-	-	-	-	-	-	-	-	-	-	-	-	-	-	-
	증평군	3	27.3	5	45.5	-	-	3	27.3	-	-	-	-	-	-	11	100
	총합계	153	38.6	150	37.9	18	4.5	27	6.8	26	6.6	21	5.3	1	0.3	396	100
충남	천안시	24	42.1	23	40.4	1	1.8	2	3.5	6	10.5	1	1.8	-	-	57	100
	공주시	20	51.3	15	38.5	1	2.6	1	2.6	1	2.6	1	2.6	-	-	39	100
	보령시	21	48.8	6	14.0	15	34.9	-	-	1	2.3	-	-	-	-	43	100
	아산시	15	41.7	13	36.1	-	-	-	-	4	11.1	3	8.3	1	2.8	36	100
	서산시	24	36.9	32	49.2	2	3.1	2	3.1	3	4.6	1	1.5	1	1.5	65	100
	논산시	14	45.2	12	38.7	-	-	1	3.2	4	12.9	-	-	-	-	31	100
	계룡시	1	25.0	1	25.0	-	-	-	-	2	50.0	-	-	-	-	4	100
	당진시	11	39.3	11	39.3	-	-	1	3.6	4	14.3	1	3.6	-	-	28	100
	금산군	4	40.0	2	20.0	-	-	-	-	4	40.0	-	-	-	-	10	100
	부여군	7	70.0	3	30.0	-	-	-	-	-	-	-	-	-	-	10	100
	서천군	11	55.0	7	35.0	-	-	-	-	2	10.0	-	-	-	-	20	100
	청양군	2	40.0	3	60.0	-	-	-	-	-	-	-	-	-	-	5	100
	홍성군	10	66.7	4	26.7	-	-	-	-	1	6.7	-	-	-	-	15	100
	예산군	10	43.5	10	43.5	-	-	-	-	3	13.0	-	-	-	-	23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세종	태안군	2	50.0	2	50.0	-	-	-	-	-	-	-	-	-	-	4	100
	총합계	176	45.1	144	36.9	19	4.9	7	1.8	35	7.9	7	1.6	2	0.5	390	100
	세종특별자치시	23	43.4	26	49.1	1	1.9	3	5.7	-	-	-	-	-	-	53	100
전북	총합계	23	43.4	26	49.1	1	1.9	3	5.7	-	-	-	-	-	-	53	100
	전주시	69	41.1	71	42.3	9	5.4	5	3.0	11	6.5	3	1.8	-	-	168	100
	군산시	25	44.6	23	41.1	3	5.4	2	3.6	-	-	3	5.4	-	-	56	100
	익산시	20	45.5	19	43.2	-	-	-	-	5	11.4	-	-	-	-	44	100
	정읍시	14	45.2	10	32.3	-	-	3	9.7	2	6.5	2	6.5	-	-	31	100
	남원시	7	53.8	6	46.2	-	-	-	-	-	-	-	-	-	-	13	100
	김제시	15	39.5	19	50.0	-	-	2	5.3	1	2.6	1	2.6	-	-	38	100
	완주군	8	36.4	10	45.5	1	4.5	2	9.1	1	4.5	-	-	-	-	22	100
	진안군	5	55.6	4	44.4	-	-	-	-	-	-	-	-	-	-	9	100
	무주군	-	-	1	33.3	-	-	-	-	2	66.7	-	-	-	-	3	100
	장수군	6	46.2	7	53.8	-	-	-	-	-	-	-	-	-	-	13	100
	임실군	5	50.0	5	50.0	-	-	-	-	-	-	-	-	-	-	10	100
	순창군	2	50.0	1	25.0	1	25.0	-	-	-	-	-	-	-	-	4	100
	고창군	10	34.5	18	62.1	-	-	1	3.4	-	-	-	-	-	-	29	100
	부안군	6	66.7	3	33.3	-	-	-	-	-	-	-	-	-	-	9	100
	총합계	192	42.8	197	43.9	14	3.1	15	3.3	22	4.9	9	2.0	-	-	449	100
전남	목포시	24	28.2	17	20.0	8	9.4	2	2.4	30	35.3	4	4.7	-	-	85	100
	여수시	20	45.5	22	50.0	-	-	-	-	1	2.3	1	2.3	-	-	44	100
	순천시	17	31.5	33	61.1	-	-	2	3.7	1	1.9	1	1.9	-	-	54	100
	나주시	19	25.3	11	14.7	40	53.3	2	2.7	3	4.0	-	-	-	-	75	100
	광양시	10	50.0	10	50.0	-	-	-	-	-	-	-	-	-	-	20	100
	담양군	9	39.1	14	60.9	-	-	-	-	-	-	-	-	-	-	23	100
	곡성군	1	33.3	2	66.7	-	-	-	-	-	-	-	-	-	-	3	100
	구례군	3	42.9	3	42.9	-	-	-	-	1	14.3	-	-	-	-	7	100
	고흥군	12	37.5	19	59.4	1	3.1	-	-	-	-	-	-	-	-	32	100
	보성군	6	42.9	7	50.0	1	7.1	-	-	-	-	-	-	-	-	14	100
	화순군	-	-	-	-	-	-	-	-	-	-	-	-	-	-	-	-
	장흥군	5	50.0	5	50.0	-	-	-	-	-	-	-	-	-	-	10	100
	강진군	10	55.6	7	38.9	-	-	-	-	1	5.6	-	-	-	-	18	100
	해남군	18	45.0	14	35.0	2	5.0	-	-	6	15.0	-	-	-	-	40	100
	영암군	3	50.0	2	33.3	-	-	1	16.7	-	-	-	-	-	-	6	100
	무안군	6	30.0	8	40.0	1	5.0	2	10.0	3	15.0	-	-	-	-	20	100
	함평군	4	66.7	1	16.7	1	16.7	-	-	-	-	-	-	-	-	6	100
	영광군	7	41.2	7	41.2	1	5.9	-	-	2	11.8	-	-	-	-	17	100
	장성군	1	20.0	4	80.0	-	-	-	-	-	-	-	-	-	-	5	100
	완도군	4	80.0	1	20.0	-	-	-	-	-	-	-	-	-	-	5	100
	진도군	4	36.4	2	18.2	-	-	-	-	3	27.3	2	18.2	-	-	11	100
	신안군	3	27.3	6	54.5	-	-	1	9.1	1	9.1	-	-	-	-	11	100
	총합계	186	36.8	195	38.5	55	10.9	10	2.0	52	10.3	8	1.6	-	-	506	100
경북	포항시	48	30.6	89	56.7	3	1.9	8	5.1	6	3.8	3	1.9	-	-	157	100
	경주시	34	39.5	43	50.0	-	-	5	5.8	1	1.2	3	3.5	-	-	86	100
	김천시	16	39.0	19	46.3	-	-	2	4.9	3	7.3	1	2.4	-	-	41	100
	안동시	44	41.9	46	43.8	-	-	7	6.7	3	2.9	5	4.8	-	-	105	100
	구미시	44	44.0	41	41.0	3	3.0	5	5.0	5	5.0	2	2.0	-	-	100	100

지역	시군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영주시	11	40.7	11	40.7	-	-	1	3.7	2	7.4	2	7.4	-	-	27	100
	영천시	17	43.6	17	43.6	-	-	1	2.6	3	7.7	1	2.6	-	-	39	100
	상주시	17	36.2	24	51.1	3	6.4	1	2.1	1	2.1	1	2.1	-	-	47	100
	문경시	17	48.6	15	42.9	-	-	-	-	3	8.6	-	-	-	-	35	100
	경산시	28	28.0	35	35.0	21	21.0	4	4.0	10	10.0	2	2.0	-	-	100	100
	군위군	-	-	1	50.0	-	-	-	-	1	50.0	-	-	-	-	2	100
	의성군	3	25.0	5	41.7	-	-	2	16.7	1	8.3	1	8.3	-	-	12	100
	청송군	4	50.0	4	50.0	-	-	-	-	-	-	-	-	-	-	8	100
	영양군	-	-	-	-	-	-	-	-	-	-	-	-	-	-	-	-
	영덕군	4	50.0	4	50.0	-	-	-	-	-	-	-	-	-	-	8	100
	청도군	2	28.6	3	42.9	-	-	1	14.3	1	14.3	-	-	-	-	7	100
	고령군	1	50.0	1	50.0	-	-	-	-	-	-	-	-	-	-	2	100
	성주군	10	50.0	8	40.0	-	-	-	-	1	5.0	1	5.0	-	-	20	100
	칠곡군	21	50.0	15	35.7	1	2.4	2	4.8	3	7.1	-	-	-	-	42	100
	예천군	6	25.0	11	45.8	-	-	1	4.2	2	8.3	4	16.7	-	-	24	100
	봉화군	6	54.5	4	36.4	-	-	1	9.1	-	-	-	-	-	-	11	100
	울진군	3	42.9	2	28.6	1	14.3	-	-	1	14.3	-	-	-	-	7	100
	울릉군	1	16.7	4	66.7	-	-	-	-	1	16.7	-	-	-	-	6	100
	총합계	337	38.0	402	45.4	32	3.6	41	4.6	48	5.4	26	2.9	-	-	886	100
경남	창원시	105	45.1	101	43.3	2	0.9	10	4.3	12	5.2	3	1.3	-	-	233	100
	진주시	40	46.0	30	34.5	2	2.3	6	6.9	6	6.9	3	3.4	-	-	87	100
	통영시	13	52.0	7	28.0	-	-	2	8.0	3	12.0	-	-	-	-	25	100
	사천시	16	53.3	12	40.0	-	-	2	6.7	-	-	-	-	-	-	30	100
	김해시	56	45.5	53	43.1	2	1.6	5	4.1	5	4.1	-	-	2	1.6	123	100
	밀양시	3	42.9	3	42.9	-	-	-	-	1	14.3	-	-	-	-	7	100
	거제시	13	41.9	13	41.9	-	-	1	3.2	4	12.9	-	-	-	-	31	100
	양산시	44	44.4	45	45.5	2	2.0	1	1.0	6	6.1	-	-	1	1.0	99	100
	의령군	1	50.0	1	50.0	-	-	-	-	-	-	-	-	-	-	2	100
	함안군	3	33.3	3	33.3	-	-	2	22.2	1	11.1	-	-	-	-	9	100
	창녕군	3	50.0	2	33.3	-	-	1	16.7	-	-	-	-	-	-	6	100
	고성군	1	50.0	-	-	-	-	-	-	-	-	-	-	1	50.0	2	100
	남해군	4	66.7	1	16.7	-	-	-	-	-	-	1	16.7	-	-	6	100
	하동군	5	55.6	2	22.2	-	-	1	11.1	1	11.1	-	-	-	-	9	100
	산청군	4	10.8	2	5.4	-	-	-	-	30	81.1	-	-	1	2.7	37	100
	함양군	4	44.4	4	44.4	-	-	1	11.1	-	-	-	-	-	-	9	100
	거창군	8	40.0	4	20.0	6	30.0	-	-	1	5.0	1	5.0	-	-	20	100
	합천군	3	18.8	4	25.0	-	-	1	6.3	8	50.0	-	-	-	-	16	100
	총합계	326	43.4	287	38.2	14	1.9	33	4.4	78	10.4	8	1.1	5	0.7	751	100
제주	제주시	47	39.2	54	45.0	-	-	3	2.5	8	6.7	8	6.7	-	-	120	100
	서귀포시	34	36.2	39	41.5	1	1.1	8	8.5	9	9.6	3	3.2	-	-	94	100
	총합계	81	37.9	93	43.5	1	0.5	11	5.1	17	7.9	11	5.1	-	-	214	100
합계		4,541	42.7	4,531	42.6	265	2.5	352	3.3	758	7.1	165	1.6	26	0.2	10,638*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025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38건)에는 차이가 있음

표 6-4 노인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단위: 건, %)

구 분	학대 유형별 구체적 행위	건 수	비 율
신체적 학대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제한한다.	100	0.9
	노인을 폭행한다.	3,330	31.3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2	0.0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	142	1.3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17	0.2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12	0.1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936	8.8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2	0.0
	소계	4,541	42.7
정서적 학대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14	0.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205	1.9
	노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다.	24	0.2
	노인을 무시하거나 기피한다.	23	0.2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4,041	38.0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다.	42	0.4
	노인의 사생활과 입·퇴소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을 제한한다.	4	0.0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178	1.7
	소계	4,531	42.6
성적 학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	205	1.9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60	0.6
	소계	265	2.5
경제적 학대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242	2.3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87	0.8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23	0.2
	소계	352	3.3
방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221	2.1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27	0.3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144	1.4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	134	1.3
	노인의 일상생활 관련 보호 및 서비스를 방치한다.	149	1.4
	의료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56	0.5
	자기방임 노인을 방치한다.	3	0.0
	학대사례를 방치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	24	0.2
	소계	758	7.1
자기 방임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	165	1.6
	소계	165	1.6
유기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26	0.2
	소계	26	0.2
계		10,638*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025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38건)에는 차이가 있음

3)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표 6-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단위: 건, %)

구 분	남 성	여 성	계
신체적 학대	968	3,573	4,541
	21.3	78.7	100
정서적 학대	935	3,596	4,531
	20.6	79.4	100
성적 학대	48	217	265
	18.1	81.9	100
경제적 학대	110	242	352
	31.3	68.8	100
방임	272	486	758
	35.9	64.1	100
자기방임	93	72	165
	56.4	43.6	100
유기	16	10	26
	61.5	38.5	100
계	2,442	8,196	10,638*
	23.0	77.0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025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38건)에는 차이가 있음

4)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표 6-6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연령

(단위: 건, %)

구 분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 89세	90~ 94세	95~ 99세	100세 이상	계
신체적 학대	1,206	1,106	903	757	399	133	34	3	4,541
	26.6	24.4	19.9	16.7	8.8	2.9	0.7	0.1	100
정서적 학대	1,204	1,134	905	751	396	115	24	2	4,531
	26.6	25.0	20.0	16.6	8.7	2.5	0.5	0.0	100
성적 학대	36	33	37	45	55	42	13	4	265
	13.6	12.5	14.0	17.0	20.8	15.8	4.9	1.5	100
경제적 학대	56	61	80	70	57	25	3	-	352
	15.9	17.3	22.7	19.9	16.2	7.1	0.9	-	100
방 임	63	64	111	185	195	111	28	1	758
	8.3	8.4	14.6	24.4	25.7	14.6	3.7	0.1	100
자기방임	31	40	38	26	25	5	-	-	165
	18.8	24.2	23.0	15.8	15.2	3.0	-	-	100
유 기	1	7	6	7	4	1	-	-	26
	3.8	26.9	23.1	26.9	15.4	3.8	-	-	100
계	2,597	2,445	2,080	1,841	1,131	432	102	10	10,638*
	24.4	23.0	19.6	17.3	10.6	4.1	1.0	0.1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025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38건)에는 차이가 있음

5)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표 6-7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신체적 학대	1	2,219	1,299	46	342	31	124	49	153	277	4,541
	0.0	48.9	28.6	1.0	7.5	0.7	2.7	1.1	3.4	6.1	100
정서적 학대	2	2,154	1,456	55	404	34	100	50	174	102	4,531
	0.0	47.5	32.1	1.2	8.9	0.8	2.2	1.1	3.8	2.3	100
성적 학대	-	42	10	-	1	-	2	1	21	188	265
	-	15.8	3.8	-	0.4	-	0.8	0.4	7.9	70.9	100
경제적 학대	-	45	161	5	42	-	15	8	31	45	352
	-	12.8	45.7	1.4	11.9	-	4.3	2.3	8.8	12.8	100
방임	2	42	164	7	63	-	6	10	6	458	758
	0.3	5.5	21.6	0.9	8.3	-	0.8	1.3	0.8	60.4	100
자기방임	154	3	5	-	-	-	1	1	1	-	165
	93.3	1.8	3.0	-	-	-	0.6	0.6	0.6	-	100
유기	-	4	16	-	5	-	-	-	-	1	26
	-	15.4	61.5	-	19.2	-	-	-	-	3.8	100
계	159	4,509	3,111	113	857	65	248	119	386	1,071	10,638*
	1.5	42.4	29.2	1.1	8.1	0.6	2.3	1.1	3.6	10.1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025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38건)에는 차이가 있음

6)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표 6-8 노인학대 유형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노인 독거	449	544	31	127	244	146	6	1,547
	9.9	12.0	11.7	36.1	32.2	88.5	23.1	14.5
노인 부부	2,113	2,031	42	59	57	8	5	4,315
	46.5	44.8	15.8	16.8	7.5	4.8	19.2	40.6
손자녀 동거	144	152	2	16	11	1	-	326
	3.2	3.4	0.8	4.5	1.5	0.6	-	3.1
자녀· 손자녀동거	126	148	1	5	4	-	-	284
	2.8	3.3	0.4	1.4	0.5	-	-	2.7
자녀 동거	1,365	1,456	15	99	130	8	6	3,079
	30.1	32.1	5.7	28.1	17.2	4.8	23.1	28.9
기타	344	200	174	46	312	2	9	1,087
	7.6	4.4	65.7	13.1	41.2	1.2	34.6	10.2
계	4,541	4,531	265	352	758	165	26	10,63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025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38건)에는 차이가 있음

7) 학대발생장소

표 6-9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일반병원			
6,079	537	34	-	108	107	8	64	88	7,025
86.5	7.6	0.5	-	1.5	1.5	0.1	0.9	1.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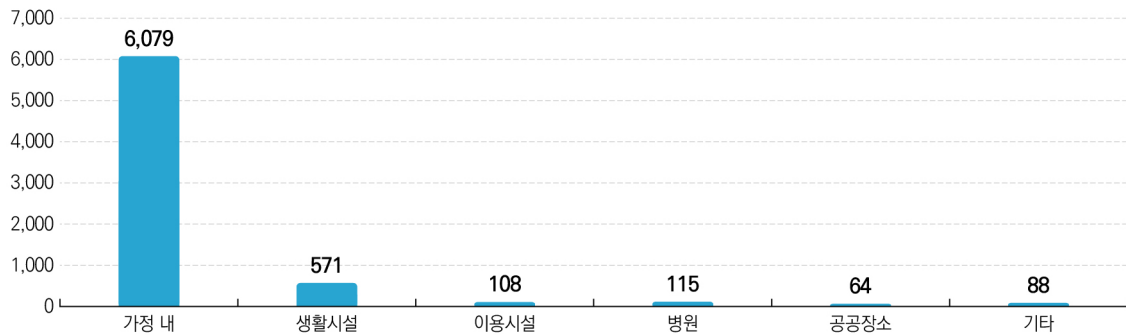


그림 6-3 학대발생장소

표 6-10 시군구별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지역	시군구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서울	종로구	7	100	-	-	-	-	-	-	-	-	-	-	7	100
	중구	14	87.5	1	6.3	-	-	-	-	-	-	1	6.3	16	100
	용산구	20	100	-	-	-	-	-	-	-	-	-	-	20	100
	성동구	11	100	-	-	-	-	-	-	-	-	-	-	11	100
	광진구	22	95.7	1	4.3	-	-	-	-	-	-	-	-	23	100
	동대문구	22	88.0	2	8.0	-	-	-	-	-	-	1	4.0	25	100
	중랑구	40	97.6	-	-	-	-	-	-	1	2.4	-	-	41	100
	성북구	27	100	-	-	-	-	-	-	-	-	-	-	27	100
	강북구	21	91.3	1	4.3	-	-	1	4.3	-	-	-	-	23	100
	도봉구	18	90.0	1	5.0	-	-	1	5.0	-	-	-	-	20	100
	노원구	38	95.0	1	2.5	1	2.5	-	-	-	-	-	-	40	100
	은평구	28	80.0	2	5.7	3	8.6	2	5.7	-	-	-	-	35	100
	서대문구	25	96.2	1	3.8	-	-	-	-	-	-	-	-	26	100
	마포구	37	94.9	2	5.1	-	-	-	-	-	-	-	-	39	100
	양천구	31	93.9	-	-	1	3.0	-	-	-	-	1	3.0	33	100
	강서구	46	92.0	1	2.0	1	2.0	1	2.0	-	-	1	2.0	50	100
	구로구	21	87.5	1	4.2	-	-	-	-	1	4.2	1	4.2	24	100
	금천구	28	96.6	-	-	-	-	-	-	-	-	1	3.4	29	100

지역	시군구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영등포구	29	100	-	-	-	-	-	-	-	-	-	-	29	100
	동작구	32	97.0	-	-	1	3.0	-	-	-	-	-	-	33	100
	관악구	61	96.8	2	3.2	-	-	-	-	-	-	-	-	63	100
	서초구	7	87.5	-	-	-	-	1	12.5	-	-	-	-	8	100
	강남구	19	95.0	-	-	-	-	-	-	-	-	1	5.0	20	100
	송파구	38	95.0	-	-	-	-	-	-	-	-	2	5.0	40	100
	강동구	33	94.3	1	2.9	-	-	1	2.9	-	-	-	-	35	100
	기타*	1	50.0	-	-	-	-	-	-	-	-	1	50.0	2	100
	소계	676	94.0	17	2.4	7	1.0	7	1.0	2	0.3	10	1.4	719	100
부산	중구	16	100	-	-	-	-	-	-	-	-	-	-	16	100
	서구	13	92.9	-	-	1	7.1	-	-	-	-	-	-	14	100
	동구	29	96.7	-	-	-	-	1	3.3	-	-	-	-	30	100
	영도구	33	100	-	-	-	-	-	-	-	-	-	-	33	100
	부산진구	65	92.9	2	2.9	-	-	1	1.4	-	-	2	2.9	70	100
	동래구	29	85.3	-	-	-	-	2	5.9	-	-	3	8.8	34	100
	남구	54	98.2	-	-	-	-	1	1.8	-	-	-	-	55	100
	북구	46	100	-	-	-	-	-	-	-	-	-	-	46	100
	해운대구	52	98.1	-	-	-	-	-	-	-	-	1	1.9	53	100
	사하구	75	97.4	2	2.6	-	-	-	-	-	-	-	-	77	100
	금정구	26	96.3	-	-	-	-	1	3.7	-	-	-	-	27	100
	강서구	8	88.9	1	11.1	-	-	-	-	-	-	-	-	9	100
	연제구	27	90.0	-	-	-	-	-	-	2	6.7	1	3.3	30	100
	수영구	17	85.0	2	10.0	-	-	1	5.0	-	-	-	-	20	100
	사상구	39	92.9	1	2.4	-	-	1	2.4	1	2.4	-	-	42	100
	기장군	16	88.9	-	-	1	5.6	-	-	-	-	1	5.6	18	100
	소계	545	94.9	8	1.4	2	0.3	8	1.4	3	0.5	8	1.4	574	100
대구	중구	13	100	-	-	-	-	-	-	-	-	-	-	13	100
	동구	58	93.5	2	3.2	-	-	-	-	-	-	2	3.2	62	100
	서구	40	90.9	1	2.3	1	2.3	2	4.5	-	-	-	-	44	100
	남구	36	97.3	-	-	-	-	1	2.7	-	-	-	-	37	100
	북구	43	89.6	1	2.1	-	-	2	4.2	-	-	2	4.2	48	100
	수성구	28	87.5	3	9.4	-	-	-	-	-	-	1	3.1	32	100
	달서구	73	96.1	2	2.6	-	-	1	1.3	-	-	-	-	76	100
	달성군	20	100	-	-	-	-	-	-	-	-	-	-	20	100
	군위군	1	100	-	-	-	-	-	-	-	-	-	-	1	100
	소계	312	93.7	9	2.7	1	0.3	6	1.8	-	-	5	1.5	333	100
인천	중구	17	81.0	4	19.0	-	-	-	-	-	-	-	-	21	100
	동구	7	100	-	-	-	-	-	-	-	-	-	-	7	100
	미추홀구	30	85.7	1	2.9	3	8.6	-	-	-	-	1	2.9	35	100
	연수구	16	69.6	4	17.4	-	-	1	4.3	-	-	2	8.7	23	100
	남동구	94	87.9	8	7.5	1	0.9	1	0.9	-	-	3	2.8	107	100

지역	시군구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부평구	100	93.5	2	1.9	1	0.9	2	1.9	1	0.9	1	0.9	107	100
	계양구	35	87.5	-	-	1	2.5	1	2.5	1	2.5	2	5.0	40	100
	서구	86	90.5	3	3.2	-	-	1	1.1	4	4.2	1	1.1	95	100
	강화군	23	95.8	1	4.2	-	-	-	-	-	-	-	-	24	100
	옹진군	-	-	2	100	-	-	-	-	-	-	-	-	2	100
	소계	408	88.5	25	5.4	6	1.3	6	1.3	6	1.3	10	2.2	461	100
광주	동구	28	77.8	-	-	-	-	-	-	8	22.2	-	-	36	100
	서구	50	94.3	-	-	1	1.9	1	1.9	-	-	1	1.9	53	100
	남구	38	86.4	-	-	1	2.3	1	2.3	3	6.8	1	2.3	44	100
	북구	59	96.7	-	-	-	-	2	3.3	-	-	-	-	61	100
	광산구	29	85.3	1	2.9	2	5.9	1	2.9	-	-	1	2.9	34	100
	소계	204	89.5	1	0.4	4	1.8	5	2.2	11	4.8	3	1.3	228	100
대전	동구	16	55.2	13	44.8	-	-	-	-	-	-	-	-	29	100
	중구	24	100	-	-	-	-	-	-	-	-	-	-	24	100
	서구	15	29.4	-	-	36	70.6	-	-	-	-	-	-	51	100
	유성구	8	80.0	1	10.0	1	10.0	-	-	-	-	-	-	10	100
	대덕구	11	100	-	-	-	-	-	-	-	-	-	-	11	100
	기타*	1	100	-	-	-	-	-	-	-	-	-	-	1	100
	소계	75	59.5	14	11.1	37	29.4	-	-	-	-	-	-	126	100
울산	중구	40	95.2	-	-	1	2.4	1	2.4	-	-	-	-	42	100
	남구	42	100	-	-	-	-	-	-	-	-	-	-	42	100
	동구	27	90.0	3	10.0	-	-	-	-	-	-	-	-	30	100
	북구	23	95.8	-	-	-	-	1	4.2	-	-	-	-	24	100
	울주군	32	88.9	-	-	-	-	4	11.1	-	-	-	-	36	100
	소계	164	94.3	3	1.7	1	0.6	6	3.4	-	-	-	-	174	100
경기	수원시	73	90.1	4	4.9	-	-	-	-	1	1.2	3	3.7	81	100
	성남시	131	93.6	5	3.6	1	0.7	2	1.4	1	0.7	-	-	140	100
	의정부시	96	83.5	16	13.9	-	-	2	1.7	-	-	1	0.9	115	100
	안양시	22	100	-	-	-	-	-	-	-	-	-	-	22	100
	부천시	83	98.8	1	1.2	-	-	-	-	-	-	-	-	84	100
	광명시	29	96.7	1	3.3	-	-	-	-	-	-	-	-	30	100
	평택시	23	88.5	2	7.7	-	-	-	-	1	3.8	-	-	26	100
	동두천시	11	100	-	-	-	-	-	-	-	-	-	-	11	100
	안산시	38	90.5	2	4.8	-	-	-	-	2	4.8	-	-	42	100
	고양시	163	94.2	9	5.2	1	0.6	-	-	-	-	-	-	173	100
	과천시	8	100	-	-	-	-	-	-	-	-	-	-	8	100
	구리시	54	94.7	1	1.8	-	-	1	1.8	-	-	1	1.8	57	100
	남양주시	197	87.6	24	10.7	2	0.9	1	0.4	1	0.4	-	-	225	100
	오산시	14	93.3	1	6.7	-	-	-	-	-	-	-	-	15	100
	시흥시	34	87.2	4	10.3	-	-	-	-	1	2.6	-	-	39	100
	군포시	25	100	-	-	-	-	-	-	-	-	-	-	25	100

지역	시군구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의왕시	5	45.5	6	54.5	-	-	-	-	-	-	-	-	11	100
	하남시	17	68.0	6	24.0	-	-	2	8.0	-	-	-	-	25	100
	용인시	89	79.5	12	10.7	7	6.3	2	1.8	1	0.9	1	0.9	112	100
	파주시	79	90.8	7	8.0	1	1.1	-	-	-	-	-	-	87	100
	이천시	7	87.5	-	-	-	-	1	12.5	-	-	-	-	8	100
	안성시	15	100	-	-	-	-	-	-	-	-	-	-	15	100
	김포시	39	90.7	4	9.3	-	-	-	-	-	-	-	-	43	100
	화성시	24	85.7	3	10.7	-	-	-	-	-	-	1	3.6	28	100
	광주시	31	88.6	1	2.9	-	-	2	5.7	-	-	1	2.9	35	100
	양주시	54	65.9	27	32.9	-	-	1	1.2	-	-	-	-	82	100
	포천시	34	82.9	6	14.6	-	-	1	2.4	-	-	-	-	41	100
	여주시	10	83.3	1	8.3	-	-	1	8.3	-	-	-	-	12	100
	연천군	4	57.1	2	28.6	1	14.3	-	-	-	-	-	-	7	100
	가평군	12	92.3	-	-	1	7.7	-	-	-	-	-	-	13	100
	양평군	17	94.4	-	-	-	-	-	-	-	-	1	5.6	18	100
	소계	1,438	88.2	145	8.9	14	0.9	16	1.0	8	0.5	9	0.6	1,630	100
강원	춘천시	57	46.0	39	31.5	-	-	28	22.6	-	-	-	-	124	100
	원주시	47	49.5	47	49.5	-	-	1	1.1	-	-	-	-	95	100
	강릉시	36	90.0	4	10.0	-	-	-	-	-	-	-	-	40	100
	동해시	10	83.3	-	-	-	-	-	-	1	8.3	1	8.3	12	100
	태백시	5	100	-	-	-	-	-	-	-	-	-	-	5	100
	속초시	8	72.7	1	9.1	-	-	1	9.1	1	9.1	-	-	11	100
	삼척시	5	83.3	-	-	-	-	1	16.7	-	-	-	-	6	100
	홍천군	12	36.4	20	60.6	-	-	-	-	1	3.0	-	-	33	100
	횡성군	2	100	-	-	-	-	-	-	-	-	-	-	2	100
	영월군	1	100	-	-	-	-	-	-	-	-	-	-	1	100
	평창군	4	100	-	-	-	-	-	-	-	-	-	-	4	100
	정선군	7	100	-	-	-	-	-	-	-	-	-	-	7	100
	철원군	3	100	-	-	-	-	-	-	-	-	-	-	3	100
	화천군	1	100	-	-	-	-	-	-	-	-	-	-	1	100
	양구군	-	-	-	-	-	-	-	-	-	-	-	-	-	-
	인제군	6	100	-	-	-	-	-	-	-	-	-	-	6	100
	고성군	2	100	-	-	-	-	-	-	-	-	-	-	2	100
	양양군	4	100	-	-	-	-	-	-	-	-	-	-	4	100
	소계	210	59.0	111	31.2	-	-	31	8.7	3	0.8	1	0.3	356	100
충북	청주시	86	88.7	5	5.2	-	-	2	2.1	2	2.1	2	2.1	97	100
	충주시	37	80.4	8	17.4	-	-	-	-	1	2.2	-	-	46	100
	제천시	11	73.3	4	26.7	-	-	-	-	-	-	-	-	15	100
	보은군	6	100	-	-	-	-	-	-	-	-	-	-	6	100
	옥천군	7	100	-	-	-	-	-	-	-	-	-	-	7	100
	영동군	1	100	-	-	-	-	-	-	-	-	-	-	1	100

지역	시군구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진천군	9	64.3	4	28.6	-	-	-	-	1	7.1	-	-	14	100
	괴산군	8	72.7	3	27.3	-	-	-	-	-	-	-	-	11	100
	음성군	16	80.0	1	5.0	1	5.0	-	-	-	-	2	10.0	20	100
	단양군	-	-	-	-	-	-	-	-	-	-	-	-	-	-
	증평군	5	100	-	-	-	-	-	-	-	-	-	-	5	100
	소계	186	83.8	25	11.3	1	0.5	2	0.9	4	1.8	4	1.8	222	100
충남	천안시	31	86.1	5	13.9	-	-	-	-	-	-	-	-	36	100
	공주시	25	96.2	1	3.8	-	-	-	-	-	-	-	-	26	100
	보령시	7	30.4	16	69.6	-	-	-	-	-	-	-	-	23	100
	아산시	22	95.7	-	-	-	-	-	-	1	4.3	-	-	23	100
	서산시	37	90.2	1	2.4	-	-	-	-	2	4.9	1	2.4	41	100
	논산시	22	91.7	1	4.2	-	-	-	-	-	-	1	4.2	24	100
	계룡시	1	50.0	1	50.0	-	-	-	-	-	-	-	-	2	100
	당진시	18	100	-	-	-	-	-	-	-	-	-	-	18	100
	금산군	5	50.0	5	50.0	-	-	-	-	-	-	-	-	10	100
	부여군	9	100	-	-	-	-	-	-	-	-	-	-	9	100
	서천군	13	92.9	-	-	-	-	-	-	1	7.1	-	-	14	100
	청양군	3	100	-	-	-	-	-	-	-	-	-	-	3	100
	홍성군	6	54.5	-	-	-	-	5	45.5	-	-	-	-	11	100
	예산군	15	93.8	1	6.3	-	-	-	-	-	-	-	-	16	100
	태안군	2	66.7	1	33.3	-	-	-	-	-	-	-	-	3	100
	소계	216	83.4	32	12.4	-	-	5	1.9	4	1.5	2	0.8	259	10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28	93.3	-	-	-	-	1	3.3	1	3.3	-	-	30	100
	소계	28	93.3	-	-	-	-	1	3.3	1	3.3	-	-	30	100
전북	전주시	89	83.2	14	13.1	1	0.9	3	2.8	-	-	-	-	107	100
	군산시	35	87.5	3	7.5	-	-	-	-	1	2.5	1	2.5	40	100
	익산시	28	87.5	1	3.1	-	-	1	3.1	-	-	2	6.3	32	100
	정읍시	19	90.5	-	-	-	-	-	-	2	9.5	-	-	21	100
	남원시	7	100	-	-	-	-	-	-	-	-	-	-	7	100
	김제시	24	100	-	-	-	-	-	-	-	-	-	-	24	100
	완주군	12	92.3	-	-	-	-	-	-	1	7.7	-	-	13	100
	진안군	4	80.0	-	-	-	-	-	-	-	-	1	20.0	5	100
	무주군	1	33.3	2	66.7	-	-	-	-	-	-	-	-	3	100
	장수군	7	100	-	-	-	-	-	-	-	-	-	-	7	100
	임실군	7	100	-	-	-	-	-	-	-	-	-	-	7	100
	순창군	3	100	-	-	-	-	-	-	-	-	-	-	3	100
	고창군	20	87.0	-	-	-	-	-	-	2	8.7	1	4.3	23	100
	부안군	6	100	-	-	-	-	-	-	-	-	-	-	6	100
	소계	262	87.9	20	6.7	1	0.3	4	1.3	6	2.0	5	1.7	298	100
전남	목포시	41	53.2	10	13.0	23	29.9	1	1.3	2	2.6	-	-	77	100
	여수시	27	90.0	1	3.3	1	3.3	-	-	-	-	1	3.3	30	100

지역	시군구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순천시	42	95.5	-	-	-	-	-	-	-	-	2	4.5	44	100
	나주시	25	34.7	43	59.7	1	1.4	1	1.4	1	1.4	1	1.4	72	100
	광양시	13	92.9	1	7.1	-	-	-	-	-	-	-	-	14	100
	담양군	15	100	-	-	-	-	-	-	-	-	-	-	15	100
	곡성군	2	100	-	-	-	-	-	-	-	-	-	-	2	100
	구례군	4	80.0	1	20.0	-	-	-	-	-	-	-	-	5	100
	고흥군	21	100	-	-	-	-	-	-	-	-	-	-	21	100
	보성군	9	100	-	-	-	-	-	-	-	-	-	-	9	100
	화순군	-	-	-	-	-	-	-	-	-	-	-	-	-	-
	장흥군	6	100	-	-	-	-	-	-	-	-	-	-	6	100
	강진군	14	100	-	-	-	-	-	-	-	-	-	-	14	100
	해남군	33	94.3	2	5.7	-	-	-	-	-	-	-	-	35	100
	영암군	6	100	-	-	-	-	-	-	-	-	-	-	6	100
	무안군	14	77.8	3	16.7	-	-	-	-	1	5.6	-	-	18	100
	함평군	5	83.3	-	-	-	-	-	-	1	16.7	-	-	6	100
	영광군	16	100	-	-	-	-	-	-	-	-	-	-	16	100
	장성군	4	100	-	-	-	-	-	-	-	-	-	-	4	100
	완도군	4	100	-	-	-	-	-	-	-	-	-	-	4	100
	진도군	10	100	-	-	-	-	-	-	-	-	-	-	10	100
	신안군	8	88.9	-	-	-	-	1	11.1	-	-	-	-	9	100
	소계	319	76.5	61	14.6	25	6.0	3	0.7	5	1.2	4	1.0	417	100
경북	포항시	100	97.1	1	1.0	-	-	1	1.0	-	-	1	1.0	103	100
	경주시	45	93.8	3	6.3	-	-	-	-	-	-	-	-	48	100
	김천시	28	100	-	-	-	-	-	-	-	-	-	-	28	100
	안동시	59	90.8	2	3.1	-	-	-	-	1	1.5	3	4.6	65	100
	구미시	56	84.8	4	6.1	-	-	2	3.0	-	-	4	6.1	66	100
	영주시	14	87.5	2	12.5	-	-	-	-	-	-	-	-	16	100
	영천시	19	86.4	-	-	-	-	1	4.5	-	-	2	9.1	22	100
	상주시	27	77.1	1	2.9	-	-	3	8.6	-	-	4	11.4	35	100
	문경시	18	69.2	3	11.5	-	-	-	-	3	11.5	2	7.7	26	100
	경산시	33	53.2	28	45.2	-	-	-	-	1	1.6	-	-	62	100
	군위군	1	100	-	-	-	-	-	-	-	-	-	-	1	100
	의성군	8	100	-	-	-	-	-	-	-	-	-	-	8	100
	청송군	4	100	-	-	-	-	-	-	-	-	-	-	4	100
	영양군	-	-	-	-	-	-	-	-	-	-	-	-	-	-
	영덕군	4	100	-	-	-	-	-	-	-	-	-	-	4	100
	청도군	4	80.0	1	20.0	-	-	-	-	-	-	-	-	5	100
	고령군	1	100	-	-	-	-	-	-	-	-	-	-	1	100
	성주군	14	93.3	-	-	-	-	1	6.7	-	-	-	-	15	100
	칠곡군	13	50.0	13	50.0	-	-	-	-	-	-	-	-	26	100
	예천군	15	83.3	-	-	-	-	-	-	1	5.6	2	11.1	18	100

지역	시군구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봉화군	6	100	-	-	-	-	-	-	-	-	-	-	6	100
	울진군	5	100	-	-	-	-	-	-	-	-	-	-	5	100
	울릉군	5	100	-	-	-	-	-	-	-	-	-	-	5	100
	소계	479	84.2	58	10.2	-	-	8	1.4	6	1.1	18	3.2	569	100
경남	창원시	147	98.7	-	-	-	-	1	0.7	-	-	1	0.7	149	100
	진주시	56	91.8	3	4.9	-	-	-	-	2	3.3	-	-	61	100
	통영시	16	100	-	-	-	-	-	-	-	-	-	-	16	100
	사천시	16	88.9	-	-	-	-	-	-	-	-	2	11.1	18	100
	김해시	80	98.8	-	-	-	-	-	-	1	1.2	-	-	81	100
	밀양시	4	100	-	-	-	-	-	-	-	-	-	-	4	100
	거제시	19	100	-	-	-	-	-	-	-	-	-	-	19	100
	양산시	59	93.7	2	3.2	-	-	2	3.2	-	-	-	-	63	100
	의령군	2	100	-	-	-	-	-	-	-	-	-	-	2	100
	함안군	3	75.0	1	25.0	-	-	-	-	-	-	-	-	4	100
	창녕군	3	100	-	-	-	-	-	-	-	-	-	-	3	100
	고성군	2	100	-	-	-	-	-	-	-	-	-	-	2	100
	남해군	3	60.0	-	-	-	-	-	-	-	-	2	40.0	5	100
	하동군	8	100	-	-	-	-	-	-	-	-	-	-	8	100
	산청군	4	12.5	27	84.4	1	3.1	-	-	-	-	-	-	32	100
	함양군	5	100	-	-	-	-	-	-	-	-	-	-	5	100
	거창군	5	31.3	7	43.8	-	-	4	25.0	-	-	-	-	16	100
	합천군	5	38.5	-	-	8	61.5	-	-	-	-	-	-	13	100
	소계	437	87.2	40	8.0	9	1.8	7	1.4	3	0.6	5	1.0	501	100
제주	제주시	70	90.9	2	2.6	-	-	-	-	2	2.6	3	3.9	77	100
	서귀포시	50	98.0	-	-	-	-	-	-	-	-	1	2.0	51	100
	소계	120	93.8	2	1.6	-	-	-	-	2	1.6	4	3.1	128	100
합계		6,079	86.5	571	8.1	108	1.5	115	1.6	64	0.9	88	1.3	7,025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표 6-11 학대발생장소별 학대유형

(단위: 건, %)

구 분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 장소	기타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일반병원			
신체적 학대	4,191	13	186	-	15	55	4	31	46	4,541
	44.7	28.3	26.6	-	11.8	32.9	40.0	36.9	39.0	42.7
정서적 학대	4,345	10	33	-	15	37	1	41	49	4,531
	46.3	21.7	4.7	-	11.8	22.2	10.0	48.8	41.5	42.6
성적 학대	73	11	157	-	1	17	-	2	4	265
	0.8	23.9	22.4	-	0.8	10.2	-	2.4	3.4	2.5
경제적 학대	305	1	37	-	3	2	-	1	3	352
	3.2	2.2	5.3	-	2.4	1.2	-	1.2	2.5	3.3
방임	296	11	286	-	93	56	5	1	10	758
	3.2	23.9	40.9	-	73.2	33.5	50.0	1.2	8.5	7.1
자기 방임	157	-	-	-	-	-	-	5	3	165
	1.7	-	-	-	-	-	-	6.0	2.5	1.6
유기	19	-	1	-	-	-	-	3	3	26
	0.2	-	0.1	-	-	-	-	3.6	2.5	0.2
계	9,386	46	700	-	127	167	10	84	118	10,638*
	100	100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025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38건)에는 차이가 있음

8) 학대발생빈도

표 6-12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일회성	6개월에 한번 이상	3개월에 한번 이상	1개월에 한번 이상	1주일에 한번 이상	매일	계
1,533	845	827	1,741	1,394	685	7,025
21.8	12.0	11.8	24.8	19.8	9.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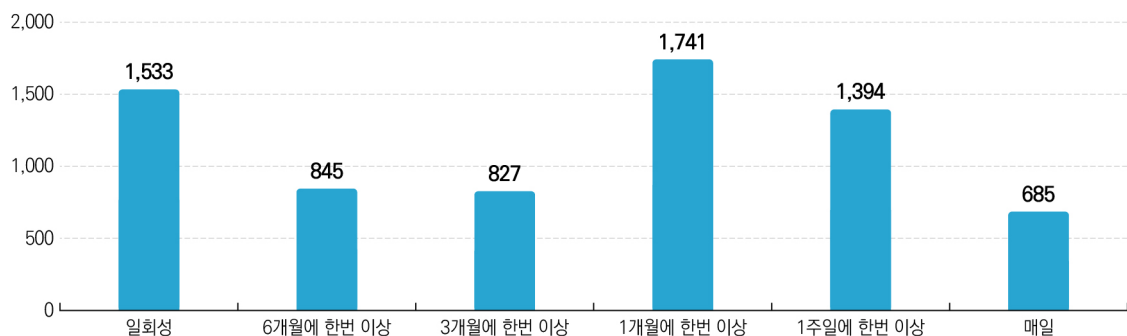


그림 6-4 학대발생빈도

표 6-13 학대발생빈도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일회성	1,029	672	34	37	201	12	5	1,990
	51.7	33.8	1.7	1.9	10.1	0.6	0.3	100
6개월에 한 번 이상	612	572	5	36	32	5	4	1,266
	48.3	45.2	0.4	2.8	2.5	0.4	0.3	100
3개월에 한 번 이상	576	621	4	43	40	9	-	1,293
	44.5	48.0	0.3	3.3	3.1	0.7	-	100
1개월에 한 번 이상	1,161	1,344	31	135	149	15	2	2,837
	40.9	47.4	1.1	4.8	5.3	0.5	0.1	100
1주일에 한 번 이상	908	1,126	41	73	136	25	3	2,312
	39.3	48.7	1.8	3.2	5.9	1.1	0.1	100
매일	255	196	150	28	200	99	12	940
	27.1	20.9	16.0	3.0	21.3	10.5	1.3	100
계	4,541	4,531	265	352	758	165	26	10,638*
	42.7	42.6	2.5	3.3	7.1	1.6	0.2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025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38건)에는 차이가 있음

9) 학대지속기간

표 6-14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1,425	302	1,095	2,132	2,071	7,025
20.3	4.3	15.6	30.3	29.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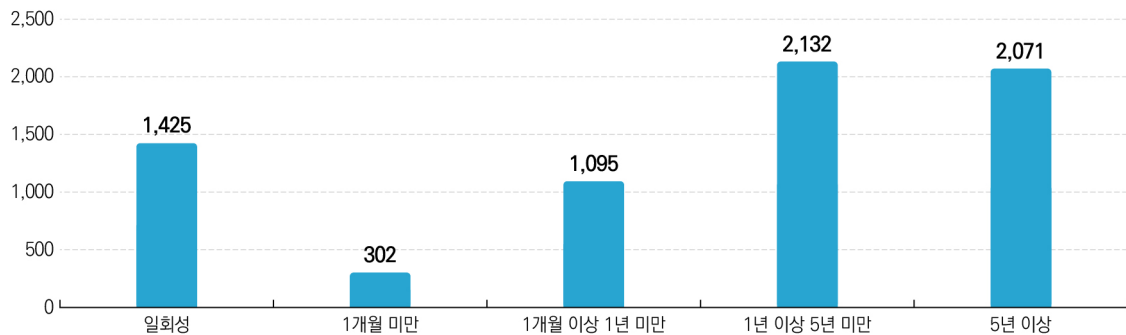


그림 6-5 학대지속기간

10) 학대발생원인(학대행위자 원인)

표 6-15 학대행위자 원인

(단위: 건, %)

학대행위자 원인	건 수	비 율
개인의 내적문제 ²⁰⁾	4,807	37.3
개인의 외적문제 ²¹⁾	2,446	19.0
경제적 의존성	1,276	9.9
과거 학대 받은 경험	168	1.3
신체적 의존성	694	5.4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1,412	10.9
정신적 의존성	1,609	12.5
피해자 부양부담	488	3.8
계	12,9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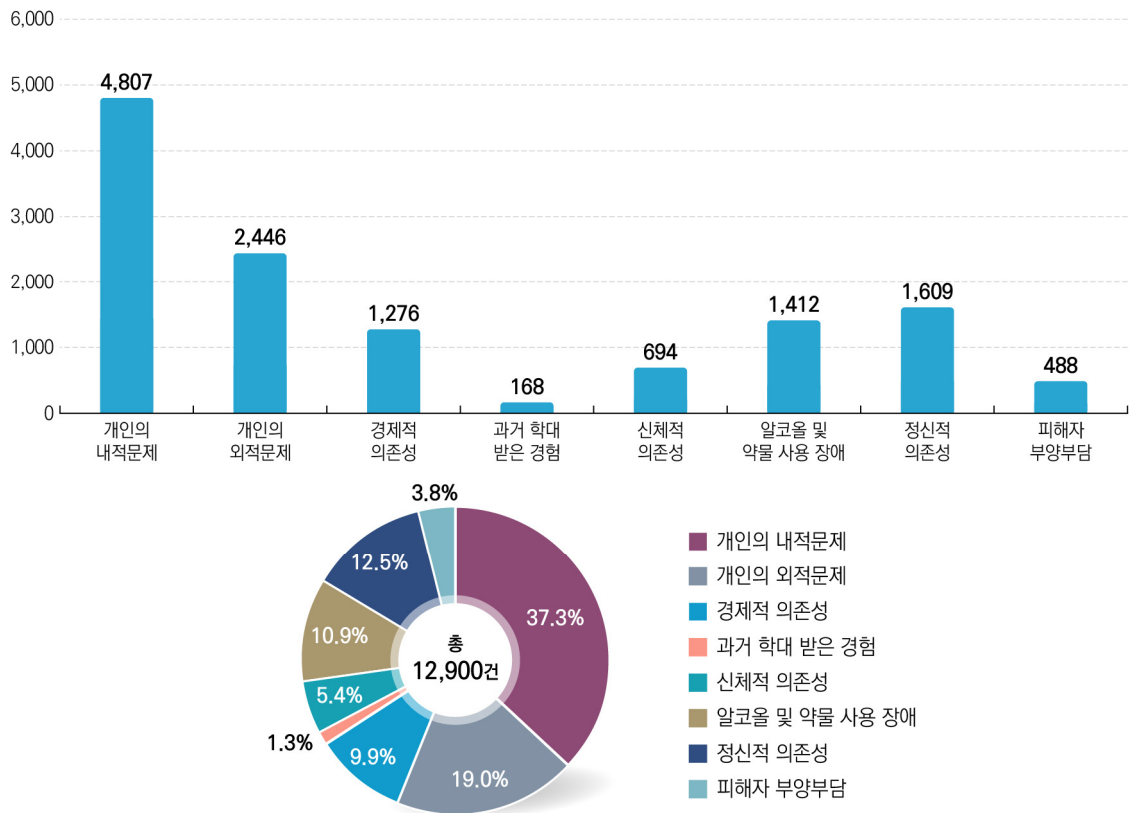


그림 6-6 학대행위자 원인

20) 개인의 내적인 문제는 성격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노, 고집스러운 성격,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사회적 반응의 결핍, 적대적 행위, 충동적 성격, 폭력적 성격, 사회적 고립, 정서적 욕구불만 등이 포함됨.

21) 개인의 외적인 문제는 학대행위자의 이혼, 재혼, 부부갈등, 스트레스, 실직 등이 해당됨.

표 6-16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학대발생원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개인의 내적문제	3,266	1,012	55	60	300	11	103	4,807
	67.9	21.1	1.1	1.2	6.2	0.2	2.1	100
개인의 외적문제	1,648	501	40	33	162	3	59	2,446
	67.4	20.5	1.6	1.3	6.6	0.1	2.4	100
경제적 의존성	873	313	-	48	36	1	5	1,276
	68.4	24.5	-	3.8	2.8	0.1	0.4	100
과거 학대 받은 경험	118	36	-	2	10	-	2	168
	70.2	21.4	-	1.2	6.0	-	1.2	100
신체적 의존성	521	130	6	1	14	-	22	694
	75.1	18.7	0.9	0.1	2.0	-	3.2	100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1,047	333	1	2	10	-	19	1,412
	74.2	23.6	0.1	0.1	0.7	-	1.3	100
정신적 의존성	1,203	332	5	6	38	1	24	1,609
	74.8	20.6	0.3	0.4	2.4	0.1	1.5	100
피해자 부양부담	251	109	3	6	110	6	3	488
	51.4	22.3	0.6	1.2	22.5	1.2	0.6	100
계	8,927	2,766	110	158	680	22	237	12,900
	69.2	21.4	0.9	1.2	5.3	0.2	1.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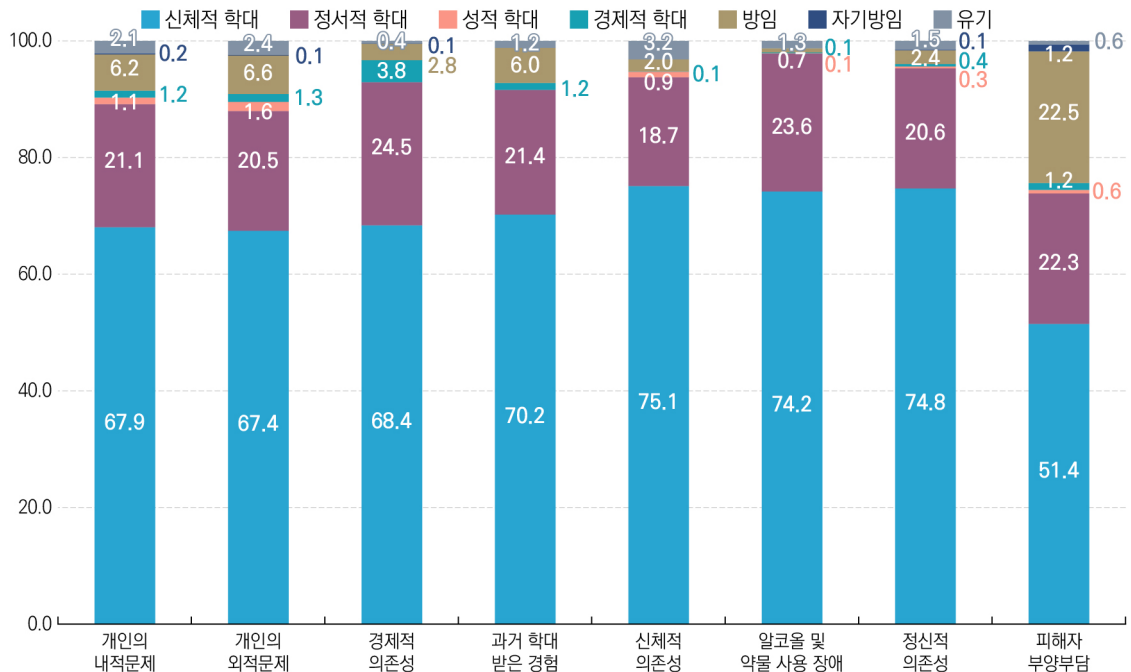


그림 6-7 학대행위자 원인별 노인학대 유형

11) 학대발생원인(가족 - 환경원인)

표 6-17 가족 - 환경 원인

(단위: 건, %)

가족구성원과의 갈등 (자녀간, 형제간, 친족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피해자-학대행위자 갈등	계
1,376	516	4,912	6,804
20.2	7.6	72.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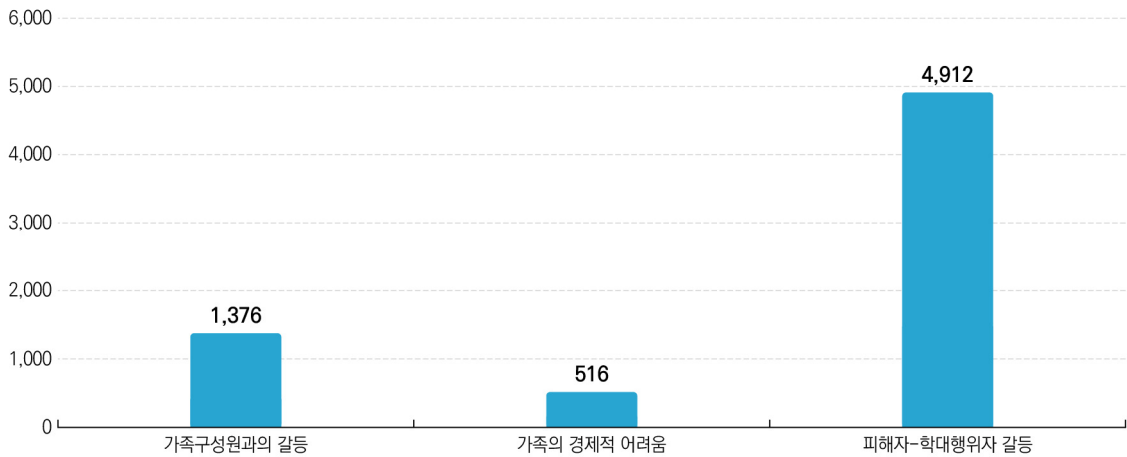


그림 6-8 가족 - 환경 원인



PART 07

노인학대 상담 및 제공서비스 현황



PART 7



노인학대 상담 및 제공서비스 현황

01 | 노인학대 상담

1) 월별 상담횟수

표 7-1 월별 상담횟수

(단위: 회, %)

구 분	학대상담		일반상담*		전체상담	
1월	12,229	7.2	3,548	6.3	15,777	7.30
2월	12,636	7.5	3,895	6.9	16,531	7.3
3월	14,698	8.7	4,353	7.8	19,051	8.4
4월	13,329	7.9	4,610	8.2	17,939	8.0
5월	13,938	8.2	4,593	8.2	18,531	8.2
6월	14,616	8.6	4,551	8.1	19,167	8.5
7월	15,904	9.4	4,985	8.9	20,889	9.3
8월	14,928	8.8	5,405	9.6	20,333	9.0
9월	15,406	9.1	5,266	9.4	20,672	9.2
10월	12,834	7.6	4,963	8.8	17,797	7.9
11월	15,229	9.0	5,656	10.1	20,885	9.3
12월	13,676	8.1	4,341	7.7	18,017	8.0
계	169,423	100	56,166	100	225,589	100

* 일반상담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접수된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사례 중 사례판정이 '잠재적'으로 판정된 사례의 상담 건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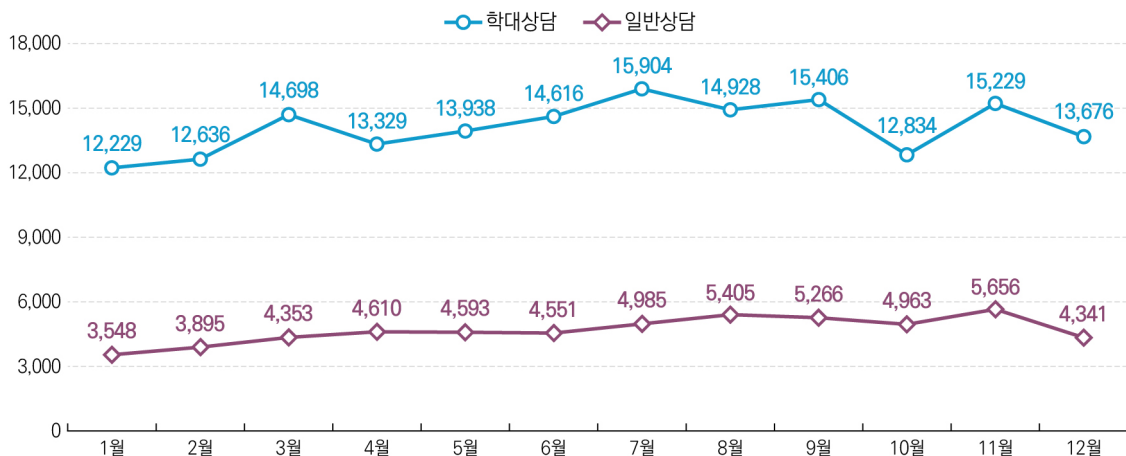


그림 7-1 월별 상담횟수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²²⁾에 따른 상담 구분

표 7-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단위: 회, %)

지역	지역기관	전 화		방 문		내 방		서 신		온라인		기 타		계	
서울	서울남부	2,871	2.5	779	1.9	10	0.4	298	3.0	57	4.2	560	26.7	4,575	2.7
	서울북부	2,845	2.5	830	2.0	30	1.3	210	2.1	17	1.3	300	14.3	4,232	2.5
	서울서부	2,903	2.6	1,141	2.8	7	0.3	263	2.6	125	9.3	141	6.7	4,580	2.7
	서울동부	2,545	2.3	713	1.8	25	1.1	217	2.2	33	2.5	206	9.8	3,739	2.2
	소계	11,164	9.9	3,463	8.5	72	3.2	988	9.9	232	17.3	1,207	57.6	17,126	10.1
부산	부산동부	4,528	4.0	1,581	3.9	118	5.2	414	4.2	8	0.6	152	7.3	6,801	4.0
	부산서부	4,096	3.6	677	1.7	64	2.8	200	2.0	12	0.9	49	2.3	5,098	3.0
	소계	8,624	7.6	2,258	5.6	182	8.0	614	6.2	20	1.5	201	9.6	11,899	7.0
대구	대구남부	3,031	2.7	963	2.4	138	6.1	256	2.6	7	0.5	12	0.6	4,407	2.6
	대구북부	3,264	2.9	891	2.2	151	6.7	253	2.5	12	0.9	31	1.5	4,602	2.7
	소계	6,295	5.6	1,854	4.6	289	12.8	509	5.1	19	1.4	43	2.1	9,009	5.3
인천	인천	4,056	3.6	1,247	3.1	40	1.8	546	5.5	26	1.9	3	0.1	5,918	3.5
	인천서부	3,241	2.9	638	1.6	24	1.1	386	3.9	23	1.7	92	4.4	4,404	2.6
	소계	7,297	6.5	1,885	4.6	64	2.8	932	9.4	49	3.6	95	4.5	10,322	6.1
	광주	3,389	3.0	823	2.0	68	3.0	203	2.0	48	3.6	18	0.9	4,549	2.7
	대전	2,438	2.2	1,017	2.5	144	6.4	528	5.3	72	5.4	1	0.0	4,200	2.5
	울산	3,297	2.9	1,317	3.2	37	1.6	251	2.5	1	0.1	5	0.2	4,908	2.9
경기	경기동부	1,975	1.7	844	2.1	20	0.9	607	6.1	15	1.1	4	0.2	3,465	2.0
	경기북부	7,982	7.1	1,158	2.8	41	1.8	857	8.6	34	2.5	5	0.2	10,077	5.9
	경기서부	3,954	3.5	766	1.9	43	1.9	523	5.3	69	5.1	8	0.4	5,363	3.2
	경기남부	2,866	2.5	400	1.0	13	0.6	321	3.2	10	0.7	54	2.6	3,664	2.2
	경기북서부	4,129	3.7	752	1.8	127	5.6	460	4.6	70	5.2	125	6.0	5,663	3.3
	소계	20,906	18.5	3,920	9.6	244	10.8	2,768	27.8	198	14.7	196	9.4	28,232	16.7
강원	강원	4,229	3.7	2,806	6.9	80	3.5	294	3.0	22	1.6	35	1.7	7,466	4.4
	강원동부	912	0.8	460	1.1	46	2.0	112	1.1	37	2.8	-	-	1,567	0.9
	강원남부	2,363	2.1	2,138	5.3	81	3.6	172	1.7	304	22.6	65	3.1	5,123	3.0
	소계	7,504	6.6	5,404	13.3	207	9.2	578	5.8	363	27.0	100	4.8	14,156	8.4
충북	충북	2,025	1.8	879	2.2	103	4.6	107	1.1	4	0.3	22	1.1	3,140	1.9
	충북북부	971	0.9	732	1.8	24	1.1	123	1.2	-	-	-	-	1,850	1.1
	소계	2,996	2.6	1,611	4.0	127	5.6	230	2.3	4	0.3	22	1.1	4,990	2.9
충남	충남	2,984	2.6	1,533	3.8	91	4.0	230	2.3	46	3.4	3	0.1	4,887	2.9
	충남남부	956	0.8	449	1.1	43	1.9	145	1.5	17	1.3	2	0.1	1,612	1.0
	소계	3,940	3.5	1,982	4.9	134	5.9	375	3.8	63	4.7	5	0.2	6,499	3.8

22) 학대피해노인(7,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 횟수는 169,423회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방법으로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내방상담, 서신을 통한 상담, 온라인 상담, 기타 등이 있음

지역	지역기관	전 화		방 문		내 방		서 신		온라인		기 타		계	
전북	전북	2,269	2.0	826	2.0	66	2.9	91	0.9	5	0.4	30	1.4	3,287	1.9
	전북서부	2,901	2.6	924	2.3	16	0.7	99	1.0	8	0.6	17	0.8	3,965	2.3
	소계	5,170	4.6	1,750	4.3	82	3.6	190	1.9	13	1.0	47	2.2	7,252	4.3
전남	전남동부	2,146	1.9	510	1.3	58	2.6	170	1.7	1	0.1	4	0.2	2,889	1.7
	전남서부	4,977	4.4	3,165	7.8	69	3.1	145	1.5	2	0.1	5	0.2	8,363	4.9
	소계	7,123	6.3	3,675	9.0	127	5.6	315	3.2	3	0.2	9	0.4	11,252	6.6
경북	경북동부	2,323	2.1	1,285	3.2	40	1.8	129	1.3	4	0.3	5	0.2	3,786	2.2
	경북북부	2,870	2.5	1,300	3.2	39	1.7	105	1.1	15	1.1	17	0.8	4,346	2.6
	경북서부	3,204	2.8	1,449	3.6	36	1.6	268	2.7	21	1.6	7	0.3	4,985	2.9
	경북남부	1,938	1.7	1,277	3.1	69	3.1	288	2.9	3	0.2	1	0.0	3,576	2.1
	소계	10,335	9.1	5,311	13.1	184	8.1	790	7.9	43	3.2	30	1.4	16,693	9.9
경남	경남	6,017	5.3	786	1.9	16	0.7	273	2.7	4	0.3	29	1.4	7,125	4.2
	경남서부	3,720	3.3	1,886	4.6	104	4.6	258	2.6	164	12.2	82	3.9	6,214	3.7
	소계	9,737	8.6	2,672	6.6	120	5.3	531	5.3	168	12.5	111	5.3	13,339	7.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891	1.7	758	1.9	102	4.5	87	0.9	8	0.6	5	0.2	2,851	1.7
	제주도 서귀포시	986	0.9	978	2.4	79	3.5	63	0.6	40	3.0	-	-	2,146	1.3
	소계	2,877	2.5	1,736	4.3	181	8.0	150	1.5	48	3.6	5	0.2	4,997	2.9
계		113,092	66.8	40,678	24.0	2,262	1.3	9,952	5.9	1,344	0.8	2,095	1.2	169,42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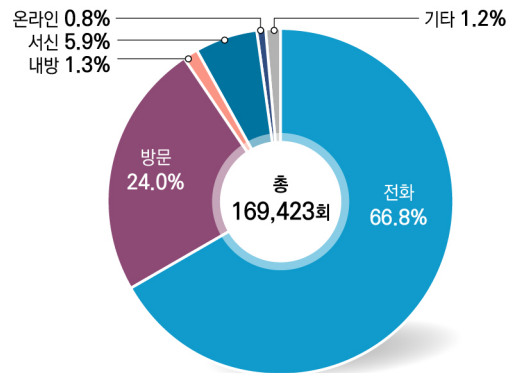


그림 7-2 학대상담방법에 따른 상담 구분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²³⁾에 따른 상담 구분

표 7-3 지역 및 기관별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단위: 회, %)

지역	기관명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계	
서울	서울남부	206	2.9	3,451	2.8	170	2.5	748	2.3	4,575	2.7
	서울북부	135	1.9	3,298	2.7	163	2.4	636	1.9	4,232	2.5
	서울서부	208	2.9	3,538	2.9	176	2.6	658	2.0	4,580	2.7
	서울동부	170	2.4	2,586	2.1	130	1.9	853	2.6	3,739	2.2
	소계	719	10.2	12,873	10.5	639	9.3	2,895	8.7	17,126	10.1
부산	부산동부	322	4.6	4,749	3.9	282	4.1	1,448	4.4	6,801	4.0
	부산서부	232	3.3	4,342	3.6	166	2.4	358	1.1	5,098	3.0
	소계	554	7.8	9,091	7.4	448	6.5	1,806	5.4	11,899	7.0
대구	대구남부	166	2.4	2,830	2.3	203	3.0	1,208	3.6	4,407	2.6
	대구북부	206	2.9	3,174	2.6	200	2.9	1,022	3.1	4,602	2.7
	소계	372	5.3	6,004	4.9	403	5.9	2,230	6.7	9,009	5.3
인천	인천	195	2.8	2,780	2.3	188	2.7	2,755	8.3	5,918	3.5
	인천서부	266	3.8	3,382	2.8	281	4.1	475	1.4	4,404	2.6
	소계	461	6.5	6,162	5.0	469	6.8	3,230	9.7	10,322	6.1
	광주	228	3.2	3,230	2.6	151	2.2	940	2.8	4,549	2.7
	대전	126	1.8	2,858	2.3	161	2.3	1,055	3.2	4,200	2.5
	울산	175	2.5	3,633	3.0	174	2.5	926	2.8	4,908	2.9
경기	경기동부	325	4.6	2,370	1.9	272	4.0	498	1.5	3,465	2.0
	경기북부	558	7.9	6,207	5.1	568	8.3	2,744	8.3	10,077	5.9
	경기서부	219	3.1	3,735	3.1	204	3.0	1,205	3.6	5,363	3.2
	경기남부	207	2.9	2,932	2.4	287	4.2	238	0.7	3,664	2.2
	경기북서부	321	4.5	3,620	3.0	298	4.3	1,424	4.3	5,663	3.3
	소계	1,630	23.1	18,864	15.4	1,629	23.8	6,109	18.4	28,232	16.7
강원	강원	168	2.4	4,708	3.8	204	3.0	2,386	7.2	7,466	4.4
	강원동부	74	1.0	1,118	0.9	69	1.0	306	0.9	1,567	0.9
	강원남부	116	1.6	4,527	3.7	114	1.7	366	1.1	5,123	3.0
	소계	358	5.1	10,353	8.5	387	5.6	3,058	9.2	14,156	8.4
충북	충북	130	1.8	2,615	2.1	111	1.6	284	0.9	3,140	1.9
	충북북부	92	1.3	1,414	1.2	110	1.6	234	0.7	1,850	1.1
	소계	222	3.1	4,029	3.3	221	3.2	518	1.6	4,990	2.9
충남	충남	179	2.5	4,167	3.4	180	2.6	361	1.1	4,887	2.9
	충남남부	111	1.6	1,151	0.9	149	2.2	201	0.6	1,612	1.0
	소계	290	4.1	5,318	4.3	329	4.8	562	1.7	6,499	3.8

23) 학대피해노인(7,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 횟수는 169,423회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방법으로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내방상담, 서신을 통한 상담, 온라인 상담, 기타 등이 있음

지역	기관명	접수상담		진행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계	
전북	전북	152	2.2	2,527	2.1	145	2.1	463	1.4	3,287	1.9
	전북서부	144	2.0	2,675	2.2	133	1.9	1,013	3.1	3,965	2.3
	소계	296	4.2	5,202	4.3	278	4.1	1,476	4.4	7,252	4.3
전남	전남동부	150	2.1	2,235	1.8	133	1.9	371	1.1	2,889	1.7
	전남서부	267	3.8	5,727	4.7	271	4.0	2,098	6.3	8,363	4.9
	소계	417	5.9	7,962	6.5	404	5.9	2,469	7.4	11,252	6.6
경북	경북동부	169	2.4	2,867	2.3	161	2.3	589	1.8	3,786	2.2
	경북북부	123	1.7	3,227	2.6	114	1.7	882	2.7	4,346	2.6
	경북서부	170	2.4	3,796	3.1	173	2.5	846	2.5	4,985	2.9
	경북남부	117	1.7	2,004	1.6	111	1.6	1,344	4.0	3,576	2.1
	소계	579	8.2	11,894	9.7	559	8.2	3,661	11.0	16,693	9.9
경남	경남	343	4.9	5,631	4.6	294	4.3	857	2.6	7,125	4.2
	경남서부	160	2.3	5,324	4.4	169	2.5	561	1.7	6,214	3.7
	소계	503	7.1	10,955	9.0	463	6.8	1,418	4.3	13,339	7.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77	1.1	2,236	1.8	81	1.2	457	1.4	2,851	1.7
	제주도 서귀포시	51	0.7	1,638	1.3	60	0.9	397	1.2	2,146	1.3
	소계	128	1.8	3,874	3.2	141	2.1	854	2.6	4,997	2.9
계		7,058	100	122,302	100	6,856	100	33,207	100	169,42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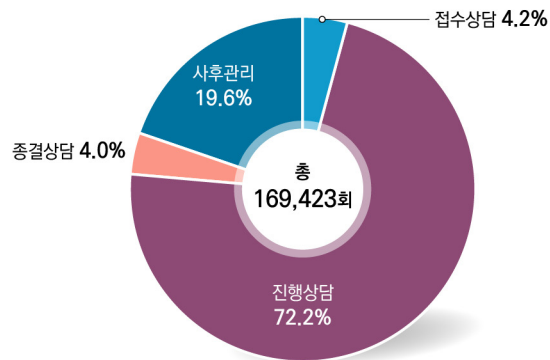


그림 7-3 학대상담과정에 따른 상담 구분

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표 7-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단위: 회, %)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일반상담*		계	
서울	서울남부	4,575	2.7	2,993	5.3	7,568	3.4
	서울북부	4,232	2.5	2,932	5.2	7,164	3.2
	서울서부	4,580	2.7	2,367	4.2	6,947	3.1
	서울동부	3,739	2.2	2,455	4.4	6,194	2.7
	소계	17,126	10.1	10,747	19.1	27,873	12.4
부산	부산동부	6,801	4.0	2,316	4.1	9,117	4.0
	부산서부	5,098	3.0	874	1.6	5,972	2.6
	소계	11,899	7.0	3,190	5.7	15,089	6.7
대구	대구남부	4,407	2.6	1,468	2.6	5,875	2.6
	대구북부	4,602	2.7	1,005	1.8	5,607	2.5
	소계	9,009	5.3	2,473	4.4	11,482	5.1
인천	인천	5,918	3.5	879	1.6	6,797	3.0
	인천서부	4,404	2.6	1,166	2.1	5,570	2.5
	소계	10,322	6.1	2,045	3.6	12,367	5.5
	광주	4,549	2.7	1,180	2.1	5,729	2.5
	대전	4,200	2.5	3,647	6.5	7,847	3.5
	울산	4,908	2.9	1,198	2.1	6,106	2.7
경기	경기동부	3,465	2.0	1,080	1.9	4,545	2.0
	경기북부	10,077	5.9	1,297	2.3	11,374	5.0
	경기서부	5,363	3.2	2,962	5.3	8,325	3.7
	경기남부	3,664	2.2	2,926	5.2	6,590	2.9
	경기북서부	5,663	3.3	1,293	2.3	6,956	3.1
	소계	28,232	16.7	9,558	17.0	37,790	16.8
강원	강원	7,466	4.4	1,173	2.1	8,639	3.8
	강원동부	1,567	0.9	984	1.8	2,551	1.1
	강원남부	5,123	3.0	2,981	5.3	8,104	3.6
	소계	14,156	8.4	5,138	9.1	19,294	8.6
충북	충북	3,140	1.9	2,019	3.6	5,159	2.3
	충북북부	1,850	1.1	717	1.3	2,567	1.1
	소계	4,990	2.9	2,736	4.9	7,726	3.4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일반상담*		계	
충남	충남	4,887	2.9	1,675	3.0	6,562	2.9
	충남남부	1,612	1.0	767	1.4	2,379	1.1
	소계	6,499	3.8	2,442	4.3	8,941	4.0
전북	전북	3,287	1.9	750	1.3	4,037	1.8
	전북서부	3,965	2.3	786	1.4	4,751	2.1
	소계	7,252	4.3	1,536	2.7	8,788	3.9
전남	전남동부	2,889	1.7	418	0.7	3,307	1.5
	전남서부	8,363	4.9	1,009	1.8	9,372	4.2
	소계	11,252	6.6	1,427	2.5	12,679	5.6
경북	경북동부	3,786	2.2	1,157	2.1	4,943	2.2
	경북북부	4,346	2.6	1,129	2.0	5,475	2.4
	경북서부	4,985	2.9	891	1.6	5,876	2.6
	경북남부	3,576	2.1	1,529	2.7	5,105	2.3
	소계	16,693	9.9	4,706	8.4	21,399	9.5
경남	경남	7,125	4.2	854	1.5	7,979	3.5
	경남서부	6,214	3.7	1,256	2.2	7,470	3.3
	소계	13,339	7.9	2,110	3.8	15,449	6.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851	1.7	1,572	2.8	4,423	2.0
	제주도 서귀포시	2,146	1.3	461	0.8	2,607	1.2
	소계	4,997	2.9	2,033	3.6	7,030	3.1
계		169,423	100	56,166	100	225,589	100

*일반상담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사례 중 사례판정이 '잠재적'으로 판정된 사례의 상담 건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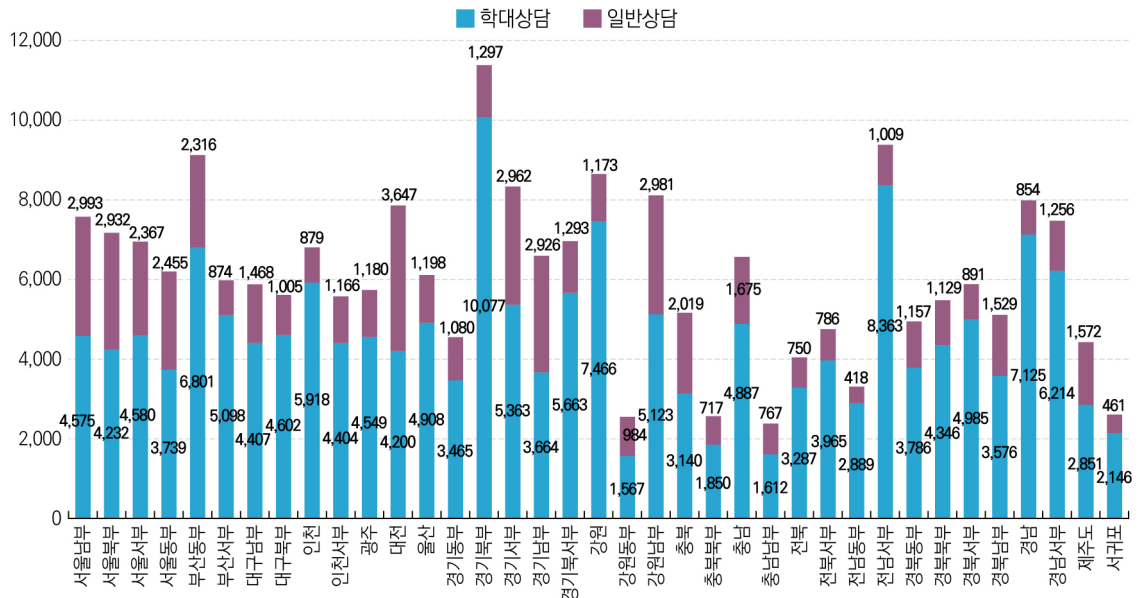


그림 7-4 지역 및 기관별 전체상담 횟수

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표 7-5 지역 및 기관별 한 사례당 평균 상담 횟수

(단위: 회, 건, %)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횟수	학대사례 건수	한 사례당 학대상담 횟수	일반상담 횟수	일반사례 건수	한 사례당 일반상담 횟수
서울	서울남부	4,575	206	22.2	2,993	774	3.9
	서울북부	4,232	135	31.3	2,932	651	4.5
	서울서부	4,580	208	22.0	2,367	730	3.2
	서울동부	3,739	170	22.0	2,455	511	4.8
	소계	17,126	719	23.8	10,747	2,666	4.0
부산	부산동부	6,801	322	21.1	2,316	405	5.7
	부산서부	5,098	252	20.2	874	409	2.1
	소계	11,899	574	20.7	3,190	814	3.9
대구	대구남부	4,407	166	26.5	1,468	351	4.2
	대구북부	4,602	167	27.6	1,005	323	3.1
	소계	9,009	333	27.1	2,473	674	3.7
인천	인천	5,918	195	30.3	879	262	3.4
	인천서부	4,404	266	16.6	1,166	209	5.6
	소계	10,322	461	22.4	2,045	471	4.3
	광주	4,549	228	20.0	1,180	241	4.9
	대전	4,200	126	33.3	3,647	615	5.9
	울산	4,908	174	28.2	1,198	352	3.4
경기	경기동부	3,465	325	10.7	1,080	295	3.7
	경기북부	10,077	558	18.1	1,297	385	3.4
	경기서부	5,363	219	24.5	2,962	370	8.0
	경기도	3,664	207	17.7	2,926	501	5.8
	경기북서부	5,663	321	17.6	1,293	321	4.0
	소계	28,232	1,630	17.3	9,558	1,872	5.1
강원	강원	7,466	168	44.4	1,173	349	3.4
	강원동부	1,567	74	21.2	984	320	3.1
	강원남부	5,123	114	44.9	2,981	262	11.4
	소계	14,156	356	39.8	5,138	931	5.5
충북	충북	3,140	130	24.2	2,019	1,098	1.8
	충북북부	1,850	92	20.1	717	271	2.6
	소계	4,990	222	22.5	2,736	1,369	2.0
충남	충남	4,887	178	27.5	1,675	233	7.2
	충남남부	1,612	111	14.5	767	175	4.4
	소계	6,499	289	22.5	2,442	408	6.0

지역	기관명	학대상담 횟수	학대상례 건수	한 사례당 학대상담 횟수	일반상담 횟수	일반사례 건수	한 사례당 일반상담 횟수
전북	전북	3,287	152	21.6	750	169	4.4
	전북서부	3,965	146	27.2	786	335	2.3
	소계	7,252	298	24.3	1,536	504	3.0
전남	전남동부	2,889	150	19.3	418	201	2.1
	전남서부	8,363	267	31.3	1,009	320	3.2
	소계	11,252	417	27.0	1,427	521	2.7
경북	경북동부	3,786	169	22.4	1,157	407	2.8
	경북북부	4,346	113	38.5	1,129	600	1.9
	경북서부	4,985	170	29.3	891	273	3.3
	경북남부	3,576	117	30.6	1,529	313	4.9
	소계	16,693	569	29.3	4,706	1,593	3.0
경남	경남	7,125	341	20.9	854	562	1.5
	경남서부	6,214	160	38.8	1,256	576	2.2
	소계	13,339	501	26.6	2,110	1,138	1.9
제주	제주특별 자치도	2,851	77	37.0	1,572	440	3.6
	제주도 서귀포시	2,146	51	42.1	461	302	1.5
	소계	4,997	128	39.0	2,033	742	2.7
계		169,423	7,025	24.1	56,166	14,911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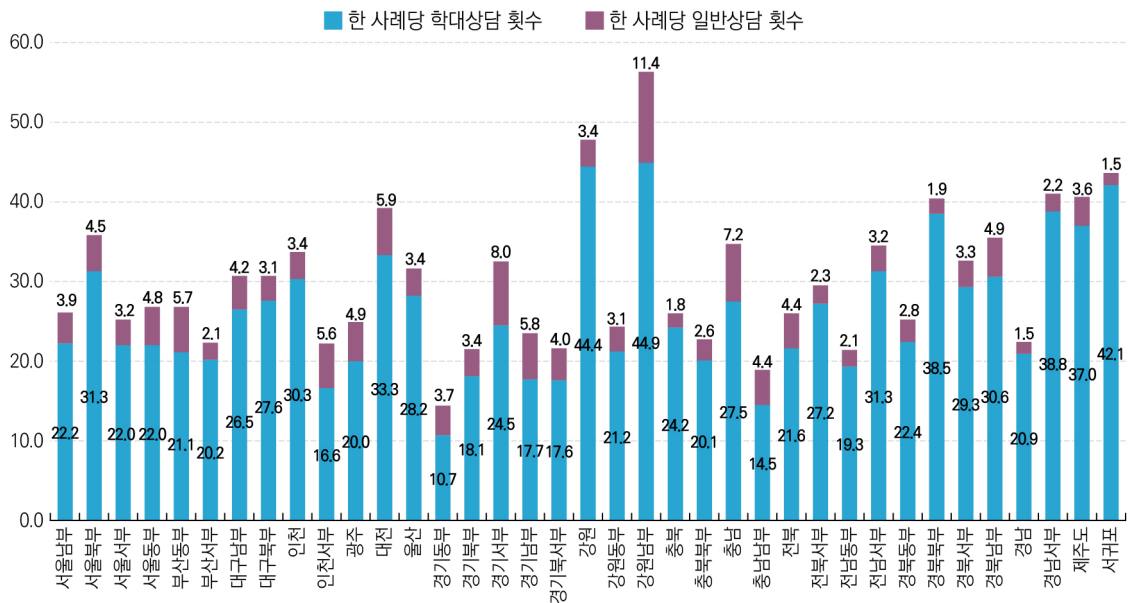


그림 7-5 기관별 한 사례당 상담 횟수

02 |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서비스

1)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표 7-6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단위: 회, %)

구 분		횟 수	비 율
상담서비스	학대피해노인 개별상담	68,696	28.2
	학대피해노인 집단상담	305	0.1
	가족상담	15,130	6.2
	관련자 상담	48,714	20.0
	심리 및 기타검사	1,042	0.4
	위기개입 기술	410	0.2
	강점관점 개입 기술	781	0.3
	소계	135,078	55.5
복지서비스 연계	국민기초수급권 연결	127	0.1
	긴급복지지원 연결	55	0.0
	가족지원서비스 연결	202	0.1
	재가서비스 연결	181	0.1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4,592	1.9
	기타자원 연결	8,042	3.3
	후원 연결	882	0.4
	직접 후원	5,153	2.1
	소계	19,234	7.9
법률서비스 연계	법률상담 연결	401	0.2
	법률소송 지원	67	0.0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89	0.0
	소계	557	0.2
의료서비스 연계	연계(이송)	73	0.0
	연계(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379	0.2
	연계(방문간호)	134	0.1
	지원(이송 및 동행)	637	0.3
	지원(의료비 지급)	233	0.1
	소계	1,456	0.6
보호서비스	지킴이 연결	340	0.1
	시설보호	81	0.0
	일시보호	1,436	0.6
	소계	1,857	0.8
정보제공 서비스	정보제공	76,573	31.5
	재학대 예방교육	8,490	3.5
	소계	85,063	35.0
계		243,245	100

* 사후관리서비스 실적(8,690회) 포함하면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의 총계는 251,935회임

2)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표 7-7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현황

(단위: 회, %)

구분		횟수	비율
상담서비스	학대행위자 개별상담	20,306	41.5
	학대행위자 집단상담	249	0.5
	가족상담	1,751	3.6
	관련자 상담	5,923	12.1
	심리 및 기타검사	163	0.3
	소계	28,392	58.0
복지서비스 연계	국민기초수급권 연결	16	0.0
	긴급복지지원 연결	8	0.0
	가족지원서비스 연결	73	0.1
	재가서비스 연결	20	0.0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640	1.3
	기타자원 연결	478	1.0
	직접 후원	503	1.0
	소계	1,738	3.6
법률서비스 연계	법률상담 연결	53	0.1
	법률소송 지원	7	0.0
	소계	60	0.1
의료서비스 연계	연계(이송)	13	0.0
	연계(의료기관서비스제공)	71	0.1
	연계(방문간호)	31	0.1
	지원(이송 및 동행)	126	0.3
	지원(의료비지급)	32	0.1
	소계	273	0.6
정보제공 서비스	재학대에방교육	3,473	7.1
	정보제공	14,995	30.6
	소계	18,468	37.7
계		48,931	100

*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실적을 포함하면 학대행위자 제공서비스 총계는 52,162회임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08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사례분석 결과



PART 8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사례분석 결과

01 | 학대피해노인 현황

1) 65세 이상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표 8-1 65세 이상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 분포

(단위: 명, %)

구 분	65세 이상 인구 수	비 율	학대피해노인 수	비 율
남	4,296,967	44.2	1,692	24.1
여	5,433,444	55.8	5,333	75.9
계	9,730,411	100	7,025	100

주. 65세 이상 인구수 :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2023.12. 기준)

2)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표 8-2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 분포

(단위: 명, %)

피해노인 성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354	384	337	318	220	57	21	1	1,692
	20.9	22.7	19.9	18.8	13.0	3.4	1.2	0.1	100
여성	1,301	1,192	1,017	926	566	270	55	6	5,333
	24.4	22.4	19.1	17.4	10.6	5.1	1.0	0.1	100
계	1,655	1,576	1,354	1,244	786	327	76	7	7,025
	23.6	22.4	19.3	17.7	11.2	4.7	1.1	0.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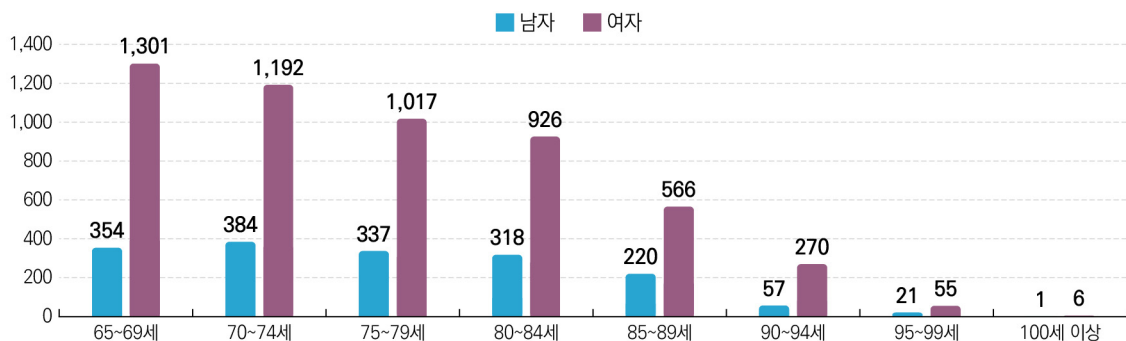


그림 8-1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분포

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표 8-3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성별

(단위: 명, %)

지역	기관명	남 성		여 성		계	
서울	서울남부	35	17.0	171	83.0	206	100
	서울북부	27	20.0	108	80.0	135	100
	서울서부	45	21.6	163	78.4	208	100
	서울동부	31	18.2	139	81.8	170	100
	소계	138	19.2	581	80.8	719	100
부산	부산동부	82	25.5	240	74.5	322	100
	부산서부	71	28.2	181	71.8	252	100
	소계	153	26.7	421	73.3	574	100
대구	대구남부	25	15.1	141	84.9	166	100
	대구북부	55	32.9	112	67.1	167	100
	소계	80	24.0	253	76.0	333	100
인천	인천	51	26.2	144	73.8	195	100
	인천서부	60	22.6	206	77.4	266	100
	소계	111	24.1	350	75.9	461	100
광주		37	16.2	191	83.8	228	100
대전		31	24.6	95	75.4	126	100
울산		37	21.3	137	78.7	174	100
경기	경기동부	80	24.6	245	75.4	325	100
	경기북부	147	26.3	411	73.7	558	100
	경기서부	50	22.8	169	77.2	219	100
	경기남부	45	21.7	162	78.3	207	100
	경기북서부	82	25.5	239	74.5	321	100
	소계	404	24.8	1,226	75.2	1,630	100
강원	강원	55	32.7	113	67.3	168	100
	강원동부	17	23.0	57	77.0	74	100
	강원남부	32	28.1	82	71.9	114	100
	소계	104	29.2	252	70.8	356	100
충북	충북	25	19.2	105	80.8	130	100
	충북북부	25	27.2	67	72.8	92	100
	소계	50	22.5	172	77.5	222	100
충남	충남	42	23.6	136	76.4	178	100
	충남남부	29	26.1	82	73.9	111	100
	소계	71	24.6	218	75.4	289	100
전북	전북	47	30.9	105	69.1	152	100
	전북서부	34	23.3	112	76.7	146	100
	소계	81	27.2	217	72.8	298	100
전남	전남동부	36	24.0	114	76.0	150	100
	전남서부	63	23.6	204	76.4	267	100
	소계	99	23.7	318	76.3	417	100

지역	기관명	남 성		여 성		계	
경북	경북동부	44	26.0	125	74.0	169	100
	경북북부	32	28.3	81	71.7	113	100
	경북서부	43	25.3	127	74.7	170	100
	경북남부	30	25.6	87	74.4	117	100
	소계	149	26.2	420	73.8	569	100
경남	경남	79	23.2	262	76.8	341	100
	경남서부	35	21.9	125	78.1	160	100
	소계	114	22.8	387	77.2	501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9	24.7	58	75.3	77	100
	제주도서귀포시	14	27.5	37	72.5	51	100
	소계	33	25.8	95	74.2	128	100
계		1,692	24.1	5,333	75.9	7,025	100

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표 8-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피해자 성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남성	968	935	48	110	272	93	16	2,442
	39.6	38.3	2.0	4.5	11.1	3.8	0.7	100
여성	3,573	3,596	217	242	486	72	10	8,196
	43.6	43.9	2.6	3.0	5.9	0.9	0.1	100
계	4,541	4,531	265	352	758	165	26	10,638*
	42.7	42.6	2.5	3.3	7.1	1.6	0.2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025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38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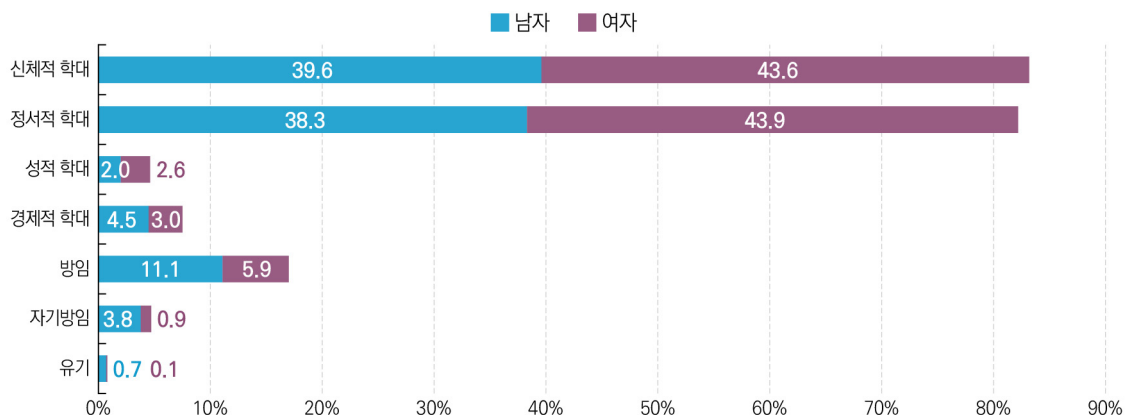


그림 8-2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표 8-5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피해자 연령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65~69세	1,206	1,204	36	56	63	31	1	2,597
	46.4	46.4	1.4	2.2	2.4	1.2	0.0	100
70~74세	1,106	1,134	33	61	64	40	7	2,445
	45.2	46.4	1.3	2.5	2.6	1.6	0.3	100
75~79세	903	905	37	80	111	38	6	2,080
	43.4	43.5	1.8	3.8	5.3	1.8	0.3	100
80~84세	757	751	45	70	185	26	7	1,841
	41.1	40.8	2.4	3.8	10.0	1.4	0.4	100
85~89세	399	396	55	57	195	25	4	1,131
	35.3	35.0	4.9	5.0	17.2	2.2	0.4	100
90~94세	133	115	42	25	111	5	1	432
	30.8	26.6	9.7	5.8	25.7	1.2	0.2	100
95~99세	34	24	13	3	28	-	-	102
	33.3	23.5	12.7	2.9	27.5	-	-	100
100세 이상	3	2	4	-	1	-	-	10
	30.0	20.0	40.0	-	10.0	-	-	100
계	4,541	4,531	265	352	758	165	26	10,638*
	42.7	42.6	2.5	3.3	7.1	1.6	0.2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025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0,638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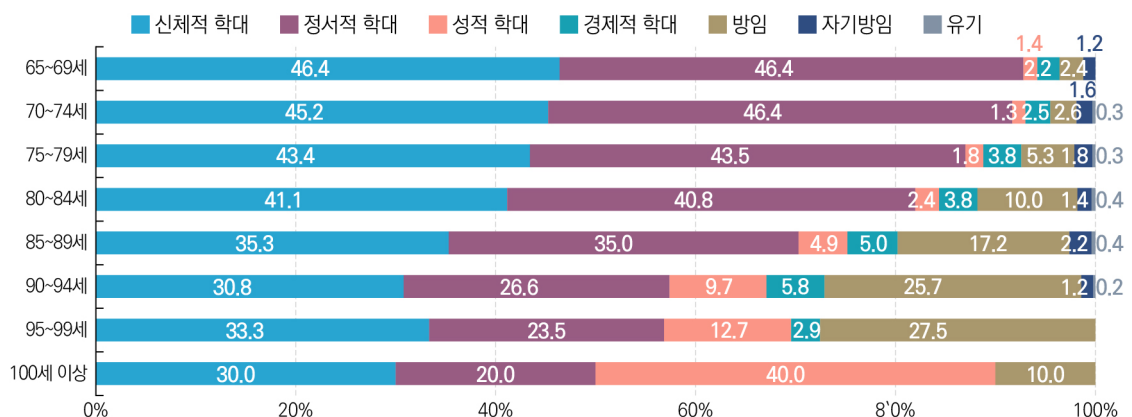


그림 8-3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별 노인학대 유형

6)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표 8-6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단위: 명, %)

구 분		명 수	비 율
배우자 있음	초혼	3,918	55.8
	재혼	312	4.4
	사실혼	241	3.4
	소계	4,471	63.6
배우자 없음	사별	2,021	28.8
	이혼	351	5.0
	별거	93	1.3
	가출	9	0.1
	미혼	80	1.1
	소계	2,554	36.4
계		7,025	100

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및 동거자 유형

표 8-7 학대행위자와의 동거여부

(단위: 명, %)

동거	비동거	계
5,032	1,993	7,025
71.6	28.4	100

표 8-8 학대피해노인 동거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명 수	비 율
배우자	3,473	48.4
아 들	1,782	24.9
딸	622	8.7
손자녀	428	6.0
시설	396	5.5
며느리	138	1.9
병원	110	1.5
기타 동거인	96	1.3
기타 친·인척	66	0.9
사위	58	0.8
계	7,169	100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동거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노인 수(7,025명)와 동거자 유형(7,169명)은 차이가 있음

8)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표 8-9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명, %)

피해자가구형태	명 수	비 율
노인부부	2,741	39.0
자녀동거	1,982	28.2
노인독거	1,118	15.9
기 타	790	11.2
손자녀동거	203	2.9
자녀·손자녀동거	191	2.7
계	7,025	100

표 8-10 시군구별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명, %)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동거		기타		계	
서울	종로구	1	14.3	5	71.4	1	14.3	-	-	-	-	-	-	7	100
	중구	2	12.5	5	31.3	5	31.3	2	12.5	1	6.3	1	6.3	16	100
	용산구	1	5.0	13	65.0	5	25.0	1	5.0	-	-	-	-	20	100
	성동구	1	9.1	3	27.3	5	45.5	-	-	-	-	2	18.2	11	100
	광진구	3	13.0	12	52.2	5	21.7	1	4.3	1	4.3	1	4.3	23	100
	동대문구	5	20.0	7	28.0	7	28.0	1	4.0	1	4.0	4	16.0	25	100
	중랑구	8	19.5	17	41.5	13	31.7	1	2.4	-	-	2	4.9	41	100
	성북구	-	-	9	33.3	16	59.3	-	-	1	3.7	1	3.7	27	100
	강북구	2	8.7	9	39.1	10	43.5	-	-	-	-	2	8.7	23	100
	도봉구	2	10.0	4	20.0	7	35.0	3	15.0	1	5.0	3	15.0	20	100
	노원구	2	5.0	13	32.5	20	50.0	-	-	3	7.5	2	5.0	40	100
	은평구	9	25.7	7	20.0	15	42.9	-	-	1	2.9	3	8.6	35	100
	서대문구	2	7.7	11	42.3	9	34.6	1	3.8	1	3.8	2	7.7	26	100
	마포구	6	15.4	14	35.9	16	41.0	1	2.6	-	-	2	5.1	39	100
	양천구	1	3.0	14	42.4	13	39.4	-	-	3	9.1	2	6.1	33	100
	강서구	8	16.0	17	34.0	18	36.0	1	2.0	3	6.0	3	6.0	50	100
	구로구	2	8.3	8	33.3	8	33.3	3	12.5	1	4.2	2	8.3	24	100
	금천구	2	6.9	13	44.8	10	34.5	1	3.4	1	3.4	2	6.9	29	100
	영등포구	6	20.7	9	31.0	11	37.9	-	-	-	-	3	10.3	29	100
	동작구	2	6.1	13	39.4	11	33.3	2	6.1	1	3.0	4	12.1	33	100
	관악구	10	15.9	28	44.4	13	20.6	2	3.2	3	4.8	7	11.1	63	100
	서초구	-	-	3	37.5	3	37.5	1	12.5	-	-	1	12.5	8	100
	강남구	1	5.0	4	20.0	12	60.0	-	-	1	5.0	2	10.0	20	100
	송파구	5	12.5	19	47.5	15	37.5	-	-	1	2.5	-	-	40	100
	강동구	4	11.4	15	42.9	12	34.3	1	2.9	-	-	3	8.6	35	100
	기타*	-	-	-	-	2	100	-	-	-	-	-	-	2	100
	소계	85	11.8	272	37.8	262	36.4	22	3.1	24	3.3	54	7.5	719	100
부산	중구	-	-	8	50.0	6	37.5	-	-	1	6.3	1	6.3	16	100
	서구	1	7.1	8	57.1	5	35.7	-	-	-	-	-	-	14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동거		기타		계	
	동구	6	20.0	11	36.7	8	26.7	1	3.3	2	6.7	2	6.7	30	100
	영도구	4	12.1	12	36.4	17	51.5	-	-	-	-	-	-	33	100
	부산진구	20	28.6	22	31.4	18	25.7	3	4.3	3	4.3	4	5.7	70	100
	동래구	7	20.6	13	38.2	7	20.6	1	2.9	1	2.9	5	14.7	34	100
	남구	8	14.5	24	43.6	17	30.9	3	5.5	-	-	3	5.5	55	100
	북구	10	21.7	21	45.7	13	28.3	1	2.2	-	-	1	2.2	46	100
	해운대구	9	17.0	22	41.5	17	32.1	2	3.8	1	1.9	2	3.8	53	100
	사하구	7	9.1	31	40.3	35	45.5	1	1.3	-	-	3	3.9	77	100
	금정구	7	25.9	9	33.3	5	18.5	-	-	2	7.4	4	14.8	27	100
	강서구	2	22.2	5	55.6	1	11.1	-	-	1	11.1	-	-	9	100
	연제구	7	23.3	13	43.3	7	23.3	-	-	-	-	3	10.0	30	100
	수영구	4	20.0	6	30.0	6	30.0	-	-	-	-	4	20.0	20	100
	사상구	7	16.7	12	28.6	16	38.1	4	9.5	1	2.4	2	4.8	42	100
	기장군	5	27.8	4	22.2	6	33.3	-	-	1	5.6	2	11.1	18	100
	소계	104	18.1	221	38.5	184	32.1	16	2.8	13	2.3	36	6.3	574	100
대구	중구	3	23.1	5	38.5	4	30.8	1	7.7	-	-	-	-	13	100
	동구	19	30.6	20	32.3	16	25.8	2	3.2	2	3.2	3	4.8	62	100
	서구	7	15.9	13	29.5	20	45.5	2	4.5	1	2.3	1	2.3	44	100
	남구	5	13.5	15	40.5	12	32.4	-	-	3	8.1	2	5.4	37	100
	북구	9	18.8	18	37.5	15	31.3	-	-	3	6.3	3	6.3	48	100
	수성구	3	9.4	14	43.8	11	34.4	1	3.1	-	-	3	9.4	32	100
	달서구	3	3.9	46	60.5	18	23.7	2	2.6	1	1.3	6	7.9	76	100
	달성군	3	15.0	13	65.0	4	20.0	-	-	-	-	-	-	20	100
	군위군	-	-	-	-	1	100	-	-	-	-	-	-	1	100
	소계	52	15.6	144	43.2	101	30.3	8	2.4	10	3.0	18	5.4	333	100
인천	중구	4	19.0	6	28.6	7	33.3	-	-	-	-	4	19.0	21	100
	동구	-	-	3	42.9	4	57.1	-	-	-	-	-	-	7	100
	미추홀구	4	11.4	13	37.1	12	34.3	-	-	1	2.9	5	14.3	35	100
	연수구	4	17.4	6	26.1	7	30.4	-	-	-	-	6	26.1	23	100
	남동구	11	10.3	36	33.6	39	36.4	5	4.7	5	4.7	11	10.3	107	100
	부평구	16	15.0	47	43.9	33	30.8	5	4.7	1	0.9	5	4.7	107	100
	계양구	2	5.0	20	50.0	12	30.0	4	10.0	1	2.5	1	2.5	40	100
	서구	9	9.5	49	51.6	23	24.2	5	5.3	4	4.2	5	5.3	95	100
	강화군	1	4.2	12	50.0	8	33.3	-	-	1	4.2	2	8.3	24	100
	옹진군	-	-	-	-	-	-	-	-	-	-	2	100	2	100
	소계	51	11.1	192	41.6	145	31.5	19	4.1	13	2.8	41	8.9	461	100
광주	동구	3	8.3	26	72.2	4	11.1	2	5.6	-	-	1	2.8	36	100
	서구	8	15.1	31	58.5	10	18.9	2	3.8	2	3.8	-	-	53	100
	남구	9	20.5	23	52.3	9	20.5	1	2.3	1	2.3	1	2.3	44	100
	북구	9	14.8	25	41.0	21	34.4	1	1.6	2	3.3	3	4.9	61	100
	광산구	4	11.8	20	58.8	6	17.6	1	2.9	2	5.9	1	2.9	34	100
	소계	33	14.5	125	54.8	50	21.9	7	3.1	7	3.1	6	2.6	228	100
대전	동구	4	13.8	5	17.2	6	20.7	1	3.4	-	-	13	44.8	29	100
	중구	4	16.7	13	54.2	4	16.7	2	8.3	1	4.2	-	-	24	100
	서구	37	72.5	10	19.6	3	5.9	-	-	1	2.0	-	-	51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동거		기타		계	
	유성구	1	10.0	3	30.0	2	20.0	1	10.0	1	10.0	2	20.0	10	100
	대덕구	1	9.1	4	36.4	6	54.5	-	-	-	-	-	-	11	100
	기타*	-	-	1	100	-	-	-	-	-	-	-	-	1	100
	소계	47	37.3	36	28.6	21	16.7	4	3.2	3	2.4	15	11.9	126	100
울산	중구	9	21.4	17	40.5	13	31.0	3	7.1	-	-	-	-	42	100
	남구	6	14.3	20	47.6	10	23.8	2	4.8	2	4.8	2	4.8	42	100
	동구	3	10.0	17	56.7	6	20.0	1	3.3	-	-	3	10.0	30	100
	북구	2	8.3	10	41.7	7	29.2	3	12.5	1	4.2	1	4.2	24	100
	울주군	6	16.7	12	33.3	9	25.0	2	5.6	-	-	7	19.4	36	100
	소계	26	14.9	76	43.7	45	25.9	11	6.3	3	1.7	13	7.5	174	100
경기	수원시	6	7.4	35	43.2	30	37.0	4	4.9	-	-	6	7.4	81	100
	성남시	16	11.4	68	48.6	40	28.6	-	-	1	0.7	15	10.7	140	100
	의정부시	15	13.0	35	30.4	40	34.8	5	4.3	2	1.7	18	15.7	115	100
	안양시	2	9.1	10	45.5	8	36.4	-	-	-	-	2	9.1	22	100
	부천시	9	10.7	30	35.7	31	36.9	5	6.0	3	3.6	6	7.1	84	100
	광명시	1	3.3	9	30.0	15	50.0	-	-	4	13.3	1	3.3	30	100
	평택시	2	7.7	9	34.6	11	42.3	1	3.8	1	3.8	2	7.7	26	100
	동두천시	-	-	8	72.7	2	18.2	-	-	1	9.1	-	-	11	100
	안산시	3	7.1	22	52.4	13	31.0	2	4.8	-	-	2	4.8	42	100
	고양시	23	13.3	71	41.0	58	33.5	6	3.5	1	0.6	14	8.1	173	100
	과천시	-	-	5	62.5	3	37.5	-	-	-	-	-	-	8	100
	구리시	4	7.0	29	50.9	17	29.8	3	5.3	2	3.5	2	3.5	57	100
	남양주시	23	10.2	90	40.0	71	31.6	7	3.1	9	4.0	25	11.1	225	100
	오산시	2	13.3	5	33.3	5	33.3	-	-	2	13.3	1	6.7	15	100
	시흥시	1	2.6	17	43.6	14	35.9	2	5.1	1	2.6	4	10.3	39	100
	군포시	-	-	9	36.0	13	52.0	-	-	3	12.0	-	-	25	100
	의왕시	1	9.1	2	18.2	1	9.1	-	-	-	-	7	63.6	11	100
	하남시	2	8.0	10	40.0	4	16.0	2	8.0	-	-	7	28.0	25	100
	용인시	8	7.1	57	50.9	28	25.0	2	1.8	-	-	17	15.2	112	100
	파주시	7	8.0	34	39.1	27	31.0	2	2.3	5	5.7	12	13.8	87	100
	이천시	2	25.0	3	37.5	2	25.0	-	-	-	-	1	12.5	8	100
	안성시	-	-	8	53.3	3	20.0	-	-	2	13.3	2	13.3	15	100
	김포시	4	9.3	19	44.2	10	23.3	1	2.3	5	11.6	4	9.3	43	100
	화성시	2	7.1	13	46.4	10	35.7	-	-	-	-	3	10.7	28	100
	광주시	4	11.4	14	40.0	12	34.3	1	2.9	-	-	4	11.4	35	100
	양주시	7	8.5	23	28.0	24	29.3	-	-	2	2.4	26	31.7	82	100
	포천시	7	17.1	13	31.7	16	39.0	-	-	-	-	5	12.2	41	100
	여주시	1	8.3	5	41.7	5	41.7	-	-	-	-	1	8.3	12	100
	연천군	2	28.6	2	28.6	-	-	2	28.6	-	-	1	14.3	7	100
	가평군	-	-	8	61.5	5	38.5	-	-	-	-	-	-	13	100
	양평군	1	5.6	9	50.0	4	22.2	1	5.6	-	-	3	16.7	18	100
	소계	155	9.5	672	41.2	522	32.0	46	2.8	44	2.7	191	11.7	1,630	100
강원	춘천시	10	8.1	24	19.4	16	12.9	2	1.6	5	4.0	67	54.0	124	100
	원주시	24	25.3	11	11.6	19	20.0	1	1.1	7	7.4	33	34.7	95	100
	강릉시	6	15.0	21	52.5	8	20.0	-	-	-	-	5	12.5	40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동거		기타		계	
	동해시	1	8.3	3	25.0	7	58.3	-	-	1	8.3	-	-	12	100
	태백시	2	40.0	1	20.0	2	40.0	-	-	-	-	-	-	5	100
	속초시	2	18.2	3	27.3	4	36.4	-	-	-	-	2	18.2	11	100
	삼척시	-	-	2	33.3	4	66.7	-	-	-	-	-	-	6	100
	홍천군	9	27.3	7	21.2	3	9.1	-	-	-	-	14	42.4	33	100
	횡성군	-	-	1	50.0	1	50.0	-	-	-	-	-	-	2	100
	영월군	1	100	-	-	-	-	-	-	-	-	-	-	1	100
	평창군	-	-	1	25.0	2	50.0	-	-	1	25.0	-	-	4	100
	정선군	-	-	5	71.4	2	28.6	-	-	-	-	-	-	7	100
	철원군	-	-	-	-	2	66.7	-	-	1	33.3	-	-	3	100
	화천군	-	-	1	100	-	-	-	-	-	-	-	-	1	100
	양구군	-	-	-	-	-	-	-	-	-	-	-	-	-	-
	인제군	-	-	2	33.3	3	50.0	1	16.7	-	-	-	-	6	100
	고성군	-	-	-	-	2	100	-	-	-	-	-	-	2	100
	양양군	1	25.0	2	50.0	1	25.0	-	-	-	-	-	-	4	100
	소계	56	15.7	84	23.6	76	21.3	4	1.1	15	4.2	121	34.0	356	100
충북	청주시	19	19.6	40	41.2	23	23.7	6	6.2	6	6.2	3	3.1	97	100
	충주시	10	21.7	17	37.0	13	28.3	-	-	-	-	6	13.0	46	100
	제천시	7	46.7	2	13.3	2	13.3	-	-	-	-	4	26.7	15	100
	보은군	-	-	5	83.3	1	16.7	-	-	-	-	-	-	6	100
	옥천군	1	14.3	4	57.1	1	14.3	1	14.3	-	-	-	-	7	100
	영동군	-	-	-	-	-	-	-	-	-	-	1	100	1	100
	진천군	3	21.4	1	7.1	3	21.4	1	7.1	1	7.1	5	35.7	14	100
	괴산군	3	27.3	4	36.4	1	9.1	-	-	-	-	3	27.3	11	100
	음성군	6	30.0	10	50.0	3	15.0	-	-	-	-	1	5.0	20	100
	단양군	-	-	-	-	-	-	-	-	-	-	-	-	-	-
	증평군	2	40.0	3	60.0	-	-	-	-	-	-	-	-	5	100
	소계	51	23.0	86	38.7	47	21.2	8	3.6	7	3.2	23	10.4	222	100
충남	천안시	7	19.4	13	36.1	8	22.2	2	5.6	1	2.8	5	13.9	36	100
	공주시	2	7.7	12	46.2	12	46.2	-	-	-	-	-	-	26	100
	보령시	1	4.3	4	17.4	2	8.7	-	-	1	4.3	15	65.2	23	100
	아산시	5	21.7	7	30.4	8	34.8	1	4.3	1	4.3	1	4.3	23	100
	서산시	6	14.6	15	36.6	13	31.7	1	2.4	-	-	6	14.6	41	100
	논산시	5	20.8	10	41.7	7	29.2	-	-	1	4.2	1	4.2	24	100
	계룡시	1	50.0	-	-	-	-	-	-	-	-	1	50.0	2	100
	당진시	4	22.2	6	33.3	5	27.8	1	5.6	-	-	2	11.1	18	100
	금산군	1	10.0	2	20.0	2	20.0	1	10.0	-	-	4	40.0	10	100
	부여군	4	44.4	3	33.3	2	22.2	-	-	-	-	-	-	9	100
	서천군	-	-	6	42.9	8	57.1	-	-	-	-	-	-	14	100
	청양군	1	33.3	2	66.7	-	-	-	-	-	-	-	-	3	100
	홍성군	2	18.2	1	9.1	3	27.3	-	-	-	-	5	45.5	11	100
	예산군	3	18.8	3	18.8	5	31.3	1	6.3	2	12.5	2	12.5	16	100
	태안군	-	-	1	33.3	-	-	1	33.3	-	-	1	33.3	3	100
	소계	42	16.2	85	32.8	75	29.0	8	3.1	6	2.3	43	16.6	259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동거		기타		계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3	10.0	10	33.3	11	36.7	3	10.0	1	3.3	2	6.7	30	100
	소계	3	10.0	10	33.3	11	36.7	3	10.0	1	3.3	2	6.7	30	100
전북	전주시	19	17.8	50	46.7	20	18.7	1	0.9	3	2.8	14	13.1	107	100
	군산시	9	22.5	19	47.5	7	17.5	2	5.0	-	-	3	7.5	40	100
	익산시	9	28.1	17	53.1	5	15.6	-	-	-	-	1	3.1	32	100
	정읍시	7	33.3	6	28.6	7	33.3	1	4.8	-	-	-	-	21	100
	남원시	-	-	5	71.4	1	14.3	-	-	-	-	1	14.3	7	100
	김제시	8	33.3	9	37.5	5	20.8	1	4.2	-	-	1	4.2	24	100
	완주군	4	30.8	4	30.8	4	30.8	-	-	-	-	1	7.7	13	100
	진안군	-	-	4	80.0	-	-	-	-	-	-	1	20.0	5	100
	무주군	2	66.7	-	-	-	-	-	-	-	-	1	33.3	3	100
	장수군	-	-	6	85.7	-	-	-	-	-	-	1	14.3	7	100
	임실군	-	-	4	57.1	2	28.6	1	14.3	-	-	-	-	7	100
	순창군	-	-	-	-	2	66.7	-	-	-	-	1	33.3	3	100
	고창군	7	30.4	10	43.5	4	17.4	-	-	-	-	2	8.7	23	100
	부안군	1	16.7	2	33.3	3	50.0	-	-	-	-	-	-	6	100
	소계	66	22.1	136	45.6	60	20.1	6	2.0	3	1.0	27	9.1	298	100
전남	목포시	31	40.3	20	26.0	12	15.6	-	-	2	2.6	12	15.6	77	100
	여수시	9	30.0	9	30.0	10	33.3	-	-	1	3.3	1	3.3	30	100
	순천시	11	25.0	20	45.5	7	15.9	1	2.3	3	6.8	2	4.5	44	100
	나주시	6	8.3	15	20.8	7	9.7	-	-	-	-	44	61.1	72	100
	광양시	-	-	9	64.3	3	21.4	-	-	-	-	2	14.3	14	100
	담양군	3	20.0	10	66.7	2	13.3	-	-	-	-	-	-	15	100
	곡성군	-	-	2	100	-	-	-	-	-	-	-	-	2	100
	구례군	-	-	3	60.0	1	20.0	-	-	-	-	1	20.0	5	100
	고흥군	4	19.0	8	38.1	7	33.3	-	-	2	9.5	-	-	21	100
	보성군	1	11.1	3	33.3	2	22.2	-	-	3	33.3	-	-	9	100
	화순군	-	-	-	-	-	-	-	-	-	-	-	-	-	-
	장흥군	-	-	3	50.0	1	16.7	-	-	2	33.3	-	-	6	100
	강진군	1	7.1	6	42.9	5	35.7	2	14.3	-	-	-	-	14	100
	해남군	4	11.4	15	42.9	13	37.1	-	-	-	-	3	8.6	35	100
	영암군	1	16.7	1	16.7	4	66.7	-	-	-	-	-	-	6	100
	무안군	2	11.1	10	55.6	2	11.1	-	-	1	5.6	3	16.7	18	100
	함평군	1	16.7	4	66.7	1	16.7	-	-	-	-	-	-	6	100
	영광군	3	18.8	8	50.0	5	31.3	-	-	-	-	-	-	16	100
	장성군	-	-	1	25.0	1	25.0	-	-	2	50.0	-	-	4	100
	완도군	3	75.0	1	25.0	-	-	-	-	-	-	-	-	4	100
	진도군	5	50.0	3	30.0	2	20.0	-	-	-	-	-	-	10	100
	신안군	4	44.4	2	22.2	2	22.2	-	-	-	-	1	11.1	9	100
	소계	89	21.3	153	36.7	87	20.9	3	0.7	16	3.8	69	16.5	417	100
경북	포항시	50	48.5	33	32.0	15	14.6	3	2.9	1	1.0	1	1.0	103	100
	경주시	14	29.2	21	43.8	12	25.0	1	2.1	-	-	-	-	48	100
	김천시	4	14.3	10	35.7	13	46.4	1	3.6	-	-	-	-	28	100
	안동시	13	20.0	34	52.3	16	24.6	-	-	-	-	2	3.1	65	100
	구미시	7	10.6	31	47.0	17	25.8	3	4.5	-	-	8	12.1	66	100

지역	시군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동거		기타		계	
	영주시	5	31.3	6	37.5	3	18.8	-	-	-	-	2	12.5	16	100
	영천시	5	22.7	10	45.5	4	18.2	-	-	-	-	3	13.6	22	100
	상주시	7	20.0	9	25.7	9	25.7	1	2.9	-	-	9	25.7	35	100
	문경시	6	23.1	12	46.2	5	19.2	-	-	-	-	3	11.5	26	100
	경산시	8	12.9	17	27.4	5	8.1	3	4.8	1	1.6	28	45.2	62	100
	군위군	-	-	-	-	1	100	-	-	-	-	-	-	1	100
	의성군	1	12.5	4	50.0	2	25.0	1	12.5	-	-	-	-	8	100
	청송군	1	25.0	2	50.0	1	25.0	-	-	-	-	-	-	4	100
	영양군	-	-	-	-	-	-	-	-	-	-	-	-	-	-
	영덕군	-	-	2	50.0	2	50.0	-	-	-	-	-	-	4	100
	청도군	-	-	1	20.0	2	40.0	-	-	-	-	2	40.0	5	100
	고령군	-	-	-	-	1	100	-	-	-	-	-	-	1	100
	성주군	2	13.3	6	40.0	5	33.3	-	-	1	6.7	1	6.7	15	100
	칠곡군	2	7.7	8	30.8	3	11.5	1	3.8	-	-	12	46.2	26	100
	예천군	7	38.9	2	11.1	9	50.0	-	-	-	-	-	-	18	100
	봉화군	-	-	1	16.7	4	66.7	-	-	1	16.7	-	-	6	100
	울진군	1	20.0	-	-	3	60.0	1	20.0	-	-	-	-	5	100
	울릉군	5	100	-	-	-	-	-	-	-	-	-	-	5	100
	소계	138	24.3	209	36.7	132	23.2	15	2.6	4	0.7	71	12.5	569	100
경남	창원시	32	21.5	68	45.6	40	26.8	3	2.0	5	3.4	1	0.7	149	100
	진주시	12	19.7	30	49.2	12	19.7	4	6.6	-	-	3	4.9	61	100
	통영시	2	12.5	6	37.5	5	31.3	1	6.3	2	12.5	-	-	16	100
	사천시	2	11.1	5	27.8	7	38.9	2	11.1	1	5.6	1	5.6	18	100
	김해시	16	19.8	34	42.0	25	30.9	2	2.5	3	3.7	1	1.2	81	100
	밀양시	-	-	3	75.0	-	-	1	25.0	-	-	-	-	4	100
	거제시	6	31.6	8	42.1	4	21.1	-	-	1	5.3	-	-	19	100
	양산시	5	7.9	35	55.6	14	22.2	1	1.6	3	4.8	5	7.9	63	100
	의령군	1	50.0	-	-	-	-	1	50.0	-	-	-	-	2	100
	함안군	1	25.0	2	50.0	-	-	-	-	-	-	1	25.0	4	100
	창녕군	1	33.3	-	-	2	66.7	-	-	-	-	-	-	3	100
	고성군	1	50.0	-	-	-	-	-	-	-	-	1	50.0	2	100
	남해군	4	80.0	-	-	1	20.0	-	-	-	-	-	-	5	100
	하동군	1	12.5	2	25.0	3	37.5	2	25.0	-	-	-	-	8	100
	산청군	2	6.3	-	-	2	6.3	-	-	1	3.1	27	84.4	32	100
	함양군	-	-	3	60.0	2	40.0	-	-	-	-	-	-	5	100
	거창군	1	6.3	-	-	5	31.3	-	-	-	-	10	62.5	16	100
	합천군	6	46.2	2	15.4	5	38.5	-	-	-	-	-	-	13	100
	소계	93	18.6	198	39.5	127	25.3	17	3.4	16	3.2	50	10.0	501	100
제주	제주시	14	18.2	30	39.0	14	18.2	5	6.5	4	5.2	10	13.0	77	100
	서귀포시	13	25.5	12	23.5	23	45.1	1	2.0	2	3.9	-	-	51	100
	소계	27	21.1	42	32.8	37	28.9	6	4.7	6	4.7	10	7.8	128	100
합계		1,118	15.9	2,741	39.0	1,982	28.2	203	2.9	191	2.7	790	11.2	7,025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9)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표 8-11 학대피해노인 주거형태

(단위: 명, %)

자택	전세	월세	영구임대	의료시설	의료복지시설	무상	주거복지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기타	계
4,596	497	567	389	157	538	90	57	54	80	7,025
65.4	7.1	8.1	5.5	2.2	7.7	1.3	0.8	0.8	1.1	100

10)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표 8-12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전체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025	1,067
	15.2

11)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표 8-13 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

(단위: 명, %)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이상	계
1,407	2,612	1,225	1,485	296	7,025
20.0	37.2	17.4	21.1	4.2	100

12)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표 8-14 학대피해노인 직업유형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무직	5,951	84.7
단순 노무 종사자	378	5.4
자영업자	201	2.9
서비스·판매종사자	178	2.5
농·어·축산업 종사자	171	2.4
전문직	60	0.9
기술공 및 준전문가	34	0.5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9	0.3
종교인	10	0.1
기능업 및 관련기능종사자	10	0.1
사무종사자	9	0.1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4	0.1
계	7,025	100

13) 학대피해노인 건강상태

가. 학대피해노인 질병유형

표 8-15 학대피해노인 질병유형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고혈압	1,418	25.3
기타	1,200	21.4
당뇨병	784	14.0
관절염	771	13.7
디스크	233	4.2
골다공증	179	3.2
중풍, 뇌혈관 질환	151	2.7
신경통	146	2.6
악성신생물(암)	108	1.9
골절, 후유증	99	1.8
협심증, 심근경색증	95	1.7
요통, 좌골통	95	1.7
갑상선 질환	70	1.2
천식	52	0.9
만성신장질환	44	0.8
피부병	29	0.5
저혈압	29	0.5
백내장	23	0.4
빈혈	21	0.4
녹내장	19	0.3
소화성궤양	16	0.3
만성간염, 간경변	10	0.2
만성기관지염	9	0.2
폐결핵, 결핵	7	0.1
만성중이염	2	0.0
계	5,610	100

* 장애는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025건)와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통계 수치(5,610건)에는 차이가 있음

나. 학대피해노인 장애 수 및 장애유형

표 8-16 학대피해노인 장애 수

(단위: 건, %)

장애 수	건 수	비 율
1개	79	12.7
2개 이상	543	87.3
계	622*	100

* 장애는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025건)와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통계 수치(622건)에는 차이가 있음

표 8-17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신체 장애	지체장애	164	26.4
	청각장애	95	15.3
	시각장애	57	9.2
	뇌병변장애	37	5.9
	언어장애	11	1.8
	신장장애	8	1.3
	심장장애	4	0.6
	장루요루장애	3	0.5
	간질장애	2	0.3
	호흡기장애	1	0.2
	간장애	1	0.2
	안면장애	-	-
	소계	383	61.6
정신 장애	우울장애	166	26.7
	정신분열	32	5.1
	지적장애	28	4.5
	정동장애	9	1.4
	반사회적 인격장애	2	0.3
	자폐성장애	2	0.3
	소계	239	38.4
계		622	100

* 장애는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7,025건)와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통계 수치(622건)에는 차이가 있음

** 학대 결과로서 장애 판정 유무는 확인이 어려우며,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거나 현장조사 시 장애가 의심되는 대상자도 포함.

다.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표 8-18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명, %)

전체학대사례	치매진단(치매로 진단받음)	치매의심(치매가 의심됨)	계
7,025	1,214	608	1,822
	17.3	8.7	25.9

라. 학대피해노인 중독 유형

표 8-19 학대피해노인 중독 유형

(단위: 명, %)

전체학대사례	알코올 사용장애	약물사용장애	도박중독	계
7,025	91	3	1	95
	1.3	0.0	0.0	1.4

14)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표 8-20 학대피해노인 일상생활 정도

(단위: 명, %)

구 분		부분도움	완전도움	완전자립	계
일상생활 수행능력 (ADL)	옷 벗고 입기	1,311	583	5,131	7,025
		18.7	8.3	73.0	100
	세수하기	1,295	573	5,157	7,025
		18.4	8.2	73.4	100
	양치질하기	1,293	569	5,163	7,025
		18.4	8.1	73.5	100
	목욕하기	1,342	649	5,034	7,025
		19.1	9.2	71.7	100
	식사하기	1,331	545	5,149	7,025
		18.9	7.8	73.3	100
	체위변경하기	1,295	550	5,180	7,025
		18.4	7.8	73.7	100
	일어나 앉기	1,330	562	5,133	7,025
		18.9	8.0	73.1	100
	움거 타기	1,327	591	5,107	7,025
		18.9	8.4	72.7	100
	방밖으로 나오기	1,321	571	5,133	7,025
		18.8	8.1	73.1	100

구 분		부분도움	완전도움	완전자립	계
	화장실 사용하기	1,307	589	5,129	7,025
		18.6	8.4	73.0	100
	대변조절하기	1,286	579	5,160	7,025
		18.3	8.2	73.5	100
	소변조절하기	1,291	579	5,155	7,025
		18.4	8.2	73.4	100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IADL)	몸단장하기	1,315	626	5,084	7,025
		18.7	8.9	72.4	100
	집안일 하기	1,383	738	4,904	7,025
		19.7	10.5	69.8	100
	식사준비하기	1,370	730	4,925	7,025
		19.5	10.4	70.1	100
	빨래하기	1,337	748	4,940	7,025
		19.0	10.6	70.3	100
	근거리 외출하기	1,413	728	4,884	7,025
		20.1	10.4	69.5	100
	교통수단 이용하기	1,417	752	4,856	7,025
		20.2	10.7	69.1	100
	물건 사러가기	1,372	741	4,912	7,025
		19.5	10.5	69.9	100
	금전관리하기	1,349	698	4,978	7,025
		19.2	9.9	70.9	100
	전화 사용하기	1,330	636	5,059	7,025
		18.9	9.1	72.0	100
	약 챙겨 먹기	1,366	647	5,012	7,025
		19.4	9.2	71.3	100

02 | 학대행위자 현황

1)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표 8-21 학대행위자 성별 연령분포

(단위: 명, %)

구 분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남성	3	68	60	290	828	1,017	934	2,245	5,445
	0.1	1.2	1.1	5.3	15.2	18.7	17.2	41.2	100
여성	-	19	33	96	381	1,017	589	320	2,455
	-	0.8	1.3	3.9	15.5	41.4	24.0	13.0	100
계	3	87	93	386	1,209	2,034	1,523	2,565	7,900*
	0.0	1.1	1.2	4.9	15.3	25.7	19.3	32.5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7,025명)와 학대행위자(7,900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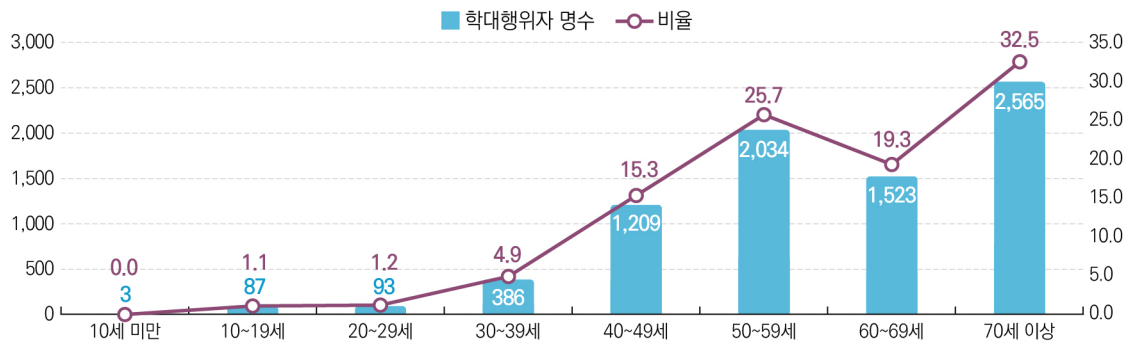


그림 8-4 학대행위자 연령분포

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표 8-22 지역 및 기관별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시도	시설명	남 성		여 성		계	
서울	서울남부	168	80.0	42	20.0	210	100
	서울북부	105	73.4	38	26.6	143	100
	서울서부	168	74.0	59	26.0	227	100
	서울동부	137	79.2	36	20.8	173	100
	소계	578	76.8	175	23.2	753	100
부산	부산동부	270	79.4	70	20.6	340	100
	부산서부	193	76.3	60	23.7	253	100
	소계	463	78.1	130	21.9	593	100
대구	대구남부	142	85.0	25	15.0	167	100
	대구북부	140	82.8	29	17.2	169	100
	소계	282	83.9	54	16.1	336	100

시도	시설명	남 성		여 성		계	
인천	인천	138	70.4	58	29.6	196	100
	인천서부	233	86.0	38	14.0	271	100
	소계	371	79.4	96	20.6	467	100
광주		184	80.7	44	19.3	228	100
대전		93	73.2	34	26.8	127	100
울산		143	79.4	37	20.6	180	100
경기	경기동부	254	72.6	96	27.4	350	100
	경기북부	411	70.9	169	29.1	580	100
	경기서부	160	71.1	65	28.9	225	100
	경기남부	169	78.6	46	21.4	215	100
	경기북서부	248	74.7	84	25.3	332	100
	소계	1,242	73.0	460	27.0	1,702	100
강원	강원	140	36.8	240	63.2	380	100
	강원동부	58	77.3	17	22.7	75	100
	강원남부	50	35.2	92	64.8	142	100
	소계	248	41.5	349	58.5	597	100
충북	충북	109	69.9	47	30.1	156	100
	충북북부	71	68.9	32	31.1	103	100
	소계	180	69.5	79	30.5	259	100
충남	충남	128	70.3	54	29.7	182	100
	충남남부	77	67.5	37	32.5	114	100
	소계	205	69.3	91	30.7	296	100
전북	전북	119	74.8	40	25.2	159	100
	전북서부	109	74.7	37	25.3	146	100
	소계	228	74.8	77	25.2	305	100
전남	전남동부	120	80.0	30	20.0	150	100
	전남서부	254	39.6	388	60.4	642	100
	소계	374	47.2	418	52.8	792	100
경북	경북동부	123	72.4	47	27.6	170	100
	경북북부	81	69.2	36	30.8	117	100
	경북서부	132	72.5	50	27.5	182	100
	경북남부	62	52.1	57	47.9	119	100
	소계	398	67.7	190	32.3	588	100
경남	경남	264	76.1	83	23.9	347	100
	경남서부	104	52.3	95	47.7	199	100
	소계	368	67.4	178	32.6	546	1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54	67.5	26	32.5	80	100
	제주도서귀포시	34	66.7	17	33.3	51	100
	소계	88	67.2	43	32.8	131	100
계		5,445	68.9	2,455	31.1	7,900	100

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표 8-23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명, %)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 위	손자녀	친척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친구	기타 기관	노인 복지 시설	의료인	
165	2,830	2,080	88	607	45	168	76	92	96	79	10	105	1,346	113	7,900*
2.1	35.8	26.3	1.1	7.7	0.6	2.1	1.0	1.2	1.2	1.0	0.1	1.3	17.0	1.4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7,025명)와 학대행위자(7,900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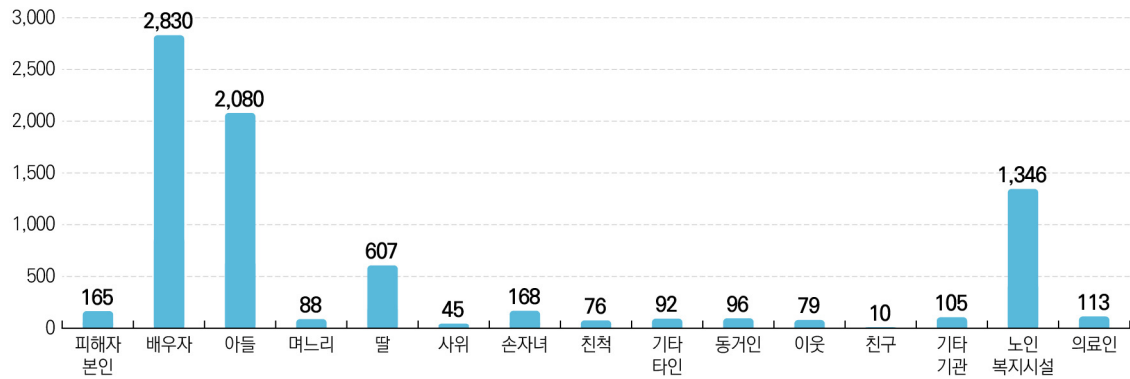


그림 8-5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표 8-24 시군구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명, %)

지역	시군구	피해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서울	종로구	-	-	5	71.4	1	14.3	-	-	1	14.3	-	-	-	-	-	-	-	-	-	7	100	
	중구	-	-	6	28.6	7	33.3	-	-	5	23.8	-	-	1	4.8	-	-	1	4.8	1	4.8	21	100
	용산구	-	-	16	80.0	4	20.0	-	-	-	-	-	-	-	-	-	-	-	-	-	20	100	
	성동구	-	-	4	36.4	4	36.4	-	-	3	27.3	-	-	-	-	-	-	-	-	-	11	100	
	광진구	-	-	14	60.9	6	26.1	-	-	1	4.3	-	-	1	4.3	-	-	-	-	1	4.3	23	100
	동대문구	1	4.0	8	32.0	8	32.0	1	4.0	3	12.0	-	-	-	-	-	-	2	8.0	2	8.0	25	100
	중랑구	1	2.4	20	47.6	15	35.7	-	-	3	7.1	-	-	1	2.4	-	-	2	4.8	-	-	42	100
	성북구	-	-	10	35.7	9	32.1	-	-	6	21.4	-	-	1	3.6	2	7.1	-	-	-	-	28	100
	강북구	1	4.3	12	52.2	6	26.1	-	-	2	8.7	-	-	-	-	-	-	-	-	2	8.7	23	100
	도봉구	-	-	6	26.1	8	34.8	-	-	1	4.3	1	4.3	1	4.3	-	-	1	4.3	5	21.7	23	100
	노원구	-	-	19	43.2	14	31.8	1	2.3	5	11.4	-	-	-	-	2	4.5	-	-	3	6.8	44	100
	은평구	-	-	8	20.0	13	32.5	1	2.5	5	12.5	-	-	1	2.5	1	2.5	-	-	11	27.5	40	100
	서대문구	-	-	15	55.6	4	14.8	-	-	4	14.8	1	3.7	1	3.7	1	3.7	-	-	1	3.7	27	100
	마포구	-	-	16	40.0	12	30.0	1	2.5	9	22.5	-	-	-	-	-	-	-	-	2	5.0	40	100

지역	시군구	피해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양천구	-	-	15	44.1	12	35.3	-	-	4	11.8	1	2.9	-	-	1	2.9	-	-	1	2.9	34	100
	강서구	4	7.3	22	40.0	17	30.9	-	-	3	5.5	2	3.6	1	1.8	-	-	3	5.5	3	5.5	55	100
	구로구	-	-	10	38.5	6	23.1	2	7.7	-	-	-	-	2	7.7	2	7.7	2	7.7	2	7.7	26	100
	금천구	-	-	13	44.8	10	34.5	-	-	4	13.8	1	3.4	1	3.4	-	-	-	-	-	-	29	100
	영등포구	-	-	13	44.8	8	27.6	1	3.4	6	20.7	-	-	-	-	1	3.4	-	-	-	-	29	100
	동작구	-	-	20	60.6	6	18.2	-	-	4	12.1	-	-	2	6.1	-	-	-	-	1	3.0	33	100
	관악구	1	1.6	29	46.0	24	38.1	1	1.6	2	3.2	-	-	2	3.2	2	3.2	-	-	2	3.2	63	100
	서초구	-	-	3	30.0	3	30.0	-	-	-	-	-	-	1	10.0	-	-	-	-	3	30.0	10	100
	강남구	-	-	6	30.0	8	40.0	-	-	4	20.0	-	-	1	5.0	-	-	1	5.0	-	-	20	100
	송파구	-	-	20	50.0	15	37.5	-	-	4	10.0	-	-	-	-	-	-	1	2.5	-	-	40	100
	강동구	-	-	23	62.2	6	16.2	1	2.7	4	10.8	-	-	1	2.7	-	-	-	-	2	5.4	37	100
	기타*	-	-	-	-	1	33.3	-	-	2	66.7	-	-	-	-	-	-	-	-	-	-	3	100
	소계	8	1.1	333	44.2	227	30.1	9	1.2	85	11.3	6	0.8	18	2.4	12	1.6	13	1.7	42	5.6	753	100
부산	중구	-	-	9	56.3	7	43.8	-	-	-	-	-	-	-	-	-	-	-	-	-	-	16	100
	서구	-	-	7	50.0	6	42.9	-	-	-	-	-	-	-	-	-	-	-	-	1	7.1	14	100
	동구	-	-	12	37.5	12	37.5	-	-	1	3.1	-	-	-	-	-	-	5	15.6	2	6.3	32	100
	영도구	1	3.0	11	33.3	15	45.5	-	-	4	12.1	1	3.0	-	-	-	-	1	3.0	-	-	33	100
	부산진구	2	2.9	27	38.6	19	27.1	-	-	11	15.7	-	-	2	2.9	1	1.4	5	7.1	3	4.3	70	100
	동래구	1	2.9	14	41.2	11	32.4	-	-	3	8.8	-	-	-	-	-	-	3	8.8	2	5.9	34	100
	남구	3	5.3	25	43.9	18	31.6	-	-	2	3.5	-	-	1	1.8	3	5.3	2	3.5	3	5.3	57	100
	북구	1	2.0	24	48.0	14	28.0	1	2.0	8	16.0	-	-	-	-	1	2.0	1	2.0	-	-	50	100
	해운대구	-	-	25	47.2	17	32.1	-	-	5	9.4	1	1.9	1	1.9	-	-	3	5.7	1	1.9	53	100
	사하구	-	-	31	38.8	31	38.8	1	1.3	8	10.0	2	2.5	-	-	3	3.8	-	-	4	5.0	80	100
	금정구	2	7.1	10	35.7	10	35.7	-	-	1	3.6	1	3.6	2	7.1	-	-	1	3.6	1	3.6	28	100
	강서구	-	-	5	41.7	4	33.3	-	-	1	8.3	-	-	-	-	-	-	-	-	2	16.7	12	100
	연제구	-	-	15	50.0	8	26.7	1	3.3	3	10.0	-	-	1	3.3	-	-	2	6.7	-	-	30	100
	수영구	1	4.8	5	23.8	11	52.4	-	-	-	-	-	-	-	-	-	-	-	-	4	19.0	21	100
	사상구	1	2.2	14	31.1	17	37.8	1	2.2	3	6.7	-	-	4	8.9	-	-	1	2.2	4	8.9	45	100
	기장군	-	-	4	22.2	8	44.4	-	-	2	11.1	-	-	-	-	-	-	3	16.7	1	5.6	18	100
	소계	12	2.0	238	40.1	208	35.1	4	0.7	52	8.8	5	0.8	11	1.9	8	1.3	27	4.6	28	4.7	593	100
대구	중구	2	15.4	4	30.8	3	23.1	-	-	2	15.4	-	-	1	7.7	-	-	1	7.7	-	-	13	100
	동구	6	9.7	24	38.7	20	32.3	-	-	2	3.2	3	4.8	2	3.2	1	1.6	2	3.2	2	3.2	62	100
	서구	3	6.5	14	30.4	17	37.0	-	-	5	10.9	-	-	2	4.3	-	-	-	-	5	10.9	46	100
	남구	1	2.7	15	40.5	14	37.8	-	-	4	10.8	-	-	1	2.7	-	-	1	2.7	1	2.7	37	100
	북구	5	10.4	18	37.5	17	35.4	-	-	1	2.1	3	6.3	1	2.1	-	-	1	2.1	2	4.2	48	100
	수성구	-	-	18	56.3	6	18.8	-	-	3	9.4	-	-	1	3.1	-	-	1	3.1	3	9.4	32	100
	달서구	-	-	45	58.4	22	28.6	-	-	2	2.6	-	-	3	3.9	2	2.6	-	-	3	3.9	77	100
	달성군	-	-	13	65.0	5	25.0	-	-	1	5.0	-	-	-	-	1	5.0	-	-	-	-	20	100
	군위군	-	-	-	-	1	100	-	-	-	-	-	-	-	-	-	-	-	-	-	-	1	100
	소계	17	5.1	151	44.9	105	31.3	-	-	20	6.0	6	1.8	11	3.3	4	1.2	6	1.8	16	4.8	336	100

지역	시군구	피해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인천	중구	-	-	4	19.0	10	47.6	-	-	3	14.3	-	-	-	-	-	-	-	-	4	19.0	21	100
	동구	-	-	3	42.9	3	42.9	-	-	1	14.3	-	-	-	-	-	-	-	-	-	-	7	100
	미추홀구	3	8.6	13	37.1	8	22.9	3	8.6	2	5.7	-	-	-	-	1	2.9	-	-	5	14.3	35	100
	연수구	1	4.3	5	21.7	5	21.7	-	-	2	8.7	1	4.3	-	-	-	-	2	8.7	7	30.4	23	100
	남동구	2	1.9	35	32.4	35	32.4	2	1.9	14	13.0	-	-	4	3.7	-	-	3	2.8	13	12.0	108	100
	부평구	1	0.9	53	48.6	32	29.4	2	1.8	5	4.6	-	-	4	3.7	1	0.9	3	2.8	8	7.3	109	100
	계양구	1	2.5	21	52.5	13	32.5	-	-	2	5.0	-	-	1	2.5	-	-	-	-	2	5.0	40	100
	서구	-	-	50	52.6	23	24.2	-	-	4	4.2	1	1.1	6	6.3	6	6.3	1	1.1	4	4.2	95	100
	강화군	-	-	11	40.7	10	37.0	2	7.4	2	7.4	-	-	-	-	-	-	1	3.7	1	3.7	27	100
	옹진군	-	-	-	-	-	-	-	-	-	-	-	-	-	-	-	-	-	-	2	100	2	100
	소계	8	1.7	195	41.8	139	29.8	9	1.9	35	7.5	2	0.4	15	3.2	8	1.7	10	2.1	46	9.9	467	100
광주	동구	-	-	21	58.3	5	13.9	-	-	1	2.8	-	-	-	-	1	2.8	8	22.2	-	-	36	100
	서구	-	-	29	54.7	12	22.6	-	-	4	7.5	-	-	2	3.8	-	-	4	7.5	2	3.8	53	100
	남구	-	-	25	56.8	10	22.7	-	-	3	6.8	-	-	1	2.3	-	-	3	6.8	2	4.5	44	100
	북구	1	1.6	26	42.6	23	37.7	-	-	6	9.8	-	-	-	-	-	-	3	4.9	2	3.3	61	100
	광산구	1	2.9	18	52.9	7	20.6	-	-	1	2.9	-	-	1	2.9	-	-	1	2.9	5	14.7	34	100
	소계	2	0.9	119	52.2	57	25.0	-	-	15	6.6	-	-	4	1.8	1	0.4	19	8.3	11	4.8	228	100
대전	동구	1	3.4	5	17.2	6	20.7	-	-	3	10.3	-	-	1	3.4	-	-	-	-	13	44.8	29	100
	중구	3	12.5	13	54.2	2	8.3	-	-	4	16.7	-	-	2	8.3	-	-	-	-	-	-	24	100
	서구	1	1.9	10	19.2	3	5.8	-	-	2	3.8	-	-	-	-	-	-	-	-	36	69.2	52	100
	유성구	-	-	4	40.0	3	30.0	-	-	-	-	-	-	1	10.0	-	-	-	-	2	20.0	10	100
	대덕구	-	-	4	36.4	6	54.5	-	-	1	9.1	-	-	-	-	-	-	-	-	-	-	11	100
	기타*	-	-	1	100	-	-	-	-	-	-	-	-	-	-	-	-	-	-	-	-	1	100
	소계	5	3.9	37	29.1	20	15.7	-	-	10	7.9	-	-	4	3.1	-	-	-	-	51	40.2	127	100
울산	중구	-	-	18	39.1	15	32.6	1	2.2	8	17.4	1	2.2	-	-	-	-	1	2.2	2	4.3	46	100
	남구	1	2.3	22	51.2	8	18.6	-	-	7	16.3	1	2.3	-	-	1	2.3	3	7.0	-	-	43	100
	동구	-	-	21	67.7	5	16.1	-	-	1	3.2	-	-	1	3.2	-	-	-	-	3	9.7	31	100
	북구	-	-	12	50.0	4	16.7	-	-	3	12.5	-	-	2	8.3	-	-	2	8.3	1	4.2	24	100
	울주군	-	-	13	36.1	14	38.9	-	-	2	5.6	-	-	-	-	-	-	4	11.1	3	8.3	36	100
	소계	1	0.6	86	47.8	46	25.6	1	0.6	21	11.7	2	1.1	3	1.7	1	0.6	10	5.6	9	5.0	180	100
경기	수원시	4	4.6	43	49.4	23	26.4	-	-	7	8.0	-	-	2	2.3	1	1.1	3	3.4	4	4.6	87	100
	성남시	-	-	70	47.0	42	28.2	1	0.7	13	8.7	-	-	-	-	1	0.7	7	4.7	15	10.1	149	100
	의정부시	-	-	37	31.1	42	35.3	2	1.7	12	10.1	-	-	5	4.2	-	-	-	-	21	17.6	119	100
	안양시	1	4.2	11	45.8	5	20.8	-	-	5	20.8	-	-	-	-	2	8.3	-	-	-	-	24	100
	부천시	2	2.4	43	50.6	24	28.2	2	2.4	7	8.2	1	1.2	2	2.4	2	2.4	1	1.2	1	1.2	85	100
	광명시	1	3.3	12	40.0	12	40.0	2	6.7	2	6.7	-	-	-	-	-	-	-	-	1	3.3	30	100
	평택시	-	-	11	42.3	8	30.8	-	-	4	15.4	-	-	1	3.8	-	-	-	-	2	7.7	26	100
	동두천시	-	-	8	72.7	3	27.3	-	-	-	-	-	-	-	-	-	-	-	-	-	-	11	100
	안산시	1	2.3	22	51.2	10	23.3	-	-	4	9.3	-	-	3	7.0	-	-	1	2.3	2	4.7	43	100
	고양시	1	0.6	80	45.7	52	29.7	-	-	21	12.0	1	0.6	2	1.1	1	0.6	7	4.0	10	5.7	175	100
	과천시	-	-	5	62.5	3	37.5	-	-	-	-	-	-	-	-	-	-	-	-	-	-	8	100

지역	시군구	피해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구리시	-	-	30	52.6	15	26.3	-	-	5	8.8	1	1.8	2	3.5	-	-	1	1.8	3	5.3	57	100
	남양주시	-	-	94	40.9	66	28.7	2	0.9	29	12.6	1	0.4	4	1.7	-	-	5	2.2	29	12.6	230	100
	오산시	-	-	8	53.3	5	33.3	-	-	1	6.7	-	-	-	-	-	-	-	-	1	6.7	15	100
	시흥시	-	-	21	50.0	11	26.2	1	2.4	3	7.1	1	2.4	1	2.4	-	-	-	-	4	9.5	42	100
	군포시	-	-	15	60.0	4	16.0	1	4.0	5	20.0	-	-	-	-	-	-	-	-	-	-	25	100
	의왕시	-	-	3	27.3	-	-	1	9.1	1	9.1	-	-	-	-	-	-	-	-	6	54.5	11	100
	하남시	-	-	11	37.9	5	17.2	-	-	-	-	-	-	1	3.4	-	-	-	-	12	41.4	29	100
	용인시	2	1.6	52	41.6	23	18.4	1	0.8	14	11.2	-	-	2	1.6	-	-	1	0.8	30	24.0	125	100
	파주시	-	-	40	42.1	24	25.3	1	1.1	10	10.5	1	1.1	3	3.2	-	-	5	5.3	11	11.6	95	100
	이천시	-	-	3	37.5	3	37.5	-	-	1	12.5	-	-	-	-	-	-	-	-	1	12.5	8	100
	안성시	-	-	9	60.0	3	20.0	-	-	1	6.7	-	-	-	-	-	-	2	13.3	-	-	15	100
	김포시	-	-	24	54.5	11	25.0	1	2.3	2	4.5	-	-	2	4.5	-	-	-	-	4	9.1	44	100
	화성시	-	-	13	44.8	8	27.6	2	6.9	1	3.4	-	-	1	3.4	-	-	1	3.4	3	10.3	29	100
	광주시	-	-	11	28.9	15	39.5	1	2.6	-	-	-	-	3	7.9	-	-	4	10.5	4	10.5	38	100
	양주시	-	-	23	25.3	22	24.2	-	-	6	6.6	-	-	1	1.1	1	1.1	1	1.1	37	40.7	91	100
	포천시	-	-	10	24.4	19	46.3	1	2.4	-	-	2	4.9	-	-	-	-	2	4.9	7	17.1	41	100
	여주시	1	8.3	5	41.7	4	33.3	-	-	-	-	-	-	-	-	-	-	-	-	2	16.7	12	100
	연천군	-	-	2	28.6	1	14.3	-	-	1	14.3	-	-	-	-	-	-	-	-	3	42.9	7	100
	가평군	-	-	6	46.2	5	38.5	-	-	1	7.7	-	-	-	-	-	-	-	-	1	7.7	13	100
	양평군	-	-	9	50.0	2	11.1	-	-	2	11.1	-	-	1	5.6	1	5.6	3	16.7	-	-	18	100
	소계	13	0.8	731	42.9	470	27.6	19	1.1	158	9.3	8	0.5	36	2.1	9	0.5	44	2.6	214	12.6	1,702	100
강원	춘천시	5	1.8	20	7.2	20	7.2	-	-	6	2.2	-	-	1	0.4	1	0.4	4	1.4	222	79.6	279	100
	원주시	-	-	3	2.5	25	20.5	3	2.5	12	9.8	-	-	5	4.1	2	1.6	1	0.8	71	58.2	122	100
	강릉시	2	4.9	16	39.0	9	22.0	-	-	5	12.2	-	-	-	-	1	2.4	3	7.3	5	12.2	41	100
	동해시	-	-	2	16.7	6	50.0	1	8.3	1	8.3	-	-	-	-	-	-	2	16.7	-	-	12	100
	태백시	-	-	-	-	4	80.0	-	-	-	-	-	-	-	-	-	-	1	20.0	-	-	5	100
	속초시	-	-	4	36.4	5	45.5	-	-	-	-	-	-	-	-	-	-	1	9.1	1	9.1	11	100
	삼척시	-	-	1	16.7	4	66.7	-	-	-	-	-	-	-	-	-	-	-	-	1	16.7	6	100
	홍천군	1	1.1	3	3.4	6	6.7	-	-	-	-	-	-	-	-	-	-	2	2.2	77	86.5	89	100
	횡성군	-	-	1	50.0	-	-	-	-	1	50.0	-	-	-	-	-	-	-	-	-	-	2	100
	영월군	-	-	-	-	-	-	-	-	1	100	-	-	-	-	-	-	-	-	-	-	1	100
	평창군	-	-	1	25.0	2	50.0	-	-	1	25.0	-	-	-	-	-	-	-	-	-	-	4	100
	정선군	1	12.5	3	37.5	4	50.0	-	-	-	-	-	-	-	-	-	-	-	-	-	-	8	100
	철원군	-	-	-	-	2	66.7	1	33.3	-	-	-	-	-	-	-	-	-	-	-	-	3	100
	화천군	-	-	-	-	1	100	-	-	-	-	-	-	-	-	-	-	-	-	-	-	1	100
	양구군	-	-	-	-	-	-	-	-	-	-	-	-	-	-	-	-	-	-	-	-	-	-
	인제군	-	-	2	28.6	2	28.6	1	14.3	1	14.3	-	-	-	-	-	-	1	14.3	-	-	7	100
	고성군	-	-	-	-	2	100	-	-	-	-	-	-	-	-	-	-	-	-	-	-	2	100
	양양군	-	-	2	50.0	2	50.0	-	-	-	-	-	-	-	-	-	-	-	-	-	-	4	100
	소계	9	1.5	58	9.7	94	15.7	6	1.0	28	4.7	-	-	6	1.0	4	0.7	15	2.5	377	63.1	597	100

지역	시군구	피해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충북	청주시	5	4.7	42	39.6	30	28.3	-	-	7	6.6	-	-	5	4.7	-	-	2	1.9	15	14.2	106	100
	충주시	6	11.5	17	32.7	13	25.0	-	-	-	-	-	-	1	1.9	-	-	1	1.9	14	26.9	52	100
	제천시	5	31.3	2	12.5	2	12.5	-	-	1	6.3	1	6.3	-	-	-	-	-	-	5	31.3	16	100
	보은군	-	-	5	83.3	1	16.7	-	-	-	-	-	-	-	-	-	-	-	-	-	-	6	100
	옥천군	1	11.1	3	33.3	4	44.4	-	-	1	11.1	-	-	-	-	-	-	-	-	-	-	9	100
	영동군	-	-	-	-	-	-	-	-	-	-	-	-	-	-	-	-	1	100	-	-	1	100
	진천군	-	-	3	10.3	5	17.2	-	-	1	3.4	-	-	-	-	-	-	2	6.9	18	62.1	29	100
	괴산군	1	7.7	4	30.8	2	15.4	1	7.7	-	-	-	-	1	7.7	-	-	1	7.7	3	23.1	13	100
	음성군	3	13.6	10	45.5	4	18.2	-	-	-	-	-	-	-	-	1	4.5	-	-	4	18.2	22	100
	단양군	-	-	-	-	-	-	-	-	-	-	-	-	-	-	-	-	-	-	-	-	-	-
	증평군	-	-	3	60.0	2	40.0	-	-	-	-	-	-	-	-	-	-	-	-	-	-	5	100
	소계	21	8.1	89	34.4	63	24.3	1	0.4	10	3.9	1	0.4	7	2.7	1	0.4	7	2.7	59	22.8	259	100
충남	천안시	1	2.7	12	32.4	10	27.0	1	2.7	5	13.5	-	-	1	2.7	-	-	1	2.7	6	16.2	37	100
	공주시	1	3.7	11	40.7	13	48.1	-	-	-	-	-	-	-	-	-	-	1	3.7	1	3.7	27	100
	보령시	-	-	4	16.7	3	12.5	-	-	-	-	-	-	-	-	-	-	1	4.2	16	66.7	24	100
	아산시	3	13.0	6	26.1	10	43.5	-	-	2	8.7	-	-	1	4.3	-	-	1	4.3	-	-	23	100
	서산시	1	2.4	11	26.2	12	28.6	2	4.8	3	7.1	-	-	-	-	1	2.4	10	23.8	2	4.8	42	100
	논산시	-	-	10	41.7	7	29.2	1	4.2	2	8.3	-	-	-	-	1	4.2	2	8.3	1	4.2	24	100
	계룡시	-	-	-	-	-	-	-	-	1	33.3	-	-	-	-	-	-	-	-	2	66.7	3	100
	당진시	1	5.6	2	11.1	8	44.4	2	11.1	4	22.2	-	-	-	-	-	-	1	5.6	-	-	18	100
	금산군	-	-	2	20.0	2	20.0	-	-	-	-	-	-	1	10.0	-	-	-	-	5	50.0	10	100
	부여군	-	-	2	22.2	4	44.4	-	-	1	11.1	-	-	-	-	-	-	1	11.1	1	11.1	9	100
	서천군	-	-	4	28.6	9	64.3	-	-	-	-	-	-	-	-	-	-	1	7.1	-	-	14	100
	청양군	-	-	1	33.3	1	33.3	1	33.3	-	-	-	-	-	-	-	-	-	-	-	-	3	100
	홍성군	-	-	2	18.2	3	27.3	-	-	1	9.1	-	-	-	-	-	-	-	-	5	45.5	11	100
	예산군	-	-	3	18.8	11	68.8	-	-	1	6.3	-	-	-	-	-	-	-	-	1	6.3	16	100
	태안군	-	-	1	33.3	1	33.3	-	-	-	-	-	-	-	-	-	-	-	-	1	33.3	3	100
	소계	7	2.7	71	26.9	94	35.6	7	2.7	20	7.6	-	-	3	1.1	2	0.8	19	7.2	41	15.5	264	10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	-	15	46.9	6	18.8	-	-	5	15.6	-	-	2	6.3	-	-	3	9.4	1	3.1	32	100
	소계	-	-	15	46.9	6	18.8	-	-	5	15.6	-	-	2	6.3	-	-	3	9.4	1	3.1	32	100
전북	전주시	3	2.7	48	42.5	24	21.2	1	0.9	6	5.3	-	-	4	3.5	-	-	3	2.7	24	21.2	113	100
	군산시	3	7.5	21	52.5	9	22.5	-	-	1	2.5	-	-	2	5.0	-	-	1	2.5	3	7.5	40	100
	익산시	-	-	16	50.0	7	21.9	-	-	5	15.6	-	-	-	-	-	-	2	6.3	2	6.3	32	100
	정읍시	2	9.5	6	28.6	6	28.6	-	-	4	19.0	-	-	1	4.8	1	4.8	1	4.8	-	-	21	100
	남원시	-	-	3	42.9	2	28.6	-	-	-	-	-	-	2	28.6	-	-	-	-	-	-	7	100
	김제시	1	4.2	10	41.7	5	20.8	-	-	5	20.8	-	-	1	4.2	2	8.3	-	-	-	-	24	100
	완주군	-	-	4	28.6	7	50.0	-	-	-	-	-	-	2	14.3	-	-	-	-	1	7.1	14	100
	진안군	-	-	4	80.0	1	20.0	-	-	-	-	-	-	-	-	-	-	-	-	-	-	5	100
	무주군	-	-	-	-	-	-	-	-	-	-	-	-	-	-	-	-	1	33.3	2	66.7	3	100
	장수군	-	-	6	85.7	-	-	-	-	-	-	-	-	-	-	-	-	1	14.3	-	-	7	100
	임실군	-	-	2	28.6	5	71.4	-	-	-	-	-	-	-	-	-	-	-	-	-	-	7	100
	순창군	-	-	-	-	1	33.3	-	-	1	33.3	-	-	-	-	1	33.3	-	-	-	-	3	100
	고창군	-	-	11	47.8	7	30.4	1	4.3	1	4.3	-	-	-	-	-	-	3	13.0	-	-	23	100
	부안군	-	-	2	33.3	2	33.3	1	16.7	-	-	-	-	-	-	1	16.7	-	-	-	-	6	100
	소계	9	3.0	133	43.6	76	24.9	3	1.0	23	7.5	-	-	12	3.9	5	1.6	12	3.9	32	10.5	305	100

지역	시군구	피해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전남	목포시	4	2.3	11	6.3	15	8.6	-	-	5	2.9	1	0.6	1	0.6	1	0.6	8	4.6	129	73.7	175	100
	여수시	1	3.3	10	33.3	12	40.0	1	3.3	2	6.7	-	-	1	3.3	1	3.3	-	-	2	6.7	30	100
	순천시	1	2.3	19	43.2	9	20.5	4	9.1	5	11.4	1	2.3	-	-	1	2.3	3	6.8	1	2.3	44	100
	나주시	-	-	13	3.8	8	2.3	-	-	3	0.9	-	-	-	-	1	0.3	2	0.6	318	92.2	345	100
	광양시	-	-	9	64.3	3	21.4	-	-	1	7.1	-	-	-	-	-	-	-	-	1	7.1	14	100
	담양군	-	-	9	60.0	5	33.3	-	-	-	-	1	6.7	-	-	-	-	-	-	-	-	15	100
	곡성군	-	-	2	100	-	-	-	-	-	-	-	-	-	-	-	-	-	-	-	-	2	100
	구례군	-	-	3	60.0	1	20.0	-	-	-	-	-	-	-	-	-	-	-	-	1	20.0	5	100
	고흥군	-	-	8	38.1	10	47.6	1	4.8	1	4.8	-	-	-	-	-	-	1	4.8	-	-	21	100
	보성군	-	-	1	11.1	4	44.4	-	-	-	-	-	-	1	11.1	-	-	3	33.3	-	-	9	100
	화순군	-	-	-	-	-	-	-	-	-	-	-	-	-	-	-	-	-	-	-	-	-	-
	장흥군	-	-	2	33.3	4	66.7	-	-	-	-	-	-	-	-	-	-	-	-	-	-	6	100
	강진군	-	-	5	35.7	4	28.6	1	7.1	1	7.1	-	-	2	14.3	-	-	1	7.1	-	-	14	100
	해남군	-	-	12	30.8	16	41.0	-	-	3	7.7	-	-	-	-	1	2.6	1	2.6	6	15.4	39	100
	영암군	-	-	1	16.7	5	83.3	-	-	-	-	-	-	-	-	-	-	-	-	-	-	6	100
	무안군	-	-	8	44.4	5	27.8	1	5.6	-	-	-	-	-	-	-	-	1	5.6	3	16.7	18	100
	함평군	-	-	3	50.0	2	33.3	-	-	-	-	-	-	-	-	-	-	1	16.7	-	-	6	100
	영광군	-	-	8	50.0	4	25.0	-	-	2	12.5	-	-	-	-	-	-	2	12.5	-	-	16	100
	장성군	-	-	1	25.0	3	75.0	-	-	-	-	-	-	-	-	-	-	-	-	-	-	4	100
	완도군	-	-	-	-	3	75.0	-	-	-	-	-	-	-	-	-	-	1	25.0	-	-	4	100
	진도군	2	20.0	3	30.0	5	50.0	-	-	-	-	-	-	-	-	-	-	-	-	-	-	10	100
	신안군	-	-	1	11.1	3	33.3	-	-	1	11.1	-	-	-	-	2	22.2	1	11.1	1	11.1	9	100
	소계	8	1.0	129	16.3	121	15.3	8	1.0	24	3.0	3	0.4	5	0.6	7	0.9	25	3.2	462	58.3	792	100
경북	포항시	3	2.9	35	33.7	38	36.5	2	1.9	15	14.4	-	-	2	1.9	1	1.0	6	5.8	2	1.9	104	100
	경주시	3	6.3	17	35.4	16	33.3	1	2.1	5	10.4	-	-	-	-	1	2.1	2	4.2	3	6.3	48	100
	김천시	1	3.4	6	20.7	16	55.2	-	-	2	6.9	-	-	2	6.9	-	-	2	6.9	-	-	29	100
	안동시	5	7.7	36	55.4	16	24.6	-	-	2	3.1	-	-	1	1.5	2	3.1	1	1.5	2	3.1	65	100
	구미시	2	2.7	29	39.7	17	23.3	2	2.7	2	2.7	1	1.4	3	4.1	-	-	6	8.2	11	15.1	73	100
	영주시	2	10.0	6	30.0	6	30.0	-	-	1	5.0	-	-	-	-	-	-	-	-	5	25.0	20	100
	영천시	1	4.5	8	36.4	8	36.4	-	-	-	-	1	4.5	-	-	1	4.5	1	4.5	2	9.1	22	100
	상주시	1	2.6	8	21.1	11	28.9	-	-	5	13.2	-	-	-	-	-	-	6	15.8	7	18.4	38	100
	문경시	-	-	8	29.6	4	14.8	1	3.7	2	7.4	-	-	-	-	1	3.7	7	25.9	4	14.8	27	100
	경산시	2	3.1	18	28.1	7	10.9	-	-	2	3.1	1	1.6	4	6.3	-	-	2	3.1	28	43.8	64	100
	군위군	-	-	-	-	1	100	-	-	-	-	-	-	-	-	-	-	-	-	-	-	1	100
	의성군	1	12.5	3	37.5	3	37.5	-	-	1	12.5	-	-	-	-	-	-	-	-	-	-	8	100
	청송군	-	-	1	25.0	1	25.0	1	25.0	-	-	-	-	-	-	-	-	1	25.0	-	-	4	100
	영양군	-	-	-	-	-	-	-	-	-	-	-	-	-	-	-	-	-	-	-	-	-	-
	영덕군	-	-	2	50.0	2	50.0	-	-	-	-	-	-	-	-	-	-	-	-	-	-	4	100
	청도군	-	-	1	20.0	3	60.0	-	-	-	-	-	-	-	-	-	-	-	-	1	20.0	5	100
	고령군	-	-	1	100	-	-	-	-	-	-	-	-	-	-	-	-	-	-	-	-	1	100
	성주군	1	6.7	6	40.0	6	40.0	-	-	-	-	-	-	-	-	1	6.7	-	-	1	6.7	15	100
	칠곡군	-	-	5	19.2	5	19.2	-	-	3	11.5	-	-	-	-	-	-	-	-	13	50.0	26	100
	예천군	4	22.2	3	16.7	6	33.3	-	-	3	16.7	-	-	-	-	-	-	2	11.1	-	-	18	100
	봉화군	-	-	1	16.7	5	83.3	-	-	-	-	-	-	-	-	-	-	-	-	-	-	6	100

지역	시군구	피해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울진군	-	-	-	-	4	80.0	-	-	-	-	-	-	1	20.0	-	-	-	-	-	-	5	100	
	울릉군	-	-	-	-	-	-	-	-	1	20.0	-	-	-	-	-	-	4	80.0	-	-	5	100	
	소계	26	4.4	194	33.0	175	29.8	7	1.2	44	7.5	3	0.5	13	2.2	7	1.2	40	6.8	79	13.4	588	100	
경남	창원시	3	2.0	78	51.7	35	23.2	4	2.6	17	11.3	2	1.3	2	1.3	3	2.0	6	4.0	1	0.7	151	100	
	진주시	3	4.5	30	45.5	15	22.7	-	-	4	6.1	1	1.5	2	3.0	1	1.5	4	6.1	6	9.1	66	100	
	통영시	-	-	2	12.5	8	50.0	-	-	1	6.3	-	-	3	18.8	-	-	2	12.5	-	-	16	100	
	사천시	-	-	4	22.2	8	44.4	-	-	1	5.6	1	5.6	2	11.1	-	-	2	11.1	-	-	18	100	
	김해시	-	-	40	48.2	28	33.7	3	3.6	5	6.0	1	1.2	1	1.2	-	-	5	6.0	-	-	83	100	
	밀양시	-	-	2	50.0	1	25.0	1	25.0	-	-	-	-	-	-	-	-	-	-	-	-	4	100	
	거제시	-	-	7	36.8	9	47.4	1	5.3	2	10.5	-	-	-	-	-	-	-	-	-	-	19	100	
	양산시	-	-	40	61.5	10	15.4	1	1.5	6	9.2	1	1.5	1	1.5	-	-	2	3.1	4	6.2	65	100	
	의령군	-	-	-	-	-	-	1	50.0	-	-	-	-	-	-	-	-	1	50.0	-	-	2	100	
	함안군	-	-	2	50.0	1	25.0	-	-	-	-	-	-	-	-	-	-	-	-	1	25.0	4	100	
	창녕군	-	-	-	-	1	33.3	-	-	1	33.3	-	-	-	-	-	-	1	33.3	-	-	3	100	
	고성군	-	-	-	-	2	100	-	-	-	-	-	-	-	-	-	-	-	-	-	2	100		
	남해군	1	20.0	-	-	2	40.0	-	-	-	-	-	-	-	-	-	-	2	40.0	-	-	5	100	
	하동군	-	-	2	25.0	3	37.5	1	12.5	1	12.5	1	12.5	-	-	-	-	-	-	-	-	8	100	
	산청군	-	-	-	-	2	5.9	-	-	1	2.9	-	-	1	2.9	-	-	-	-	30	88.2	34	100	
	함양군	-	-	3	60.0	2	40.0	-	-	-	-	-	-	-	-	-	-	-	-	-	-	5	100	
	거창군	1	2.1	-	-	4	8.3	-	-	-	-	-	-	-	-	-	-	-	-	43	89.6	48	100	
	합천군	-	-	2	15.4	2	15.4	-	-	1	7.7	-	-	-	-	-	-	-	-	8	61.5	13	100	
	소계	8	1.5	212	38.8	133	24.4	12	2.2	40	7.3	7	1.3	12	2.2	4	0.7	25	4.6	93	17.0	546	100	
	제주	제주시	8	10.0	26	32.5	24	30.0	1	1.3	10	12.5	2	2.5	2	2.5	3	3.8	2	2.5	2	2.5	80	100
		서귀포시	3	5.9	13	25.5	22	43.1	1	2.0	7	13.7	-	-	4	7.8	-	-	-	-	1	2.0	51	100
소계		11	8.4	39	29.8	46	35.1	2	1.5	17	13.0	2	1.5	6	4.6	3	2.3	2	1.5	3	2.3	131	100	
합계		165	2.1	2,830	35.8	2,080	26.3	88	1.1	607	7.7	45	0.6	168	2.1	76	1.0	277	3.5	1,564	19.8	7,900	100	

*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아닌 타부양가족의 집에 머무르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례 등이 해당됨.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7,025명)와 학대행위자(7,900명)는 차이가 있음

표 8-25 학대행위자 연령별 학대행위자 유형 분포

(단위: 명, %)

구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친구	기타 기관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의료인	
10세미만	-	-	-	-	-	-	3	-	-	-	-	-	-	-	-	3
	-	-	-	-	-	-	0.0	-	-	-	-	-	-	-	-	0.0
10~19세	-	-	6	-	1	-	80	-	-	-	-	-	-	-	-	87
	-	-	0.1	-	0.0	-	1.0	-	-	-	-	-	-	-	-	1.1
20~29세	-	-	22	1	10	1	54	1	-	-	-	-	1	2	1	93
	-	-	0.3	0.0	0.1	0.0	0.7	0.0	-	-	-	-	0.0	0.0	0.0	1.2
30~39세	-	-	216	10	58	2	24	2	2	-	-	-	1	69	2	386
	-	-	2.7	0.1	0.7	0.0	0.3	0.0	0.0	-	-	-	0.0	0.9	0.0	4.9
40~49세	-	2	774	35	247	13	6	5	5	4	3	1	5	103	6	1,209
	-	0.0	9.8	0.4	3.1	0.2	0.1	0.1	0.1	0.1	0.0	0.0	0.1	1.3	0.1	15.3
50~59세	-	46	808	31	222	19	1	16	19	17	17	2	40	713	83	2,034
	-	0.6	10.2	0.4	2.8	0.2	0.0	0.2	0.2	0.2	0.2	0.0	0.5	9.0	1.1	25.7
60~69세	31	601	223	11	65	10	-	25	31	33	14	5	43	418	13	1,523
	0.4	7.6	2.8	0.1	0.8	0.1	-	0.3	0.4	0.4	0.2	0.1	0.5	5.3	0.2	19.3
70세이상	134	2,181	31	-	4	-	-	27	35	42	45	2	15	41	8	2,565
	1.7	27.6	0.4	-	0.1	-	-	0.3	0.4	0.5	0.6	0.0	0.2	0.5	0.1	32.5
계	165	2,830	2,080	88	607	45	168	76	92	96	79	10	105	1,346	113	7,900
	2.1	35.8	26.3	1.1	7.7	0.6	2.1	1.0	1.2	1.2	1.0	0.1	1.3	17.0	1.4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7,025명)와 학대행위자(7,900명)는 차이가 있음

표 8-26 학대행위자 중 배우자 성별

(단위: 명, %)

구분	배우자	전체 학대행위자 계
남성	2,466	5,445
	87.1	68.9
여성	364	2,455
	12.9	31.1
계	2,830	7,900
	100	100

표 8-27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친구	기타 기관 종사자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의료인	
노인 독거	146 11.6	131 10.4	367 29.1	20 1.6	152 12.1	10 0.8	15 1.2	27 2.1	50 4.0	16 1.3	58 4.6	8 0.6	14 1.1	244 19.3	3 0.2	1,261 100
노인 부부	8 0.3	2,363 85.1	205 7.4	16 0.6	58 2.1	9 0.3	16 0.6	6 0.2	9 0.3	28 1.0	14 0.5	- -	3 0.1	39 1.4	4 0.1	2,778 100
손자녀 동거	1 0.5	33 15.8	53 25.4	10 4.8	16 7.7	3 1.4	91 43.5	- -	- -	- -	- -	- -	1 0.5	1 0.5	- -	209 100
자녀· 손자녀 동거	- -	31 15.3	85 42.1	15 7.4	20 9.9	7 3.5	38 18.8	- -	1 0.5	- -	1 0.5	- -	- -	4 2.0	- -	202 100
자녀 동거	8 0.4	239 11.8	1,329 65.4	24 1.2	351 17.3	12 0.6	5 0.2	5 0.2	5 0.2	3 0.1	5 0.2	2 0.1	2 0.1	40 2.0	2 0.1	2,032 100
기타	2 0.1	33 2.3	41 2.9	3 0.2	10 0.7	4 0.3	3 0.2	38 2.7	27 1.9	49 3.5	1 0.1	- -	85 6.0	1,018 71.8	104 7.3	1,418 100
소계	165 2.1	2,830 35.8	2,080 26.3	88 1.1	607 7.7	45 0.6	168 2.1	76 1.0	92 1.2	96 1.2	79 1.0	10 0.1	105 1.3	1,346 17.0	113 1.4	7,900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7,025명)와 학대행위자(7,900명)는 차이가 있음

표 8-28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10세 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계
가정내	3 0.0	87 1.4	88 1.4	309 5.0	1,073 17.3	1,170 18.9	1,017 16.4	2,443 39.5	6,190 100
생활시설	- -	- -	2 0.2	21 1.8	99 8.4	649 55.0	376 31.9	33 2.8	1,180 100
이용시설	- -	- -	- -	47 28.5	3 1.8	68 41.2	43 26.1	4 2.4	165 100
병원	- -	- -	2 1.0	4 1.9	13 6.3	108 52.4	54 26.2	25 12.1	206 100
공공장소	- -	- -	- -	3 4.6	7 10.8	12 18.5	14 21.5	29 44.6	65 100
기타	- -	- -	1 1.1	2 2.1	14 14.9	27 28.7	19 20.2	31 33.0	94 100
계	3 0.0	87 1.1	93 1.2	386 4.9	1,209 15.3	2,034 25.7	1,523 19.3	2,565 32.5	7,900*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7,025명)와 학대행위자(7,900명)는 차이가 있음

표 8-29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분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피해자 본인	157	-	-	-	5	3	165
	2.5	-	-	-	7.7	3.2	2.1
배우자	2,798	1*	-	-	17	14	2,830
	45.2	0.1	-	-	26.2	14.9	35.8
아들	2,052	-	-	-	7	21	2,080
	33.2	-	-	-	10.8	22.3	26.3
며느리	86	-	-	-	2	-	88
	1.4	-	-	-	3.1	-	1.1
딸	595	-	-	-	5	7	607
	9.6	-	-	-	7.7	7.4	7.7
사위	43	-	-	-	-	2	45
	0.7	-	-	-	-	2.1	0.6
손자녀	167	-	-	-	-	1	168
	2.7	-	-	-	-	1.1	2.1
친척	75	-	-	-	-	1	76
	1.2	-	-	-	-	1.1	1.0
기타 타인	61	1	-	4	5	21	92
	1.0	0.1	-	1.9	7.7	22.3	1.2
동거인	89	-	-	-	3	4	96
	1.4	-	-	-	4.6	4.3	1.2
이웃	52	-	-	-	20	7	79
	0.8	-	-	-	30.8	7.4	1.0
친구	8	-	-	-	1	1	10
	0.1	-	-	-	1.5	1.1	0.1
기타기관 종사자	1	26	1	70	-	7	105
	0.0	2.2	0.6	34.0	-	7.4	1.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6	1,152	164	23	-	1	1,346
	0.1	97.6	99.4	11.2	-	1.1	17.0
의료인	-	-	-	109	-	4	113
	-	-	-	52.9	-	4.3	1.4
계	6,190	1,180	165	206	65	94	7,9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시설에서 가족 간 학대가 발생할 경우 '가정 내' 학대로 분류되나 시설에서 학대행위자가 다수일 경우, 학대발생장소 기준으로 분류되어 집계됨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7,025명)와 학대행위자(7,900명)는 차이가 있음

4)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표 8-30 학대행위자 결혼유형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배우자 있음	초혼	4,567	57.8
	재혼	282	3.6
	사실혼	223	2.8
	소계	5,072	64.2
배우자 없음	미혼	1,867	23.6
	사별	161	2.0
	이혼	686	8.7
	별거	102	1.3
	가출	12	0.2
	소계	2,828	35.8
계		7,900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7,025명)와 학대행위자(7,900명)는 차이가 있음

5)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표 8-31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전체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900	747
	9.5

표 8-32 학대행위자 연령대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10세 미만	1	0.1
10~19세	15	2.0
20~29세	12	1.6
30~39세	31	4.1
40~49세	137	18.3
50~59세	191	25.6
60~69세	130	17.4
70세 이상	230	30.8
계	747	100

6)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표 8-33 학대행위자 교육정도

(단위: 명, %)

무 학	초 졸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이상	계
429	1,177	1,017	3,458	1,819	7,900*
5.4	14.9	12.9	43.8	23.0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7,025명)와 학대행위자(7,900명)는 차이가 있음

7)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표 8-34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명, %)

구분	명수	비율
무직	4,596	58.2
전문직	982	12.4
단순 노무 종사자	693	8.8
서비스 · 판매종사자	627	7.9
자영업자	358	4.5
농 · 어 · 축산업종사자	184	2.3
사무종사자	179	2.3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06	1.3
기술공 및 준전문가	101	1.3
기능업 및 관련기능종사자	30	0.4
장치 ·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25	0.3
종교인	19	0.2
계	7,900*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7,025명)와 학대행위자(7,900명)는 차이가 있음

8) 학대행위자 건강상태

가. 학대행위자 질병유형

표 8-35 학대행위자 장애유형**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신체 장애	지체장애	117	11.0
	청각장애	59	5.5
	시각장애	32	3.0
	뇌병변장애	30	2.8
	언어장애	9	0.8
	간질장애	8	0.8
	신장장애	6	0.6
	간장애	4	0.4
	호흡기장애	3	0.3
	안면장애	3	0.3
	장루요루장애	2	0.2
	심장장애	1	0.1
	소계	274	25.7
정신 장애	우울장애	293	27.5
	정신분열	270	25.3
	지적장애	126	11.8
	정동장애	71	6.7
	반사회적 인격장애	24	2.3
	자폐성장애	8	0.8
	소계	792	74.3
계		1,066*	100

* 장애는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반되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학대행위자 통계 수치(7,025건)와 학대피해노인 장애유형 통계 수치(1,066건)에는 차이가 있음

** 학대 결과로서 장애 판정 유무는 확인이 어려우며,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거나 현장조사 시 장애가 의심되는 대상자도 포함.

나.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표 8-36 학대행위자 중독유형

(단위: 명, %)

전체 학대행위자	도박중독	알코올 사용장애	약물 사용장애	계
7,900	31	967	19	1,017
	0.4	12.2	0.2	12.9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ART 09

노인학대 주요 사례 분석 결과



노인학대 주요 사례 분석 결과

01 | 경제적 학대 현황

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경제적 학대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3년 전체 학대유형 건수 10,638건 중 경제적 학대는 352건(3.3%)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11.5%,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9.5%,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단위: 건, %)

지 역	기관명	경제적 학대		전체 학대유형 건수
		건 수	비 율	
서울	서울남부	13	3.6	364
	서울북부	14	6.1	229
	서울서부	13	3.5	375
	서울동부	3	1.2	254
	소계	43	3.5	1,222
부산	부산동부	20	3.6	558
	부산서부	17	4.1	410
	소계	37	3.8	968
대구	대구남부	4	1.6	257
	대구북부	5	1.9	269
	소계	9	1.7	526
인천	인천	14	4.9	285
	인천서부	3	0.7	416
	소계	17	2.4	701
광주		4	1.4	290
대전		8	4.1	196
울산		6	2.2	273
경기	경기동부	4	0.9	470
	경기북부	18	2.7	665
	경기서부	-	-	300
	경기남부	3	1.0	292
	경기북서부	6	1.2	493
	소계	31	1.4	2,220

지 역	기관명	경제적 학대		전체 학대유형 건수
		건 수	비 율	
강원	강원	34	11.5	296
	강원동부	8	7.2	111
	강원남부	8	4.2	190
	소계	50	8.4	597
충북	충북	23	9.5	243
	충북북부	4	2.6	153
	소계	27	6.8	396
충남	충남	8	2.8	281
	충남남부	2	1.2	162
	소계	10	2.3	443
전북	전북	7	2.9	242
	전북서부	8	3.9	207
	소계	15	3.3	449
전남	전남동부	2	0.9	212
	전남서부	8	2.7	294
	소계	10	2.0	506
경북	경북동부	13	4.8	272
	경북북부	12	6.7	179
	경북서부	8	3.3	243
	경북남부	8	4.2	192
	소계	41	4.6	886
경남	경남	22	4.1	535
	경남서부	11	5.1	216
	소계	33	4.4	75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3	2.5	120
	제주도서귀포시	8	8.5	94
	소계	11	5.1	214
계		352	3.3	10,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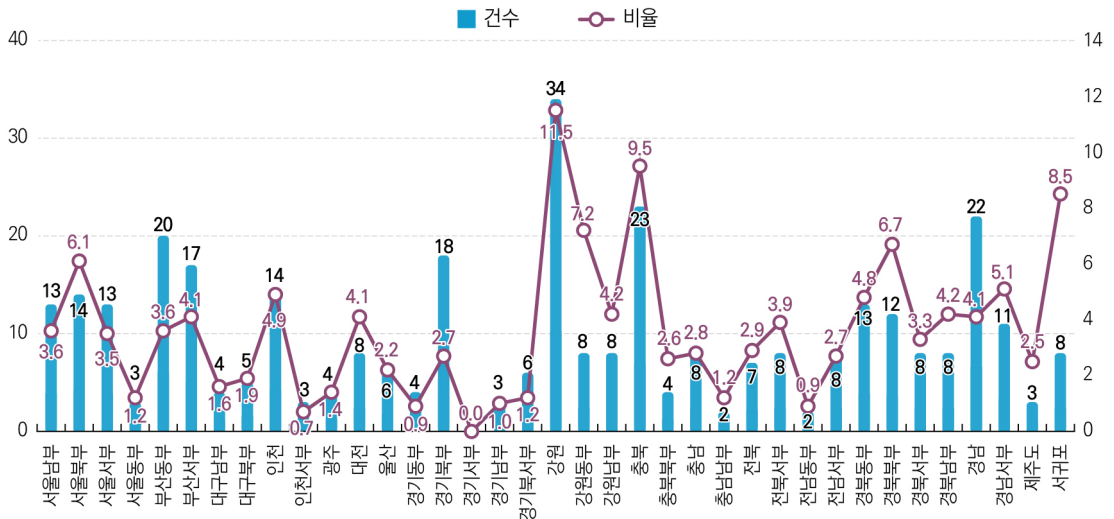


그림 9-1 지역 및 기관별 경제적 학대 현황

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경제적 학대를 경험한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및 연령대를 살펴보면, 남성은 110명(31.3%), 여성은 242명(68.8%)으로 나타났다. 남성, 여성 모두 75~79세가 각각 25명(22.7%), 55명(22.7%)으로 가장 많았다.

표 9-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21	22	25	21	14	4	3	-	110
	19.1	20.0	22.7	19.1	12.7	3.6	2.7	-	100
여성	35	39	55	49	43	21	-	-	242
	14.5	16.1	22.7	20.2	17.8	8.7	-	-	100
계	56	61	80	70	57	25	3	-	352
	15.9	17.3	22.7	19.9	16.2	7.1	0.9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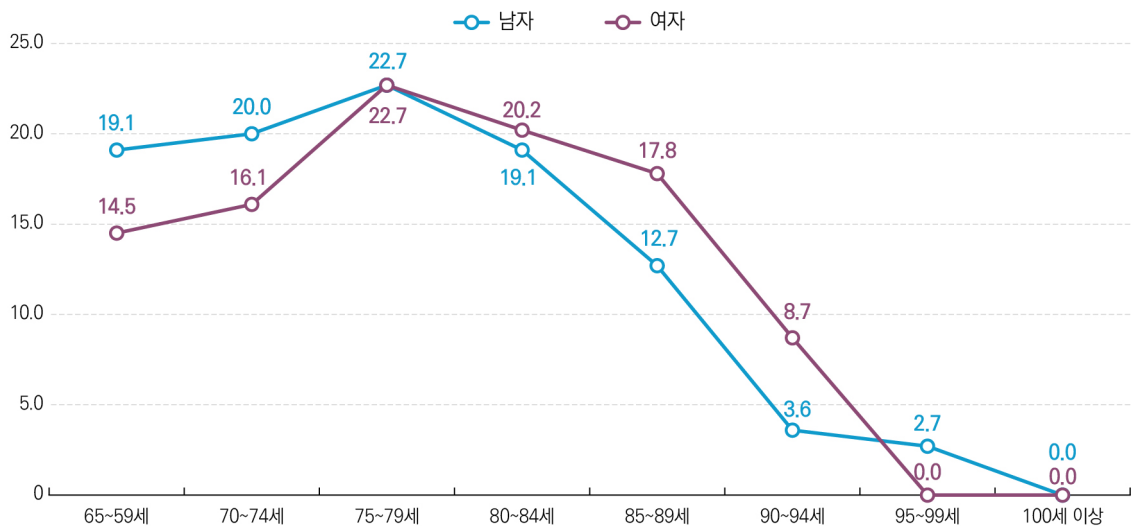


그림 9-2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경제적 학대 행위자는 총 366명으로, 이 중 아들이 165명(45.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배우자 46명(12.6%), 기관 46명(12.6%), 딸 45명(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 유형의 행위자가 “아들-배우자-딸” 순이었다는 결과와 비교해볼 때, 경제적 학대의 경우 기관을 제외하면 주로 자녀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²⁴⁾	기관 ²⁵⁾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2	46	165	7	45	-	16	8	287	31	46	366*
0.5	12.6	45.1	1.9	12.3	-	4.4	2.2	78.4	8.5	12.6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수(352명)와 학대행위자(366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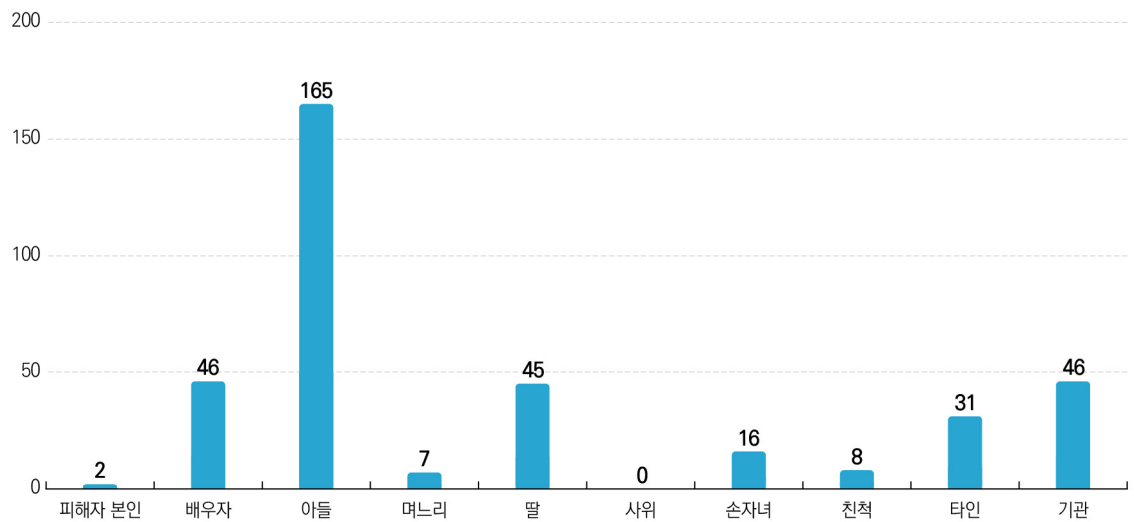


그림 9-3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24)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친구 등이 해당됨.
25) 기관에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등이 해당됨.

4)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경제적 학대 행위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110명(30.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40대 97명(26.5%), 70대 56명(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4 경제적 학대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명, %)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4	8	27	97	110	64	56	366*
1.1	2.2	7.4	26.5	30.1	17.5	15.3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학대 학대피해노인 수(352명)와 학대행위자(366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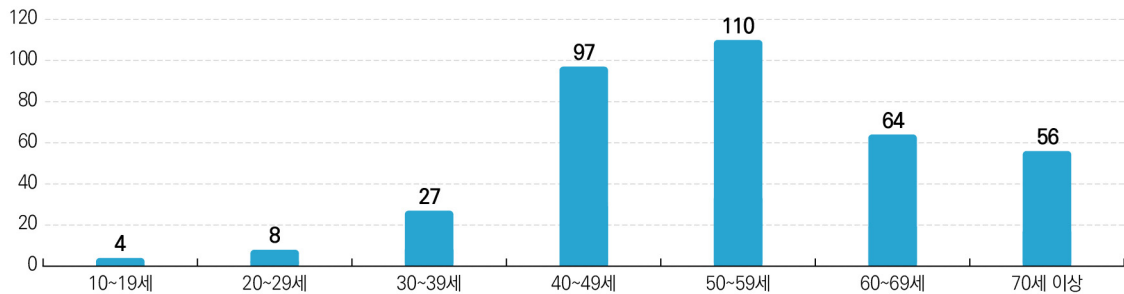


그림 9-4 경제적 학대 행위자 연령대

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경제적 학대의 학대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내가 305건(86.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시설이 38건(10.8%)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9-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305	38	3	2	1	3	352
86.6	10.8	0.9	0.6	0.3	0.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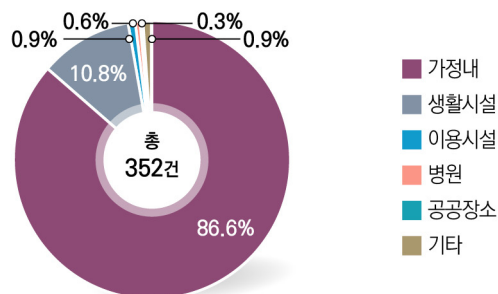


그림 9-5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장소

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경제적 학대 발생 빈도를 보면 1개월에 한 번 이상이 135건(38.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주일에 한 번 이상이 73건(20.7%), 3개월에 한 번 이상이 43건(12.2%) 등의 순으로 경제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대유형의 학대발생빈도(1개월에 한 번 이상 24.8%, 1주일에 한 번 이상 19.8%)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9-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일회성	6개월에 한 번 이상	3개월에 한 번 이상	1개월에 한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이상	매일	계
37	36	43	135	73	28	352
10.5	10.2	12.2	38.4	20.7	8.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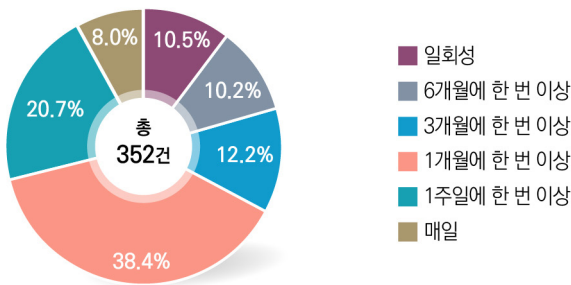


그림 9-6 경제적 학대 학대발생빈도

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경제적 학대의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이 118건(33.5%), 5년 이상이 110건(31.3%)으로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학대가 지속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9-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29	5	90	118	110	352
8.2	1.4	25.6	33.5	31.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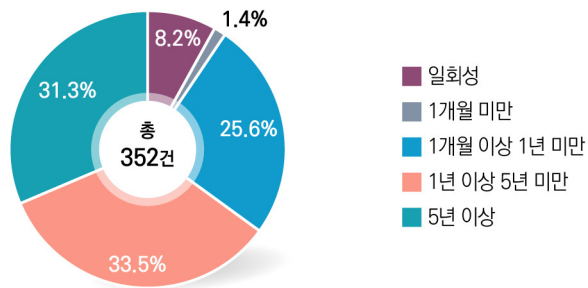


그림 9-7 경제적 학대 학대지속기간

8) 경제적 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경제적 학대를 경험한 피해노인 352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1명(28.7%)으로 나타났다.

표 9-8 경제적 학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경제적 학대 현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52	101
	28.7

02 |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1)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학대피해노인의 치매정도는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와 병원진단 없이 상담원이 임의로 간이정신상태검사지표나 학대피해노인의 상황에 따라 치매로 의심하는 치매의심으로 분류한다.

2023년 한 해 동안 치매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로 진단 받은 사례는 총 1,822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25.9%로 집계되었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별로 살펴보면, 각 기관에서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 중에서 치매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52.1%,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50.8%, 강원특별자치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49.1%로 나타났다.

반면 치매노인 비율이 낮은 기관은 대구광역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10.8%, 서울특별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15.9%, 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1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9-9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단위: 건, %)

지 역	기관명	치매노인학대 현황				전체 학대사례 건수
		치매진단	치매의심	총합계	비율	
서울	서울남부	18	25	43	20.9	206
	서울북부	17	16	33	24.4	135
	서울서부	32	25	57	27.4	208
	서울동부	14	13	27	15.9	170
	소계	81	79	160	22.3	719
부산	부산동부	31	23	54	16.8	322
	부산서부	33	17	50	19.8	252
	소계	64	40	104	18.1	574
대구	대구남부	10	8	18	10.8	166
	대구북부	30	17	47	28.1	167
	소계	40	25	65	19.5	333
인천	인천	21	20	41	21.0	195
	인천서부	24	26	50	18.8	266
	소계	45	46	91	19.7	461
광주		21	22	43	18.9	228
대전		55	9	64	50.8	126
울산		20	11	31	17.8	174

지 역	기관명	치매노인학대 현황				전체 학대사례 건수
		치매진단	치매의심	총합계	비율	
경기	경기동부	48	21	69	21.2	325
	경기북부	111	36	147	26.3	558
	경기서부	27	28	55	25.1	219
	경기남부	24	18	42	20.3	207
	경기북서부	41	18	59	18.4	321
	소계	251	121	372	22.8	1,630
강원	강원	65	13	78	46.4	168
	강원동부	9	6	15	20.3	74
	강원남부	37	19	56	49.1	114
	소계	111	38	149	41.9	356
충북	충북	23	14	37	28.5	130
	충북북부	26	10	36	39.1	92
	소계	49	24	73	32.9	222
충남	충남	28	25	53	29.8	178
	충남남부	35	14	49	44.1	111
	소계	63	39	102	35.3	289
전북	전북	39	7	46	30.3	152
	전북서부	17	12	29	19.9	146
	소계	56	19	75	25.2	298
전남	전남동부	17	9	26	17.3	150
	전남서부	117	22	139	52.1	267
	소계	134	31	165	39.6	417
경북	경북동부	21	15	36	21.3	169
	경북북부	16	17	33	29.2	113
	경북서부	38	15	53	31.2	170
	경북남부	36	7	43	36.8	117
	소계	111	54	165	29.0	569
경남	경남	30	28	58	17.0	341
	경남서부	61	12	73	45.6	160
	소계	91	40	131	26.1	50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5	7	22	28.6	77
	제주도서귀포시	7	3	10	19.6	51
	소계	22	10	32	25.0	128
계		1,214	608	1,822	25.9	7,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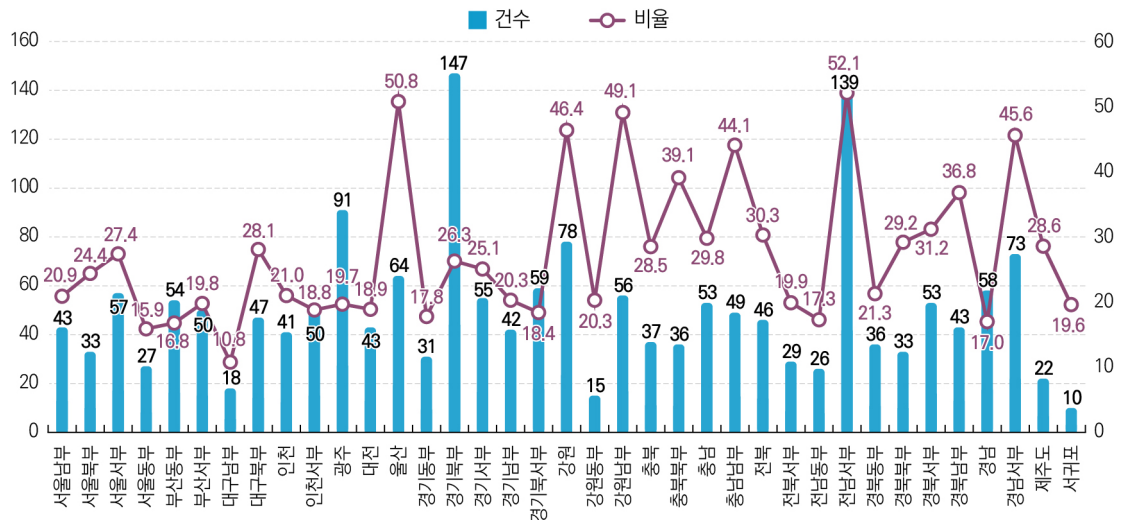


그림 9-8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현황

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및 연령대

2023년 전체 노인학대 7,025건 중 치매노인의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1,329명(72.9%), 남성은 493명(27.1%)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9-10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단위: 명, %)

전체학대사례	치매진단(치매로 진단받음)	치매의심(치매가 의심됨)	계
남성	312	181	493
	25.7	29.8	27.1
여성	902	427	1,329
	74.3	70.2	72.9
계	1,214	608	1,822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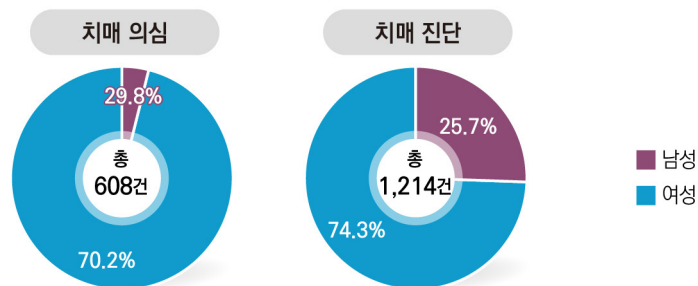


그림 9-9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성별

성별에 이어 치매노인을 연령대로 구분해 보면 80대가 890명(48.8%)로 가장 많았으며, 70대가 518명(28.4%)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9-11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연령대

(단위: 명, %)

성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71	112	191	303	323	168	42	4	1,214
	5.8	9.2	15.7	25.0	26.6	13.8	3.5	0.3	100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62	102	113	143	121	53	11	3	608
	10.2	16.8	18.6	23.5	19.9	8.7	1.8	0.5	100
계	133	214	304	446	444	221	53	7	1,822
	7.3	11.7	16.7	24.5	24.4	12.1	2.9	0.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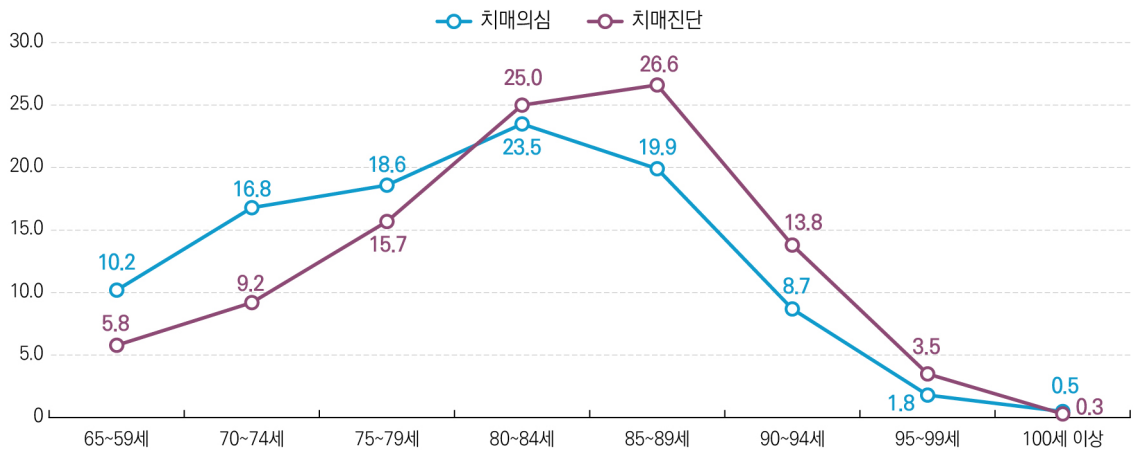


그림 9-10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연령대

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대상 학대행위자 유형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자 유형의 경우 기관이 1,358건(5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족이 1,019명(39.9%)으로 나타났다. 친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들이 465명(18.2%)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297명(11.6%), 딸 165명(6.5%) 순이었다.

표 9-1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명,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30	160	255	14	86	4	19	15	553	44	1,267	1,894
	1.6	8.4	13.5	0.7	4.5	0.2	1.0	0.8	29.2	2.3	66.9	100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69	137	210	14	79	-	16	10	466	32	91	658
	10.5	20.8	31.9	2.1	12.0	-	2.4	1.5	70.8	4.9	13.8	100
계	99	297	465	28	165	4	35	25	1,019	76	1,358	2,552*
	3.9	11.6	18.2	1.1	6.5	0.2	1.4	1.0	39.9	3.0	53.2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수(1,822명)와 학대행위자(2,552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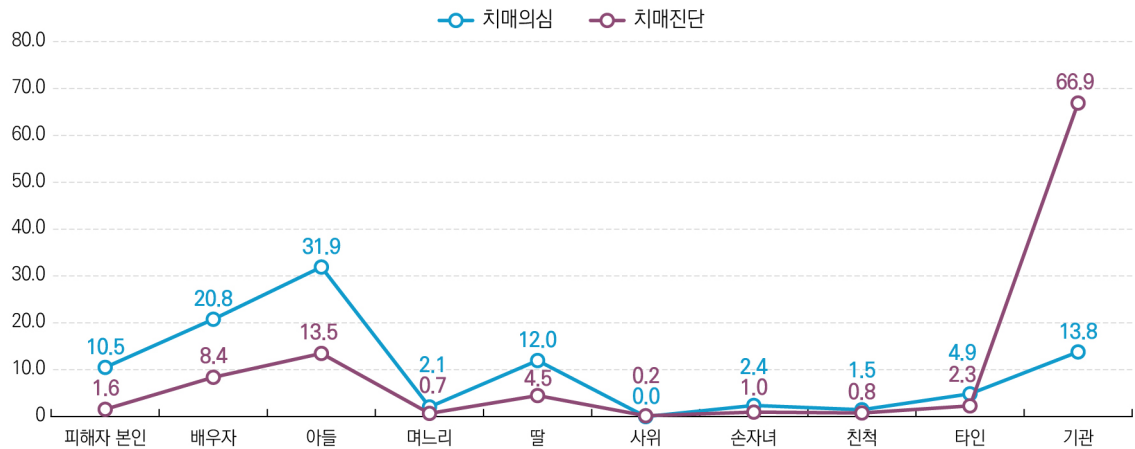


그림 9-11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과 학대행위자 유형

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의 학대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가 799건(32.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635건(25.8%), 방임 604건(2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대유형의 신체적 학대의 비율(4,541건, 42.7%)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9-1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509	361	169	72	457	30	8	1,606
	31.7	22.5	10.5	4.5	28.5	1.9	0.5	100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290	274	20	45	147	69	6	851
	34.1	32.2	2.4	5.3	17.3	8.1	0.7	100
계	799	635	189	117	604	99	14	2,457
	32.5	25.8	7.7	4.8	24.6	4.0	0.6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통계수치(1,822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2,457건)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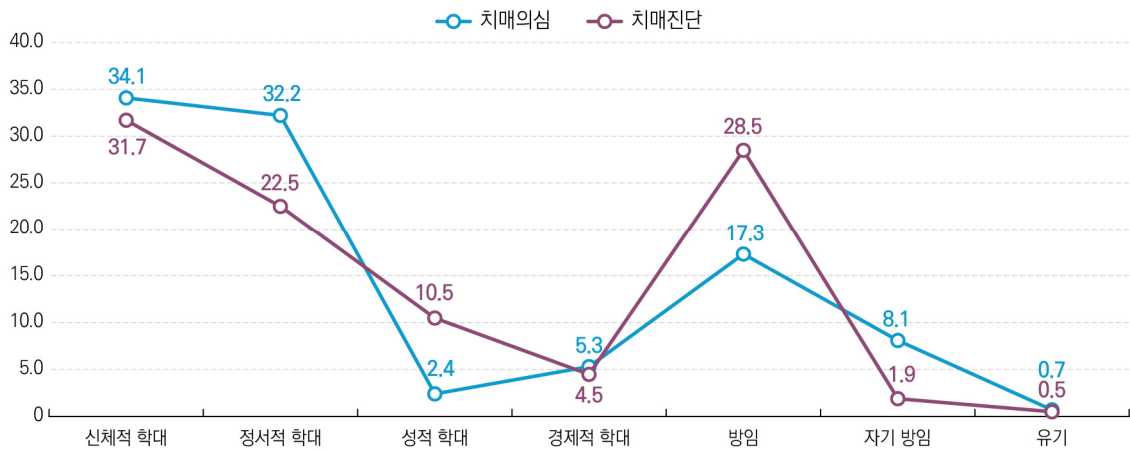


그림 9-12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유형

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의 학대발생장소를 보면, 가정 내가 1,093건(60.0%)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생활시설이 510건(28.0%)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정 내와 생활시설의 건수를 합하면 총 1,603건(88.0%)으로 학대발생장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치매의심과 치매진단 모두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수가 각각 520건(85.5%), 573건(4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정에서의 학대발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1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구 분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 원	공공장소	기 타	계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573	466	81	66	4	24	1,214
	47.2	38.4	6.7	5.4	0.3	2.0	100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520	44	6	17	8	13	608
	85.5	7.2	1.0	2.8	1.3	2.1	100
계	1,093	510	87	83	12	37	1,822
	60.0	28.0	4.8	4.6	0.7	2.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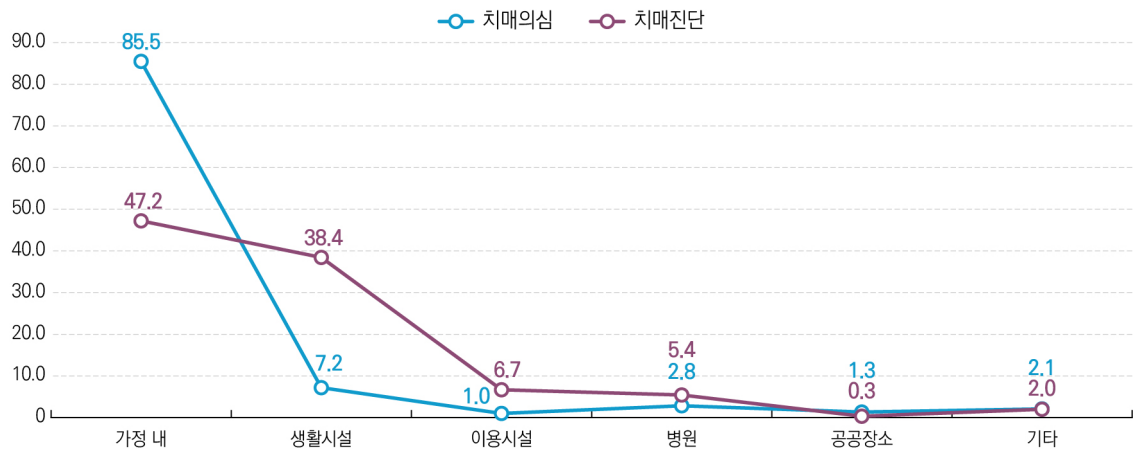


그림 9-13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장소

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의 학대발생빈도를 보면, 일회성인 경우가 462건(25.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매일 415건(22.8%), 1개월에 한 번 이상이 383건(21.0%)으로 뒤를 이었다.

표 9-1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구 분	일회성	6개월에 한 번 이상	3개월에 한 번 이상	1개월에 한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이상	매일	계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344	71	64	239	196	300	1,214
	28.3	5.8	5.3	19.7	16.1	24.7	100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118	43	66	144	122	115	608
	19.4	7.1	10.9	23.7	20.1	18.9	100
계	462	114	130	383	318	415	1,822
	25.4	6.3	7.1	21.0	17.5	22.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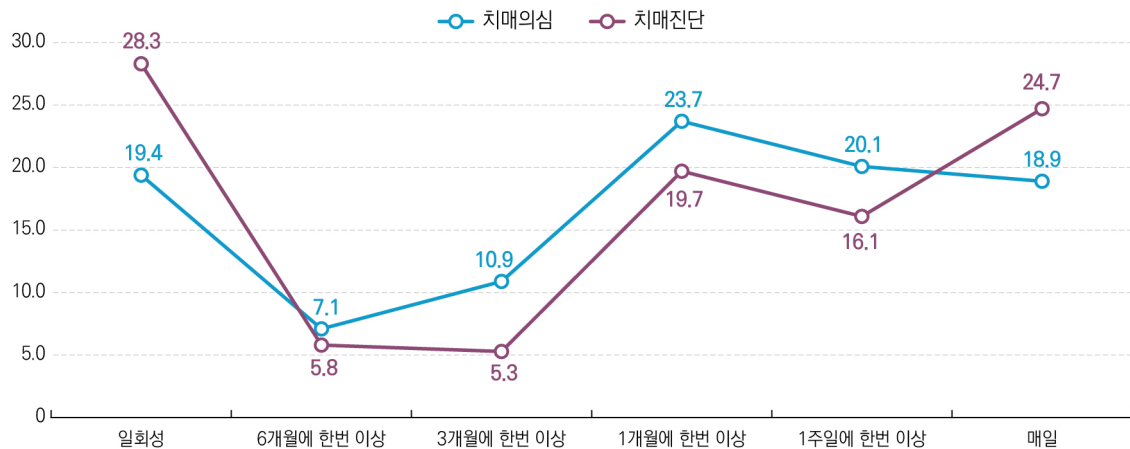


그림 9-14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발생빈도

7)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의 학대지속기간을 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이 545건(29.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39건(24.1%), 일회성이 398건(2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1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 분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287	130	294	342	161	1,214
	23.6	10.7	24.2	28.2	13.3	100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111	25	145	203	124	608
	18.3	4.1	23.8	33.4	20.4	100
계	398	155	439	545	285	1,822
	21.8	8.5	24.1	29.9	15.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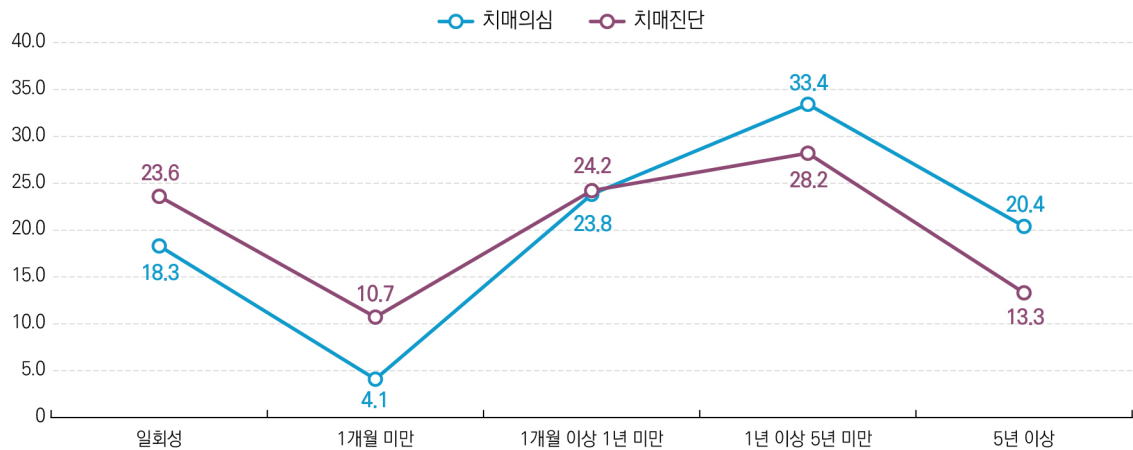


그림 9-15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학대지속기간

8)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학대피해를 경험한 치매노인의 가구형태는 기타인 경우가 570건(3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독거 437건(24.0%), 자녀동거 423건(23.2%) 등 순이었다.

기타 항목이 가장 많은 이유는 가구 형태가 가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주로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표 9-17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 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기 타	계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251	175	235	25	21	507	1,214
	20.7	14.4	19.4	2.1	1.7	41.8	100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186	132	188	15	24	63	608
	30.6	21.7	30.9	2.5	3.9	10.4	100
계	437	307	423	40	45	570	1,822
	24.0	16.8	23.2	2.2	2.5	31.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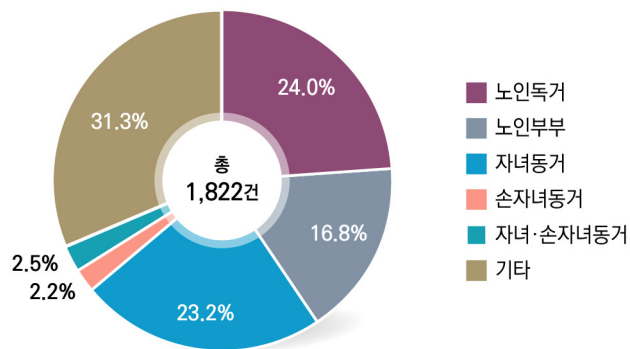


그림 9-16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 가구형태

03 | 시설학대 현황

1)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와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학대 현황을 살펴보았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83건(14.9%)으로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82건(30.7%),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59건(35.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설 사례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8 지역 및 기관별 시설학대 현황

(단위: 건, %)

지 역	기관명	전체 학대사례 건수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서울	서울남부	206	-	3	-	1	4
			-	1.5	-	0.5	1.9
	서울북부	135	-	5	-	1	6
			-	3.7	-	0.7	4.4
	서울서부	208	-	7	-	5	12
			-	3.4	-	2.4	5.8
	서울동부	170	-	2	-	-	2
			-	1.2	-	-	1.2
부산	부산동부	322	-	5	-	-	5
			-	1.6	-	-	1.6
	부산서부	252	1	2	-	2	5
			0.4	0.8	-	0.8	2.0
	소계	574	1	7	-	2	10
			0.2	1.2	-	0.3	1.7
대구	대구남부	166	3	3	-	-	6
			1.8	1.8	-	-	3.6
	대구북부	167	-	3	-	1	4
			-	1.8	-	0.6	2.4
	소계	333	3	6	-	1	10
			0.9	1.8	-	0.3	3.0
인천	인천	195	-	19	-	4	23
			-	9.7	-	2.1	11.8
	인천서부	266	-	6	-	2	8
			-	2.3	-	0.8	3.0
	소계	461	-	25	-	6	31
			-	5.4	-	1.3	6.7

지 역	기관명	전체 학대사례 건수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광주		228	-	1	-	4	5
			-	0.4	-	1.8	2.2
대전		126	-	14	-	37	51
			-	11.1	-	29.4	40.5
울산		174	-	3	-	1	4
			-	1.7	-	0.6	2.3
경기	경기동부	325	-	19	-	8	27
			-	5.8	-	2.5	8.3
	경기북부	558	2	78	-	3	83
			0.4	14.0	-	0.5	14.9
	경기서부	219	-	12	-	-	12
			-	5.5	-	-	5.5
	경기도	207	-	12	-	-	12
			-	5.8	-	-	5.8
	경기북서부	321	1	21	-	3	25
			0.3	6.5	-	0.9	7.8
	소계	1,630	3	142	-	14	159
			0.2	8.7	-	0.9	9.8
강원	강원	168	-	59	-	-	59
			-	35.1	-	-	35.1
	강원동부	74	-	5	-	-	5
			-	6.8	-	-	6.8
	강원남부	114	-	47	-	-	47
			-	41.2	-	-	41.2
충북	소계	356	-	111	-	-	111
			-	31.2	-	-	31.2
	충북	130	-	9	-	-	9
			-	6.9	-	-	6.9
	충북북부	92	-	16	-	1	17
			-	17.4	-	1.1	18.5
충남	소계	222	-	25	-	1	26
			-	11.3	-	0.5	11.7
	충남	178	-	8	-	-	8
			-	4.5	-	-	4.5
	충남남부	111	-	24	-	-	24
			-	21.6	-	-	21.6
소계		289	-	32	-	-	32
			-	11.1	-	-	11.1

지 역	기관명	전체 학대사례 건수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전북	전북	152	-	16	-	1	17
			-	10.5	-	0.7	11.2
	전북서부	146	-	4	-	-	4
			-	2.7	-	-	2.7
	소계	298	-	20	-	1	21
			-	6.7	-	0.3	7.0
전남	전남동부	150	-	3	-	1	4
			-	2.0	-	0.7	2.7
	전남서부	267	9	49	-	24	82
			3.4	18.4	-	9.0	30.7
	소계	417	9	52	-	25	86
			2.2	12.5	-	6.0	20.6
경북	경북동부	169	3	1	-	-	4
			1.8	0.6	-	-	2.4
	경북북부	113	1	3	-	-	4
			0.9	2.7	-	-	3.5
	경북서부	170	-	8	-	-	8
			-	4.7	-	-	4.7
	경북남부	117	14	28	-	-	42
			12.0	23.9	-	-	35.9
	소계	569	18	40	-	-	58
			3.2	7.0	-	-	10.2
경남	경남	341	-	3	-	-	3
			-	0.9	-	-	0.9
	경남서부	160	-	37	-	9	46
			-	23.1	-	5.6	28.8
	소계	501	-	40	-	9	49
			-	8.0	-	1.8	9.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77	-	2	-	-	2
			-	2.6	-	-	2.6
	제주도서귀포시	51	-	-	-	-	-
			-	-	-	-	-
	소계	128	-	2	-	-	2
			-	1.6	-	-	1.6
계		7,025	34	537	-	108	679
			0.5	7.6	-	1.5	9.7

주. 각 시설학대 건수 비율은 기관별 학대사례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2)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시설학대 총 679건을 신고자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신고의무자 직군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에 의한 신고가 171건(25.2%),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97건(14.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에 의한 신고가 56건(8.2%)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고의무자 직군의 시설학대 신고건수는 361건(53.2%)이었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 친족 162건(23.9%), 타인 82건(12.1%), 관련기관 73건(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신고의무자의 시설학대 신고건수는 318건(46.8%)으로 나타나 신고의무자에 비해 6.4%p 낮았다.

표 9-19 시설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신고 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1	-	-	1
		-	0.1	-	-	0.1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1	-	1	2
		-	0.1	-	0.1	0.3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15	153	-	3	171
		2.2	22.5	-	0.4	25.2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	-	-	-
		-	-	-	-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17	-	-	17
		-	2.5	-	-	2.5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8	-	3	11
		-	1.2	-	0.4	1.6
	119구급대의 대원	-	-	-	-	-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	-	-	-
		-	-	-	-	-
	응급구조사	-	-	-	-	-
		-	-	-	-	-
	의료기사	-	-	-	-	-
		-	-	-	-	-

구 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계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	-	-	-
		-	-	-	-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	29	-	26	56
		0.1	4.3	-	3.8	8.2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2	92	-	3	97
		0.3	13.5	-	0.4	14.3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	-	-	-	6	6
		-	-	-	0.9	0.9
	소계	18	301	-	42	361
		2.7	44.3	-	6.2	53.2
비신고 의무자	학대피해노인 본인	-	-	-	1	1
		-	-	-	0.1	0.1
	학대행위자 본인	-	-	-	-	-
		-	-	-	-	-
	친족	7	137	-	18	162
		1.0	20.2	-	2.7	23.9
	타인	9	69	-	4	82
		1.3	10.2	-	0.6	12.1
	관련기관 ²⁶⁾	-	30	-	43	73
		-	4.4	-	6.3	10.8
	소계	16	236	-	66	318
		2.4	34.8	-	9.7	46.8
계		34	537	-	108	679
		5.0	79.1	-	15.9	100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경우, 「노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신고의무자로 분류되어 시행일 기준 전과 후로 구분하여 집계함(시행일: '22. 3. 22.)

26)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됨

3)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시설학대 679건 중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비율은 여성노인은 480명(70.7%), 남성노인은 199명(29.3%)으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약 2.5배 높게 나타났다.

시설학대 피해노인의 성별 및 연령대를 보면 남성의 경우 80대가 45.2%, 70대가 28.6%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도 80대가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과 달리 90대 28.1%, 70대 1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9-20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23	27	30	43	47	22	6	1	199
	11.6	13.6	15.1	21.6	23.6	11.1	3.0	0.5	100
여성	15	20	56	105	146	104	31	3	480
	3.1	4.2	11.7	21.9	30.4	21.7	6.5	0.6	100
계	38	47	86	148	193	126	37	4	679
	5.6	6.9	12.7	21.8	28.4	18.6	5.4	0.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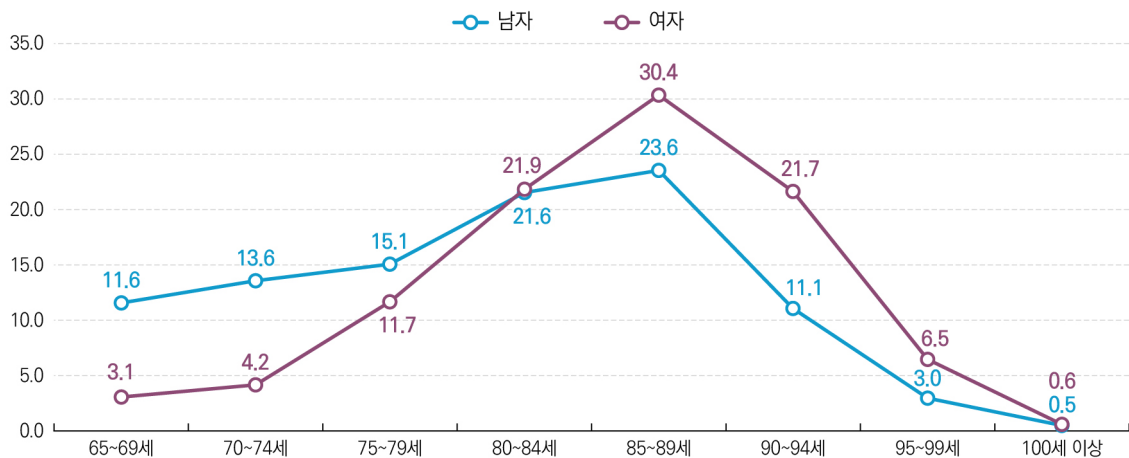


그림 9-1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4) 시설학대 학대유형

시설학대 학대유형을 보면 총 873건 중 방임이 390건(44.7%), 신체적 학대가 214건(24.5%), 성적 학대가 169건(19.4%), 경제적 학대가 37건(5.3%)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신체적 학대가 13건(28.3%), 성적학대와 방임이 11건(23.9%), 정서적 학대가 10건(21.7%) 순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상이한 동향을 나타냈다.

표 9-21 시설학대 학대유형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생활 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13	10	11	1	11	-	-	46
		28.3	21.7	23.9	2.2	23.9	-	-	100
	노인의료 복지시설	186	33	157	37	286	-	1	700
		26.6	4.7	22.4	5.3	40.9	-	0.1	100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	-	-	-	-	-	-
		-	-	-	-	-	-	-	-
	재가노인 복지시설	15	15	1	3	93	-	-	127
		11.8	11.8	0.8	2.4	73.2	-	-	100
계		214	58	169	41	390	-	1	873
		24.5	6.6	19.4	4.7	44.7	-	0.1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설학대 통계 수치(679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873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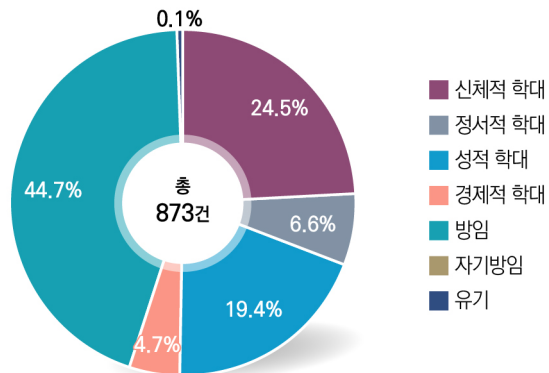


그림 9-18 시설학대 학대유형

5) 시설학대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전체 학대피해노인 7,025명의 결혼유형은 배우자 있음이 4,471(63.6%)이며, 배우자 없음은 2,554건(36.4%)으로 나타났다.

시설학대를 중심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결혼유형을 살펴보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모두 배우자 없음이 각각 343건(60.1%), 80건(74.1%)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22 시설학대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결혼유형

(단위: 건, %)

구 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계
		초혼	재혼	사실혼	소계	미혼	사별	이혼	별거	가출	소계	
생활 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6	-	-	6	-	28	-	-	-	28	34
		17.6	-	-	17.6	-	82.4	-	-	-	82.4	100
	노인의료 복지시설	216	1	5	222	5	303	6	1	-	315	537
		40.2	0.2	0.9	41.3	0.9	56.4	1.1	0.2	-	58.7	100
	소계	222	1	5	228	5	331	6	1	-	343	571
		38.9	0.2	0.9	39.9	0.9	58.0	1.1	0.2	-	60.1	100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재가노인 복지시설	28	-	-	28	1	75	3	1	-	80	108
		25.9	-	-	25.9	0.9	69.4	2.8	0.9	-	74.1	100
	소계	28	-	-	28	1	75	3	1	-	80	108
		25.9	-	-	25.9	0.9	69.4	2.8	0.9	-	74.1	100
계		250	1	5	256	6	406	9	2	-	423	679
		36.8	0.1	0.7	37.7	0.9	59.8	1.3	0.3	-	62.3	100

6)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의 학대발생빈도를 보면 전체 시설학대 중 매일인 경우가 249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일회성 211건(31.1%), 1개월에 한 번 이상이 110건(16.2%), 1주일에 한 번 이상이 85건(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22년과 비교하면 '1개월에 한 번 이상'과 '1주일에 한 번 이상' 순위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남('22년 기준 1개월에 한 번 이상 5.7%, 1주일에 한 번 이상 20.6%)

표 9-23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구 분		일회성	6개월에 한 번 이상	3개월에 한 번 이상	1개월에 한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이상	매일	계
생활 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3	1	－	2	9	19	34
		8.8	2.9	－	5.9	26.5	55.9	100
	노인의료 복지시설	190	6	16	67	52	206	537
		35.4	1.1	3.0	12.5	9.7	38.4	100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	－	－	－	－	－
		－	－	－	－	－	－	－
	재가노인 복지시설	18	1	－	41	24	24	108
		16.7	0.9	－	38.0	22.2	22.2	100
계		211	8	16	110	85	249	679
		31.1	1.2	2.4	16.2	12.5	36.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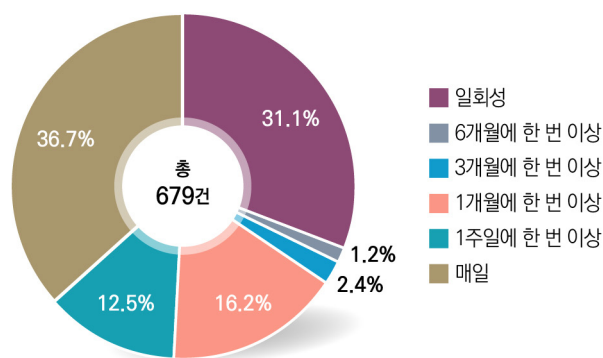


그림 9-19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

7)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의 학대지속기간을 보면 전체 시설학대 중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95건(28.7%)으로 가장 많았고, 일회성 171건(25.2%), 1년 이상 5년 미만이 168건(24.7%) 순으로 나타났다.

표 9-24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 분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생활 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3	1	10	-	20	34
		8.8	2.9	29.4	-	58.8	100
	노인의료 복지시설	151	66	170	132	18	537
		28.1	12.3	31.7	24.6	3.4	100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	-	-	-	-
		-	-	-	-	-	-
	재가노인 복지시설	17	39	15	36	1	108
		15.7	36.1	13.9	33.3	0.9	100
계		171	106	195	168	39	679
		25.2	15.6	28.7	24.7	5.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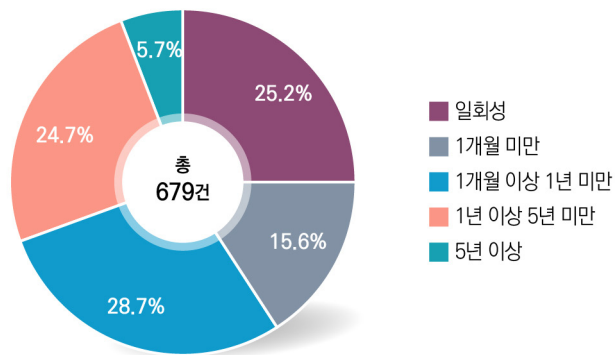


그림 9-20 시설학대 학대지속기간

다음은 시설학대의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을 보면, 발생빈도와 지속기간이 모두 일회성인 경우가 169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매일 발생한 경우가 134건으로 나타났다.

표 9-25 시설학대 학대발생빈도별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구 분		학대지속기간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학 대 발 생 빈 도	일회성	169	35	4	-	3	211
	6개월에 한 번 이상	-	1	6	1	-	8
	3개월에 한 번 이상	-	-	11	5	-	16
	1개월에 한 번 이상	-	43	56	6	5	110
	1주일에 한 번 이상	-	18	41	22	4	85
	매일	2	9	77	134	27	249
	계	171	106	195	168	39	679

8)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시설 유형별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시설의 경우 학대피해노인 571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8명(17.2%)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시설의 경우 학대피해노인 108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명(23.1%)으로 나타났다.

표 9-26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 분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34	9
			26.5
	노인의료 복지시설	537	89
			16.6
	소계	571	98
이용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
			-
	재가노인 복지시설	108	25
			23.1
	소계	108	25
계		679	123
			18.1

9)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시설학대 679건 중 치매로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사례는 597명(87.9%)이다. 치매노인 597명을 대상으로 시설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활시설이 510명(75.1%)으로 이용시설 87명(12.8%)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9-27 시설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명, %)

시설학대	구 분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계
679	생활 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4	25	29
			0.6	3.7	4.3
		노인의료 복지시설	40	441	481
			5.9	64.9	70.8
	이용 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	-
			-	-	-
		재가노인 복지시설	6	81	87
			0.9	11.9	12.8
	계		50	547	597
			7.4	80.6	87.9

10)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시설학대 학대행위자는 총 1,345명이며, 그 중 여성이 1,054명(78.4%), 남성이 291명(21.6%)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연령대 비율을 보면 남성은 60대가 160명(55.0%), 여성은 50대가 661명(62.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9-28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남성	-	-	51	18	56	160	6	291
	-	-	17.5	6.2	19.2	55.0	2.1	100
여성	-	2	17	84	661	259	31	1,054
	-	0.2	1.6	8.0	62.7	24.6	2.9	100
계	-	2	68	102	717	419	37	1,345
	-	0.1	5.1	7.6	53.3	31.2	2.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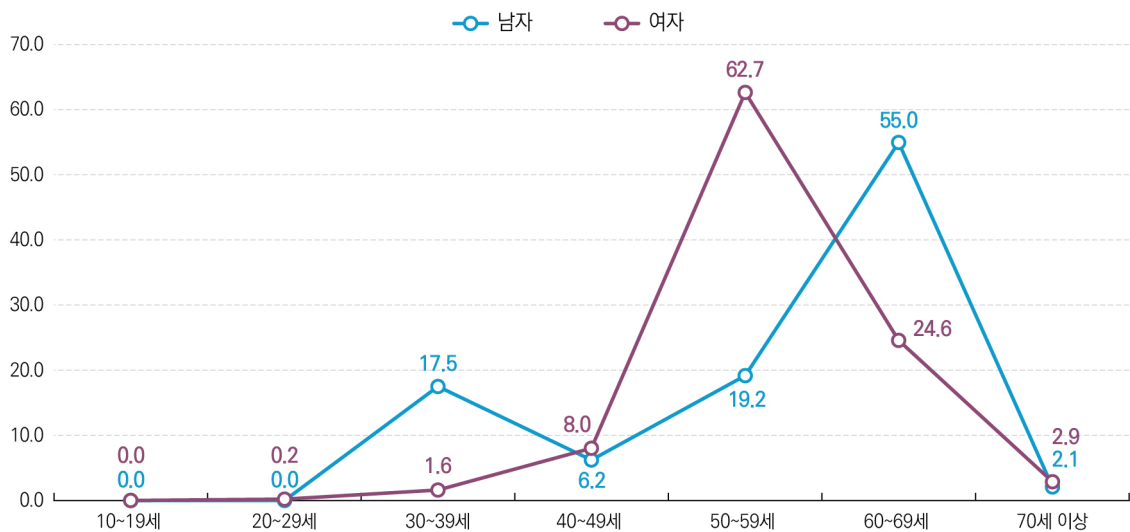


그림 9-21 시설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04 | 재학대 현황

1)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현황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를 의미한다.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재학대 건수는 759건으로 전체 학대사례 7,025건 중 10.8%에 해당되며,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별로 재학대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재학대가 가장 많이(학대사례 대비 재학대 비율) 신고된 기관은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25.1%,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6%,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2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재학대 발생 건이 1건(0.9%)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6건(2.4%),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3.4%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9-29 지역 및 기관별 재학대 현황

(단위: 건, %)

지 역	기관명	재학대		전체 학대사례 건수
		건 수	비 율	
서울	서울남부	14	6.8	206
	서울북부	10	7.4	135
	서울서부	28	13.5	208
	서울동부	19	11.2	170
	소계	71	9.9	719
부산	부산동부	37	11.5	322
	부산서부	6	2.4	252
	소계	43	7.5	574
대구	대구남부	7	4.2	166
	대구북부	27	16.2	167
	소계	34	10.2	333
인천	인천	48	24.6	195
	인천서부	22	8.3	266
	소계	70	15.2	461
광주		31	13.6	228
대전		7	5.6	126
울산		38	21.8	174
경기	경기동부	26	8.0	325
	경기북부	64	11.5	558
	경기서부	18	8.2	219
	경기남부	52	25.1	207
	경기북서부	11	3.4	321
	소계	171	10.5	1,630

지 역	기관명	재학대		전체 학대사례 건수
		건 수	비 율	
강원	강원	17	10.1	168
	강원동부	14	18.9	74
	강원남부	20	17.5	114
	소계	51	14.3	356
충북	충북	20	15.4	130
	충북북부	10	10.9	92
	소계	30	13.5	222
충남	충남	26	14.6	178
	충남남부	12	10.8	111
	소계	38	13.1	289
전북	전북	16	10.5	152
	전북서부	5	3.4	146
	소계	21	7.0	298
전남	전남동부	20	13.3	150
	전남서부	28	10.5	267
	소계	48	11.5	417
경북	경북동부	13	7.7	169
	경북북부	20	17.7	113
	경북서부	28	16.5	170
	경북남부	1	0.9	117
	소계	62	10.9	569
경남	경남	12	3.5	341
	경남서부	20	12.5	160
	소계	32	6.4	50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7	9.1	77
	제주도서귀포시	5	9.8	51
	소계	12	9.4	128
계		759	10.8	7,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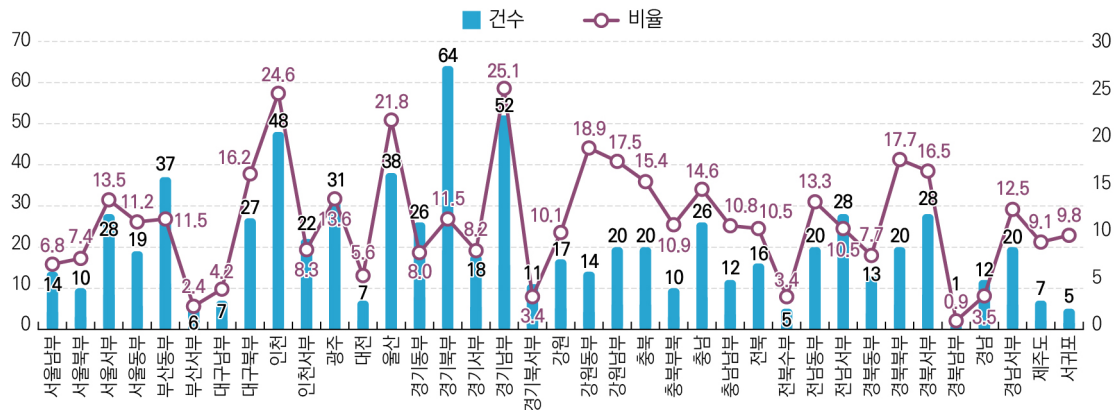


그림 9-22 기관별 재학대 접수 건수 및 비율

2) 재학대 신고자 유형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의 신고의무자 유형을 보면 신규 사례의 경우 959건(15.4%), 재학대 사례의 경우 79건(10.4%)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사례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288건(4.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재학대 사례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25건(3.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신규와 재학대 사례 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의 비신고의무자 유형을 보면, 신규 사례의 경우 5,301건(84.6%), 재학대 사례의 경우 680건(89.6%)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기관의 경우 타 비신고의무자 직군에 비해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 모두 신고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신고의무자 중 학대피해노인 본인의 신고비율이 신규 사례(4.4%) 보다 재학대 사례(8.7%)에 더 높았으며, 관련기관 신규 사례 신고비율(69.7%)에 비해 재학대 사례 신고비율(74.4%)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규 사례 보다 학대피해노인 본인 또는 관련 기관에서 노인 학대를 인지하여 신고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9-30 신규-재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신 규		재학대 신고	
신고 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47	0.8	1	0.1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16	0.3	2	0.3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65	4.2	17	2.2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0.1	1	0.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45	0.7	13	1.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54	2.5	13	1.7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5	0.1	2	0.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45	0.7	3	0.4
	119구급대의 대원	2	0.0	-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4	0.1	-	-
	응급구조사	-	-	-	-
	의료기사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2	0.2	1	0.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4	0.1	1	0.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64	1.0	-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288	4.6	25	3.3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원	6	0.1	-	-
	소계	965	15.4	79	10.4
비신고 의무자	학대피해노인 본인	278	4.4	66	8.7
	학대행위자 본인	6	0.1	1	0.1
	친족	465	7.4	40	5.3
	타인	182	2.9	8	1.1
	관련기관 ²⁷⁾	4,370	69.7	565	74.4
	소계	5,301	84.6	680	89.6
계		6,266	100.0	759	100.0

27) 관련기관에는 경찰관,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됨.

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재학대 사례의 학대피해노인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노인이 136명(17.9%), 여성 노인이 623명(82.1%)으로 여성 노인의 재학대 사례가 남성 노인에 비해 약 4.6배 많았다.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비율(남성 노인 24.1%, 여성 노인 75.9%)과 비교했을 때도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의 재학대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재학대 피해노인 중 70대가 371명(48.9%), 80대가 210명(27.7%), 60대가 148명(19.5%)으로 70대의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에 따른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80대의 경우 남성 노인이 44명(32.4%), 여성 노인이 166명(26.6%)로 나타나 남성 재학대 피해노인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9-3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성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남성	23	35	30	25	19	2	2	-	136
	16.9	25.7	22.1	18.4	14.0	1.5	1.5	-	100
여성	125	152	154	104	62	20	6	-	623
	20.1	24.4	24.7	16.7	10.0	3.2	1.0	-	100
계	148	187	184	129	81	22	8	-	759
	19.5	24.6	24.2	17.0	10.7	2.9	1.1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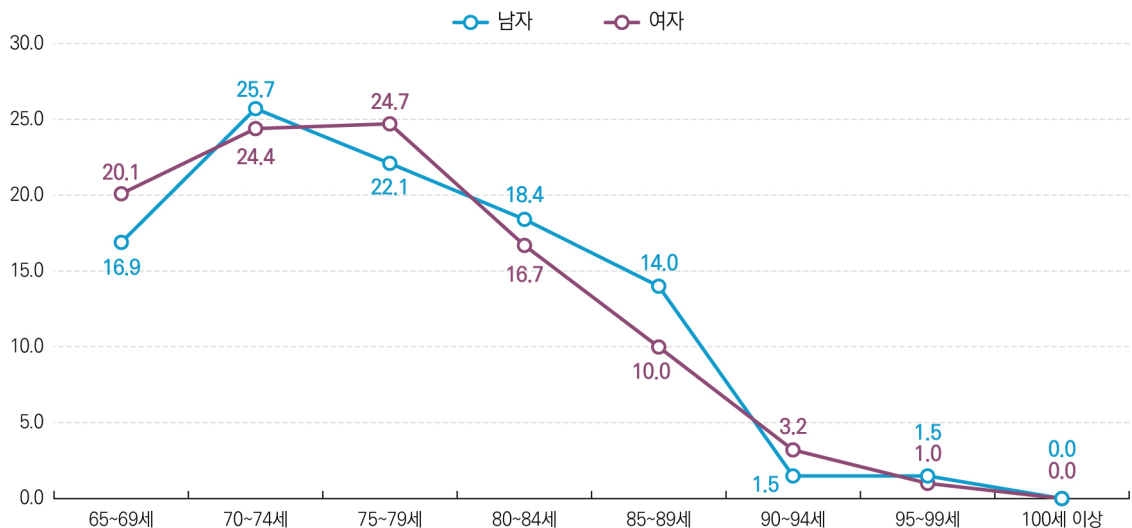


그림 9-2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대

4) 재학대 사례판정

재학대에 대한 사례판정 유형을 보면 비응급 사례 498건(65.6%), 잠재적 사례 242건(31.9%), 응급 사례 19건(2.5%)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례에 대한 사례판정 유형 또한 비응급 사례 4,063건(64.8%), 잠재적 사례 2,055건(32.8%), 응급 사례 148건(2.4%)의 순으로 재학대 사례판정과 동일하였다.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의 사례판정 유형을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규 사례에 비해 잠재적 사례 비율은 낮았으나, 응급 사례와 비응급 사례의 비율은 재학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2 신규-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사례판정

(단위: 건, %)

구 분	응 급	비응급	잠재적	계
신규	148	4,063	2,055	6,266
	2.4	64.8	32.8	100
재학대	19	498	242	759
	2.5	65.6	31.9	100
계	167	4,561	2,297	7,025
	2.4	64.9	32.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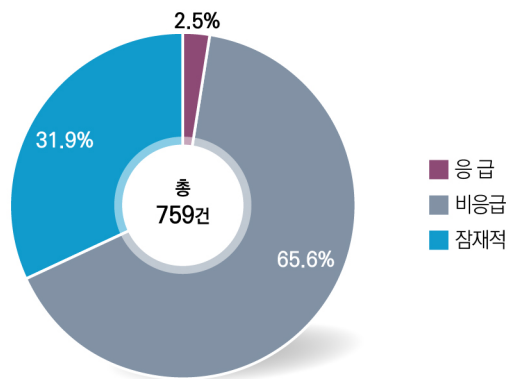


그림 9-24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사례판정 비율

5) 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학대피해노인의 학대행위자 유형을 신규 사례와 재학대 사례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신규 사례의 경우 배우자 2,500건(35.1%), 아들 1,774건(24.9%), 기관 1,557건(21.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학대 사례는 배우자 330건(42.8%), 아들 306건(39.7%), 딸 68건(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33 신규 - 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신규	157	2,500	1,774	84	539	44	149	71	254	1,557	7,129
	2.2	35.1	24.9	1.2	7.6	0.6	2.1	1.0	3.6	21.8	100
재학대	8	330	306	4	68	1	19	5	23	7	771
	1.0	42.8	39.7	0.5	8.8	0.1	2.5	0.6	3.0	0.9	100
계	165	2,830	2,080	88	607	45	168	76	277	1,564	7,900
	2.1	35.8	26.3	1.1	7.7	0.6	2.1	1.0	3.5	19.8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수(759명)와 학대행위자(771명)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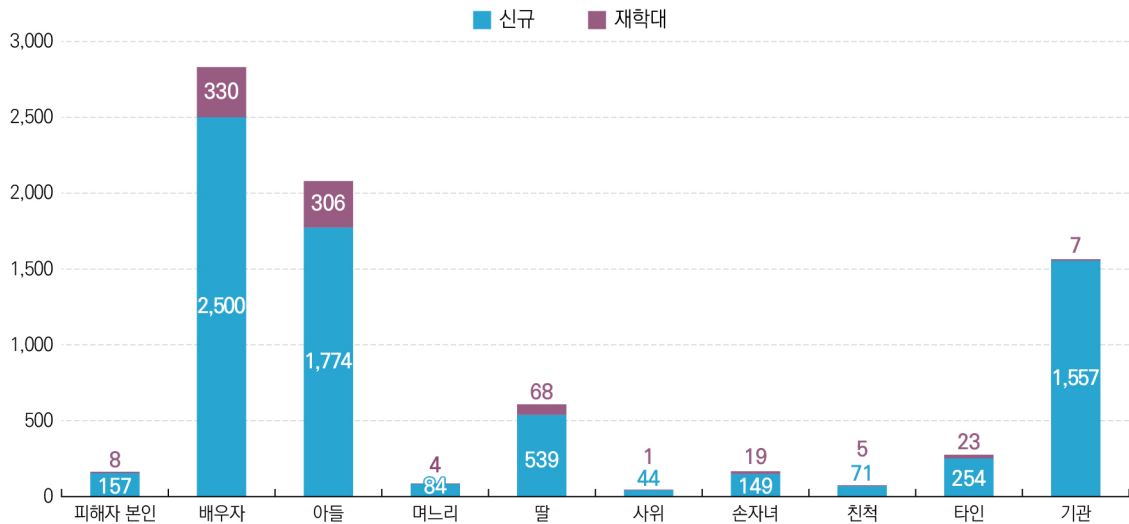


그림 9-25 신규-재학대 학대행위자 유형

6)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재학대 사례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1,156건 중 정서적 학대가 573건(49.6%)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신체적 학대가 494건(42.7%), 경제적 학대 45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학대의 학대유형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 정서적 학대가 4,531건(42.6%) 이라는 점에서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순위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신규와 재접수 모두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34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단위: 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494	573	6	45	30	8	-	1,156*
42.7	49.6	0.5	3.9	2.6	0.7	-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재학대 통계 수치(759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156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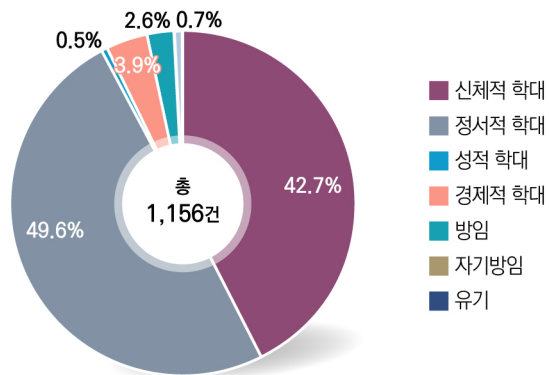


그림 9-26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

7) 재학대 학대발생장소

재학대 사례 총 759건 중 가정 내 학대가 745건(98.2%)으로, 재학대로 신고된 사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례의 가정 내 학대 비율이 85.1%인 것에 비하여 재학대 사례의 가정 내 학대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9-35 신규-재학대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구 분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신규	5,334	565	108	115	59	85	6,266
	85.1	9.0	1.7	1.8	0.9	1.4	100
재학대	745	6	-	-	5	3	759
	98.2	0.8	-	-	0.7	0.4	100
계	6,079	571	108	115	64	88	7,025
	86.5	8.1	1.5	1.6	0.9	1.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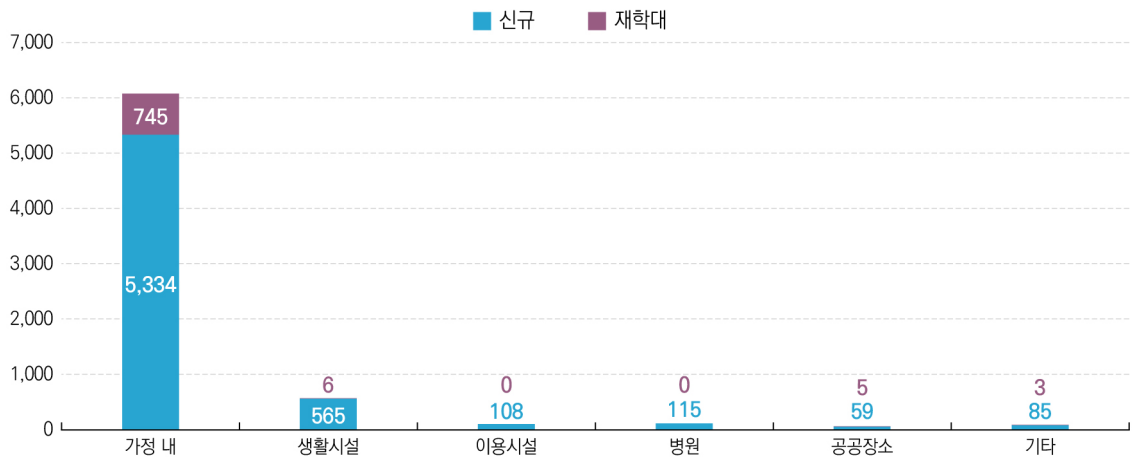


그림 9-27 신규-재학대 학대발생장소

재학대의 발생장소별로 학대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재학대 행위자 771명 중 가정 내 학대의 경우 배우자가 328명(43.3%)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아들이 305명(40.3%)으로 나타나 두 번째로 높았다. 즉 가정 내 학대로 인한 재학대의 경우 주로 배우자와 아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36 재학대 학대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피해자 본인	친 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가정내	8	328	305	4	68	1	19	5	730	18	1	757
	1.1	43.3	40.3	0.5	9.0	0.1	2.5	0.7	97.5	2.4	0.1	100
생활 시설	-	-	-	-	-	-	-	-	-	-	6	6
	-	-	-	-	-	-	-	-	-	-	100	100
이용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병원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 장소	-	1	-	-	-	-	-	-	1	4	-	5
	-	20.0	-	-	-	-	-	-	20.0	80.0	-	100
기타	-	1	1	-	-	-	-	-	2	1	-	3
	-	33.3	33.3	-	-	-	-	-	66.7	33.3	-	100
계	8	330	306	4	68	1	19	5	733	23	7	771*
	1.0	42.8	39.7	0.5	8.8	0.1	2.5	0.6	95.1	3.0	0.9	100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수(759명)와 학대행위자(771명)는 차이가 있음

8) 재학대 학대발생빈도

재학대 사례의 학대발생빈도는 1개월에 한 번 이상이 199건(26.2%)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주일에 한 번 이상 180건(23.7%), 6개월에 한 번 이상 147건(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신규 사례와 비교해보면 일회성의 경우 신규 사례에 비해 16.5%p 낮은 반면, 6개월에 한 번 이상의 비율은 8.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7 신규-재학대 학대발생빈도

(단위: 건, %)

구 분	일회성	6개월에 한 번 이상	3개월에 한 번 이상	1개월에 한 번 이상	1주일에 한 번 이상	매일	계
신규	1,479	698	691	1,542	1,214	642	6,266
	23.6	11.1	11.0	24.6	19.4	10.2	100
재학대	54	147	136	199	180	43	759
	7.1	19.4	17.9	26.2	23.7	5.7	100
계	1,533	845	827	1,741	1,394	685	7,025
	21.8	12.0	11.8	24.8	19.8	9.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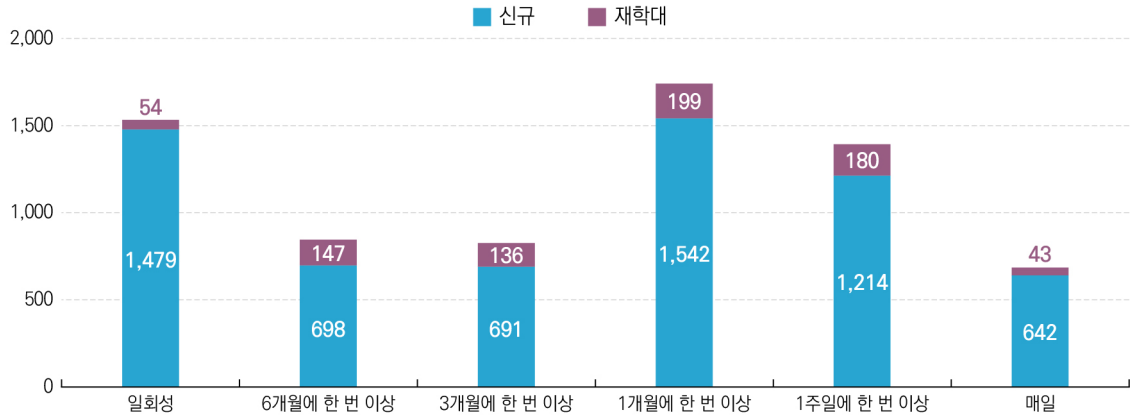


그림 9-28 재학대 학대발생빈도

9) 재학대 학대지속기간

재학대로 신고된 학대피해노인의 학대지속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 및 5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학대가 지속된 비율은 신규 사례가 3,559건(56.8%), 재학대 사례가 644건(84.8%)으로, 재학대 사례가 신규 사례보다 장기간 지속된 학대 비율이 높았다.

표 9-38 신규 - 재학대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 분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계
신규	1,378	294	1,035	1,787	1,772	6,266
	22.0	4.7	16.5	28.5	28.3	100
재학대	47	8	60	345	299	759
	6.2	1.1	7.9	45.5	39.4	100
계	1,425	302	1,095	2,132	2,071	7,025
	20.3	4.3	15.6	30.3	29.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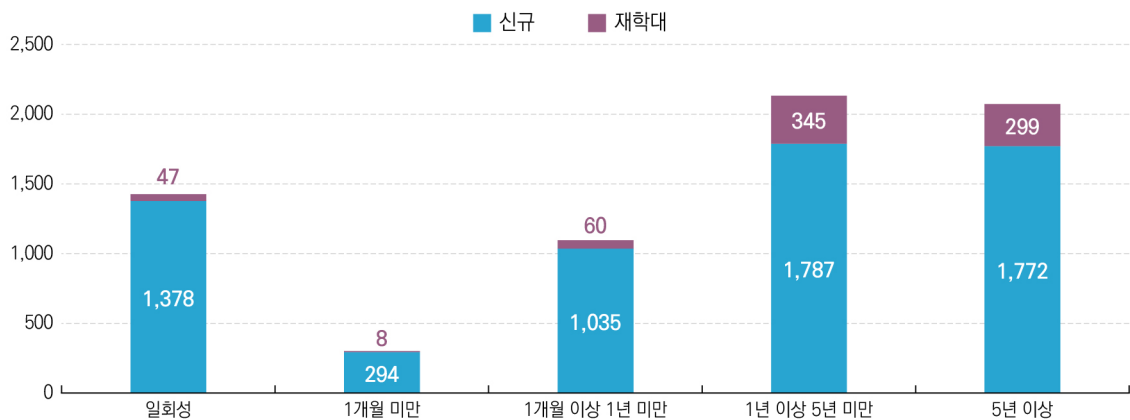


그림 9-29 신규 - 재학대 학대지속기간

10)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재학대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재학대 피해노인 759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55명(20.4%)이다. 2023년 전체 학대피해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1,067명, 15.2%)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표 9-39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59	155
	20.4

1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재학대 사례의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를 보면 자녀동거가구가 319건(42.0%)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노인부부가구 304건(40.1%), 노인독거가구 55건(7.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례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의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로 2,437건(38.9%)이었으며, 다음으로 자녀동거가구가 1,663건(26.5%), 노인독거가구가 1,063건(17.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학대 사례와 신규 사례를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의 경우 신규 사례에 비해 노인부부 및 자녀동거 비율은 높으나 노인독거가구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40 신규 -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단위: 건, %)

구 분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손자녀 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기 타	계
신규	1,063	2,437	1,663	167	168	768	6,266
	17.0	38.9	26.5	2.7	2.7	12.3	100
재학대	55	304	319	36	23	22	759
	7.2	40.1	42.0	4.7	3.0	2.9	100
계	1,118	2,741	1,982	203	191	790	7,025
	15.9	39.0	28.2	2.9	2.7	11.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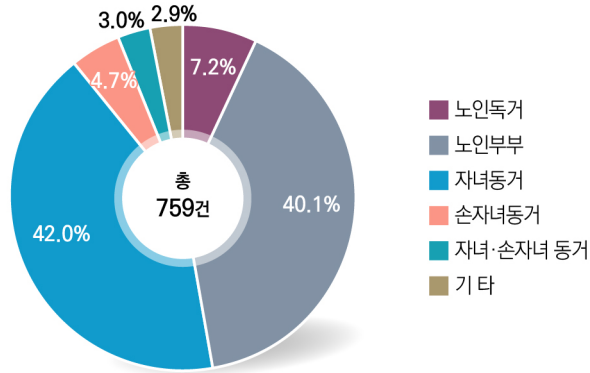


그림 9-30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

재학대 사례의 학대 유형 건수는 1,156건으로 가구 형태별로 학대유형의 차이가 나타난다. 노인 독거의 경우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경제적학대=자기방임”, 노인부부의 경우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경제적 학대”, 손자녀동거의 경우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경제적 학대”, 자녀·손자녀의 경우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경제적 학대”, 자녀동거의 경우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경제적 학대”, 기타의 경우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4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건수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노인독거	24	36	1	6	5	6	-	78
	30.8	46.2	1.3	7.7	6.4	7.7	-	100
노인부부	205	236	4	5	3	-	-	453
	45.3	52.1	0.9	1.1	0.7	-	-	100
손자녀동거	24	28	-	6	-	-	-	58
	41.4	48.3	-	10.3	-	-	-	100
자녀·손자녀 동거	14	20	-	2	-	-	-	36
	38.9	55.6	-	5.6	-	-	-	100
자녀동거	211	242	1	24	16	1	-	495
	42.6	48.9	0.2	4.8	3.2	0.2	-	100
기타	16	11	-	2	6	1	-	36
	44.4	30.6	-	5.6	16.7	2.8	-	100
계	494	573	6	45	30	8	-	1,156*
	42.7	49.6	0.5	3.9	2.6	0.7	-	100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학대 피해노인 통계 수치(759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1,156건)에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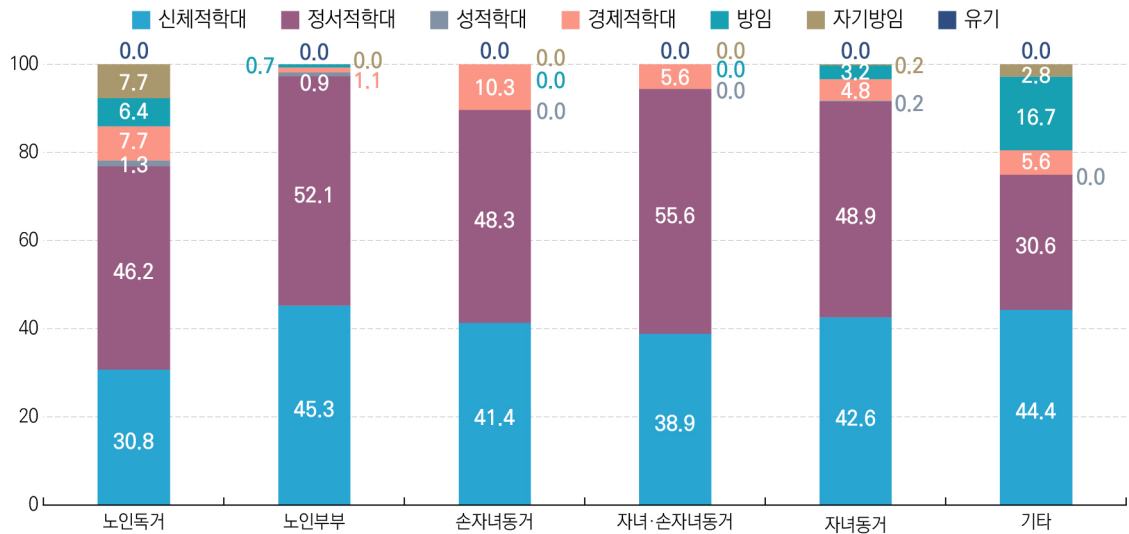


그림 9-31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별 학대 유형

12)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재학대 사례 학대피해노인의 759명 중 치매가 의심되는 치매의심노인이 84명(11.1%),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진단노인이 86명(11.3%)으로,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피해노인은 총 170명(22.4%)으로 나타났다.

표 9-42 재학대 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단위: 명, %)

재학대 사례	치매의심 (치매가 의심됨)	치매진단 (치매로 진단받음)	계
759	84	86	170
	11.1	11.3	22.4

1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771명 중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은 647명(83.9%)이었으며, 동거하지 않는 비율은 124명(16.1%)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은 5,227명(66.2%)임을 미루어 볼 때, 재학대 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재학대 사례 중 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308명(47.6%)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아들이 249명(38.5%)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중 아들과의 동거비율(28.0%)과 비교해보면 재학대 사례에서 아들과의 동거비율(38.5%)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9-43 재학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동거여부

(단위: 명, %)

구분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동거	6	308	249	3	50	1	14	5	630	9	2	647
	0.9	47.6	38.5	0.5	7.7	0.2	2.2	0.8	97.4	1.4	0.3	100
비동거	2	22	57	1	18	-	5	-	103	14	5	124
	1.6	17.7	46.0	0.8	14.5	-	4.0	-	83.1	11.3	4.0	100
계	8	330	306	4	68	1	19	5	733	23	7	771
	1.0	42.8	39.7	0.5	8.8	0.1	2.5	0.6	95.1	3.0	0.9	100

14)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재학대의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를 살펴보면 총 771명 중 남성이 649명(84.2%), 여성이 122명(15.8%)으로 나타나 재학대 사례의 주된 학대행위자는 남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대행위자는 70세 이상이 291명(37.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9-44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남성	6	9	27	118	134	86	269	649
	0.9	1.4	4.2	18.2	20.6	13.3	41.4	100
여성	2	3	8	31	28	28	22	122
	1.6	2.5	6.6	25.4	23.0	23.0	18.0	100
계	8	12	35	149	162	114	291	771
	1.0	1.6	4.5	19.3	21.0	14.8	37.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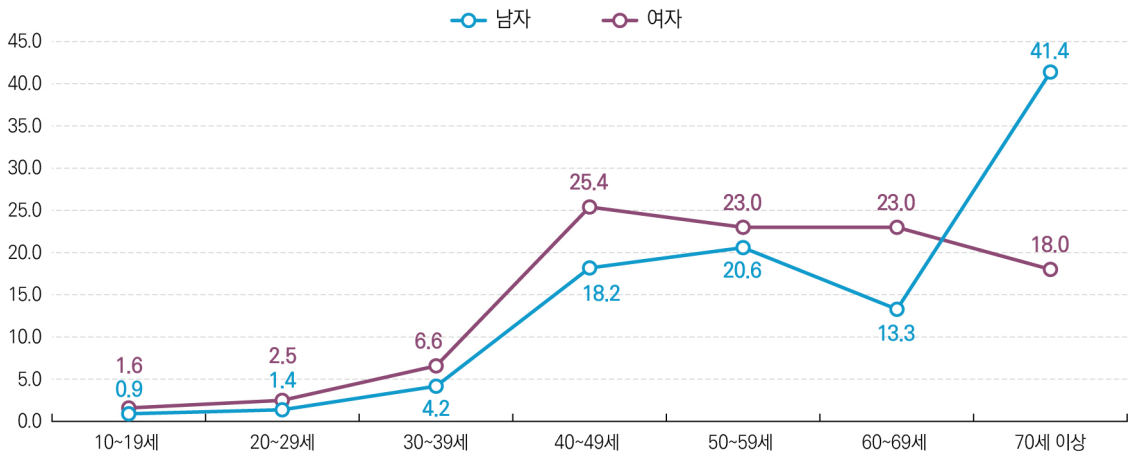


그림 9-32 재학대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대

15) 재학대 학대행위자 중독 유형

재학대 행위자 771명의 사례 중 중독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201건으로, 전체 재학대 행위자의 26.1%를 차지하였다. 이 중 알코올 사용 장애가 190명(24.6%), 도박중독이 7명(0.9%), 약물사용장애가 4명(0.5%)으로 중독유형의 대부분은 알코올사용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45 재학대 학대행위자 중독 유형

(단위: 명, %)

재학대 행위자	도박중독	알코올사용장애	약물사용장애	계
771	7	190	4	201
	0.9	24.6	0.5	26.1



PART 1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01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실적

1) 보호노인 현황

표 10-1 보호노인 현황

(단위: 명, %)

구 분	남 성	여 성	계
입소자	61	435	496
	12.3	87.7	100
이용자	94	567	661
	14.2	85.8	100
계	155	1,002	1,157
	13.4	86.6	100

표 10-2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구 분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 89세	90~ 94세	95~ 99세	100세 이상	계
입소자	남성	16	17	12	11	3	2	-	-	61
		26.2	27.9	19.7	18.0	4.9	3.3	-	-	100
	여성	91	111	96	81	45	9	2	-	435
		20.9	25.5	22.1	18.6	10.3	2.1	0.5	-	100
	계	107	128	108	92	48	11	2	-	496
		21.6	25.8	21.8	18.5	9.7	2.2	0.4	-	100
이용자	남성	17	15	26	21	13	2	-	-	94
		18.1	16.0	27.7	22.3	13.8	2.1	-	-	100
	여성	107	195	124	95	42	3	1	-	567
		18.9	34.4	21.9	16.8	7.4	0.5	0.2	-	100
	계	124	210	150	116	55	5	1	-	661
		18.8	31.8	22.7	17.5	8.3	0.8	0.2	-	100

그림 10-1 보호노인 성별 및 연령대

2) 보호노인 결혼 유형

표 10-3 보호노인 결혼 유형

(단위: 명, %)

구 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계
	초혼	재혼	사실혼	기타	소계	미혼	사별	이혼	별거	가출	기타	소계	
입소자	248	49	13	-	310	6	137	34	9	-	-	186	496
	50.0	9.9	2.6	-	62.5	1.2	27.6	6.9	1.8	-	-	37.5	100
이용자	325	55	22	-	402	2	201	49	7	-	-	259	661
	49.2	8.3	3.3	-	60.8	0.3	30.4	7.4	1.1	-	-	39.2	100
계	573	104	35	-	712	8	338	83	16	-	-	445	1,157
	49.5	9.0	3.0	-	61.5	0.7	29.2	7.2	1.4	-	-	38.5	100

3)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표 10-4 보호노인 동거자 유형

(단위: 명, %)

구 분	배우자	아 들	며느리	딸	사 위	손자녀	기타 친인척	기타 동거인	기타	계
입소자	268	126	12	39	5	30	7	10	2	499
	53.7	25.3	2.4	7.8	1.0	6.0	1.4	2.0	0.4	100
이용자	333	164	10	57	4	54	9	8	-	639
	52.1	25.7	1.6	8.9	0.6	8.5	1.4	1.3	-	100
계	601	290	22	96	9	84	16	18	2	1,138
	52.8	25.5	1.9	8.4	0.8	7.4	1.4	1.6	0.2	100

4) 보호노인 가구형태

표 10-5 보호노인 가구형태

(단위: 명, %)

구 분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자녀·손자녀 동거	손자녀동거	기 타	계
입소자	59	243	149	15	12	18	496
	11.9	49.0	30.0	3.0	2.4	3.6	100
이용자	138	270	181	24	27	21	661
	20.9	40.8	27.4	3.6	4.1	3.2	100
계	197	513	330	39	39	39	1,157
	17.0	44.3	28.5	3.4	3.4	3.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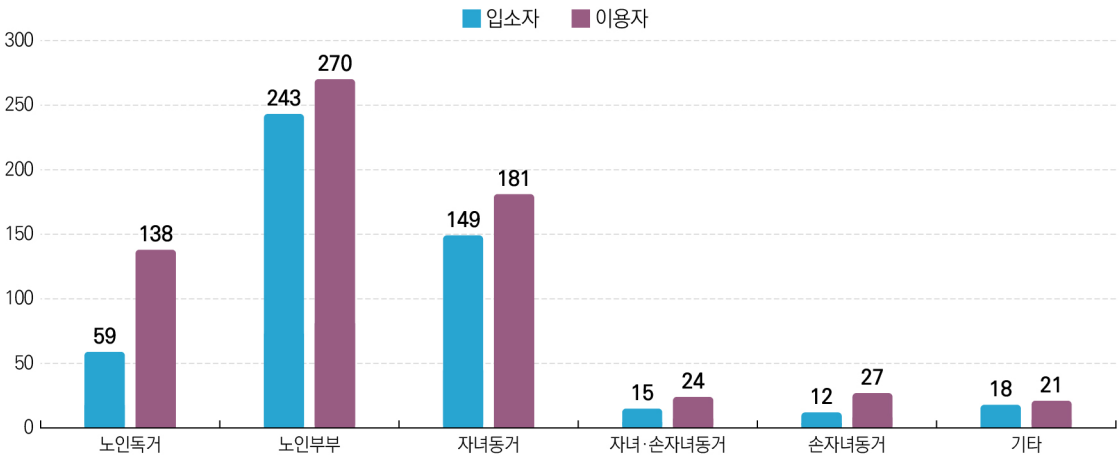


그림 10-2 보호노인 가구형태

5) 보호노인 주거형태

표 10-6 보호노인 주거형태

(단위: 명, %)

구 분	자 가	전 세	월 세	영구임대 아파트	무상	의료 시설	기타	시설	계
입소자	326	38	60	41	12	-	17	2	496
	65.7	7.7	12.1	8.3	2.4	-	3.4	0.4	100
이용자	439	56	83	66	9	-	6	2	661
	66.4	8.5	12.6	10.0	1.4	-	0.9	0.3	100
계	765	94	143	107	21	-	23	4	1,157
	66.1	8.1	12.4	9.2	1.8	-	2.0	0.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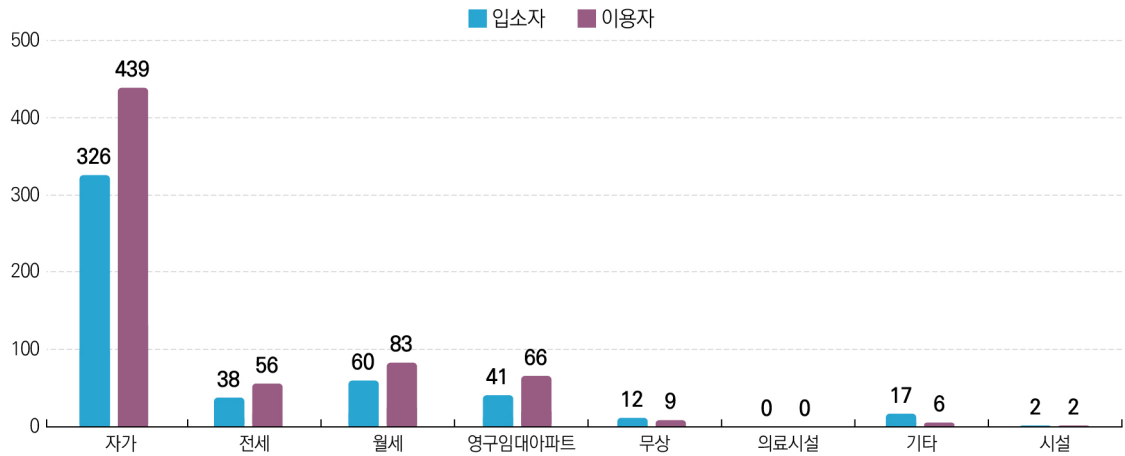


그림 10-3 보호노인 주거형태

6) 보호노인 학대 유형

표 10-7 보호노인 학대 유형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 임	자기 방임	유 기	계
입소자	374	400	15	30	17	17	-	853
	43.8	46.9	1.8	3.5	2.0	2.0	-	100
이용자	465	566	11	33	14	13	-	1,102
	42.2	51.4	1.0	3.0	1.3	1.2	-	100
계	839	966	26	63	31	30	-	1,955
	42.9	49.4	1.3	3.2	1.6	1.5	-	100

* 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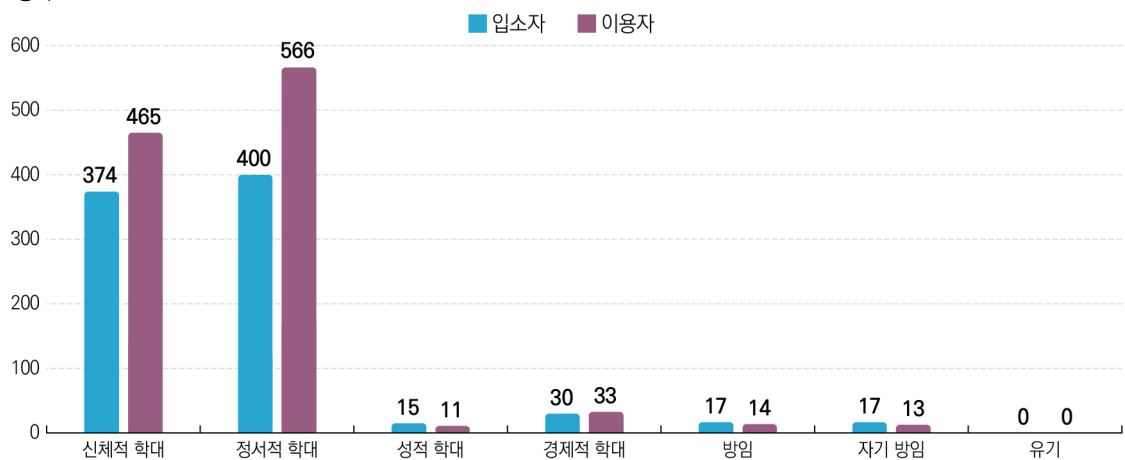


그림 10-4 보호노인 학대 유형

7) 보호노인 치매여부

표 10-8 보호노인 치매여부

(단위: 명, %)

구 분	보호노인 수	치매 진단 및 의증		
		치매진단	치매의심	소계
입소자	496	47	61	108
		9.5	12.3	21.8
이용자	661	50	23	73
		68.5	3.5	100
계	1,157	97	84	181
		8.4	7.3	15.6

8) 보호노인의 우울증 검사

표 10-9 보호노인 우울증 검사결과*

(단위: 명, %)

구 분	증 가	감 소	계
입소자	5	456	461
	1.1	98.9	100
이용자	2	581	583
	0.3	99.7	100
계	7	1,037	1,044
	0.7	99.3	100

* 학대피해노인의 치매, 의사소통의 어려움, 거부, 병원이송, 급작스런 퇴소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우울증 검사를 실시한 수치임.

9) 퇴소 후 거주 현황

표 10-10 퇴소 후 거주 현황

(단위: 명, %)

구 분	원가정 복귀	입소 전 거주지 복귀 (원가정복귀 제외)	타부양자 가정	시설입소 (쉼터, 공동 생활가정, 요양원 등)	의료기관	별도공간 마련	기 타	소계
입소자	314	2	26	42	17	59	36	496
	63.3	0.4	5.2	8.5	3.4	11.9	7.3	100
이용자	507	-	-	14	1	8	131	661
	76.7	-	-	2.1	0.2	1.2	19.8	100
계	821	2	26	56	18	67	167	1,157
	71.0	0.2	2.2	4.8	1.6	5.8	14.4	100

10)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표 10-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입소자)

(단위: 명, %)

내 용			인 원	
			인원	비율
식사제공	조식		17,527	14.8
	중식		16,626	14.1
	석식		17,391	14.7
	소계		51,544	43.6
법률서비스 연계	법률상담연결		20	0.0
	법률소송지원		9	0.0
	소계		29	0.0
의료서비스 연계	연계	이송	98	0.1
		의료기관 서비스제공	451	0.4
	지원	이송 및 동행	1,073	0.9
		의료비 지급	326	0.3
	기타		2,873	2.4
	소계		4,821	4.1
상담서비스	쉼터 사회복지사 상담		4,277	3.6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1,847	1.6
	전문가(강사)상담		479	0.4
	가족상담		292	0.2
	기타		3,458	2.9
	소계		10,353	8.8
프로그램	건강증진		32,388	27.4
	문화여가		4,679	4.0
	사회기능회복		4,670	3.9
	심리치료		7,137	6.0
	기타		2,629	2.2
	소계		51,503	43.6
계			118,250	100

11)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표 10-12 쉼터 서비스 제공 현황(이용자)

(단위: 명, %)

내 용			인 원	
			인원	비율
식사제공	조식		184	4.1
	중식		1,178	26.1
	석식		263	5.8
	소계		1,625	36.0
법률서비스 연계	법률상담연결		-	-
	법률소송지원		-	-
	소계		-	-
의료서비스 연계	연계	이송	-	-
		의료기관 서비스제공	6	0.1
	지원	이송 및 동행	9	0.2
		의료비 지급	1	0.0
	기타		5	0.1
	소계		21	0.5
상담서비스	쉼터 사회복지사 상담		206	4.6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468	10.4
	전문가(강사)상담		169	3.7
	가족상담		32	0.7
	기타		260	5.8
	소계		1,135	25.1
프로그램	건강증진		400	8.9
	문화여가		293	6.5
	사회기능회복		69	1.5
	심리치료		397	8.8
	기타		578	12.8
	소계		1,737	38.4
계			4,518	100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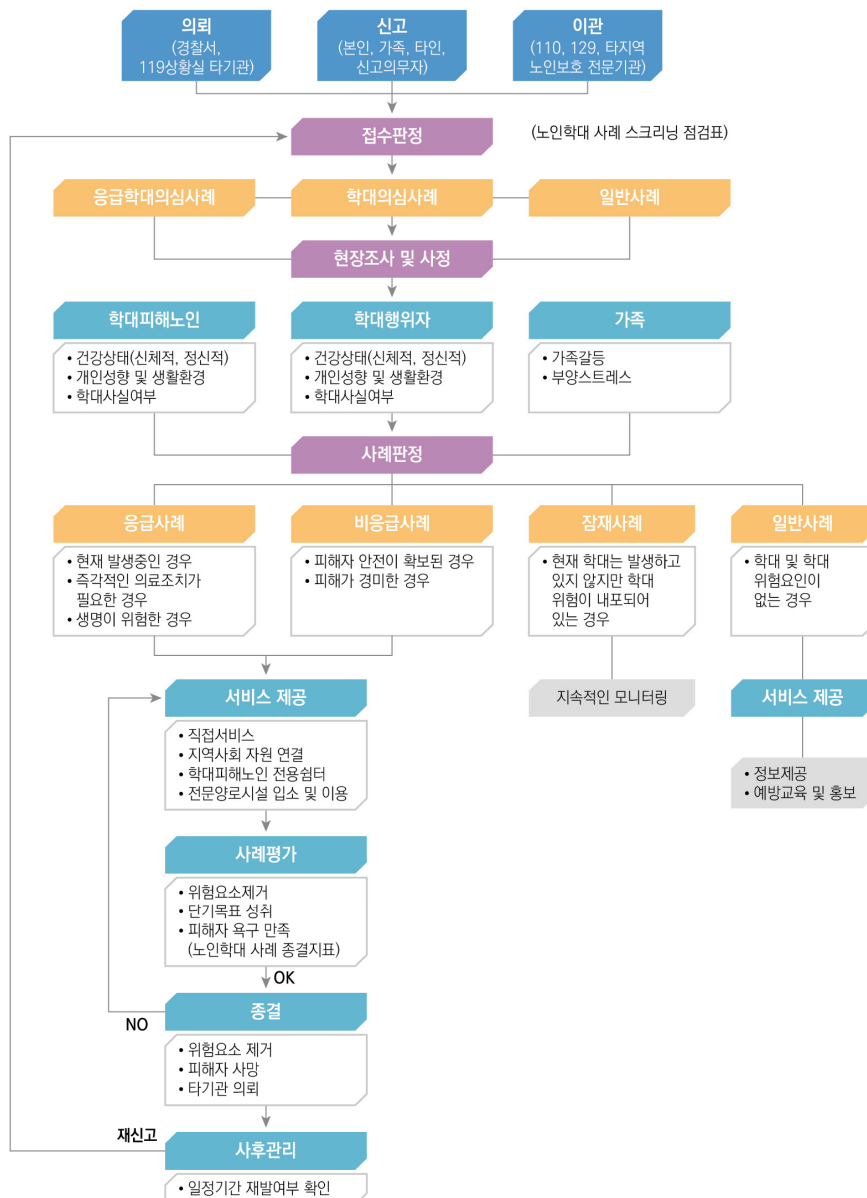
PART 11

부 록



부록

01 |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02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24. 6. 현재)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 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A동 205~206호(생각공장 당산)	02)3667-1389	www.noinboho1389.or.kr
서울특별시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02)3472-1389	www.seoul1389.or.kr
서울특별시북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02)921-1389	www.sn1389.or.kr
서울특별시서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10길 30-1, 5층	02)3157-6389	www.sw1389.or.kr
서울특별시동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703, 301호 (천호동, 삼화빌딩)	02)470-1389	www.se1389.or.kr
부산광역시중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8 연합뉴스빌딩 5층	051)468-8850	www.bs1389.or.kr
부산광역시동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8번길 46 제이에스빌 5층	051)867-9119	www.1389.bulgukto.or.kr
부산광역시서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140, 신평역사 2층(신평동 646)	051)206-1389	www.bsw1389.or.kr
대구남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41, 2층	053)472-1389	www.dg1389.or.kr
대구북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053)357-1389	www.dgn1389.or.kr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시사회복지관 204호	032)426-8792~3	www.ic1389.or.kr
인천서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65번안길 12, 2층	032-569-0533	www.innoin1389.or.kr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7 빛고을노인건강타운체육관 1층	062)655-4155~7	www.gjw.or.kr/kj138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70번길 103	042)472-1389	www.dj1389.or.kr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 121, 3층	052)265-1389	www.us1389.or.kr
경기동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7번길 2, 5008호(정자동, 한솔프라자)	031)736-1389	www.gg1389.or.kr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04 예찬빌딩 5층	031)821-1461	www.gg1389.or.kr
경기서부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13, 308호(스테이션플라자)	032)683-1389	www.gg1389.or.kr
경기남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1번길 1, 노인회관 4층	031)268-1389	www.gg1389.or.kr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기북서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9 그랑프리프라자 406호	031)978-1389	www.gg1389.or.kr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회관 2층 201호	033)253-1389	www.1389.or.kr
강원특별자치도동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울곡로 2954, 3층	033)655-1389	www.gd1389.or.kr
강원특별자치도남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170, 새한빌딩 2층	033-744-1389	www.gn1389.co.kr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 3층	043)259-8120~2	www.cb1389.or.kr
충청북도북부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76	043)846-1380~2	www.cbb1389.or.kr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06번길 42	041)534-1389	www.cn1389.or.kr
충청남도남부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9, 2층	041)734-1389	www.cnn1389.or.kr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7-23	063)273-1389	www.jb1389.or.kr
전북특별자치도서부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93 1층	063)542-1389	www.jbw1389.or.kr
전라남도동부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061)753-1389	www.jn1389.or.kr
전라남도서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10, 전남노인회관 4층	061)281-2391	www.j1389.or.kr
경상북도동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기쁨의복지관 B102	054)248-1389	www.noin1389.or.kr
경상북도북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1	054)655-1389	www.gbnw1389.or.kr
경상북도서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981-8	054)436-1390	www.gbwn1389.or.kr
경상북도남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18, 3층	053)716-1389	snoin1389.or.kr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15 금강노인복지관C동 1층	055)222-1389	www.gn1389.or.kr
경상남도서부권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98, 2층	055)754-1389	www.gnw1389.c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7길 3	064)757-3400	www.jejunoin.org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29 2층	064)763-1999	http://sgpnoin.org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인 쇄 일 : 2024년 6월
발 행 일 : 2024년 6월
발 행 인 : 보건복지부 장관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중양노인보호전문기관
02) 3667-1389
인 쇄 : 경성문화사 02) 786-2999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